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에너지자원실)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너지자원실)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I . 에특회계	1
1. 세입예산 총괄표	3
2. 세출예산 총괄표	5
3. 소관 국별 세출예산 총괄표	9
II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 입	
1) 정부출자수입 (에특회계)	17
2) 기타재산수입 (에특회계)	19
3) 석유수입부과금 (에특회계)	21
4) 석유판매부과금 (에특회계)	23
5)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에특회계)	25
6) 광해방지부담금 (에특회계)	27
7) 보조금정산환입 등 (에특회계)	29
8) 전년도 이월금 (에특회계)	31
9) 일반회계전입금 (에특회계)	33
10) 타계정전입금 (에특회계)	35
11) 기금예탁원금회수 (에특회계)	37
12) 기금예탁이자수입 (에특회계)	39
13) 기타민간이자수입 (에특회계)	41
1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에특회계)	43
15) 전년도이월금 (에특회계)	45

2. 세 출

□ 에너지자원정책관	49
1) 에너지국제협력(계속)	53
2) 에너지정책홍보(계속)	59
3)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재량, 계속)	65
4)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재량/계속)	72
5) 에너지센서스(신규)	100
6) 에너지자원정책연구(계속, R&D)	111
7)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재량, 계속)	116
8) 회계위탁관리비(재량, 계속)	121
9) 회계관리비(재량, 계속)	125
1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재량, 계속)	130
11) 유전개발사업출자(계속)	139
12) 해외자원개발조사(계속)	146
13) 자원협력기반구축(계속)	156
14)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계속)	163
15)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계속)	173
16) 일반광업육성지원(계속)	185
17) 광산안전시설(계속)	205
18) 광산물비축사업출자(계속)	212
19)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계속)	222
20)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계속)	228
2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재량, 계속)	241
22)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계속)	252
23) 가스안전관리 융자(계속)	264
24) 자원개발기술개발(계속, R&D)	271

□ 에너지산업정책관	293
1) 한국가스공사출자(재량, 종료)	296
2)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계속)	308
3) 석유비축사업출자(계속)	316
4) 석유유통구조개선(계속)	327
5) LP가스품질검사(계속)	335
6)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계속)	346
7) 탄가안정대책보조(계속)	366
8) 석탄비축자산관리비(계속)	371
9) 저소득층연탄보조(계속)	375
10) 폐광대책비(계속)	381
11) 광해방지비(계속)	390
12)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계속)	400
13)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계속)	416
14) 대한석탄공사출자(계속)	422
15)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재량, 종료)	429
16) LPG소형저장탱크보급(계속)	438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453
1) 에너지진단보조(계속)	456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속)	465
3)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계속)	475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계속)	484
5)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계속)	491
6) 기후변화협약대응(계속)	498
7)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계속)	514
8) 에너지관리공단지원(계속)	522
9)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계속)	529

I . 에 특 회 계

I. 에특회계

1.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5,031,189	6,149,480	5,433,576	△715,904	△11.6
<투자계정>			3,132,736	4,294,795	4,098,256	△196,539	△4.6
□총수입			2,204,300	2,529,846	2,550,183	20,337	0.8
재산수입			5,944	77,408	16,495	△60,913	△78.7
정부출자수입			4,070	74,562	13,655	△60,907	△81.7
·정부출자수입			4,070	74,562	13,655	△60,907	△81.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874	2,846	2,840	△6	△0.2
·기타재산수입			1,874	2,846	2,840	△6	△0.2
경상이전수입			2,198,356	2,452,438	2,533,688	81,250	3.3
벌금 및 물수금			9	-	-	-	-
·벌금			9	-	-	-	-
가산금			22	88	88	-	-
·가산금			22	88	88	-	-
기타경상이전수입			2,198,325	2,452,350	2,533,600	81,250	3.3
·석유수입부과금			1,729,581	2,028,809	2,047,640	18,831	0.9
·석유판매부과금			277,899	253,295	280,858	27,563	10.9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31,975	118,101	143,945	25,844	21.9
·비축탄매각수입			4,836	-	-	-	-
·광해방지부담금			7,956	14,327	15,731	1,404	9.8
·보조금정산환입			46,078	37,818	45,426	7,608	20.1
□전년도이월금			509,259	126,807	163,377	36,570	28.8
전년도이월금			509,259	126,807	163,377	36,570	28.8
전년도이월금			509,259	126,807	163,377	36,570	28.8
·전년도이월금			509,259	126,807	163,377	36,570	28.8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정부내부수입		419,177	1,638,142	1,384,696	△253,446	△15.5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19,177	1,638,142	1,384,696	△253,446	△15.5
	전입금		419,177	1,580,342	989,428	△590,914	△37.4
	·일반회계 전입금		160,589	365,391	253,685	△111,706	△30.6
	·타계정 전입금		258,588	1,214,951	735,743	△479,208	△39.4
	예탁원금회수		-	-	330,000	330,000	순증
	·기금예탁원금회수		-	-	330,000	330,000	순증
	예탁이자수입		-	57,800	65,268	7,468	12.9
	·기금예탁이자수입		-	57,800	65,268	7,468	12.9
<	용자계정>		1,898,453	1,854,685	1,335,320	△519,365	△28.0
□	총수입		1,205,017	1,191,662	1,268,071	76,409	6.4
	재산수입		142,827	138,618	154,349	15,731	11.3
	기타이전수입및재산수입		142,827	138,618	154,349	15,731	11.3
	·기타민간이자수입		142,827	138,618	154,349	15,731	11.3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062,190	1,053,044	1,113,722	60,678	5.8
	용자원금회수		1,062,190	1,053,044	1,113,722	60,678	5.8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1,062,190	1,053,044	1,113,722	60,678	5.8
□	전년도이월금		693,436	663,023	67,249	△595,774	△89.9
	전년도이월금		693,436	663,023	67,249	△595,774	△89.9
	전년도이월금		693,436	663,023	67,249	△595,774	△89.9
	·전년도이월금		693,436	663,023	67,249	△595,774	△89.9
□	정부내부수입		-	-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	-	-	-
	전입금		-	-	-	-	-
	·타계정 전입금		-	-	-	-	-

2.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
총 계	3,079,954	5,237,524	4,841,896	△396,028	△7.6
순 계	2,761,366	2,228,803	2,102,784	△126,019	△5.7
투자계정 소계	2,003,581	3,476,273	3,513,253	36,980	1.1
○ 에너지자원정책지원	9,078	9,846	10,402	556	5.6
- 에너지국제협력	200	4,500	3,360	△1,140	△25.3
- 에너지정책홍보	5,602	1,100	1,000	△100	△9.1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59	149	122	△27	△18.1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2,657	2,657	2,657	-	-
- 에너지센서스(신규)	460	-	1,938	1,938	순증
-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	-	1,440	1,325	△115	△8.0
○ 에너지자원국제협력	1,301	1,853	1,887	34	1.8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301	1,853	1,887	34	1.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	951	1,227	1,227	-	-
- 회계위탁관리비	877	1,153	1,153	-	-
- 회계관리비	74	74	74	-	-
예비비	-	1,460	1,027	△433	△29.7
- 예비비	-	1,460	1,027	△433	△29.7
○ 에너지이용합리화	89,713	102,217	121,135	18,918	18.5
- 중소기업진단보조	2,268	2,671	2,220	△451	△16.9
- 지역에너지절약	35,308	35,409	21,690	△13,719	△38.7
-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15,602	15,254	13,759	△1,495	△9.8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3,360	6,750	15,203	8,453	125.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29,580	41,080	67,110	26,030	63.4
-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3,595	1,053	1,153	100	9.5
○ 기후변화협약대응	17,441	17,549	17,054	△495	△2.8
- 기후변화협약대응	11,012	10,850	11,054	204	1.9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2,750	3,449	2,750	△699	△20.3
-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	3,679	3,250	3,250	-	-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국내외유전개발	690,323	380,000	170,000	△210,000	△55.3
- 유전개발사업출자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한국가스공사출자	-	160,000	-	△160,000	순감
○ 광물자원개발	9,949	9,800	8,528	△1,272	△13.0
- 해외자원개발조사	9,250	9,070	7,828	△1,242	△13.7
- 자원협력기반구축	699	730	700	△30	△4.1
○ 한국광물자원공사지원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일반광육성	16,675	20,241	19,454	△787	△3.9
- 일반광업육성지원	13,354	16,754	15,967	△787	△4.7
- 광산안전시설	3,321	3,487	3,487	-	-
○ 광산물비축	41,010	46,460	41,457	△5,003	△10.8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40,000	45,000	40,000	△5,000	△11.1
- 광산물비축자산 관리보조	1,010	1,460	1,457	△3	△0.2
○ 석유비축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석유비축사업출자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석유안정공급	8,513	9,120	6,660	△2,460	△27.0
- 석유유통구조개선	8,513	9,120	6,660	△2,460	△27.0
○ 석유가스품질관리	9,191	16,120	15,928	△192	△1.2
- LPG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7,910	14,839	14,647	△192	△1.3
○ 석탄수급안정	167,067	204,234	252,306	48,072	23.5
- 탄가안정대책보조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26	1,149	1,714	565	49.2
- 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	14,106	14,106	-	-
○ 광산지역진흥	143,457	149,436	129,693	△19,743	△13.2
- 폐광대책비	54,457	51,436	26,000	△25,436	△49.5
- 광해방지비	82,000	88,000	82,000	△6,000	△6.8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7,000	10,000	21,693	11,693	116.9
○ 대한석탄공사지원	53,000	53,000	53,000	-	-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53,000	-	-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7,535	37,535	-	△ 37,535	순감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7,535	37,535	-	△ 37,535	순감
○ 가스수급안정	-	4,290	6,990	2,700	62.9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4,290	6,990	2,700	62.9
○ 가스안전관리	45,219	52,302	63,808	11,506	22.0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28,612	35,115	43,789	8,674	24.7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14,776	13,187	13,187	-	-
-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	1,831	4,000	6,832	2,832	70.8
○ 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R&D)	219,725	216,118	206,828	△ 9,290	△ 4.3
-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R&D)	5,500	5,500	5,500	-	-
- 자원개발기술개발(R&D)	-	29,961	28,215	△ 1,746	△ 5.8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R&D)	214,225	180,657	173,113	△ 7,544	△ 4.2
○ 정보화및정책지원(R&D)	15,667	15,172	13,082	△ 2,090	△ 13.8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R&D)	15,667	2,156	1,034	△ 1,122	△ 52.0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R&D)	-	13,016	12,048	△ 968	△ 7.4
○ 국제협력(R&D)	12,760	12,133	7,580	△ 4,553	△ 37.5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12,760	12,133	7,580	△ 4,553	△ 37.5
○ 인력양성(R&D)	15,371	15,147	16,896	1,749	11.5
- 에너지인력양성(R&D)	15,371	15,147	16,896	1,749	11.5
○ 글로벌전문기술(R&D)	19,005	20,842	21,084	242	1.2
- 글로벌전문기술개발(R&D)	19,005	20,842	21,084	242	1.2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	700	700	순증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신규)	-	-	700	700	순증
○ 회계기금간거래	60,000	1,793,770	1,957,969	164,199	9.2
- 공자기금예탁금	60,000	1,793,770	1,957,969	164,199	9.2
융자계정 소계	1,076,373	546,300	547,500	1,200	0.2
○ 에너지이용효율향상(융자)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 광물자원개발용자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해외자원개발(용자)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도시가스공급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용자)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광산지역진흥용자	4,000	2,000	2,000	-	-
-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4,000	2,000	2,000	-	-
○ 가스안전관리용자	22,000	19,800	20,900	1,100	5.6
- 가스안전관리(용자)	22,000	19,800	20,900	1,100	5.6
○ 타계정전출금	258,588	1,484,968	1,555,284	70,316	4.7
- 타계정전출금	258,588	1,484,968	1,555,284	70,316	4.7

3. 소관 국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지출 총계	2,761,366	2,228,803	2,102,784	△126,019	△5.7
<에너지자원정책관>	1,286,086	764,030	894,615	130,585	17.1
○ 에너지국제협력	200	4,500	3,360	△1,140	△25.3
○ 에너지정책홍보(계속)	5,602	1,100	1,000	△100	△9.1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계속)	159	149	122	△27	△18.1
○ 에너지정보통계센터(계속)	2,657	2,657	2,657	-	-
○ 에너지센서스(계속)	460	-	1,938	1,938	순증
○ 에너지자원정책연구(계속, R&D)	-	1,440	1,325	△115	△8.0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계속)	1,301	1,853	1,887	34	1.8
○ 회계위탁관리비(계속)	877	1,153	1,153	-	-
○ 회계관리비(계속)	74	74	74	-	-
○ (예비비)	-	1,460	1,027	△433	△29.7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계속)	29,580	41,080	67,110	26,030	63.4
○ 유전개발사업출자(계속)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해외자원개발조사(계속)	9,250	9,070	7,828	△1,242	△13.7
○ 자원협력기반구축(계속)	699	730	700	△30	△4.1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계속)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일반광업육성지원(계속)	13,354	16,754	15,967	△787	△4.7
○ 광산안전시설(계속)	3,321	3,487	3,487	-	-
○ 광산물비축사업출자(계속)	40,000	45,000	40,000	△5,000	△11.1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계속)	1,010	1,460	1,457	△3	△0.2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계속)	28,612	35,115	43,789	8,674	24.7
○ 서민층가스시설개선(계속)	14,776	13,187	13,187	-	-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계속)	1,831	4,000	6,832	2,832	70.8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해외자원개발(계속)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가스안전관리(계속)	22,000	19,800	20,900	1,100	5.6
○ 자원개발기술개발(R&D)(계속)	-	29,961	28,215	△1,746	△5.8
<에너지산업정책관>	566,159	771,313	602,004	△169,309	△22.0
○ 한국가스공사출자(종료)	-	160,000	-	△160,000	순감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계속)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석유비축사업출자(계속)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석유유통구조개선(계속)	8,513	9,120	6,660	△2,460	△27.0
○ LP가스품질검사(계속)	1,281	1,281	1,281	-	-
○ 석유품질관리사업(계속)	7,910	14,839	14,647	△192	△1.3
○ 탄가안정대책보조(계속)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 석탄비축자산관리비(계속)	1,126	1,149	1,714	565	49.2
○ 저소득층연탄보조(계속)	14,106	14,106	14,106	-	-
○ 폐광대책비(계속)	54,457	51,436	26,000	△25,436	△49.5
○ 광해방지비(계속)	82,000	88,000	82,000	△6,000	△6.8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계속)	7,000	10,000	21,693	11,693	116.9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계속)	4,000	2,000	2,000	-	-
○ 대한석탄공사출자(계속)	53,000	53,000	53,000	2,700	62.9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종료)	37,535	37,535	-	△37,535	△37,535
○ LPG소형저장탱크보급(계속)		4,290	6,990	-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622,914	440,759	364,960	△75,799	△17.2
○ 중소기업진단보조(계속)	2,268	2,671	2,220	△451	△16.9
○ 지역에너지절약(계속)	35,308	35,409	21,690	△13,719	△38.7
○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계속)	15,602	15,254	13,759	△1,495	△9.8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계속)	3,360	6,750	15,203	8,453	125.2
○ 녹색생활 프로그램 활성화(계속)	3,595	1,053	1,153	100	9.5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기후변화협약대응(계속)	11,012	10,850	11,054	204	1.9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 가스 감축지원(계속)	2,750	3,449	2,750	△ 699	△ 20.3
○ 에너지관리공단지원(계속)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에너지절약시설설치(계속)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기타 실국>	286,207	252,701	241,205	△ 11,496	△ 4.5
○ 기후변화대응한-개도국협력(계속)	3,679	3,250	3,250	-	-
○ LED 시스템조명 기술개발(R&D)(계속)	5,500	5,500	5,500	-	-
○ 에너지자원융합핵심기술개발(R&D)(계속)	214,225	180,657	173,113	△ 7,544	△ 4.2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계속)	15,667	2,156	1,034	△ 1,122	△ 52.0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R&D)(계속)	-	13,016	12,048	△ 968	△ 7.4
○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계속)	12,760	12,133	7,580	△ 4,553	△ 37.5
○ 에너지인력양성(R&D)(계속)	15,371	15,147	16,896	1,749	11.5
○ 글로벌전문기술개발(R&D)(계속)	19,005	20,842	21,084	242	1.2
○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지원 (R&D)(신규)	-	-	700	700	순증

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입

1. 정부출자수입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정부출자수입	4,070	74,562	13,655	△60,907	△81.7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에서 출자 지원을 받은 기관의 경영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배분계획에 의거 수익의 일부를 출자배당으로 회수

* (징수대상)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송유관공사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8호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익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정부출자수입	28,576	23,753	30,084	26,288	31,960	70,882	42,841	41,556	81,059	4,070		
(전년대비증가율)	32.8	23.3	5.3	10.7	6.2	169.6	△34.0	△41.3	89.2	△92.6	36.7	△16.6

- '12년도 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출자 배당액 감소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정부출자수입	23,753	26,288	70,882	41,556	4,070	74,562	26,027	34.9	26,027
(전년대비증가율)	23.3	10.7	169.6	△41.3	△92.6		539.5		

- 석유공사 실적 악화, 광물자원공사 당기 순손실 등으로 배당금 수입 크게 감소

* 석유공사 104억원, 지역난방공사 150억원, 송유관공사 6억원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74,562	▪'12년말 출자액 × 배당률 ·석유공사 : 9,714,615백만원×0.69%=66,759백만원 ·지역난방 : 20,000백만원×13.30%=2,659백만원 ·광물공사 : 1,105,970백만원×0.40%=4,387백만원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3.45%= 757백만원
'14년	13,655	▪'13년말 출자액 × 배당률 ·석유공사 : 10,008,193백만원×0.03%=2,924백만원 ·지역난방 : 20,000백만원×37.63%=7,527백만원 ·광물공사 : 1,310,970백만원×0.21%=2,744백만원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2.10%= 461백만원
'15년	54,151	▪'14년말 출자액 × 배당률 ·석유공사 : 10,471,771백만원×0.38%=39,950백만원 ·지역난방 : 20,000백만원×11.57%=7,527백만원 ·광물공사 : 1,715,970백만원×0.35%=6,016백만원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3.00%= 658백만원
'16년	54,700	▪'15년말 출자액 × 배당률 ·석유공사 : 10,535,771백만원×0.38%=40,194백만원 ·지역난방 : 20,000백만원×11.57%=7,527백만원 ·광물공사 : 1,802,970백만원×0.35%=6,321백만원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3.00%= 658백만원
'17년	55,166	▪'16년말 출자액 × 배당률 ·석유공사 : 10,589,771백만원×0.38%=40,400백만원 ·지역난방 : 20,000백만원×11.57%=7,527백만원 ·광물공사 : 1,876,970백만원×0.35%=6,581백만원 ·송유관공사 : 21,949백만원×3.00%= 658백만원

- 출자규모는 '13-'17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전망
- 배당률은 '09~'12년도 배당률을 가중 평균하되,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의 사업 여건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2. 기타재산수입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재산수입	1,874	2,846	2,840	△6	△0.2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한 보조금, 출연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14호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기타재산수입	-	8,293	1,246	832	697,776	697,397	1,397	6,967	1,531	1,874		
(전년대비증가율)	-	379.6	순증	△90.9	55901	83721.7	△99.8	△99	9.6	△73.1	-	△15.5

▪ ('12년 기타재산수입 : 1,874백만원)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등 출연금 사업에서 19억원의 이자 발생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년간전망
						예산(A)	실적(B)	(B/A, %)	
■기타재산수입	1,247	832	696,137	4,455	878	2,846	1,211	42.5	1,531
(전년대비증가율)	△6.6	△90.9	83570.3	△99.4	△80.3		37.9		

▪ 13억원의 발생이자를 수납하는 등 '13년 상반기 징수실적 양호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2,846	▪ 보조금, 출연금 발생이자 : 2,846백만원
'14년	2,840	▪ '09~'12년간 평균실적 반영
'15년	2,840	▪ '09~'12년간 평균실적 반영
'16년	2,840	▪ '09~'12년간 평균실적 반영
'17년	2,840	▪ '09~'12년간 평균실적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3. 석유수입부과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수입부과금	1,729,581	2,028,809	2,047,640	18,831	0.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수입 물량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부과기준) 원유/석유제품 16원/ℓ, LNG 24,242원/톤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제19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환급)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 하여야 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석유수입부과금	1,610,768	1,598,410	1,621,141	1,509,438	1,575,950	1,664,631	1,667,302	1,705,714	1,940,548	1,729,581		
(전년대비증가율)	4.9	8.3	0.6	△5.6	△2.8	10.3	5.8	2.5	16.4	13.4	4.1	4.1

- 부과금 환급 대상인 납사소비 증가로 원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감소하였으나, LNG 수요 증가로 전체 수입부과금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13.4% 증가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석유수입부과금	969,265	910,793	955,141	961,554	965,519	2,028,809	922,939	45.5	1,843,326
(전년대비증가율)	19.1	△6.0	4.9	0.7	0.4		△4.41		

- 고유가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예산 대비 징수실적이 미달할 전망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2,028,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813,310천B×57.22%×2,544=1,183,951백만원 · (LNG) 34,851천톤×100.0%×24,242=844,858백만원
'14년	2,047,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868,262천B×45.88%×2,544=1,013,397백만원 · (LNG) 42,663천톤×100.0%×24,242=1,034,243백만원
'15년	1,905,3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882,154천B×41.94%×2,544=941,325백만원 · (LNG) 39,767천톤×100.0%×24,242=964,032백만원
'16년	1,857,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895,387천B×41.94%×2,544=955,445백만원 · (LNG) 37,198천톤×100.0%×24,242=901,754백만원
'17년	1,847,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 (원유/석유제품) 907,922천B×41.94%×2,544=968,821백만원 · (LNG) 36,259천톤×100.0%×24,242=878,991백만원

- (원유/석유제품) 중기 석유류 수급전망, (LNG)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 기준
- 징수율은 '09~'12년도 징수율을 가중 평균하되,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의 사업 여건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4. 석유판매부과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판매부과금	277,899	253,295	280,858	27,563	10.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 물량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부과기준) 고급휘발유 36원/ℓ, LPG(부탄) 62,283원/톤(≒36원/ℓ)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제19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환급)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석유판매부과금	279,508	284,558	291,488	278,235	289,057	280,158	325,463	252,651	281,687	277,899		
(전년대비증가율)	△31.1	△22.9	4.3	△2.2	△0.8	0.7	12.6	△9.8	△13.4	10.0	0.2	△0.5

- '08년부터 등유, 부생연료유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징수 실적 감소
- '12년도의 경우 고유가로 고급휘발유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저렴한 수송용 LPG(부탄) 수요의 증가로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10% 증가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석유판매부과금	146,132	132,727	138,953	133,451	136,889	253,295	116,076	45.8	245,705
(전년대비증가율)	△17.6	△9.2	4.7	△3.9	2.6		△15.2		

- 고유가와 경기 불황으로 고급휘발유, LPG(부탄)의 수요 감소로 징수실적 저조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253,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부탄) 5,124천톤×78.12%×62,283 = 249,314백만원 ·(고급휘발유) 3,981백만원
'14년	280,8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부탄) 4,889천톤×90.73%×62,283 = 276,288백만원 ·(고급휘발유) 4,570백만원
'15년	255,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부탄) 4,855천톤×82.95%×62,283 = 250,830백만원 ·(고급휘발유) 4,178백만원
'16년	253,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부탄) 4,821천톤×82.95%×62,283 = 249,074백만원 ·(고급휘발유) 4,178백만원
'17년	251,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부탄) 4,787천톤×82.95%×62,283 = 247,330백만원 ·(고급휘발유) 4,178백만원

- (LPG부탄) 중기 석유류 수급전망, (고급휘발유) '12년 징수실적 적용
- 징수율은 '09~'12년도 징수율을 가중 평균하되,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의 사업 여건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5.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31,975	118,101	143,945	25,844	21.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석유정제업자, LPG 제조·판매자, LPG-LNG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일정액의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부과기준) LPG 4.5원/kg, LNG 3.9원/m³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5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가스안전관리부과금	108,839	109,992	111,566	105,274	107,946	118,365	114,546	116,493	117,260	131,975		
(전년대비증가율)	5.3	5.7	2.4	△4.3	△3.2	12.4	6.1	1.5	2.4	13.3	15	4.0

- 고유가로 저렴한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3.3% 징수 실적 개선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가스안전관리부담금	70,731	67,094	76,972	79,744	78,758	118,101	61,985	52.5	126,261
(전년대비증가율)	21.1	△5.1	14.7	3.6	△1.2		△21.3		

- 도시가스 수요 증가로 LNG 부담금 징수실적은 양호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 수요의 감소로 전체적인 안전관리부담금 징수실적은 저조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118,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 8,446천톤×76.52%×4,500 = 29,082백만원 ·(LNG) 22,825백만m³×100.0%×3.9 = 89,019백만원
'14년	143,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 8,365천톤×89.12%×4,500 = 33,547백만원 ·(LNG) 28,307백만m³×100.0%×3.9 = 110,398백만원
'15년	138,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 8,307천톤×81.47%×4,500 = 30,455백만원 ·(LNG) 27,784백만m³×100.0%×3.9 = 108,356백만원
'16년	143,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 8,248천톤×81.47%×4,500 = 30,242백만원 ·(LNG) 28,970백만m³×100.0%×3.9 = 112,983백만원
'17년	147,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 수요×징수율×단가 ·(LPG) 8,191천톤×81.47%×4,500 = 30,030백만원 ·(LNG) 30,048백만m³×100.0%×3.9 = 117,189백만원

- (LPG) 중기 석유류 수급전망, (LNG) 장기 천연가스 수급전망 기준
- 징수율은 '09~'12년도 징수율을 가중 평균하되,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의 사업 여건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6. 광해방지부담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광해방지부담금	7,956	14,327	15,731	1,404	9.8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광해)의 방지와 자연 환경의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광해방지 의무자에게 부과

▶ (부과기준)

- (산림복구의무자) 산지·도시구역지 및 기타 토지 등의 복구비용 100%
-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 사업계획에 의한 당해 연도 총사업비의 30%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 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광해방지부담금	17,781	10,227	8,603	5,953	8,693	9,262	13,027	11,833	12,511	7,956		
(전년대비증가율)	△31.7	△2.7	△51.6	△41.8	1.0	55.6	49.8	27.7	△4.0	△32.8	△5.9	△4.4

- 경기 불황에 따른 채납과 보증사고 증가에 따라 징수실적 감소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광해방지부담금	4,180	3,601	5,647	7,771	5,084	14,327	6,412	44.7	14,327
(전년대비증가율)	△18.0	△13.9	56.8	52.4	△34.6		26.1		

- 채납광산에 대한 부담금 납부 독촉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징수 실적 증가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14,327	■(광해복구부담금) 사업비 $25,562 \times 30\% = 7,669$ ■(산림복구부담금) 6,658
'14년	15,731	■(광해복구부담금) 사업비 $25,977 \times 30\% = 7,793$ ■(산림복구부담금) 전년도 분담금 $\times$ 복구단가 평균 상승률(9%) = 7,938
'15년	15,035	■(광해복구부담금) 사업비 $23,750 \times 30\% = 7,125$ ■(산림복구부담금) 전년도 분담금 $\times$ 복구단가 평균 상승률(9%) = 7,910
'16년	15,747	■(광해복구부담금) 사업비 $23,750 \times 30\% = 7,125$ ■(산림복구부담금) 전년도 분담금 $\times$ 복구단가 평균 상승률(9%) = 8,622
'17년	16,523	■(광해복구부담금) 사업비 $23,750 \times 30\% = 7,125$ ■(산림복구부담금) 전년도 분담금 $\times$ 복구단가 평균 상승률(9%) = 9,398

- 산림복구부담금의 사업비는 산림청 고시단가 평균상승률(9%)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7. 보조금정산환입 등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보조금정산 환입 등	46,078	37,818	45,426	7,608	20.1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로 지원한 사업의 정산잔액 환입액과 국내 동해-1 가스전 생산에 따른 조광료 징수액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14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8조(조광료)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보조금정산환입 등	10,256	82,273	10,583	31,114	11,266	27,345	14,872	61,622	19,436	46,078		
(전년대비증가율)	△14.4	367.4	3.19	△62.2	6.5	△12.1	32.0	125.4	30.6	△25.2	17.9	△8.8

- '12년 정산 환입액은 전년 결산 대비 다소 감소(지자체 8,996백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34,509백만원 등)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보조금정산환입 등	2,915	22,827	3,697	32,277	16,961	37,818	21,335	56.4	38,818
(전년대비증가율)	△70.1	783.1	△83.8	773.0	△47.5		25.8		

- '13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잔액과 조광료 납부 증가로 징수실적 양호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37,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입액) 보조금 × 환입비율 = 843,835 × 4.29% = 36,201백만원 ■ (조광료) 1,617백만원
'14년	45,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입액) 보조금 × 환입비율 = 805,917 × 5.51% = 44,433백만원 ■ (조광료) 993백만원
'15년	41,6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입액) 보조금 × 환입비율 = 819,517 × 5.03% = 41,222백만원 ■ (조광료) 437백만원
'16년	38,640	■ (환입액) 보조금 × 환입비율 = 768,197 × 5.03% = 38,640백만원
'17년	38,996	■ (환입액) 보조금 × 환입비율 = 775,275 × 5.03% = 38,996백만원

- (보조금) 중기재정계획, (조광료)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생산량 예측치 기준
- 환입율은 '09~'12년도 환입율을 가중 평균하되,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의 사업 여건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8. 전년도 이월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전년도이월금	509,259	126,807	163,377	36,570	28.8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차년도 세입 이입액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90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년도이월금	21,207	26,049	25,323	175,560	7,099	118,564	7,099	118,564	380,820	509,259		
(전년대비증가율)	305.1	22.8	19.4	554.8	71.9	30.5	1.9	227.3	526.4	329.5	339.1	371.0

- '12년도 공자기금예탁금 불용(6,000억원) 등으로 세계잉여금 발생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년간전망
						예산(A)	실적(B)	(B/A, %)	
■ 전년도이월금	-	-	-	-	-	126,807	-	-	290,411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126,807	▪'12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 투자계정 126,807백만원
'14년	163,377	▪'13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 투자계정 163,377백만원 - '12년 결산 잉여금(290,411백만원)*에서 '13년 세입 편성시 반영된 전년도이월금 등 (127,034백만원)을 차감하여 반영 * 투자계정 세입(3,135,824백만원) - 세출(2,845,413백만원)
'15년		
'16년		
'17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9. 일반회계 전입금 (예특회계)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일반회계전입금	160,589	365,391	253,685	△111,706	△30.6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07.1.1 시행)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3%를 예특회계로 의무 전입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②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일반회계전입금	231,816	231,816	538,495	538,495	435,084	438,191	371,004	371,004	410,589	160,589		
(전년대비증가율)	582.4	582.4	△76.8	△76.8	△19.2	△18.6	△14.7	△14.7	10.7	△56.7	△16.5	△18.6

- '1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으로 전입액 감소(2,500억원 축소)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일반회계전입금	200,000	518,800	335,084	371,004	160,589	365,391	-		365,391
(전년대비증가율)	△21.5	259.4	△35.4	10.7	56.7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4예산	253,685	▪교통에너지환경세 총수입 × 3%
'15년	384,804	▪교통에너지환경세 총수입 × 3%
'16년	382,224	▪교통에너지환경세 총수입 × 3%
'17년	382,224	▪교통에너지환경세 총수입 × 3%

▪ 기획재정부의 '12-'16년도 중기재정계획 확정 예산 기준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10. 타계정전입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타계정전입금	258,588	1,214,951	735,743	△479,208	△39.4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 용자계정의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의 차액을
투자계정 사업 재원으로 전입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용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타계정전입금	216,441	216,441	161,703	161,703	179,591	182,698	204,888	204,888	258,588	258,588		
(전년대비증가율)	△36.1	△22.3	△25.3	△25.3	11.1	13.0	14.1	14.1	26.2	26.2	3.9	3.9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년간전망
						예산(A)	실적(B)	(B/A, %)	
▪ 타계정전입금	-	-	-	-	-	1,214,951	-		1,214,591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1,214,591	▪용자계정 세입 - 세출
'14년	735,743	▪용자계정 세입 - 세출
'15년		
'16년		
'17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11. 기금예탁원금회수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금예탁원금회수	-	-	330,000	330,000	순증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공공자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 예탁에 대한
원금 회수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9호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년간전망
						예산(A)	실적(B)	(B/A,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57,800	-	-	1,319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전년도이월금 세입 지연으로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공자기금 예탁금
축소(당초 6,600억원 → 예치 600억원)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	
'14년	330,000	■공자기금예탁금 회수 = '12년 600억원 + '13년 2,700억원
'15년		
'16년		
'17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12. 기금예탁이자수입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금예탁이자수입	-	57,800	65,268	7,468	12.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공공자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	-	-	10,205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여유재원 부족으로 '12.11월말 공자기금(600억원)을 예탁하여 이자
수입 미발생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년간전망
						예산(A)	실적(B)	(B/A, %)	
■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57,800	482		1,319
(전년대비증가율)	-	-	-	-	-				

■ '12년도 공자기금 예탁금 6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482백만원 징수
('13.3월)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57,800	▪'12년 공자기금예탁금 6,600억원(예산 기준)의 이자수입
'14년	65,268	▪공자기금예탁금('12년 600억원, 2.79% + '13년 17,938억원, 2.97% + '14년 23,657억원, 3.35%) 이자수입
'15년		
'16년		
'17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13. 기타민간이자수입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민간이자수입	142,827	138,618	154,349	15,731	11.3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 용자대상기관*에 지원한 용자금의 이자 회수
(납기일정 : 3·6·9·12월의 15일, 기한전 상환일)

*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6조 (용자계정의 세입·세출)

- ① 용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민간이자수입	201,793	251,739	222,206	188,487	197,147	193,582	175,158	683,651	154,276	142,827		
(전년대비증가율)	△1.7	8.9	10.1	△25.1	△11.3	2.7	11.2	253.1	△11.9	△79.1	△4.7	△8.7

- '12년 이자율 하락(예산 1.82% → 실적 1.68%)과 용자금 평잔액 감소에 따라 징수실적 감소 추세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기타민간이자수입	124,723	91,734	95,118	97,922	80,237	138,618	73,180	52.8	135,887
(전년대비증가율)	7.8	△26.4	3.7	2.9	△18.1		△8.8		

- 용자금 조기상환 증가로 '13년 상반기 징수실적 양호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138,618	▪(이자수입)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8,106,341백만원 × 1.71% = 138,618백만원
'14년	154,349	▪(이자수입)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7,642,723백만원 × 2.02% = 154,349백만원
'15년	109,537	▪(이자수입)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7,554,262백만원 × 1.45% = 109,537백만원
'16년	108,131	▪(이자수입)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7,457,311백만원 × 1.45% = 108,131백만원
'17년	107,755	▪(이자수입) 융자평잔 × 실질이자율(예상) = 7,431,375백만원 × 1.45% = 107,755백만원

- 이자율(2.02%)은 직전 4개년도 국고채3년 평균 수익율(3.75%)에서 가중평균 우대금리(1.5%)와 가중평균 수수료(0.23%)를 차감하여 산정

○ 금년도 및 중기계확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14.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1,062,190	1,053,044	1,113,722	60,678	5.8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에특회계 용자대상기관에 지원한 용자금의 원금 회수
- 법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6조 (용자계정의 세입·세출)

- ①용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749,433	783,260	752,614	879,952	912,903	995,483	946,153	1,083,296	995,500	1,062,190		
(전년대비증가율)	11.8	13.1	0.4	12.3	21.3	13.1	3.6	8.8	5.2	△1.9	6.6	7.1

- 용자원금회수는 조기상환 증가 등으로 매년 예산 대비 초과 징수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325,869	430,042	474,361	481,562	533,326	1,053,044	559,718	53.2	1,078,143
(전년대비증가율)	7.2	32.0	10.3	1.5	10.7				

- '13년 상반기 용자원금 조기상환 증가로 징수실적 양호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995,500	▪(융자원금회수) 융자대상기관 상환계획 × 조기 회수율 = 789,810백만원 × 133.4% = 1,053,044백만원
'14년	1,113,722	▪(융자원금회수) 융자대상기관 상환계획 × 조기 회수율 = 763,031백만원 × 145.9% = 1,113,722백만원
'15년	1,015,763	▪(융자원금회수) 융자대상기관 상환계획 × 조기 회수율 = 791,092백만원 × 128.4% = 1,015,763백만원
'16년	995,113	▪(융자원금회수) 융자대상기관 상환계획 × 조기 회수율 = 775,010백만원 × 128.4% = 995,113백만원
'17년	833,397	▪(융자원금회수) 융자대상기관 상환계획 × 조기 회수율 = 649,063백만원 × 128.4% = 833,397백만원

- 상환비율은 '09~'12년 조기 상환비율을 가중 평균하되, 최근년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재의 사업 여건 반영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15. 전년도이월금 (에특회계)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전년도이월금	693,436	663,023	67,249	△595,774	△89.9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차년도 세입 이입액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90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전년도이월금	19,294	2,948	4,667	68,328	52,816	200,662	200,662	231,074	30,412	693,436		
(전년대비증가율)	333.6	△84.7	△75.8	221.8	103.2	193.7	279.9	15.1	△84.8	200.1	11.5	468.4

- '11년도 SK이노베이션의 브라질 광구 매각에 따른 성공불용자 특별부담금 납부로 용자계정의 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2년도 전년도이월금 초과징수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전년도이월금 (전년대비증가율)	-	-	-	-	-	663,023	-	-	730,272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663,023	■('12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융자계정 663,023백만원
'14년	67,249	■('13년 세계잉여금 예측치) 융자계정 : 67,249백만원 - '12년 결산 잉여금(730,272백만원)*에서 '13년 세입 편성시 반영된 전년도이월금(663,023백만원)을 차감하여 반영 * 730,272백만원 = 세입(1,910,448백만원) - 세출(1,180,176백만원)
'15년		
'16년		
'17년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세 출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에특회계>	1,286,086	764,030	894,615	130,585	17.1
○ 에너지국제협력	200	4,500	3,360	△1,140	△25.3
○ 에너지정책홍보(계속)	5,602	1,100	1,000	△100	△9.1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계속)	159	149	122	△27	△18.1
○ 에너지정보통계센터(계속)	2,657	2,657	2,657	-	-
○ 에너지센서스(계속)	460	-	1,938	1,938	순증
○ 에너지자원정책연구(계속, R&D)	-	1,440	1,325	△115	△8.0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계속)	1,301	1,853	1,887	34	1.8
○ 회계위탁관리비(계속)	877	1,153	1,153	-	-
○ 회계관리비(계속)	74	74	74	-	-
○ (예비비)	-	1,460	1,027	△433	△29.7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계속)	29,580	41,080	67,110	26,030	63.4
○ 유전개발사업출자(계속)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해외자원개발조사(계속)	9,250	9,070	7,828	△1,242	△13.7
○ 자원협력기반구축(계속)	699	730	700	△30	△4.1
○ 해외자원개발(계속)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계속)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일반광업육성지원(계속)	13,354	16,754	15,967	△787	△4.7
○ 광산안전시설(계속)	3,321	3,487	3,487	-	-
○ 광산물비축사업출자(계속)	40,000	45,000	40,000	△5,000	△11.1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계속)	1,010	1,460	1,457	△3	△0.2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계속)	28,612	35,115	43,789	8,674	24.7
○ 서민층가스시설개선(계속)	14,776	13,187	13,187	-	-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계속)	1,831	4,000	6,832	2,832	70.8
○ 가스안전관리(계속)	22,000	19,800	20,900	1,100	5.6
○ 자원개발기술개발(계속)	-	29,961	28,215	△1,746	△5.8
<전력기금>	726,331	660,351	872,401	212,050	32.1
○ 전기시설안전관리(계속)	1,593	1,500	1,400	△100	△6.7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계속)	93,390	95,225	93,390	△1,835	△1.9
○ 태양광발전보급지원(계속)	55,000	26,088	21,420	△4,668	△17.9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계속)	350,000	346,012	336,000	△10,012	△2.9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계속)	-	-	87,000	순증	순증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18,000	15,000	103,400	88,400	589.3
○ 신재생에너지융합 핵심기술개발(R&D)(계속)	208,348	176,526	224,291	47,765	27.1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계속)	-	-	4,500	순증	순증
○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신규)	-	-	1,000	순증	순증
<합계>	2,012,417	1,424,381	1,767,016	342,635	24.1

에너지국제협력(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협력	200	4,500	3,360	△ 1,140	△ 25.3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주영준 과장(044-203-5120), 사무관(김수희, 044-203-51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계속 ('13년부터 정책연구개발에서 분리 편성)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협회

2. 사업목적

- ☐ 에너지·자원분야 학술연구와 에너지 다자회의 및 협상 지원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동북아에너지 정부간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동북아에너지 정부간협의체(SOC)와 에너지정책·석탄실무그룹(WG)의 운영 지원
 -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연구 지원

○ 다자협력 지원 600백만원

- IEA, APEC, ASEAN+3, EAS, IEF, G20 등 에너지다자회의 참석 및 논의의제 분석·대응
- 에너지 다자협력체의 국제회의 개최, 전문가실무그룹 활동 및 workshop 지원
- 다자협력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및 국익 증대를 위한 에너지 다자협력 전략 수립

○ 세계 에너지정책 분석 450백만원

- 해외 에너지시장, 주요국 에너지 정책, 권역별(동북아, 유럽, 북미,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400백만원

- 지역다자협력체, IEA, UN산하기관, 국제금융기구 등 에너지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증대를 위해, '한-중 간 에너지효율 고위급 회담 개최' 및 '남-북-러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실무그룹 (working group) 운영
- 북미국가(미국, 캐나다)의 에너지관련 연구기관들과 석유, 가스, 셰일 가스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 개최 510백만원

- 23개 회원국 에너지부 장관이 모여 청정기술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모색하는 제5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개최

○ 한-산유국 간 국제협력 200백만원

- 자원부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에너지공급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지역 산유국의 매니저급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고도화 공정, 유지보수 등 정유 부문 관련 국내 기술 연수 실시

□ 지원 필요성

- 에너지부문의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현안논의 및 정책공조에 적극 참여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orld Bank), UNIDO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협력	2,700	4,300	3,360	△ 940	△ 21.9
○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00	200	200	-	-
○ 다자협력 지원	300	300	600	300	100
○ 에너지국제협력연구	2,000	2,000	1,400	△ 600	△ 30
○ 세계에너지 정책 분석	200	200	450	250	1.25
○ 아시아에너지 장관회의	-	700	-	△ 700	순감
○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지원	-	900	-	△ 900	순감
○ 클린에너지장관회의 지원	-	-	510	510	순증
○ 한-산유국 국제협력	-	-	200	200	순증
□ 세출예산비목(합계)	2,700	4,300	3,360	△ 940	△ 21.9
○ 출연금(350-01)	2,700	3,400	3,160	△ 240	△ 7
○ 민간경상보조(320-01)	-	900	200	△ 700	△ 7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북아에너지협의체 구성 및 에너지 다자기구 참석을 통해 전세계적 에너지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상역량을 강화
- 대규모 에너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도	금액	산출근거
'13	45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3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2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WEC 조직위원회 지원 9억원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 지원 7억원
'14	33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3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2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5	32.9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6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4.9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6	32.9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6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4.9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17	32.9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원 IEA이사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다자협력 지원 6억원 에너지 인사이트 발간 4.9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200백만원*10개 = 2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에너지법 제17조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0년, '동북아에너지연구'에서 '에너지국제협력연구'로 사업명 변경
- '10년, 국회 의결에 따라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정책연구개발'을 '에너지자원 정책연구'로 신규 편성
- '13년,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정책연구개발'을 분리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에너지국제협력	27	27	27	43	3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7	-	-	27	27	-	-
'11년	27	-	-	27	27	-	-
'12년	43	-	-	43	4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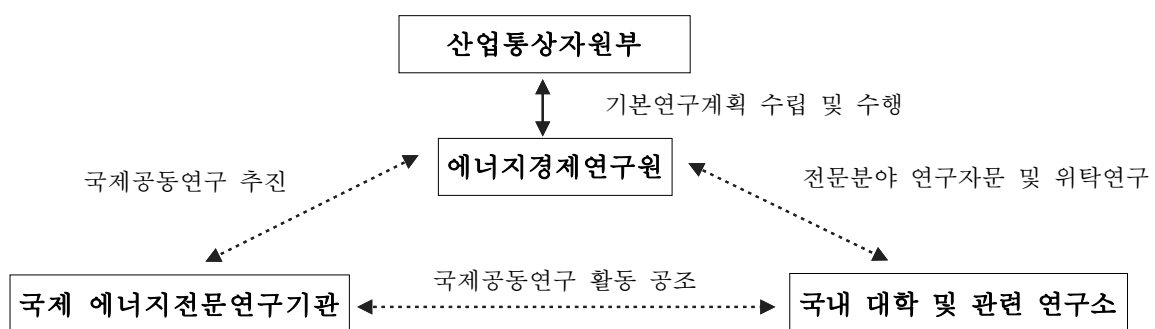
○ 2010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에너지국제협력연구비의 집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부당한 출연금 정산 및 회계처리 방식을 시정할 것
- (평가결과) 2010년 에너지국제협력연구사업 중 부당집행금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예정된 회계처리방식 시정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사업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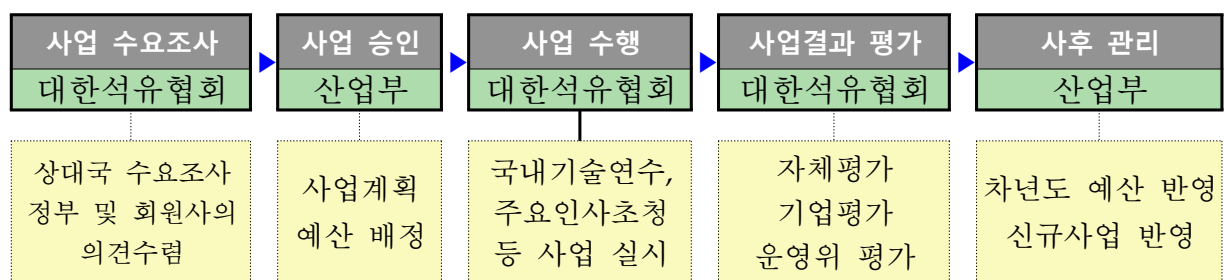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에너지국제협력



○ 한-산유국 국제협력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에너지정책홍보(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정책홍보	5,602	1,100	1,000	△100	△9.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2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주영준 과장(044-203-5120), 사무관(김수희, 044-203-51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
- 이에,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제공하여 고유가 및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녹색에너지체험전 (300백만원) : 3개 지역 체험전 구성
 - 3개 지역 순회에 필요한 체험기구, 설치물 등 추가설치에 따른 재원 소요를 감안하여 '12년 대비 7.1% 증액
 - 산출내역 : 100백만원(1개 지역) × 3개 지역
 - *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등학생의 참가 비율이 높아 어린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
 - * ('08년) 13만3천 → ('10년) 15만6천 → ('11년) 17만
- 온라인 홍보 (200백만원) : SNS를 활용 원정단 구성(150백만원)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 등(150백만원)
 - SNS 원정단 : 인원 증가를 위한 재원소요를 감안, 활동지원비 80백만원, SNS운영비 50백만원, 인건비 20백만원
 - * '11년 : 90여명의 대학생 원정단 활동으로 SNS 노출수 30만건 이상, '12년 : 주부(30여명) · 초등학생(30여명) · 대학생(40여명) 100명 활동
 - 해외자원개발 게임 : 해외자원개발 스마트폰 게임 개발(50백만원)
- 오프라인 홍보 (300백만원) :TV 프로그램, 설문조사, 정책소개 리플렛 등
 - TV프로그램 :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TV프로그램에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절약 등 주요정책 방영을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 산출내역 : (50백만원) × 4개 프로그램
 - 국민인식 설문조사 : 국민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정책의 방향 설정에 활용
 - * 산출내역 : (25백만원) × 2번
 - 리플릿, PPT 제작 : 국·영문 리플릿 및 PPT 제작을 위한 사업비 50백만원

- 아이디어 공모전 (200백만원) : 에너지 안전, 해외자원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정책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정책홍보	1,197	1,100	1,000	△ 100	△ 9.1
▪ 녹색에너지체험전	280	300	300	-	-
▪ 온라인 홍보	200	250	200	△ 50	△ 20
▪ 오프라인 홍보	517	300	300	-	-
▪ 아이디어 공모전	200	250	200	△ 50	△ 20
□ 세출예산비목(1,197)	1,197	1,100	1,000	△ 100	△ 9.1
○ 일반수용비(210-01)	770	673	674	△ 1	△ 0.1
○ 위탁사업비(210-15)	400	400	300	△ 100	△ 25
○ 국내여비(220-01)	10	10	11	1	10
○ 업무추진비(240-01)	17	17	15	△ 2	△ 1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SNS등 온라인 매체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전·공모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사업 비중을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	· '13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신재생에너지, 절약) · 에너지관련기관 종합 홈페이지 구축 · 에너지나눔 프로그램 :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TV프로그램
'14	10	· '14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5	7.27	· '15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6	7.27	· '16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17	7.27	· '17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 TV프로그램, SNS 홍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2항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추진경위

- '04년 방폐장 건설에 따른 갈등을 계기로 에너지시설 건설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에너지정책홍보	15	15	11.97	11.00	10.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하절기 전력수급 특별기간 동안 대중매체 홍보와 시민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12년 4,364백만원 전용
- (이월) 11년도 홍보용역 1건 미지급금 47백만원 이월
- (불용) 집행잔액 및 홍보용역 계약 차액 불용
(10년) 2천만원, (11년) 2천2백만원, (12년) 6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5 (15)	- ()	- ()	15 (15)	14.8 (14.8)	- ()	0.2 ()
'11년	15 (15)	- ()	- ()	15 (15)	14.3 (14.3)	- (0.47)	0.23 ()
'12년	11.97 (11.97)	0.47 (0.47)	43.64 (43.64)	56.08 (56.08)	56.02 (56.02)	- ()	0.0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09년 결산 지경위 검토보고

- (지적사항) 한국에너지재단에 위탁하여 단순 집행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홍보 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환 필요
- (후속조치) 2011년도 사업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수행

☐ '11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

- (지적사항) 원전정책 홍보는 '에너지정책홍보'가 아닌 '원자력정책홍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함
- (후속조치) 2012년도 사업에는 원자력홍보는 제외하고 신재생, 석유유통, 자원개발 등 자체 홍보예산이 없는 타 분야에 대한 홍보에 집중

☐ '12년 결산 예정처 검토보고

- (지적사항) 에트회계, 전력기금, 방폐기금 등 에너지정책홍보에 사용되는 예산 통폐합·구조조정 필요
- (후속조치) 에트회계 및 전력기금은 모두 각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된 특성을 가진 바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별로 재원을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향후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재량, 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59	149	122	△27	△18.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3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주영준 과장(044-203-5120), 주무관(김현정, 044-203-51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 국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에너지 분야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소속 5개 전문위원회 포함) 운영

3. '13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 122백만원
 - 일반수용비 : 120백만원
 - 위원수당 : 11.4백만원(0.3백만원×19명×2회)
 - 전문위원수당 : 90.0백만원(0.25백만원×6개×15명×4회)
 - 부대경비 : 22.6백만원(회의장 임차료,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인쇄비 등)

- 국내여비 : 5.0백만원(현장 확인·방문 등에 소요되는 여비)
- 사업추진비 : 20.0백만원(에너지위원회, 소속 5개 전문위원회 업무활동 지원 및 지자체 협력을 위한 비용)

구 분	'13예산	'14예산
☐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반기 1회 / 소속 전문위원회 분기 1회 개최 - 운영비 증액(5백만원)
▪ 국내여비	현장 확인·방문 출장 등	좌동
▪ 사업추진비	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자체 협력 활동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예산규모 축소(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등 운영
- 주요 국가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
-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59	149	122	△27	△18.1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59	149	122	△27	△18.1
☐ 세출예산비목(합계)	159	149	149	△27	△18.1
○ 일반수용비	119	120	120	-	-
○ 국내여비	5	4	4	-	-
○ 사업추진비	25	25	20	△5	△20
○ 연구개발비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수립의 투명성, 적정성 등 확보
 - 에너지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T/F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함
 -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 및 관련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
 -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범 국가적 에너지 정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49	· 일반수용비 1.24(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4	1.22	· 일반수용비 1.6(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5(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5	1.07	· 일반수용비 1.6(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5(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6	0.98	· 일반수용비 1.6(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5(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17	0.81	· 일반수용비 1.6(위원수당, 행사장 임차료, 인쇄비 등) · 국내여비 0.05(현장 확인·방문 등) · 업무추진비 0.25(위원회 활동비 지원, 지자체 협력 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지법 제9조

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6.11)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07. 1) 국가에너지전문위원회(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구성
- ('07. 8) 국가에너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08. 8) 국가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0. 4)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위원회로 명칭변경 (저탄소 녹색성장기
본법 제정으로 에너지법 개정)
- ('10. 8) 에너지위원회 및 소속 5개 전문위원회(에너지정책, 에너지기술기반,
자원개발, 원자력발전, 에너지산업)를 구성
- ('10.10) 에너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1. 2) 에너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11.11) 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2. 7) 에너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국가에너지 위원회 운영	3	2	1.49	1.49	12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예산(△100백만원)은 “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전용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이월액(33백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미도래로 이월 ○ 불용액(110백만원)은 집행잔액(73백만원) 및 '08년도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금액(37백만원)임(운영비 73백만원, 여비 6백만원, 업무추진비 31백만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이월액(19백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미도래로 이월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부진(이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이월액(14백만원)은 연구용역비로 과제 계약기간 종료일 미도래로 이월 ○ 주요 이·전용 및 불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20백만원을 운영비로 전용하고,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운영비 21백만 원을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3 (-)	0.29 (-)	△1 (-)	2.29 (-)	8.6 (-)	0.33 (-)	1.1 (-)
'11년	2 (-)	0.33 (-)	- (-)	2.33 (-)	2.11 (-)	0.19 (-)	0.03 (-)
'12년	1.49 (-)	0.14 (-)	- (-)	2.19 (-)	1.84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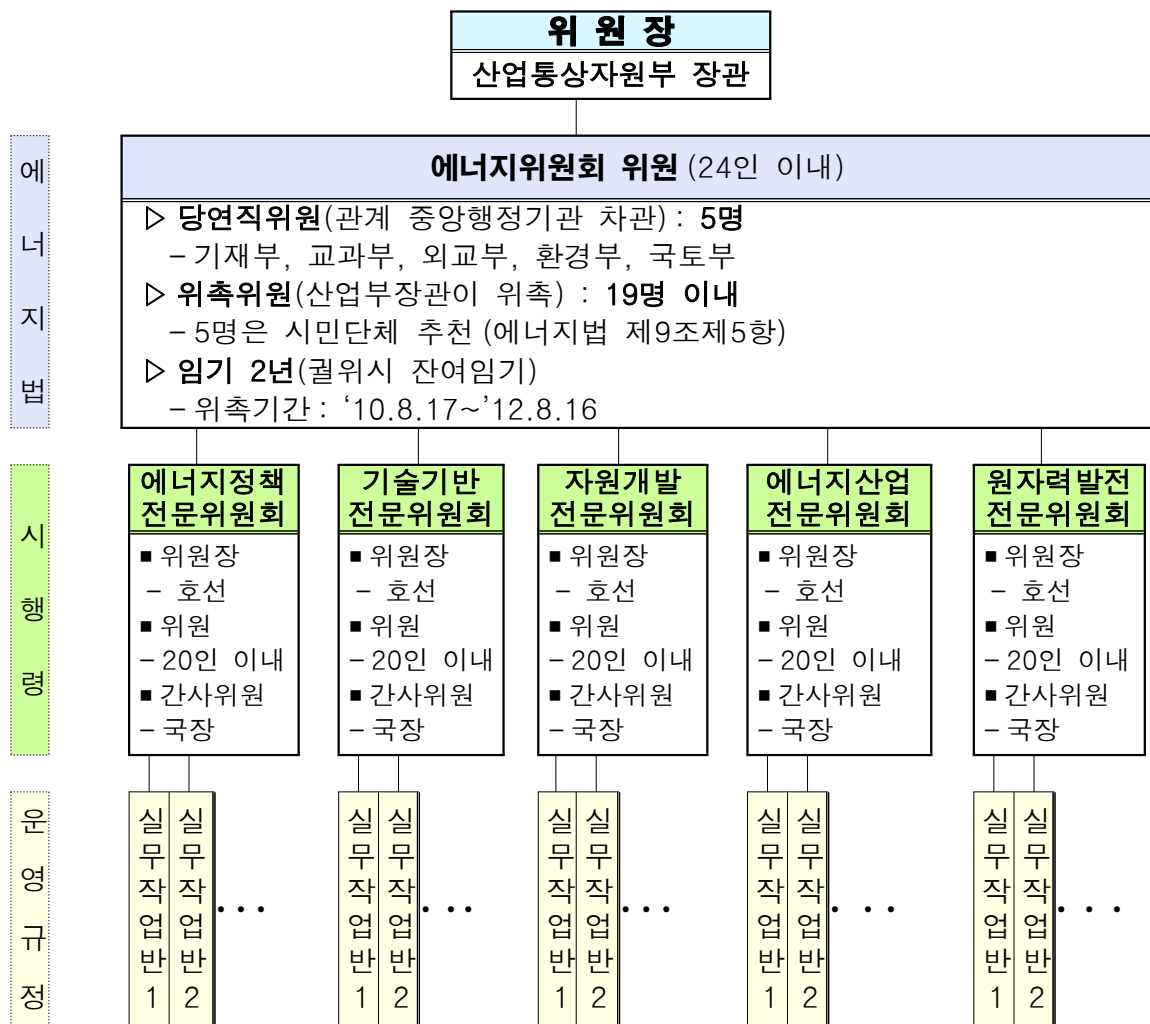
< 국회 예결위 '11년 결산 지적 >

-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실적 부진
 - 위원회 서면 개최 2회, 전문위원회 개최 총 5회에 불과하고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등 활동실적이 저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문제점과 자원개발전문위원회 법적근거
 - '광물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정책연구용역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대상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
 - 일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에너지자원개발업무로 한정할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에너지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 운영 체계



※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재량/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2,657	2,657	2,657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4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에너지자원정책과장(주영준), 사무관(김홍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260.9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사업목적

- ☐ 국내외 에너지 정보·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및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제공
- 국내외 에너지 정보 및 국가에너지수급 동향을 작성·제공함으로써 정부·기업·국민 등 경제주체의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석유전략 개발 및 국제 에너지가격 분석 : 국제 석유시황 분석 및 전망, 유가변동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7백만원
 - 산출내역 : 국제 석유시황 및 유가분석(157백만원), 유가변동의 국내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100백만원)
 - * 국제 석유시장 및 유가 동향 분석(주간), 국제 원유시황 및 가격 전망 보고서 작성(반기별), 세계 석유시장 및 산유국·소비국의 주요 이슈 분석
 - * 국제유가 전망모형 개선 및 운용, 유가변동의 국민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운영, 에너지가격 DB 운용 및 대외서비스 확충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에너지 수급동향 분석·전망 모형 및 변화요인 분석을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
 - 산출내역 : 국가 에너지 수급 분석(280백만원), 해외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전망(140백만원), 중·단기 에너지수요 전망(200백만원),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KEEI-EGMS 운영)(180백만원)
 - * 간행물·웹문서 제공 : 단기 수급분석 및 전망 보고서(분기별, 국영문 각 4회), 월별 에너지 수급동향 분석(연12회), 중기 전망 보고서(연1회), 장기 전망 보고서(연1회), 세계 주요기관의 에너지 수요전망 분석(연3회), 주요국의 에너지 수급 및 정책 분석(연1회), 국내외 에너지 수급현안 분석(수시) 등 발간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 국가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국제에너지기구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비 850백만원
 - 산출내역 : 국가 에너지 통계시스템 운영(360백만원), 에너지통계 국제협력(120백만원), 지역에너지통계 시·군·구 세분화 방안(200백만원), 에너지총조사 DB 구축: 가구부문(170백만원)

- * 에너지통계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APEC, IEA 등) 통계작성·제출의무 이행, 국제기준(IEA 등)에 근거한 에너지통계 작성 표준화·선진화, 에너지통계관련 간행물 및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의 Contents 개발 및 정보제공 매체 고도화, 에너지부문 정책현안에 대한 수시조사·분석, 열량제도 개선 및 에너지 지표·가격지수 개발
- * 간행물·웹문서 제공 : 에너지통계월보(월간), KERM(월간), Energy Info. Korea(반기), 에너지통계연보(연간),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연간), 자주 찾는 에너지통계(연간), 에너지밸런스(월간, 연간), 자원에너지주요통계(연간), 산업자원통계(반기), 정부·국회·유관기관의 통계수요 자문서비스(상시) 등
- 기반강화 사업 : 에너지수요전망 모형 개선, IEA 요청수준의 에너지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및 시스템구축 사업비 750백만원
 - 산출내역 : 국가 석유·가스 수요전망 모형 개선-산업모듈 개발(110백만원),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전망 모형 개발(110백만원), 2014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통계작성승인)(300백만원), 에너지 지표 및 가격지수 개발(130백만원), 국가 에너지통계 열량제도 개선 방안(100백만원)
 - * 에너지수급환경 및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수요전망 모형 개발 : ① 국가 석유·가스 수요전망 모형개선-산업모듈 개발, ②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전망 모형 개발
 - * 2014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국가승인통계) : 공급통계에서 파악될 수 없는 가구부문의 지역별, 에너지원별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에너지소비행태 분석
 - * 에너지 지표 및 가격지수 개발 : 기간별, 용도별, 유통단계별 가격지수, 에너지가격 총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에너지가격지수 시범 작성
 - * 국가에너지통계 열량제도 개선 방안 : 해외 에너지열량제도 형태별 변동성 비교 분석을 통한 최소변동 열량제도 방안 제시

□ 지원 필요성

- 고유가 지속, 자원개발 경쟁심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제 에너지 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에너지공급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 및 수급 현황의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 확보 및 우리나라의 국제 에너지협력 활동 전개에 필요한 세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 관련 동향 파악에 대한 지원 필요
- 2007년 「에너지정보통계센터」를 설립하여 ‘에너지정보·통계의 국가 지식 기반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국격에 부응하는 품격있는 통계정보를 제공,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 ‘국제기준의 선진형 에너지통계 조사·작성체계 및 에너지밸런스 체제’ 구축사업은 국가정책수립과 국가위상확립에 매우 중요한 기반 사업으로 지속적 지원 필요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통계·정보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
-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중장기 국가에너지 수요전망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에너지수요전망의 적시성·정확성 등을 제고하여 정책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망모형의 개발·개선 및 전망작업이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2,657	2,657	2,657	-	-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 가격 분석	257	257	257	-	-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800	800	800	-	-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850	850	850	-	-
▪ 기반강화사업	750	750	750	-	-
☐ 비목(합계)	2,657	2,657	2,657	-	-
○ 출연금(350-01)	2,657	2,657	2,657	-	-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국제 에너지가격 조사·분석, 국제 석유시장 긴급이슈 분석 등

○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

-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분석·전망,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 및 주요 에너지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 국가에너지수급통계 조사작성·관리 및 국제기구 통계제공의 국가의무 이행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관리·운영 및 고도화

○ 에너지통계 기반 강화

- 소비통계 분류체계의 IEA 표준화 및 업종세분화에 필요한 산업별, 용도별, 기기 및 설비별 소비조사 수행
- 에너지 수급환경 및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에너지수요전망 모형 개선 및 개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6.6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8.5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14	26.6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2.6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8.0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8.5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7.5
'15	19.1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3.2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9.5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11.3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8.5
'16	17.5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3.2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9.5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11.8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9.0
'17	14.4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 3.2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 9.5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11.8 - 에너지통계 기반강화 : 9.0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제3호 및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에너지법 제19조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 2008.4.14) 제4조 및 제16조

- 기후변화협약(UNFCCC) 제4조 1항 및 OECD/IEA 국제에너지프로그래밍협정(IEP) 제5장에 의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가짐

○ 추진경위

- 고유가 지속, 자원확보 경쟁심화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자원 정보 획득 능력이 에너지안보와 국가경제를 좌우할 중요 요소이나,
- 에너지정보·통계 수집기능을 가동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정보는 소관 업무 중심의 제한적, 단편적 내용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에너지정보·통계의 국가 지식기반화' 비전을 이행코자 2007년 '에너지정보·통계센터'를 최초 설립, 종합적·체계적 정보 수집·분석 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 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33.3	33.3	26.6	26.6	2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회의비(워크숍 개최일정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등 집행 잔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33 (33)	- (-)	- (-)	33 (33)	33 (30)	- (-)	- (3)
'11년	33 (33)	- (-)	- (-)	33 (33)	33 (33)	- (-)	- (-)
'12년	26.57 (26.57)	- (-)	- (-)	26.57 (26.57)	26.57 (26.57)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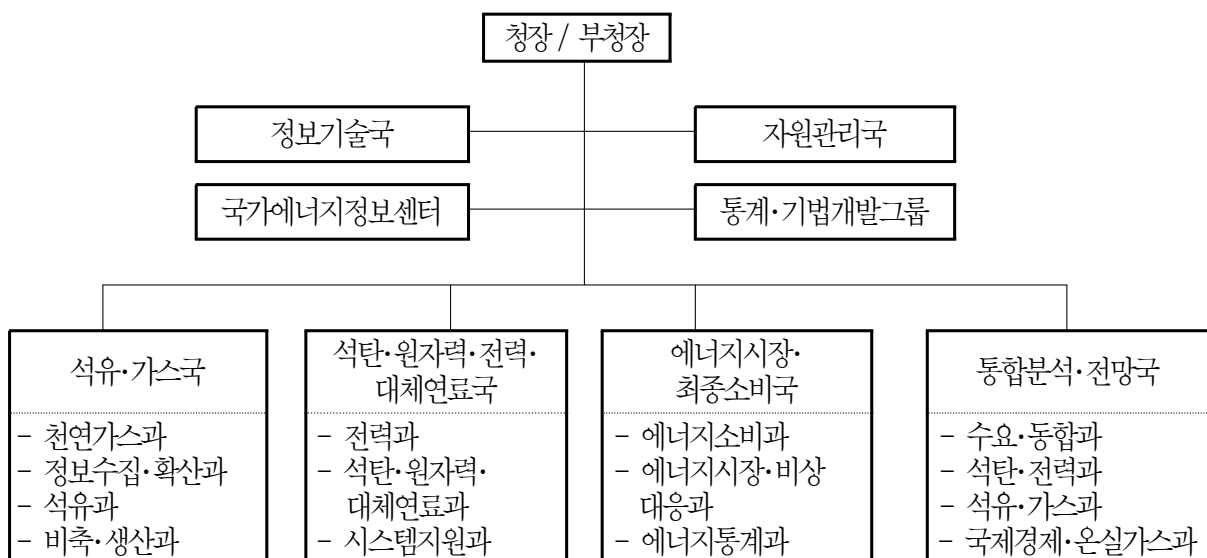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US DOE/EIA)

- 설립 연혁 및 목적 : 1977년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정보분석실 (Office of Energy Information and Analysis)이 개편되어 독립청으로 발족
- 에너지 전반에 걸친 통계 D/B관리, 수급분석 및 전망을 수행하고 신뢰도 높은 고급 에너지 관련정보 제공
- 주요 기능 : (1) 에너지 D/B 구축, (2) 분석 및 전망, (3) 에너지 검색 서비스 구축 등 에너지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관리·제공
- 주요 간행물 : Petroleum Supply Monthly, Monthly Energy Review, Annual Energy Review, Short-Term Energy Outlook, Annual Energy Outlook
- 산하에 국가에너지정보센터(NEIC: National Energy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하여 독립된 통계분석 업무, 에너지원별 전망 및 분석 등 수행
- 예산 : 2010년 110.6 백만달러 규모. 석유·가스·석탄·원자력·전력·대체연료 등 에너지원별 자료구축·관리에 중점. 에너지수급 분석·전망에 약 15%의 예산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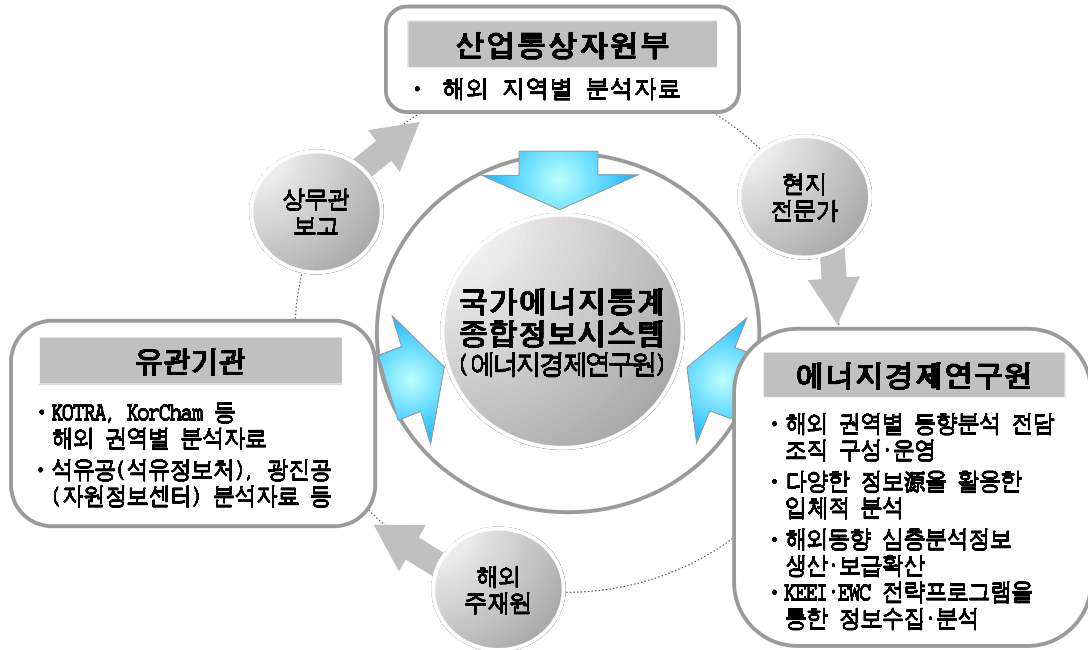
< EIA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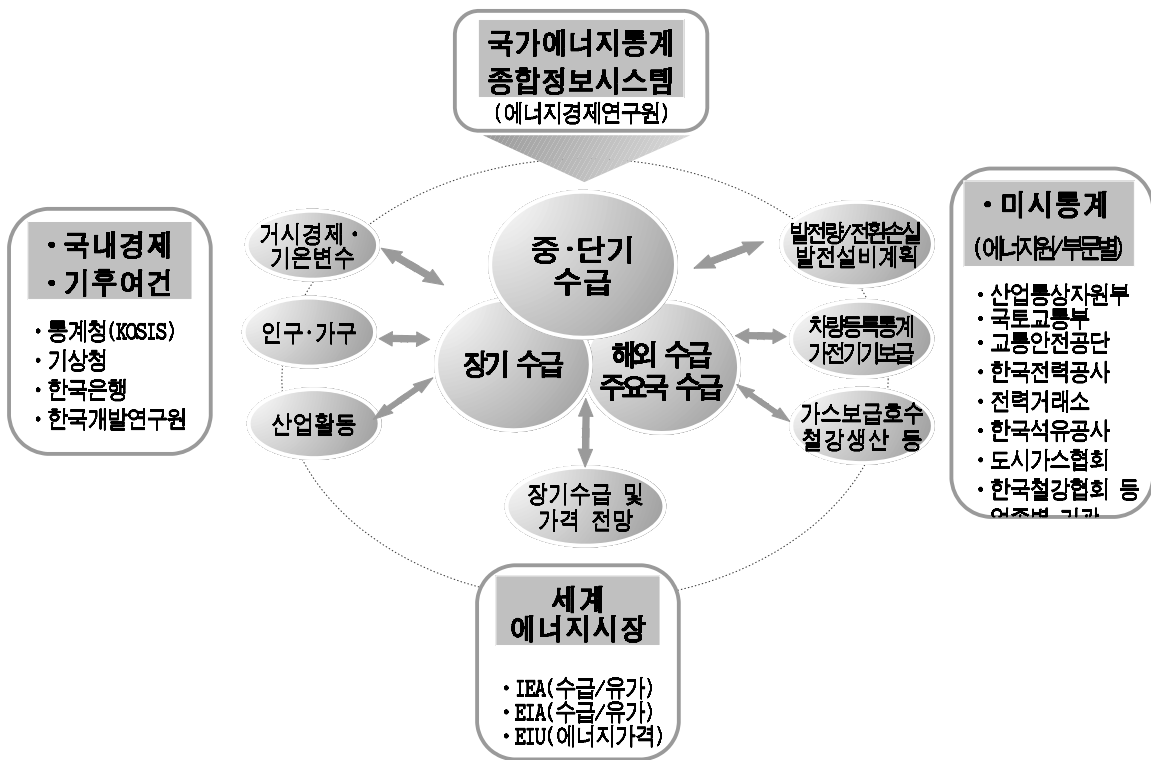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부설 에너지모델링센터(IEEJ/EDMC)
 - 설립 연혁 : 1984년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산하의 센터로 발족
 - 주요 기능
 - 에너지데이터뱅크 운영, 에너지데이터개발 및 출판
 - 주요 간행물 : 월간 “에너지동향”, 연간 “일본 에너지-경제통계 핸드북”,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 관련 모형 구축 및 수급 분석 : 단·장기 일본 에너지수급 모형, 세계 에너지수급 모형, 세계 에너지수급-환경 장기분석모형, 세계 석유제품 생산·교역 모형, I-O 모형, 단·장기 거시경제 모형 등
 - 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사용실태조사, 석유 대체에너지원 및 석유제품 수급 관련 계량분석 연구, APEC 에너지 데이터분석그룹과의 국제협력 추진, APEC 에너지 DB 구축 추진
 - 조직 : 하위부서로 계량분석·수요전망연구그룹 및 통계정보그룹을 둠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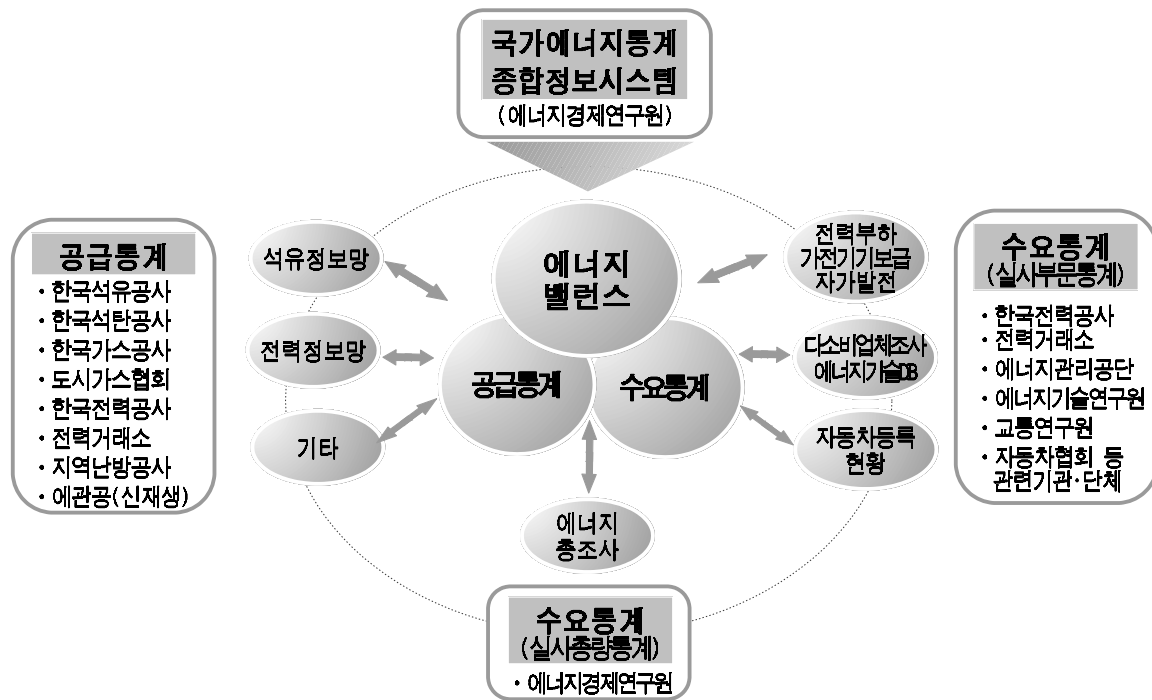
○ 국제 석유전략 개발 및 에너지가격 분석 분야



○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분야



○ 에너지통계 조사 분석 및 시스템 운영 분야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무 산출내역
- 관련근거 법령조문
- Energy Balance Flow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국제 석유시황 및 유가 분석 15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35%=36 - 참여 6×2인×12월×15%=23 - 참여 4×1인×12월×15%=8 ○ 외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5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2 ○ 여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 4(항공료1+체재비3) ○ 연구정보활동비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4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6회=6 - 발표회수당 20만×5인×6회=6 - 원고료 5백만×1회=5 - 번역료 3백만×1회=3 ○ 회의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6회=1 - 자문회의비 3만×20인×6회=3 - 초청세미나비 3만×50인×1회=1 - 발표회비 3만×15인×1회=1 	<p>□ 국제 석유시황 및 유가 분석 15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5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20%=20 - 참여 7×2인×12월×15%=24 - 참여 7×1인×12월×10%=8 ○ 외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5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 7(항공료4+체재비3) ○ 연구정보활동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참가비 4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2회=2 - 번역료 3백만×2회=6 ○ 회의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10회=1.5 - 자문회의비 3만×10인×2회=0.6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8회=2.5 - 발표회비 3만×5인×2회=0.4 - 워크숍비 5백만×1회=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 ○ 간접비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유가 영향요인 및 유가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개발)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4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15%=15 - 참여 6×1인×12월×15%=11 - 참여 6×1인×12월×10%=8 - 참여 4×1인×12월×13%=7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5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 5(항공료3+체재비2) ○ 연구정보활동비 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23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수당 20만×5인×2회=2 - 원고료 5백만×1회=5 ○ 회의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6회=2 - 발표회비 0.5 - 자문회의비 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백만원×1회=10 	<p>□ 유가변동의 국내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3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5%=15 - 참여 7×1인×12월×20%=16 - 참여 7×1인×12월×10%=8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연구기자재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S 5 ○ 여비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1 ○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4회=4 - 원고료 2백만×1회=2 - 번역료 1.5백만×2회=3 ○ 회의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10회=1.3 - 발표회비 3만×5인×2회=0.4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5회=1.3 - 워크숍비 1.5백만×2회=3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 ○ 간접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국가 에너지 수급 분석 23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6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25%=25 - 참여 6×2인×12월×10%=16 - 참여 6×1인×12월×15%=11 - 참여 4×1인×12월×10%=4 - 참여 4×1인×12월×10%=5 - 참여 4×1인×12월×15%=8 ○ 외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 공공요금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3 ○ 수용비 4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44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2 ○ 여비 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21(항공료12+체재비9) ○ 연구정보활동비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7 - 특근매식비 2 ○ 전문가활용비 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5회=5 - 번역료 5백만×2회=10 ○ 회의비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회/전문가회의 3만×5인×12회=2 - 발표회비 3만×15인×1회=0.5 - 자문회의비 3만×20인×5회=3 - 전문가워크숍비 3백만×2회=6 - 워크숍비 3만×10인×3회=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 	<p>□ 국가 에너지 수급 분석 2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1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2인×12월×20%=41 - 참여 7×2인×12월×20%=63 - 참여 7×1인×12월×15%=12 ○ 외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41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2 ○ 여비 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19(항공료12+체재비7) ○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발표수당 30만×1인×10회=3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5회=5 - 원고료 3백만×2회=6 - 번역료 3백만×1회=3 ○ 회의비 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세미나 3만×10인×10회=3 - 발표회비 3만×15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0인×5회=2 - 전문가워크숍 3백만×2회=6 - 국제세미나 개최비(배분) 10백만×1회=10 ○ 간접비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해외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전망 1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25%=25 - 참여 6×1인×12월×15%=12 - 참여 6×2인×12월×10%=16 - 참여 4×1인×12월×10%=5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9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1 ○ 연구정보활동비 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20 - 특근매식비 2 ○ 전문가활용비 2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4회=4 - 원고료 5백만×1회=5 - 번역료 3백만×4회=12 ○ 회의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6회=1.8 - 발표회비 3만×15인×1회=0.4 - 자문회의비 3만×15인×4회=1.8 	<p>□ 해외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전망 14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7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20%=21 - 참여 7×3인×12월×20%=47 - 참여 7×1인×12월×10%=8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7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연구정보활동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9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워크숍수당 20만×5인×3회=3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2회=2 - 번역료 2백만×4회=8 ○ 회의비 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10회=3 - 발표회비 3만×10인×2회=0.7 - 정책협의회비 3만×10인×4회=1.3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3회=1 - 국제세미나 개최비용(배분) 10백만×1회=10 ○ 간접비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중·단기 에너지수요 전망 1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9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35%=34 - 참여 6×1인×12월×20%=16 - 참여 6×2인×12월×15%=24 - 참여 6×1인×12월×10%=8 - 참여 6×1인×12월×5%=4 - 참여 4×1인×12월×15%=8 ○ 공공요금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3 ○ 수용비 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2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10인×5회=10 ○ 회의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6회=2 - 발표회비 3만×15인×1회=0.5 - 자문회의비 3만×10인×5회=1 - 워크숍비 3만×12인×2회=0.5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백만원×1회=20 	<p>□ 중·단기 에너지수요 전망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1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35%=36 - 참여 7×3인×12월×20%=47 - 참여 7×2인×12월×15%=24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연구기자재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A 5 - SAS 5 ○ 여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5 ○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회의수당 20만×2인×5회=2 - 원고료 5백만×1회=5 - 번역료 3백만×2회=6 ○ 회의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12회=3.5 - 발표회비 3만×15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0인×5회=1.5 - 워크숍비 3만×10인×4회=1 ○ 간접비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160백만원</p> <p>○ 내부인건비 8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30%=30 - 참여 6×6인×12월×10%=47 - 참여 6×6인×12월×5%=4 - 참여 4×1인×12월×15%=8 <p>○ 공공요금 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3 <p>○ 수용비 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5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p>○ 여비 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 6(항공료4+체재비2) <p>○ 연구정보활동비 1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2 <p>○ 전문가활용비 3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자문회의 수당 20만×5인×4회=4 - 원고료 5백만×3회=15 - 번역료 5백만×2회=10 <p>○ 회의비 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회비 3만×10인×3회=0.5 - 발표회비 3만×15인×1회=0.5 - 자문회비 3만×15인×4회=2 - 세미나비 3백만×2회=6 	<p>□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KEEI-EGMS 운영) 180백만원</p> <p>○ 내부인건비 8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20%=21 - 참여 7×1인×12월×20%=16 - 참여 7×1인×12월×15%=12 - 참여 7×5인×12월×10%=39 <p>○ 공공요금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p>○ 수용비 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p>○ 연구기자재비 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S 10 <p>○ 여비 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6(항공료3+체재비3) <p>○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p>○ 전문가활용비 2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수당 20만×5인×3회=3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3회=3 - 발표회수당 20만×3인×2회=1 - 원고료 3백만×3회=9 - 번역료 3백만×2회=6 <p>○ 회의비 1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10회=3 - 발표회비 3만×5인×2회=0.4 - 전문가회의비 3만×5인×3회=0.6 - 워크숍비 3만×15인×4회=2 - 국제세미나 개최비용 10백만×1회=10 <p>○ 간접비 1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에너지수요 전망모형 개선(전환부문 고도화) 110백만원</p> <p>○ 내부인건비 3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10%=10 - 참여 6×5인×12월×5%=20 - 참여 4×1인×12월×8%=4 <p>○ 외부인건비 3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p>○ 공공요금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p>○ 수용비 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p>○ 여비 1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 12(항공료8+체재비4) <p>○ 연구정보활동비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2 <p>○ 전문가활용비 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4회=4 - 번역료 3백만×1회=3 <p>○ 회의비 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회의비 3만×5인×6회=0.5 - 발표회비 3만×15인×1회=0.5 - 자문회의비 3만×15인×4회=2 <p>○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백만원×1회=10 	<p>□ 국가 에너지통계시스템 운영 360백만원</p> <p>○ 내부인건비 12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20%=21 - 참여 7×3인×12월×20%=47 - 참여 7×4인×12월×15%=47 - 참여 4×1인×12월×20%=11 <p>○ 공공요금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p>○ 수용비 6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67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p>○ 여비 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국외여비 5(항공료3+체재비2) <p>○ 연구정보활동비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2 <p>○ 전문가활용비 1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회수당 30만×8인×1회=2.3 - 실무협의회수당 20만×8인×4회=6.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1회=1 - 워크숍 수당 20만×8인×1회=1.5 <p>○ 회의비 1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회비 3만×15인×1회=0.4 - 실무협의회비 3만×15인×4회=1.8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1회=0.2 - 통계워크숍비 3만×20인×1회=0.6 - 자문회의비 3만×10인×30회=9 <p>○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백만원×1회=120 <p>○ 간접비 1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국가 에너지통계시스템 운영 3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1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35%=36 - 참여 6×6인×12월×20%=92 - 참여 6×2인×12월×15%=24 - 참여 4×1인×12월×10%=5 ○ 공공요금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4 ○ 수용비 6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65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여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4 - 국외여비 6(항공료3+체재비3) ○ 연구정보활동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3 ○ 전문가활용비 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회수당 25만×10인×2회=5 - 실무협의회수당 20만×8인×4회=6 - 분과위원회수당 20만×5인×4개분과×2회=8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2회=2 - 발표회수당 20만×15인×1회=3 - 번역료 2백만×5회=10 ○ 회의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협의회비 3만×10인×2회=0.5 - 실무협의회비 3만×8인×4회=1 - 분과위원회비 3만×5인×4개분과×2회=1 - 자문회의비 3만×15인×1회=1 - 워크숍비 3만×15인×1회=1 - 전문가회의비 3만×15인×1회=1 - 발표회비 3만×15인×1회=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7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백만원×1회=79 	<p>□ 에너지통계국제협력 1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6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0%=10 - 참여 7×1인×12월×15%=12 - 참여 7×4인×12월×10%=31 - 참여 4×1인×12월×15%=8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1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15(항공료9+체재비6) ○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수당 50만×2인×1회=1 - 전문가회의수당 20만×2인×2회=1 - 번역료 2백만×1회=2 - 번역료 3백만×2회=6 ○ 회의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5회=0.8 - 발표회비 3만×5인×2회=0.4 - 전문가회의비 3만×5인×2회=0.4 - 워크숍비 3만×10인×1회=0.4 - 국제세미나 개최비용(배분) 5백만×1회=5 ○ 간접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에너지통계 선진화(표준화·국제화)사업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25%=25 - 참여 6×4인×12월×20%=15 - 참여 6×4인×12월×15%=47 - 참여 4×1인×12월×15%=8 ○ 외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 공공요금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3 ○ 수용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연구정보활동비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2 ○ 전문가활용비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3회=3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4회=4 - 번역료 2백만×3회=6 ○ 회의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6회=1 - 정책협의회비 3만×15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5인×4회=2 - 워크숍비 3만×15인×2회=1 - 전문가회의비 3만×7인×3회=0.5 - 발표회비 3만×15인×1회=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백만원×1회=40백만원 	<p>□ 지역에너지통계 시·군·구 세분화 방안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2인×12월×15%=31 - 참여 9×2인×12월×15%=31 - 참여 7×1인×12월×20%=15 - 참여 7×1인×12월×10%=8 - 참여 4×1인×12월×10%=5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연구정보활동비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4인×4회=3 - 정책협의회수당 10만×263인×1회=27 - 원고료 3백만×1회=3 - 번역료 2백만×1회=2 - 자문용역수당 50만×6회=3 ○ 회의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20회=3 - 발표회비 3만×5인×2회=0.3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4회=1.2 - 정책협의회비 3만×20인×1회=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백만원×1회=40백만원 ○ 간접비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수입석탄 소비 실태 조사 1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5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15%=15 - 참여 6×1인×12월×10%=8 - 참여 6×6인×12월×5%=24 - 참여 4×2인×12월×5%=5 ○ 외부인건비 2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27 ○ 공공요금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4 ○ 수용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연구정보활동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2 - 특근매식비 5 ○ 전문가활용비 1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3회=3 - 발표회수당 20만×5인×4회=4 - 원고료 4백만×1회=4 - 번역료 2백만×4회=8 ○ 회의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6회=1 - 발표회비 3만×20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0인×4회=1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2회=0.5 - 워크숍비 3만×5인×3회=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백만원×1회=50백만원 	<p>□ 에너지총조사 DB 구축 : 가구부문 1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4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0%=10 - 참여 7×3인×12월×10%=24 - 참여 7×2인×12월×5%=8 - 참여 4×1인×12월×10%=5 ○ 외부인건비 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4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연구기자재비 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S 25 ○ 여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연구정보활동비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3회=3 - 전문가회의수당 20만×7인×3회=4 - 워크숍수당 20만×1인×5회=1 - 자문용역수당 50만×5회=3 - 번역료 2백만×3회=6 ○ 회의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3회=0.8 - 발표회비 3만×10인×3회=0.8 - 전문가회의비 3만×15인×3회=1.4 - 워크숍비 3만×20인×5회=3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백만원 ○ 간접비 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IEA 에너지효율 통계 작성 및 DB 구축방안 연구 12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10%=10 - 참여 6×4인×12월×10%=31 - 참여 6×1인×12월×5%=4 - 참여 4×1인×12월×10%=5 ○ 공공요금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3 ○ 수용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1 - 국외여비 10(항공료6+체재비4) ○ 연구정보활동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 - 특근매식비 2 ○ 전문가활용비 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3회=3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4회=4 - 원고료 5백만×2회=10 - 번역료 2백만×4회=8 ○ 회의비 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비 3만×15인×2회=1 - 발표회비 3만×20인×1회=1 - 자문회의비 3만×10인×4회=1 - 국제세미나비 20백만원×1회=20 	<p>□ 국가 석유·가스 수요전망 모형 개선 - 산업모듈 개발 1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0%=10 - 참여 7×5인×12월×10%=40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연구기자재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S 5 ○ 여비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연구정보활동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2회=2 - 워크숍수당 20만×10인×2회=4 - 정책협의회수당 20만×5인×3회=3 ○ 회의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10회=1.6 - 발표회비 3만×10인×2회=0.7 - 전문가회의비 3만×5인×2회=0.4 - 정책협의회비 3만×5인×3회=0.6 - 워크숍비 3만×10인×2회=0.7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백만원 ○ 간접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국가 전력수요 전망모형 개선-산업 Module 개발 1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8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35%=36 - 참여 6×2인×12월×20%=30 - 참여 6×1인×12월×15%=12 - 참여 6×1인×12월×10%=8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12(항공료10+체재비2) ○ 연구정보활동비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0 - 특근매식비 3 ○ 전문가활용비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5회=5 - 번역료 2백만×2회=4 ○ 회의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의비 3만×5인×6회=1 - 발표회비 3만×20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0인×5회=1 - 워크숍비 3만×10인×2회=1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백만원 	<p>□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전망 모형 개발 1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4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5%=15 - 참여 7×3인×12월×10%=24 - 참여 7×2인×12월×5%=8 ○ 공공요금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1 ○ 수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연구기자재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S, Matlab 등 10 ○ 여비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2 ○ 연구정보활동비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2회=3 - 워크숍수당 20만×5인×4회=4 - 정책협의회의수당 20만×5인×3회=3 - 원고료 1.5백만×1회=2 - 번역료 2백만×2회=4 ○ 회의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의비 3만×10인×5회=1.5 - 자문회의비 3만×10인×2회=0.6 - 전문가회의비 3만×5인×2회=0.3 - 발표회비 3만×5인×4회=0.6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백만원×1회=15백만원 ○ 간접비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전환부문(정유·화학 산업) 에너지 투입·산출 실태조사 140백만원</p> <p>○ 내부인건비 4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15%=15 - 참여 6×1인×12월×12%=9 - 참여 6×1인×12월×10%=8 - 참여 6×3인×12월×5%=11 <p>○ 공공요금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p>○ 수용비 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p>○ 여비 1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10(항공료6+체재비4) <p>○ 연구정보활동비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1 - 특근매식비 1 <p>○ 전문가활용비 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5회=5 - 번역료 5백만×1회=5 <p>○ 회의비 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6회=1 - 발표회비 3만×20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5인×5회=2 - 워크숍비 3만×7인×2회=1 <p>○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백만원×1회=60백만원 	<p>□ 2014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통계승인작성) 300백만원</p> <p>○ 내부인건비 2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5%=5 - 참여 7×5인×12월×5%=20 - 참여 4×1인×12월×5%=2 <p>○ 외부인건비 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6월×30%=7 <p>○ 공공요금 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p>○ 수용비 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6 - 사무용품 0.7 - 전산소모품구입비 0.7 - 기타제잡비 0.6 <p>○ 여비 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p>○ 연구정보활동비 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1 <p>○ 전문가활용비 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연구결과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2회=2 <p>○ 회의비 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15회=4.5 - 조사결과 발표회비 3만×10인×2회=0.5 - 연구결과 발표회비 3만×10인×2회=0.5 - 자문회의비 3만×10인×2회=0.5 <p>○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24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백만원×2회=240백만원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2013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2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10%=10 - 참여 6×5인×12월×5%=19 - 참여 4×1인×12월×7%=4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연구정보활동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5 - 특근매식비 2 ○ 전문가활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4회=4 ○ 회의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6회=2 - 발표회비 3만×20인×2회=1 - 자문회의비 3만×15인×4회=2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2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백만원×1회=200 - 20백만원×1회=20 	<p>□ 에너지 지표 및 가격지수 개발 13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0%=10 - 참여 7×5인×12월×5%=20 - 참여 4×1인×12월×10%=5 ○ 외부인건비 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4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국외여비 2(항공료0.5+체재비1.5) ○ 연구정보활동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2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5인×2회=2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5회=5 - 정책협의회수당 20만×5인×2회=2 - 자문용역비 50만×6회=3 - 번역료 2백만×1회=2 ○ 회의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5인×10회=1.6 - 발표회비 3만×5인×2회=0.3 - 정책협의회비 3만×5인×2회=0.3 - 전문가회의비 3만×5인×5회=0.8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백만원×1회=20 ○ 간접비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13년 예산(2,657백만원)	'14년 예산(2,657백만원)
<p>□ 건물에너지 상설표본조사(시범사업) 1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9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8×1인×12월×30%=30 - 참여 6×1인×12월×23%=18 - 참여 6×2인×12월×15%=23 - 참여 6×1인×12월×10%=8 - 참여 6×1인×12월×5%=4 - 참여 4×1인×12월×15%=8 ○ 외부인건비 3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1인×12월×75%=33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3 - 사무용품 1 - 전산소모품구입비 1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여비 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1 ○ 연구정보활동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 5 ○ 전문가활용비 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수당 20만×5인×4회=4 - 원고료 2백만×4회=8 - 번역료 2.5백만×2회=5 ○ 회의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0인×6회=2 - 자문회의비 3만×20인×2회=1 - 초청세미나비 3만×10인×4회=1 - 발표회비 3만×10인×2회=0.5 - 발표회비 3만×5인×3회=0.5 ○ 위탁용역비 및 부담금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백만원×1회=20백만원 	<p>□ 국가 에너지통계 열량제도 개선방안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책 9×1인×12월×10%=10 - 참여 7×3인×12월×10%=24 - 참여 7×2인×12월×5%=8 - 참여 4×1인×12월×5%=2 ○ 공공요금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료, 전화료 등 2 ○ 수용비 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2 - 사무용품 0.5 - 전산소모품구입비 0.5 - 복사료 및 기타제잡비 1 ○ 연구기자재비 2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lab 9 - SAS 20 ○ 여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3 ○ 연구정보활동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2 - 특근매식비 1 ○ 전문가활용비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수당 20만×3인×2회=1 - 전문가회의수당 20만×5인×2회=2 - 번역료 2백만×2회=4 ○ 회의비 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비 3만×15인×5회=2 - 발표회비 3만×10인×2회=0.5 - 전문가회의비 3만×10인×2회=0.5 ○ 간접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 출연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사업 근거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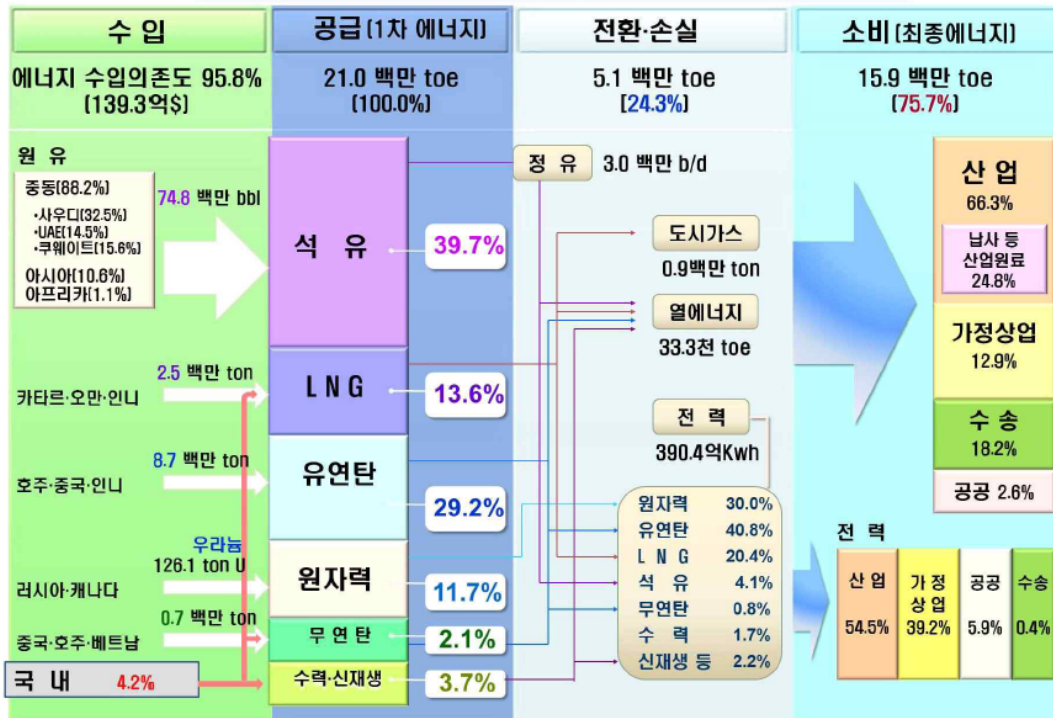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작성기관) ① 에너지통계 작성기관 및 에너지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6조(에너지통계 관리) ①에너지통계 작성기관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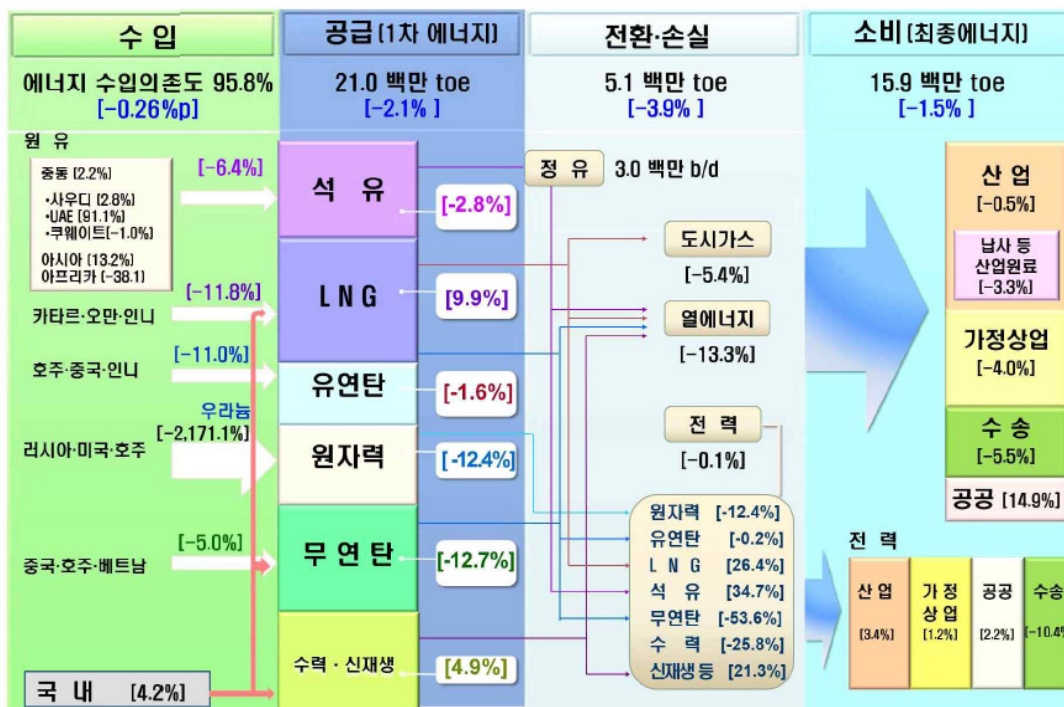
②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통계의 시계열 분석 및 최신 정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한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제4조제1항 및 OECD/IEA 국제에너지프로그램(IEP) 제5장에 의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가짐

2013년 9월 Energy Balance Flow



2013년 9월 Energy Balance Flow [전년동월 대비]



에너지센서스(신규)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센서스	460	-	1,938	1,938	순증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5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송유중), 에너지자원정책과장(주영준), 사무관(김홍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1년~계속(매3년마다 1회 조사)
총사업비	매 3년 주기 시행사업(‘11년 투자액 : 15.32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에너지총조사는 수요부문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업종별, 시도별(주거형태별), 사용기기별 소비행태 등 공급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세한 소비실태를 조사·분석

- 산업, 수송, 상업·공공, 가구부문 등 에너지수요 부문별로 에너지소비 실태와 이용구조를 조사·분석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에너지총조사 자료의 Data Base 구축 및 수요통계 세분화를 통한 통계 서비스 확대

3. '14년 예산 내용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체: 산업, 운수업, 상업·공공부문
- 민간부문: 가구 및 관·자가용차량(이륜차 포함), 대형건물

조사 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조사대상범위
산업 부문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F 건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기타광업 ◦음식료,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목재, 펄프, 출판, 코크스, 화합물, 고무,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계산, 전기기계, 영상음향, 의료정밀, 자동차, 기타운송, 가구기타, 재생재료 제조업 ◦건설업
수송 부문	I 운수업 * 자가용차량	◦육상, 수상, 철도, 항공 운수 ◦2013년 등록 관·자가용차량
상업 공공 부문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사업서비스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R 공공,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업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수도업
가정 부문	* 전국 시·군·구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대상가구
대형 건물	* 가구 및 상업·공공 부문의 대형건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관리지정업체 건물

주: 광업, 제조업은 본 사업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 DB 구축”의 조사결과를 인용

○ 주요 조사항목

- 산업부문 : 부문별 에너지소비, 설비별 에너지소비, 전력설비와 전력 소비, 수송 장비(건설장비 및 농기계) 이용 현황
- 수송부문 : 수송수단별 보유구조, 수송수단별 주행거리, 차종별 에너지소비, 차종별 주행거리, 자가용 승용차 이용현황
- 상업·공공부문: 부문별 에너지소비, 에너지이용설비 현황, 용도별 에너지소비, 자가발전 실적
- 가구부문: 주택 및 가구의 일반사항, 주택의 특성(주택형태, 가구원수, 건평, 소득)별 에너지소비, 가전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 대형건물: 건물의 특성(용도, 면적 등)별 에너지소비, 난방설비, 전력설비, 자가발전 실적

○ 주요 결과(통계표)

- 산업부문: 부문별 에너지소비, 설비별 에너지소비구조, 공정별 에너지소비구조, 용도별 전력소비구조, 폐에너지 이용현황, 자가발전 현황, 보일러 이용현황, 농기계 및 건설장비 보유 및 에너지 소비
- 수송부문: 부문별 에너지소비, 차종별 에너지사용구조 수송수단별 대당 에너지소비와 주행거리, 차량규모별 연료경제, 운수업 에너지원단위, 자가용 차량의 운행특성
- 상업·공공부문: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사용용도별 에너지소비구조,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자가발전현황
- 가구부문: 16개시도별 에너지소비량, 가구의 특성(주택형태, 가구원수, 난방설비, 소득계층)별 에너지소비구조, 가전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 대형건물: 건물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사용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업종별 면적당 에너지소비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총조사는 공급자 기반의 통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수요부문의 세부산업별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구조 분석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및 산학연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보다 세분화된 산업부문 통계, 전문화된 소비통계자료, 16개 시도별 지역에너지통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제기구(IEA, APEC)에서도 세부통계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 에너지 총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센서스	-	-	1,938	1,938	순증
□ 비목(합계)	-	-	1,938	1,938	순증
○ 연구개발비(260)	-	-	1,938	1,938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총조사는 조사목적, 조사내용, 적정 표본수 및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통해서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의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급통계 및 소비통계와의 차이 해소, 조사결과의 대표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검증
 - 계량경제 분석 및 모형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수요통계 제공과 국제수준의 통계 제공
- 에너지총조사는 단순히 에너지소비량 파악에 주력하기 보다는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경제·사회·기술적 변수를 조사하여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
 - 공급통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에너지원별, 지역(일부 업종)별, 설비(용도)별 세분화조사 및 공급통계와의 물량 차이 보정
 -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추정모형, 중장기 수요전망 모형, 에너지 효율지표 분석 자료 등에 활용 가능한 미시통계조사
- 국내의 에너지소비관련조사를 에너지총조사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공급통계 중심의 에너지밸런스 통계 개선
 - 기관간 자료의 공유화를 통하여 타기관과의 중복 조사 등 단일화
 - 현재 공급통계 중심으로 작성되는 에너지밸런스 통계의 전환 부문 및 소비통계를 보완
 - 국가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KESIS)에 관련 DB를 구축하여 관련 통계 및 원시자료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	
'13	-	
'14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비: 11.2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체수: 45,000개 - 업체당조사비: 25,000원 ○ 인건비: 6.9억원 ○ 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0.5억원 ○ 표본보완 및 통계분석: 0.25억원 ○ 일반관리비: 0.5억원
'15	-	
'16	-	
'17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비: 11.2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체수: 45,000개 - 업체당조사비: 25,000원 ○ 인건비: 6.9억원 ○ 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0.5억원 ○ 표본보완 및 통계분석: 0.25억원 ○ 일반관리비: 0.5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 제4조 및 제16조
 - 추진경위
 - (2008년) 에너지 총조사 실시
 - (2011년) 에너지 총조사 실시
- * '81년부터 매 3년마다 시행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에너지센서스	-	15.32	-	-	19.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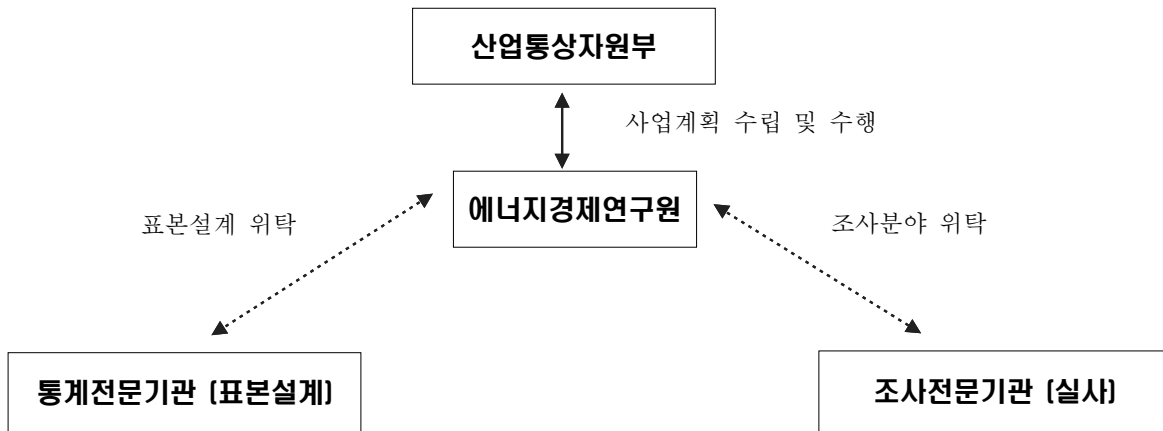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1977년부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의 조성 및 에너지에 관한 일반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에너지 전반에 걸친 통계 조사·분석 및 D/B관리, 수급분석 및 전망을 수행. 신뢰도가 높은 고급 에너지 관련정보를 제공
 - 매4년을 주기로 산업, 수송, 가정·자가용, 건물부문의 조사를 수행
- 일본 에너지청은 매년도 에너지수요 전분야에 대한 에너지소비 조사를 시행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 및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
 - 1984년부터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부설 에너지모델링센터에서는 계량분석·수요전망연구그룹 및 통계정보그룹을 두어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사용실태조사 실시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세부절차

단계별	조사체계	주요추진 내역
계약체결		○ 전자조달 사이트를 통한 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 (4월~7월)	사전준비단계	○ 문제점 및 추진방향 설정 ○ 조사기획 및 조직구성 ○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파악
	조사기본계획 확정	○ 전문가 회의 ○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표본설계	○ 표본설계 위탁
	예비 및 시험조사	○ 예비 및 시험조사 ○ 조사표 및 결과표 확정
조사단계 (7월~11월)	조사원 확보 및 교육	○ 조사원 확보 및 교육 - 외부 전문기관 위탁 - 조사원교육은 예경연 시행
	현지실사	○ 실사 - 부문별 현지방문 조사,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표 내검	○ 조사표 회수단계의 현지 내검 ○ 자료입력 전 단계의 중앙 내검 ○ 자료입력 후 대사작업
	보완조사	○ 조사전문업체의 조사표 내검 및 문제조사표 보완조사

단계별	조사체계	주요추진 내역
↓		
자료처리 및 집계 (12월~'12.3월)	전산처리 및 집계 조사자료 업데이트	○자료처리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산작업 및 자료처리 작업 - 전산시스템 운영, 집계결과 출력
	잠정결과 분석 및 사후 보완	○잠정결과표 도출 및 문제점 파악 ○사후보완, 조사내용 업데이트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확정 및 통계표 작성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 및 공표 ('13.4월~5월)	공표협의	○통계청 공표협의
	종합보고 및 공표	○공표(보도)자료 작성 ○요약보고서 및 본 보고서 발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부 산출내역
- 관련근거 법령조문

'13년 예산(-)	'14년 예산(1,93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68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 608,98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8,553천원×1인×7.2월≒61,583천원 · 연구원 6,558천원×9인×6.6월≒389,575천원 · 연구보조원 4,384천원×6인×6.0월≒157,829천원 - 외부인건비 : 78,91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원 3,288천원×4인×6.0월≒78,917천원 ○ 경비 1,20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 7,34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2박3일, 대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연구원 1인×2회 ≒ 550천원 연구원 9인×2회 ≒ 4,370천원 연구보조원 6인×1회 ≒ 1,457천원 보조원 4인×1회 ≒ 971천원 - 유인물비 : 26,014천원 · 조사표 : 8,910천원 · 조사요령서 및 조사구명부 : 1,083천원 · 예비조사표 : 566천원 · 조사원증 인쇄 : 1,200천원 · 봉투 : 1,009천원 · 표본업체 리스트 : 1,454천원 · 최종보고서 인쇄비 : 10,352천원 · 자료복사비 : 1,440천원 - 회의비 : 12,9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비 : 2,600천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4,350천원 · 업무협의회의비 : 6,000천원 - 전산처리비 : 1,500천원 - 자료구입비 : 2,400천원 - 교통통신비 : 1,860천원 - 위탁용역비 : 1,150,000천원 · 조사비(사례품, 조사표입력 포함) : 1,125,000천원(전문조사업체) · 표본보완 및 통계분석 : 25,000천원(한국조사학회) ○ 일반관리비 4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9,976천원×5.0% 이내 = 48,024천원

□ 에너지 관련 통의 관리·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에너지 통계관리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너지통계 관리) ①에너지통계 작성기관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통계의 시계열 분석 및 최신 정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경제연구원을 제외한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에너지자원정책연구(계속, R&D)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자원정책연구	-	1,440	1,325	△115	△8.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1 - 306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주영준 과장(044-203-5120), 주무관(김현정, 044-203-51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에너지·자원 이슈와 시장 및 각국의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이행 등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정책연구용역비 :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향상, 기후변화 대비 국가 에너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정책 발굴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 1,325백만원 편성
- 산출내역 : 50~60백만원(용역과제 평균) × 24~28개 과제

구 분	'13예산	'14예산
□ 에너지자원 정책연구		
▪ 연구개발비	50~60백만원(용역과제 평균액) × 24~28개 과제 수행	50~60백만원(용역과제 평균액) × 24~28개 과제 수행

□ 지원 필요성

-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국제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내 대응 역량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 이슈 주도를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자원정책연구	-	1,440	1,325	△115	△8.0
▪ 정책연구개발	-	1,440 (50백만×36개)	1,325 (50~60백만×24~28개)	△115	△8.0
□ 세출예산비목(합계)	-	1,440	1,325	△115	△8.0
○ 연구개발비(260-00)	-	1,440	1,325	△115	△8.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자원분야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가 대응, 기후 변화, 자원개발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연구 및 정책용역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4.4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36개 과제 수행
'14	13.2	0.5~0.6억원(용역과제 평균액) ×24~28개 과제 수행
'15	13.6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40개 과제 수행
'16	14.1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40개 과제 수행
'17	14.5	0.5억원(용역과제 평균액) ×40개 과제 수행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7조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0년, '동북아에너지연구'에서 '에너지국제협력연구'로 사업명 변경
- '10년, 국회 의결에 따라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정책연구개발'을 통합하여 '에너지자원정책연구'로 신규 편성
- '13년, '에너지국제협력연구'와 '에너지자원정책연구'를 분리하여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 에너지자원 정책연구	10	10	18	18	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09년 : 연구용역 과제 추진 예산부족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비에서 예산 전용(1억원),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0.67억원)
- '10년 :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2.99억원)
- '11년 :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2.86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9년	10 ()	0.09 ()	1 ()	11.09 ()	10.34 ()	0.67 ()	0.08 ()
'10년	18 ()	0.67 ()	- ()	18.67 ()	15.60 ()	2.99 ()	0.08 ()
'11년	18 ()	2.99 ()	- ()	20.99 ()	18.06 ()	2.86 ()	0.07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에너지 정책연구 지원

- EU는 IEE(Intelligent Energy-Europe Programme)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및 수송분야의 정책개발 연구, 산업내 기술·노하우 공유, 에너지 캠페인 등을 시행

* IEE '08년 예산 : 7.3억 유로

(5)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과제공모 및 연구과제 선정(용역심의위원회)→과제 수행자 선정→계약체결→연구수행→연구결과 검토 및 정산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재량, 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301	1,853	1,887	34	1.8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3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주영준 과장(044-203-5120), 사무관(김수희, 044-203-51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IEA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1,047백만원

- 산출내역 : 568,200유로(2014년 IEA 예산 중 한국 분담액) × 1,500원 / 유로 + 200백만원 ≒ 1,051백만원

○ IEF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104백만원

- 산출내역 : 91,900불(3년 평균) × 1,130원 / 달러 ≒ 104백만원

- CCOP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72백만원
 - 산출내역 : 60,000불(3년 평균)×1,130원/달러 ≒ 68백만원
- IRENA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664백만원
 - 산출내역 : 2,100만달러(2014년 IRENA 예상 총예산 규모) × 2.8%(한국 분담율) × 1,130원/달러 ≒ 66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대외협상 역량강화 및 국제논의 참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896	1,853	1,887	34	1.8
▪ IEA	1,289	1,088	1,047	△ 41	△ 3.7
▪ IEF	125	116	104	△ 12	△ 10.3
▪ CCOP	66	68	72	4	5.8
▪ IRENA	416	581	664	83	14.3
□ 세출예산비목(합계)	1,896	1,853	1,887	34	1.8
▪ 국제부담금(340-02)	1,896	1,853	1,887	34	1.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8.53	IEA 분담금 1,088 백만원 IEF 분담금 116 백만원 CCOP 분담금 68 백만원 IRENA 분담금 581 백만원
'14	18.87	IEA 분담금 1,100 백만원 IEF 분담금 120 백만원 CCOP 분담금 70 백만원 IRENA 분담금 580 백만원
'15	13.60	IEA 분담금 700 백만원 IEF 분담금 120 백만원 CCOP 분담금 50 백만원 IRENA 분담금 490 백만원
'16	12.46	IEA 분담금 700 백만원 IEF 분담금 80 백만원 CCOP 분담금 50 백만원 IRENA 분담금 416 백만원
'17	10.27	IEA 분담금 641 백만원 IEF 분담금 40 백만원 CCOP 분담금 30 백만원 IRENA 분담금 316 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해 국제 에너지 이슈에 대한 공동 논의와 협력 추진

○ 추진경위

- IEA : 국제에너지협정(IEP) 제64조 : OECD/IEA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02.3)함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 발생
 - * IEA가 OECD 분과인 만큼, OECD 회원국 1인당 GDP 등 경제성장 지표를 감안하여 확정
- IEF : 국제에너지포럼 헌장(IEF Charter) 제3장(Membership) : '06년부터 분담금 납부, '11.2월 IEF 헌장 승인에 따라 분담금 의무화

* 분담금 산정기준 : IEF 사무국이 포럼 참석 대상국(86개국)의 세계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석유 생산·소비 비중을 기준으로 매년 분담금을 산정하여 배정

- CCOP :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규정집 제 9.1조에 따라 '65년부터 분담금 납부

* 분담금 산정기준 : CCOP 분담금은 CCOP 운영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단이 고지하여 약정(Agreement)된 액수이며 각국의 국력, CCOP에 관한 관심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산출

- IRENA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설립규정('09.1.26, 독일 본 창립총회시 서명), '10.7 25개국 비준서 기탁으로 공식출범함에 따라 '11년부터 분담금 납부 의무 발생

* 분담금 산정기준 : IRENA 연간 총예산 × 각국 분담금 비율(UN 분담금 배정 비율 × 조정계수) + 자발적 기여금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13.64	19.0	18.96	18.53	18.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3.64			13.64	13.64	-	-
'11년	19.00			19.00	19.00	-	-
'12년	18.96			18.96	1,301	-	5.9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전년도 불용액을 활용한 차기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선납
- (조치사항) '12년부터 환율변동 등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잔액은 차기년도 선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분담금 납부 요청(IEA, IEF, CCOP, IRENA 사무국) → 요청공문 접수
및 분담금 지급 의뢰(산업통상자원부) → 분담금 납부(한국석유공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회계위탁관리비(재량, 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회계위탁관리비	877	1,153	1,153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4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에너지자원정책과장(주영준, 044-203-5120), 주무관(황의준, 044-203-51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128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회계업무 수탁운영비)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2. 사업목적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계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에특회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880백만원

- 산출내역 : 80백만원 × 11명(정원) * '13년 대비 동결

○ (경비) 에특회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73백만원

- 산출내역 : 25백만원 × 11명 * '13년 대비 동결

구 분	'13예산	'14예산
☐ 회계위탁관리비	1,153백만원	1,153백만원
▪ 인건비	880백만원 에특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적정 인원 (정원 11명)의 실제 소요 인건비 확보	'13년 대비 동결
▪ 경비	273백만원 에특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위탁 기관의 운영경비	'13년 대비 동결

☐ 지원 필요성

○ 안정적인 에특회계의 세입 및 세출, 국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회계위탁관리 업무 소요경비 보전 필요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회계위탁관리비	877	1,153	1,153	-	-
▪ 인건비	604	880	880	-	-
▪ 경비	273	273	273	-	-
☐ 세출예산비목(합계)	877	1,153	1,153	-	-
○ 위탁사업비(210-15)	860	1,153	1,15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특회계관련 세입(부담금·부과금의 수입 및 환급)·세출업무(보조, 출자, 융자금의 지출)의 신속한 처리와 에특회계 소관자산(채권, 국유재산,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책 사업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5	○ 인건비 : 880 ○ 경비 : 273
'14	11.5	○ 인건비 : 880 ○ 경비 : 273
'15	11.5	○ 인건비 : 880 ○ 경비 : 273
'16	11.5	○ 인건비 : 880 ○ 경비 : 273
'17	11.5	○ 인건비 : 880 ○ 경비 : 27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 3항(회계사무의 위탁)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5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위탁관리비 지원
(사무의 법정 위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회계위탁관리비	8.6	8.6	8.77	11.5	1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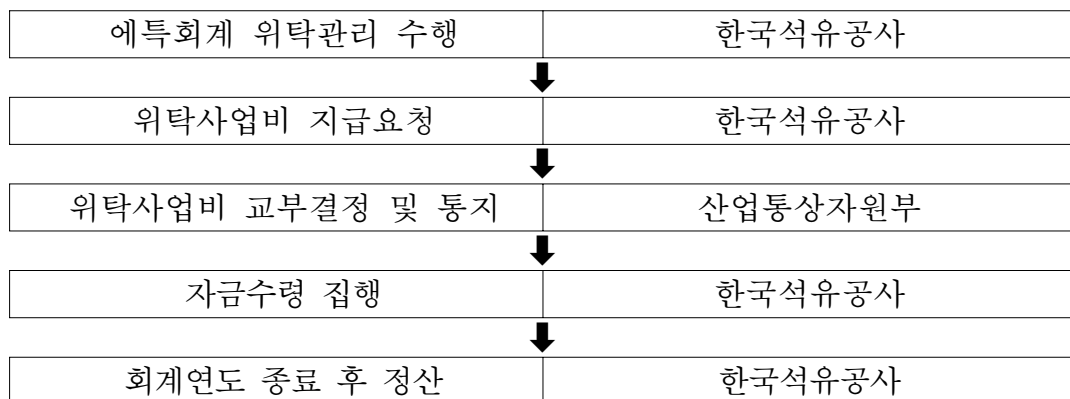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6 ()	()	()	8.6 ()	8.6 ()	()	()
'11년	8.6 ()	()	()	8.6 ()	8.6 ()	()	()
'12년	8.77 (8.77)	()	()	8.77 ()	8.77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회계관리비(재량, 계속)

< 에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회계관리비	74	74	74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4 - 302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에너지자원정책과장(주영준, 044-203-5120), 주무관(황의준, 044-203-51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10.5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운영비) 예결산 자료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42백만원
 - 산출내역 : 에특회계 예결산서 인쇄비용 30백만원, A4 용지 구입 6백만원,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 6백만원
 - * (12년) 42백만원 → (‘13년) 42백만원, 동결

- (여비) 예결산 업무 등 국회활동, 예산사업 추진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13백만원
 - 산출내역 : (국내여비 4백만원) 근무지내 20만원/월×12개월=240만원, 근무지외 20만원/분기×2회/분기×4분기=160만원, (국외여비 9백만원) 유럽·북남미권 1회 7백만원, 아시아권 1회 2백만원
 - * (13년) 12백만원 → ('14년) 13백만원
- (업무추진비) 예결산 업무,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 에특회계 관리·운용 업무 지원을 위한 경비 16백만원
 - 산출내역 : (부내 예결산 회의비 1,000만원) 3만원/명×10명/회×3회/월×12개월, (기재부 예결산 회의비 300만원)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국회 예결산 회의비 300만원)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 * (13년) 17백만원 → ('14년) 16백만원
- (유형자산) 회계관리를 위한 사무용 전산기기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만원
 - * (13) 3백만원 → ('14) 3백만원, 동결

구 분	'12예산	'13예산
□ 회계관리비	74백만원	74백만원
▪ 운영비	인쇄비,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42백만원	전년 대비 동결
▪ 여비	세출사업 실태조사, 평가 등을 위한 국내외 여비 12백만원	전년 대비 1백만원 증액
▪ 업무추진비	관계기관 협의 등 회계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경비 17백만원	전년 대비 1백만원 감액
▪ 유형자산	회계관리를 위한 전산기기 등 자산취득비 3백만원	전년 대비 동결

□ 지원 필요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회계관리비	74	74	74	-	-
○ 에특회계관리운용	74	74	74	-	-
☐ 세출예산비목(합계)	64	74	74	-	-
○ 운영비(210-01)	47	42	42	-	-
○ 국내여비(220-01)	2	2	4	-	-
○ 국외여비(220-02)	5	10	9	-	-
○ 업무추진비(240-01)	17	17	16	-	-
○ 자산취득비(430-01)	3	3	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특회계의 편성, 집행, 결산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실경비 반영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0.74	○ 운영비(42백만원), 여비(12백만원), 업무추진비(17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4	0.74	○ 운영비(42백만원), 여비(12백만원), 업무추진비(17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5	0.53	○ 운영비(30백만원), 여비(5백만원), 업무추진비(15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6	0.48	○ 운영비(30백만원), 여비(5백만원), 업무추진비(10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17	0.4	○ 운영비(25백만원), 여비(5백만원), 업무추진비(7백만원), 자산취득비(3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투자계정, 용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용자계정의 세입·세출) ②용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5. 용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위

- '95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비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회계위탁관리비	0.68	0.68	0.74	0.74	0.7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9.5백만원 전용
- ('11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10백만원 전용, 예산 절감을 통해 4백만원 불용
- ('12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5백만원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0.68 ()	()	0.1 ()	0.68 ()	0.68 ()	()	()
'11년	0.68 ()	()	0.1 ()	0.68 ()	0.64 ()	()	0.04 ()
'12년	0.74 ()	()	0.05 ()	0.74 ()	0.74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직접수행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부 산출내역

'13년 예산(74백만원)	'14년 예산(7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42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특회계 예결산서 인쇄비용 30백만원- A4 용지 구입 6백만원-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 6백만원○ 여비 12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비 2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지내 10만원/월×12개월=120만원* 근무지외 10만원/분기×2회/분기×4분기=80만원- 국외여비 10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북남미·아프리카권 1회 7.5백만원* 아시아권 1회 2.5백만원○ 업무추진비 17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결산 회의비 1,00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원/명×10명/회×3회/월×12개월- 기재부 예결산 회의비 35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국회 예결산 회의비 35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42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특회계 예결산서 인쇄비용 30백만원- A4 용지 구입 6백만원-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 6백만원○ 여비 13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비 4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지내 20만원/월×12개월=240만원* 근무지외 20만원/분기×2회/분기×4분기=160만원- 국외여비 9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북남미·아프리카권 1회 7백만원* 아시아권 1회 2백만원○ 업무추진비 16백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결산 회의비 1,00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원/명×10명/회×3회/월×12개월- 기재부 예결산 회의비 30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국회 예결산 회의비 30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원/명×5명/회×2회/월×12개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재량, 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29,580	41,080	67,110	26,030	63.4

* 사업코드 : 19 - 24 - 4 - 110 - 115 - 5100 - 5139 - 315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과장(주영준), 사무관(김홍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및 보일러(가스, 기름, 연탄) 지원
총사업비	'07~계속
사업규모	계속사업('13년까지 1,878억원)
지원조건	저소득층 4.5만 가구 지원
사업시행주체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2. 사업목적

- ☐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단열, 창호시공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비용 절감 지원
-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을 통한 난방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 단열·창호공사 등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비용지출 절감

3. '14년 예산 내용

□ 산출근거

- 시공·물품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 62,550백만원
 - 지원조건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3년 대비 63% 증액
 - 산출내역 : 1.39백만원 × 4.5만 가구 = 62,550백만원
 - 대상 가구별 주택상황에 맞추어 1.5백만원 한도에서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
 - * 지원조건 변경 : ('13년) 가구당 1.2백만원 한도→('14 요구) 1.5백만원 한도
- 사전 에너지컨설팅 : 사전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고, 시공 범위, 지원내역 결정을 위한 에너지컨설팅비 2,700백만원
 - 산출내역: 0.06백만원 × 4.5만 가구 = 2,700백만원
 - 에코하우스 프로그램,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에너지손실 부위를 파악하고, 공사 범위 및 지원내역 결정
 - * 조사와 시공의 분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고
- 사후 에너지 진단, 교육 등 : 주택에너지 진단을 통해 시공 전·후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 분석 및 시공업체 전문화를 위한 시공 실무 교육비 등 1,195백만원
 - 사후 주택에너지 진단 위탁조사: 400백만원 (1,500가구)
 - 열화상카메라, blower door test 등을 이용하여 시공 후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에코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절감율 산출
 - 시공업체 교육 : 7.5백만원 × 20회 = 150백만원
 - 기 타 : 시행기관 관리비(450백만원), 감리비(100백만원), 수수료(60백만원), 사업설명회(35백만원) 등 645백만원
- 간접비 : 인건비(537백만원), 회의비(10백만원), 평가비(10백만원), 출장 및 현장점검비(30백만원), 시스템개발 유지보수(60백만원), 통신비(8백만원), 소모품비(10백만원)등 665백만원

○ 주요 변동내역

구 분	'13예산	'14예산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410.8억 원	671.1억 원
▪ 시공 및 물품 지원	1.2백만원 한도 지원 (총 지원가구 중 20% 범위 내에서 1.5백만원 지원)	지원한도 1.5백만원으로 상향 (총 지원가구 중 20% 범위 내에서 2백만원 지원)
▪ 에너지컨설팅		4.5만가구에 대해 사전 에너지컨설팅
▪ 에너지진단		0.15만가구에 대해 사후 에너지진단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가격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증가 둔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로 인해 에너지 빈곤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29,085	41,080	67,110	26,030	163.3
▪ 시공·물품지원 (산출근거)	28,213	39,825 (시공 : 1,200천 원 x 3.05만가구 물품: 430천 원 x 0.75만가구)	62,550 (1,390천 원x 4.5만가구)	23,175	157.0
▪ 에너지컨설팅 (산출근거)	-	-	2,700 (60천 원x 4.5만가구)	2,100	-
▪ 에너지 진단 교육 등 (산출근거)	388	739	1,195	606	161.7
▪ 간접비 (산출근거)	484	516	665	149	128.8
□ 비목(합계)	29,085	41,080	67,110	26,030	163.3
○ 민간경상보조(320-01)	29,085	41,080	67,110	26,030	163.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단위: 가구)

구 분	'13	'14	'15	'16	'17
시공·물품 지원 가구	38,000	45,000	38,000	38,000	38,000

* '13년도는 동일 가구에 시공, 물품 중복 지원을 한 경우에도 개별 실적
으로 집계, '14년 이후는 중복 실적 배제 예정

○ 추진방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 저감
 -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총체적 접근
 - 내·외부의 사업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만족도조사, 설문평가 등을 통한 사업검토, 추가 개선과제 발굴
- 에너지전문위원, 유관기관 등 내·외부와 전문성 연계 강화
 -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등 전문 위원들과의 자문 연계
 - 사회복지기관 및 전문시공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연계
 - 전담직원 임명·조직운영으로 책임과 권한 명확화

○ 제도개선사항 :

- 지원 전(全)가구에 대해 사전 진단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분석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에너지컨설팅 제도 도입
- 사후 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효과성 및 에너지비용 저감량 산출
- 우수한 시행기관 및 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및 인증제도 도입
- 대상가구별 배정액 상향으로 주택효율개선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 3.05만가구×1.20백만원 · 물품 : 0.75만가구×0.43백만원 · 교육, 진단 등 : 739백만원 · 간접비 : 516백만원
'14	6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및 물품: 4.5만가구×1.39백만원 · 에너지컨설팅: 4.5만가구×0.06백만원 · 교육, 진단 등: 1,195백만원 · 간접비 : 665백만원
'15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및 물품: 3.8만가구×1.47백만원 · 에너지컨설팅: 3.8만가구×0.06백만원 · 교육, 진단 등: 1,200백만원 · 간접비 : 660백만원
'16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및 물품: 3.8만가구×1.47백만원 · 에너지컨설팅: 3.8만가구×0.06백만원 · 교육, 진단 등: 1,200백만원 · 간접비 : 660백만원
'17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및 물품: 3.8만가구×1.47백만원 · 에너지컨설팅: 3.8만가구×0.06백만원 · 교육, 진단 등: 1,200백만원 · 간접비 : 660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4조 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추진경위

- '06.11월 : 대통령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사업 등 '에너지복지사업 추진계획 확정'

- 17대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08년 8.15 경축사)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3)

- ▶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방향” 및 “50대 실천계획”
- ▶ 7-7-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 ▶ 7-7-3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원대상 확대
- ▶ 7-7-8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현물 지원

- '06. 12월 : 한국에너지재단 발족 및 시범사업 시행
- '07년 5월 : 산업자원부 · 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지원년 선포
- '07년 1차년도 사업 시작(예특회계 보조 100억원으로 17천 가구 지원)
- '08년 : 예특회계 285억원, 80천여 가구 지원
- '08년 : 제17대 대통령당선자 선거공약 포함(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충)
- '09년 : 복권기금 285억원, 64천여 가구 지원
- '10년 : 복권기금 292억원, 43천여 가구 지원
- '11년 : 복권기금 194.5억원, 21천여 가구 지원
- '12년 : 예특회계 295억원, 29천여 가구 지원
- '13년 : 예특회계 411억원으로 38천여 가구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292	194.5	310.8	410.8	671.1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1976년부터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에너지부 주관 하에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총 주거비용을 줄이고 복지를 개선하는 주택단열지원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시행중

□ 영국

- “Warm Front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 대상 난방기기 교체, 이중벽 및 다락방 단열 공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5) 사업추진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①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2월
② 사업 참여자 결정	• 시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	2월
	• 시공업체 공모 및 선정 * 에너지재단, 선정평가위원회	2월
	• 예비명부 발굴(지자체 → 에너지재단) * 시군구별 예산배정 및 지원가구 목표치 할당	3~5월
	• 물품, 자재(창호, 단열재 등) 입찰	3~5월
③ 지원가구 선정	• 현장조사(시행기관 및 시공업체) * 지원가구 최종 선정 및 지원내역 결정	5~8월
	• 계약체결 및 자금배정	6~10월
③ 시공 및 물품 설치	• 시공, 물품설치	6~10월
	• 에너지진단	8~10월
	• 감리 및 평가(현장점검)	10월
	• 변경 및 하자보수	9~10월
	• 정산보고(시행기관 → 에너지재단)	10~11월
④ 사업결과 보고	• 결과보고(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12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세부 산출내역
- (참고2)관련근거 법령조문

'13년 예산(41,080백만원)	'14년 예산(67,110백만원)
<p>○ 직접사업비 40,56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지원: 37,650백만원 (1.16백만원 × 3.25만 가구) - 물품지원: 2,320백만원 (0.31백만원 × 0.75만 가구) - 교육비: 150백만원 - 기타: 444백만원 (수수료, 조사비, 감리비 등) 	<p>○ 직접사업비 66,44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물품 지원: 62,550백만원 (1.39백만원 × 4.5만 가구) - 교육비: 150백만원 (7.5백만원 × 20회) - 에너지컨설팅(사전) : 2,700백만원 (0.06백만원×4.5만가구) - 에너지성과(사후) : 400백만원 (에너지진단 위탁조사 1,500가구) - 기타: 645백만원 (수수료, 조사비, 감리비, 사업설명회 등)
<p>○ 간접사업비: 51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사업담당자): 396백만원 - 회의비: 9.5백만원 (0.95백만원 × 10회) - 평가비: 10.5백만원 (2.625백만원 × 4회) - 현장점검비: 7백만원 - 사업설명회: 25백만원 (1.923백만원 × 13회) - 시스템개발 및 관리: 50백만원 - 통신비: 8백만원 - 소모품비: 10백만원 	<p>○ 간접사업비: 66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사업담당자): 537백만원 - 회의비: 10백만원 (1백만원 × 10회) - 평가비: 10백만원 (2.5백만원 × 4회) - 출장 및 현장점검비: 30백만원 - 시스템개발 및 관리: 60백만원 - 통신비: 8백만원 - 소모품비: 10백만원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에너지법 제4조 5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5항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②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③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④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⑤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⑥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유전개발사업출자(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유전개발사업출자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사업코드 : 19-24-4-110-115--5300-5331-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장(유법민, 044-203-5140), 사무관/주무관(고세호/윤지영, 044-203-5144/514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5조 796억원)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2. 사업목적

☐ 석유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 및 생산 광구 매입·유망기업 인수를 지원

○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통하여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석유 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 경제 기반 구축 도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 정상외교를 통하여 추진중인 UAE 10억배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 광권매입비의 일부 지원을 위해 석유공사에 1,700억원 출자
 - 16,500억원(광권매입비) × 10.3% ≒ 170,000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유전개발출자	220,000	170,000
▪ 유전개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3개 탐사유전 개발, 10억배럴 규모 신규 생산 유전 확보 및 북미지역 셰일가스 사업 신규 참여 투자비 지원 - 3.9조원 (UAE 및 셰일가스 총 투자비) × 6% ≒ 22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10억배럴사업 투자비 지원 - 16,500억원(광권매입비) × 10.3% ≒ 170,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UAE 10억배럴 유전개발사업은 국가적으로 10억배럴의 획기적 매장량 확보는 물론 지분생산량(약 7만배럴/일) 전부 국내 직접 도입 가능 등 안정적(40년) 원유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우수 국책 사업으로 지원필요성이 매우 높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유전개발사업출자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UAE 10억배럴 사업 투자비 지원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비목(합계)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 일반출자금(301-01)	690,323	220,000	170,000	△50,000	△22.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사의 부채비율 상승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기까지 재정적 뒷받침 필요
 - 셰일가스 등 신성장동력 선점 및 유망탐사광구 확보 기회 증대를 위한 최소한의 출자 지원 필요
- 석유평사의 질적 역량 제고를 위해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탐사사업 중심의 투자를 유도
 - 향후, 명확한 전략목표 아래 유기적 성장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확대 검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200	3.9조원 × 6%
'14	1,700	16,500억원 × 10.3%
'15	1,000	2.7조원 × 3.7%
'16	1,000	2.7조원 × 3.7%
'17	1,000	2.9조원 × 3.4%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투자계정의 세출)
-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5조 :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제2항 :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 제3조 : 사업의 범위 등

- 제3항 :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 추진경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석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00년부터 동해-1 가스전 개발사업에 출자를 시작하였고 '03년부터는 해외개발 및 생산 (베트남 11-2 등) 광구에도 출자 시작
-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해외유전개발 지원을 위한 출자 등의 지원 확대
- UAE 10억배럴 유전개발사업은 국가적으로 10억배럴의 획기적 매장량 확보는 물론 지분생산량(약 7만배럴/일) 전부 국내 직접도입 가능 등 안정적(40년) 원유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우수 국책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유전개발사업출자	12,556	7,100	6,903	2,200	1,7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 시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안 강구 필요
(‘10년 국정감사)
- 탐사성공률 제고를 통해 해외 석유개발 투자회수율을 증대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역량 집중 필요(‘11년 국정감사)
- 해외유전 자산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 및 경영개선을 위한 석유공사의 자구노력 필요(‘13년 예정처)

○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12년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자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업무 부당처리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기술평가 등 부적정 등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0년 국정감사) 해외 석유개발에 삼성물산, GS 등 민간사가 공동 참여하였으며 미국 Ankor사 지분 29%를 민간 컨소시엄에 매각
- (‘11년 국정감사) 탐사성공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4개 비유망자산 선정
- (‘12년 감사원)
 - 신규 자원개발 추진시 국내 도입 여부를 고려
 - 캐나다 HOC 관련하여 해외 석유 투자기준 보완
 - SOC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보장과 수익성 제고방안 강구
- (‘13년 예정처) 재무구조개선 TF 권고사항 준수,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유동화, 재무적 투자자 유치,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 개선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비산유국임에도 자국 석유가스 기업의 대형화에 성공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 프랑스 정부의 국내석유개발 보호육성으로 Total사는 자생력을 확보하여 일산 300만b/d의 슈퍼메이저로 성장
- 스페인은 '86년 EU가입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석유회사를 확립하고자 오늘날 Repsol을 육성
- 이탈리아는 국가 경제 재건에 있어 중요한 자원개발 사업의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오늘날 Eni를 육성

외국의 석유개발 기업 육성 성공 사례

구분	추진배경	육성 방식	결과
프랑스	-석유를 전략적 물자로 인식, 정부의 자주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지속적인 M&A로 대형화 -탄화수소 보조금 및 성공 불용자 지원 -90개 은행과 기업들 지원	-세계 9위 슈퍼메이저로 성장 -자주개발률 93% 달성
스페인	-'86년 EU가입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석유 기업 확보	-Repsol 출자등 재정지원 -YFP(아르헨 석유기업) 인수시 정부 보증지원	-Repsol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국가 자주개발률 62% 달성
이태리	-전후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자원확보	-초기에 M&A통해 정부 지분 100%의 ENI 설립 -탐사비용 40% 정부보조 -단계적 민영화 추진	-ENI가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성장 -자주개발률 50% 이상 달성

(5)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계획수립(석유공사) ⇨ ② 출자금 배정요청(석유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③ 출자금 심사 및 배정요청(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 ④ 심사(기획재정부) ⇨ ⑤ 출자금 계좌입금(기획재정부 → 석유공사) ⇨ ⑥ 자금집행(석유공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2013년 신설된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광구/사업 낙찰 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6. 참고자료 : 석유공사 10억배럴사업 출자 필요성

① 대상사업은 획기적 매장량 확보 등 수급 안정성 기여 확실

- 10억 배럴의 획기적인 매장량 확보, 생산물량(약 7만배럴/일) 전부 국내 직접 도입가능 등 안정적(40년) 원유 공급처 확보사업

< 매장량 10억 배럴확보의 의미 >

- '12년 우리나라 수입원유량(9.5억배럴) 상회, 석유제품 수출량(4.4억배럴)의 2.4배
- 석유공사가 지난 30년간 확보한 매장량('12년말 기준 13.1억배럴)의 76%에 달하는 물량
- 공사의 '12년말 일일생산량(24만b/d, 해외출자회사 포함)의 30%에 달하는 수준

② 사업수익 창출 및 정부배당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 2조원 이상의 수익 발생 전망

- 투자비 회수후 배럴당 2불의 수익 추정시, 안정적 원금회수와 동시에 약 2조원* 이상의 수익 전망

* 배럴당 2달러 수익 추정시, 7만b/d × \$2/배럴 × 365일 = 51백만불(1년)
560억원(51백만불 한화환산) × 40년 = 2조 2,400억원

- 배당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수익 발생

- 석유공사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책사업으로 동 사업을 수행, 향후 수익 발생 시 정부배당 실시예정

③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보조

- 출자지원을 통한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효과 기대

- 출자지원 금액 증액(2,500억원) 시 1차심의 결과(100억원) 대비 '14년 부채비율은 5%P 감소한 193%로 추정

- 정부출자를 통한 석유공사 신용등급 하락위험 방지

- 정부 지원으로 투자적격 등급 유지(S&P : A+, Moody's : A1), 출자 감소 등 정부지원 부재시 석유공사 신용등급 하락 확실

해외자원개발조사(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해외자원개발조사	9,250	9,070	7,828	△1,242	△13.7

* 사업코드 : 21-24-4-110-115-5300-5333-302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사무관(박석주, 044-203-515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조사사업 '78년~, 기반구축사업 '98~, 용자심의회운영 '11~,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11~)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3,252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조사사업 : 사업비의 80~100% 이내 민간보조 - 기반구축사업, 용자심의회 운영,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사업비의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해외자원개발협회(용자심의회운영,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2. 사업목적

- ☐ 주요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정보, 국제협력의 지원
- ☐ 에너지 및 산업원료광물의 전략광종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정부협력사업 후속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조사사업] : 6,633백만원

- '19년 자주 개발목표 42% 달성(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0.12) 및 국정과제인 “해외자원개발 내실화”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조사(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6,633백만원
- 산출내역 : '13년 대비 8.9% 감액된 6,633백만원
 - 투자여건조사 : 40건 513백만원 ('13년 50건 600백만원)
 - 기초탐사(기획탐사 포함) : 21건 5,420백만원('13년 21건 5,000백만원)
 - 민간 지원 15건 2,920백만원
 - 정부 간 협력사업 후속, 민간제공을 위한 탐사사업 발굴 등 기획탐사 6건 2,500백만원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5건 700백만원 ('13년 12건 1,680백만원)

【기반구축사업】 : 710백만원

- 자원정보 기반(자원정보 수집DB확충, 자원정보시스템 개선, 정보수집 채널 확대)와 국제협력(전략지역 에너지자원 협력 및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협력 추진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710백만원
- 산출내역 : '13년 대비 36% 감액된 710백만원('13년 1,110백만원)
 - 자원정보 수집·제공 133건 460백만원('13년 177건 610백만원)
 - 통신원 운용 5지역 80백만원('13년 15지역 280백만원)
 - * ('13) 해외사무소·통신원운용 → ('14년) 해외사무소 운용 제외
 - 국제교류 협력 12건 170백만원('13년 15건 220백만원)

【용자심의회 운영】 : 350백만원

-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석유·광물자원의 자주개발자원 확보를 위해 용자 신청한 사업에 대한 용자심의회 운영비, 전문기관의 기술성 심사비, 회계·법무법인의 감면심사비, 현장실사비, 협회의 위탁수수료 등을 위한 사업비 350백만원

- 산출내역 : '13년 대비 7.9% 감액된 350백만원 ('13년 380백만원)
 - 위원수당 63백만원 : (석유) 500천원 x 12명 x 8회 = 48백만원
(광물) 500천원 x 10명 x 3회 = 15백만원
 - 심사비 232.5백만원 : (기술1) 2,000천원 x 25건 = 50백만원
(기술2) 1,000천원 x 25건 = 25백만원
(회계) 27,500천원 x 3회 = 82.5백만원
(법률) 25,000천원 x 3회 = 75백만원
 - 심의회 운영비 54.5백만원 : 용자심의회 운영관련 관리비, 현장 실사 및 워크숍 등
- * 주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자심사, * 주2)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
자원공사 용자심사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135백만원

- 중국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 자원확보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형 복합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자원개발 +건설+기간설비 등) 발굴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35백만원
- 산출내역 : '13년 대비 55% 감액된 135백만원('13년 300백만원)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지원제도 연구 : 120백만원(2건)
- 실무협의회 운영비 : 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조사사업]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 동광 등 주요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기업의 투자위험도를 저감시키고, 해외자원 개발의 탐사성공 중심 질적 성장을 위하여
-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 검토, 후속탐사, 개발방향 제시 및 지분·권리 인수타당성 조사 지원 필요
- 유망 탐사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에 제공 추진

- 정부간 자원개발-인프라 지원 협력 후속조치와 관련 상대측이 제공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광물부존 잠재성 및 개발가능성 등의 조사가 필요
- * '78~'12년도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민간단독사업에 비해 203% 높은 투자회수율을 보임. (한국생산성본부 '13.10월)

[기반구축사업]

- 신규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광물자원 선점을 위하여 자원부국과 협력교류기반 구축 필요
-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 자원협력위, 광물공동위, 정부사절단 참가
- 공사 및 민간부문 자원협력조사단 지원 : 광업협회 등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한 조사단 지원 등을 통해 신규사업발굴기반 마련
- 국제행사 개최·참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방면의 국제 교류 협력 추진

[융자심의회]

- 국내외 석유·가스 및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융자심의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장 실시비, 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심사비, 협의회 위탁수수료 지원 필요
- * '09년부터 융자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을 융자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변경('08년 지경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자원개발 + 도로, 항만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국제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 조사비 지원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해외자원개발조사	9,250	9,070	7,828	△1,242	△13.7
▪ 조사사업	7,280	7,280	6,633	△647	△8.9
▪ 기반구축사업	1,290	1,110	710	△400	△36.0
▪ 용자심의회운영	380	380	350	△30	△7.9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300	300	135	△165	△55.0
☐ 비목(합계)	9,250	9,070	7,828	△1,242	△13.7
○ 민간경상보조(320-01)	9,250	9,070	7,828	△1,242	△13.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자원 자주개발 목표 달성 및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 투자 활성화를 지원

- 기술, 정보, 국제협력 지원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 유망사업 발굴, 제공을 통한 초기단계 리스크 경감

* 자주개발 목표 상향조정(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10.12.22))
: 6대 전략광물 : ('09) 25.0% → ('12) 32.0% → ('16) 40.0% → ('19) 42.0%

< '19년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목표>

구 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 자주개발률	50%	30%	35%	38%	42%	40%
- 자주개발 공급량	63.3백만톤	2150톤U	24.5백만톤	583.8천톤	453.8천톤	68.3천톤

※ 新전략광물(희토류, 리튬) : ('09) 7.3% → ('12) 12.0% → ('16) 20.0% → ('19) 26.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90.7	- 조사사업 : 72.8 - 기반구축사업 : 11.1 - 융자심의회운영 : 3.8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3.0
'14	78.3	- 조사사업 : 66.3 - 기반구축사업 : 7.1 - 융자심의회운영 : 3.5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1.4
'15	81.6	- 조사사업 : 72.8 - 기반구축사업 : 12.9 - 융자심의회운영 : 3.8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3.0
'16	81.6	- 조사사업 : 72.8 - 기반구축사업 : 12.9 - 융자심의회운영 : 3.8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3.0
'17	81.6	- 조사사업 : 72.8 - 기반구축사업 : 12.9 - 융자심의회운영 : 3.8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3.0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보조) 및 제11조(융자)

○ 추진경위

- 해외자원개발조사는 '7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기반구축사업은 '9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해외직접투자는 '98년 이후 '08년 까지 예산 반영되었으며, '09년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로 전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해외자원개발조사	59	100	92.5	90.7	78.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9 (59)	()	()	59 (59)	59 (59)	()	()
'11년	100 (100)	()	()	100 (100)	100 (100)	()	()
'12년	92.5 (92.5)	()	()	92.5 (92.5)	92.5 (92.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지분인수 타당성조사 및 해외패키지형 자원개발 조사사업을 통한 대기업 지원 부적절(2014년 예결위 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 예산축소(지분인수타당성조사 1,680백만원→700백만원, 해외패키지형 자원개발 300백만원→135백만원) 및 중소기업 위주 지원계획
- 평가결과 : 조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민간단독 추진사업보다 투자회수율은 2배 이상 높고, 성공률은 3.4배 높은 성과를 보임(한국생산성본부, 2013)

<조사지원 vs 민간단독 투자/회수 현황>

(단위 : US \$ 천)

구분	해 외 자 원 개 발 조 사 지 원 사 업					민 간 기 업 단 독 추 진 사 업				
	개수	투자액	회수액	회수율	성공률	개수	투자액	회수액	회수율	성공률
	219	6,327,533	3,636,455	57.5%	8.2%	250	5,271,518	1,490,000	28.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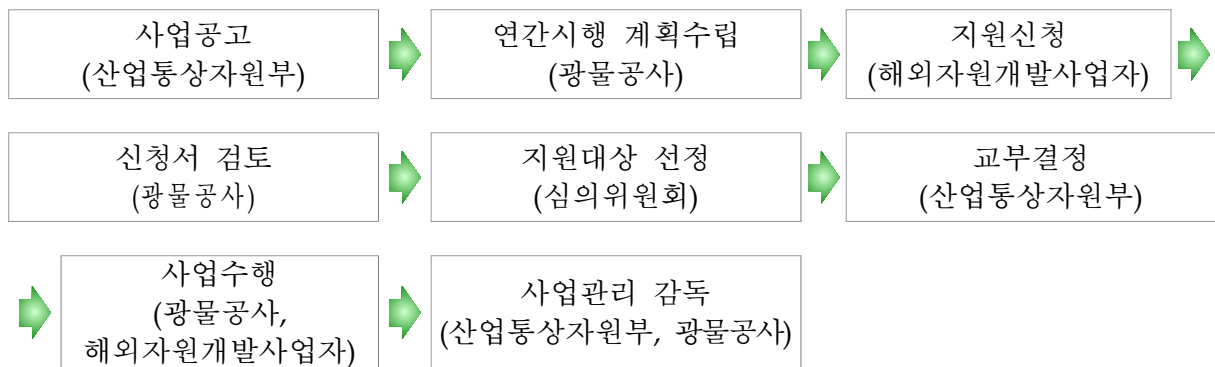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 해외광물자원조사에 26.8억엔(328.9억원) 보조 지원('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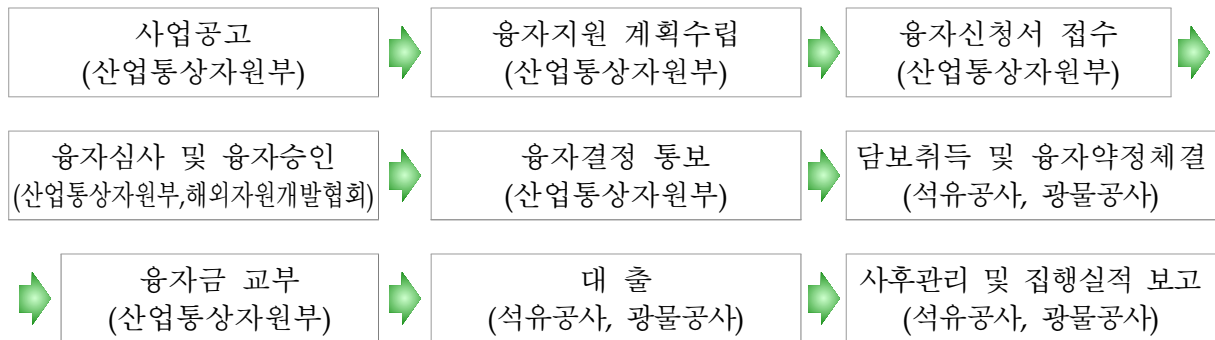
기관	NEDO	JOGMEC
사업내용	- 신에너지개발기구	- 석유/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
정보제공 및 프로젝트 발굴	- 해외사무소(5개소) - NEDO정보센터 운영	- 해외사무소(11개소) - 해외광업사정조사(자원정보조사) - 국제포럼개최 및 기술교류 사업 - 자원정보센터 운영
기초탐사	- 해외석탄개발가능성조사(민간기업) - 해외지질구조조사(NEDO) - 석탄자원개발기초조사(NEDO) - APEC지역개발조사(NEDO)	- 해외지질구조조사(JOGMEC) - 해외공동지질구조조사(민간기업) - 인공위성영상자료해석(JOGMEC) - 자원개발협력 기초조사(JOGMEC) - 연구협력사업(JOGMEC)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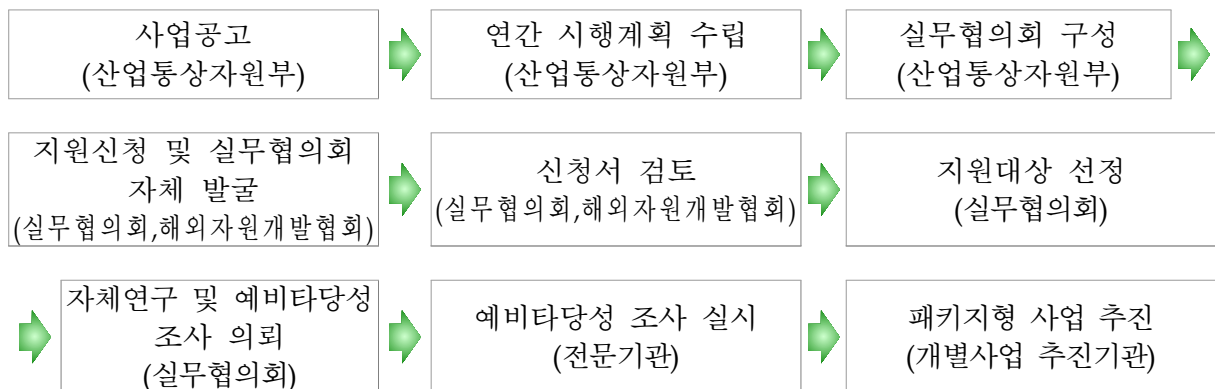
○ 해외자원개발조사



○ 용자심의회 운영



○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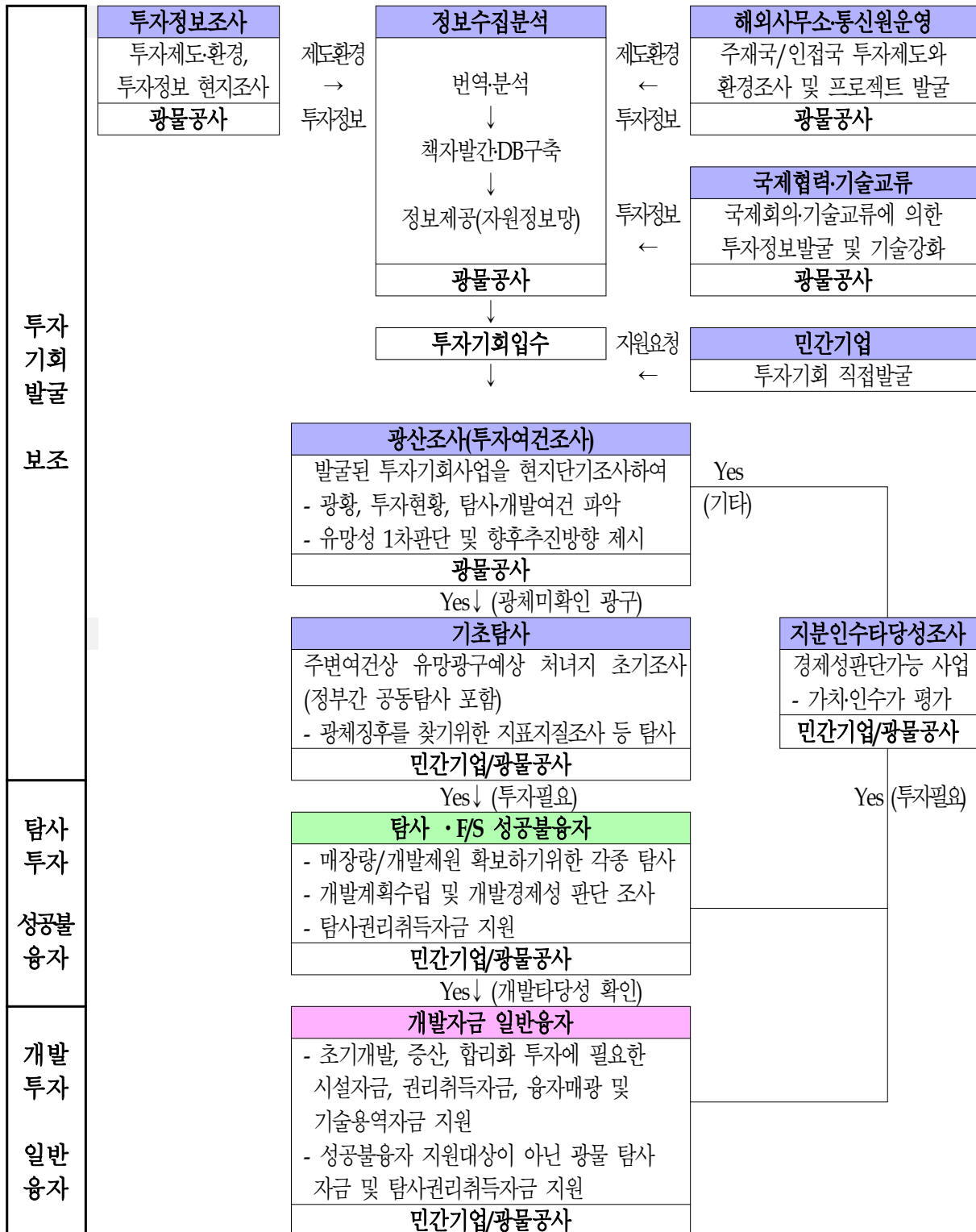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 2014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세부내역

참고 1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참고 2

2014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세부내역

(백만원)

사 업 명		2013 예산		2014 예산		증감액 (B-A)
		사업량	금액(A)	사업량	금액(B)	
○ 조사사업		83건	7,280	66건	6,633	△ 647
- 투자여건조사		50광산	600	40광산	513	△ 87
- 기초탐사(기획탐사 포함)		21광산	5,000	21광산	5,420	420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12건	1,680	5건	700	△ 980
○ 기반구축사업			1,110		710	△ 400
정보 지원	- 자원정보수집·제공	177건	610	133건	460	△ 150
	- 해외사무소·통신원	15지역	280	5지역 (사무소제외)	80	△ 200
국제 협력	- 국제교류협력	15건	220	12건	170	△ 50
○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380		350	△ 30
○ 패키지 사업지원			300		135	△ 165
계			9,070		7,828	△ 1,242

자원협력기반구축(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자원협력기반구축	699	730	700	△ 30	△ 4.1

* 사업코드 : 21-24-4-110-115-5300-5333-303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장(유법민, 044-203-5140), 주무관(이태욱, 044-203-514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자원부국, 원전수출대상국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자원분야 세일즈 외교 추진

- 유·가스, 전략광물 등 주요 자원의 유망 프로젝트 확보와 후속 원전 수출을 위한 고위급 면담 등 공식 네트워크 구축
-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자원협력위 개최 등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강화

* 자원협력위 :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간 협력채널(33개 국가 운영)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자료인쇄비, 안내홍보물, 전산용품 등 자원협력 지원을 위한 경비 194백만원
 - 산출내역 : 자원협력 1회당 평균 5백만원 × 40회
- (국외여비) 자원협력위원회, 원전수출협력 등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외 출장 경비 315백만원
 - 산출내역 : 자원협력 1회당 평균 7.87백만원(3명 기준) × 40회
- (사업추진비) 회의장임차료, 통역, 차량임차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자원협력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 191백만원
 - 산출내역 : 국내 자원협력 10백만원 × 14회 + 해외 자원협력 5.1백만원 × 10회

□ 지원 필요성

- 에너지 수요 폭증, 자원부국들의 자원무기화 등으로 세계적 자원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자원외교를 대폭 강화 중
- 정상 자원외교 성과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협력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자원외교 확대 추세에 따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와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을 위한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한국형 원전 홍보 및 원전 수출 추진국과의 정부간 협력 채널 구축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자원협력기반구축	699	730	700	△ 30	△ 4.1
☐ 비목(합계)	699	730	700	△ 30	△ 4.1
○ 일반수용비(210-01)	93	224	194	△ 30	△ 13.4
○ 국외여비(220-02)	458	315	315	-	-
○ 사업추진비(240-01)	148	191	19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협력을 지속 추진
 -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큰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자원분야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
- UAE 원전수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유망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
 - 베트남, 영국, 핀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와 정부 네트워크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2.24억(5.6백만×40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91억(국내 10백×14회, 해외 5.1백×10회)
'14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1.94억(5백만×40회) ▪ 국외여비 : 3.15억(7.87백만×40회) ▪ 사업추진비 : 1.91억(국내 10백×14회, 해외 5.1백×10회)
'15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1.45억(5백만×30회) ▪ 국외여비 : 2.35억(7.87백만×30회) ▪ 사업추진비 : 1.42억(국내 10백×10회, 해외 5백×10회)
'16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1.35억(5백만×25회) ▪ 국외여비 : 2.15억(8백만×25회) ▪ 사업추진비 : 1.30억(국내 10백×10회, 해외 5백×6회)
'17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1.10억(5백만×22회) ▪ 국외여비 : 1.78억(8백만×22회) ▪ 사업추진비 : 1.07억(국내 10백×8회, 해외 5백×6회)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추진경위

-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으로 해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의 중요성이 대두 되어 '07년부터 사업 시작
- 원전 수출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 채널 구축 추진(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10.1월 비상경제대책회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자원협력기반 구축	6.3	7.3	7.3	7.3	7.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개발 협력강화 및 원전 수출관련 고위급 회담, 실무급 협상 증가로 여비 증가('10, '11, '12년)
- (불용) 대선 정국 등으로 고위급 자원외교 및 실무급 사전 조사단 파견이 연기되어 국외여비 등의 일부 집행 잔액 발생('12년)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6.3 ()	()	±2.0 ()	()	6.3 ()	()	- ()
'11년	7.3 ()	()	±1.4 ()	()	7.3 ()	()	- ()
'12년	7.3 ()	()	±1.6 ()	()	7.0 ()	()	0.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중국은 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에 따라 공격적인 자원외교 활동을 통한 자원확보에 노력
 - 후진타오 주석의 이집트, 가봉, 알제리 방문, 원자바오 총리의 이집트, 콩고, 앙골라 방문 등 자원외교 활동을 강화
- 일본은 석유·가스,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을 높이기 위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
-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투자위험이 큰 주변 개도국에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

(5) 사업추진절차 : 직접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자원협력위원회 개요

□ 설치 목적

- 에너지·자원분야 세일즈외교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 증진

□ 운영 현황

-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중동·중앙아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분야 총 34개 자원협력위 운영
 - 협력 의제의 중요성 및 성과에 따라 개최 주기가 다양(연 2회~3년, 대부분 비정기 개최, 양국간 교대 개최가 원칙)
 - 수석대표 : 장관급 6개, 차관급 4개, 실장급 5개, 국장급 19개

□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현황

'14.1월 현재

지역	국가	설치	최근 수석대표	개최현황
아시아 · 대양주 (10)	인도네시아	'79. 9	장관	'12. 2, 1차(인)
	베트남	'01. 2	차관	'13. 11, 4차(베)
	몽골	'92. 5	국장	'11. 10, 11차(한)
	필리핀	'03. 6	국장	'06.11, 1차(필)
	미얀마	'05. 4	차관	'12. 9, 5차(미)
	호주	'80. 2	실장	'12. 2, 26차(한)
	파푸아뉴기니	'06. 7	국장	'12.7 2차(한)
	라오스	'07. 7	국장	'10.12, 2차(라)
	동티모르	'08. 10	장관	'08.10, 1차(동)
	캄보디아	'09. 5	국장	'09.5, 1차(캄)

지역	국가	설치	최근 수석대표	개최현황
러시아 CIS (5)	러시아	'92. 5	실장	'11.10, 11차(한)
	카자흐스탄	'02. 11	실장	'13.9, 9차(카)
	우즈베키스탄	'05. 5	실장	'13.1, 4차(우)
	아제르바이잔	'06. 5	차관	'12. 5, 4차(아)
	투르크메니스탄	'08. 10	장관	'13. 11, 4차(투)
중남미 (8)	브라질	'04. 11	장관	'07.12, 2차(브)
	칠레	'04. 6	국장	'12. 6, 4차(칠)
	아르헨티나	'04. 11	국장	'08. 9, 2차(한)
	멕시코	'05. 9	국장	'11. 4, 3차(멕)
	페루	'03. 2	국장	'12. 11, 6차(페)
	에콰도르	'07. 12	국장	'08. 11, 1차(에)
	콜롬비아	'09. 3	국장	'11. 4, 2차(콜)
	베네수엘라	'09. 8	국장	'11. 5, 3차(한)
아프 리카 (5)	콩고(민주)	'05. 3	국장	'13. 10, 2차(콩)
	알제리	'06. 3	국장	'09. 5, 2차(알)
	나이지리아	'06. 3	장관	'06.6, 1차(한)
	앙골라	'06.10	국장	'09.8, 1차(한)
	가봉	'11. 6	실장	'13.10 2차(가)
중동 (6)	이라크	'07. 4	장관	'07. 9, 1차(두바이)
	사우디	'99.10	차관	'09. 11, 4차(사)
	오만	'05.11	국장	'07. 12, 1차(한)
	카타르	'06. 4	국장	'10. 10, 4차(한)
	쿠웨이트	'05.11	국장	'10. 5, 2차(한)
	UAE	'06. 5	국장	'06. 12, 1차(한)

해외자원개발(음자)사업(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해외자원개발(음자)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사업코드 : 21 - 24 - 5 - 110 - 115 - 5300 - 5334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장(유법민, 044-203-5140), 사무관(고세호, 044-203-5144),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사무관(박석주, 044-203-515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석유, 가스,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 제고와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사업기간	'82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4조 8,085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음자 - 금리 : 변동금리 * 국고채 3년물 -1.25%p - 대출기간 : 15년 이내(거치 5년 포함) - 소요금액의 50% 이내(국내대륙붕 100%이내)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 석유, 가스,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음자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내외 유전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70,600백만원

-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 시험생산 등 국내대륙붕 석유부존여부 확인, 민간기업 등의 탐사사업비 지원

* 해외유전개발 : 47개 사업 14,050억원 소요

* 국내대륙붕 : 6개 사업 2,308억원 소요

- 민간기업과 연기금 등 금융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

○ 해외광물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0백만원

- 우라늄, 철광석 등 해외광물 광구 신규지분 취득과 기존 광구의 탐사·개발 등 소요자금 지원

* 해외광물개발: 34개사업 16,477억원 소요

구 분	'13예산(추경포함)	'14예산
□해외자원개발용자	130,000	200,600
▪ 국내외유전개발	100,000 (46개사업 2.3조원의 4.3%지원)	170,600 (54개사업 1.6조원의 10.6%지원)
▪ 해외광물개발	30,000 (32개사업 2.3조원의 1.3%지원)	30,000 (34개사업 1.6조원의 1.8%지원)

□ 지원 필요성

- 해외자원개발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
 - 특히 탐사광구의 경우 투자비 리스크가 커서 민간기업은 성공불용자 지원 없이는 투자 승인이 어려움
- 민간의 탐사 활동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부 수단이지만 용자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투자의욕 저해 요인
 - '07년 이전 50%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최근 30%이하 수준으로 성공불용자 지원 효과가 갈수록 미약
 - * 용자 고시 상 해당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가능
- 자원개발 탐사 사업은 미래 국부 창출 기회 요인으로 작용
 - 탐사 사업 평균 수익률은 20% 이상으로 생산 사업(10~15%)에 비해 고부가가치 사업*
 - * SK이노베이션은 브라질 3개 광구에 총 7억불 투자(77백만불 용자지원)하여 17억불 이상 차익 확보, 5.3억불 특별부담금 납부한 사례가 있고, 최근 모잠비크, 미얀마 가스전 발견 등 다수의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음
- 민간 펀드 등의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해 펀드의 손실 중 일부를 보장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 재원을 성공불용자에서 지원
 -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 1,300억원('06~'12년) 지원
 - 유가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민간 펀드 등 활성화 추세
 - * 펀드 보증규모 : ('07~'08) 1,802억원 → ('12) 10,380억원
- 성공불용자제도는 민간 자원개발사업의 탐사활동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부 지원 체제이며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한 지원수단
 - 새로운 국부 창출 기회인 탐사유전 확보, 민간의 투자리스크 완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용자 예산을 증액 지원할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해외자원개발융자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국내외유전개발 (산출근거)	156,000	100,000	170,600	70,600	70.6
▪ 해외광물개발 (산출근거)	44,000	30,000	30,000	-	-
☐ 비목(합계)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 융자금	200,000	130,000	200,600	70,600	54.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융자 지속적인 지원필요

- 융자심의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민간 자원개발사업 선별 지원하고, 해외자원개발융자예산에서 지원받아 '05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현장생산 시험시추비(예상 : '15년 약 1,200억원) 등 국책사업 관련예산은 중기재정계획 소요 예산에 반드시 반영 필요

- 자원개발 펀드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위험보증 규모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투자위험보증사업 운용배수가 15배임을 고려할 때, 100억원 예산 지원 가정시 1,5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 기대 가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유전개발 (1,000) ▪ 해외광물개발 (300)
'14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유전개발 (1,706) ▪ 해외광물개발 (300)
'15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유전개발 (770) ▪ 해외광물개발 (230)
'16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유전개발 (770) ▪ 해외광물개발 (230)
'17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유전개발 (770) ▪ 해외광물개발 (230)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융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 추진경위

- 제 1, 2차 석유판동 이후 석유개발사업 필요성 대두
- '82년 호주 마운트소리 유연탄광을 시작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 기금에서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
- '84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석유개발사업 융자 실시
- '95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석유·광물개발융자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해외자원개발 용자	3,582	3,093	2,901	2,000	1,3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자원개발용자 심의제도 개선('08년 지경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 성공불용자의 저조한 회수율과 특정 대기업에 집중을 완화 등 제도개선('09년 지경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 성공불용자 대상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 및 협회의 업무 위탁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12년 지경부 국정감사 및 기재부 시정 요구사항)
 - 성공불용자 심사 및 심의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결과 요구사항)
- 감사원 지적
 - 용자금의 목적외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현행 수시접수·결정방식 개선 필요('07년 감사원 감사시)
- 기타 언론 및 민원
 -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방안 마련('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해외자원개발용자 심의제도 개선

- 용자심의회 운영주체 및 대출심사업무 위탁기관
변경(용자대행기관→해외자원 개발협회), 위원 중 용자대행기관
소속 임원 제외, 기술성평가는 민간사업은 석유공사,
석유공사사업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08.9.11)
 - 석유개발사업 단계별 평가기준 신설('09.7.1)
- ▶ 성공불용자의 저조한 회수율과 특정 대기업에 집중을 완화 등 제
도개선
- 석유자원량을 사업단계, 시추에 의한 발견, 사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 정의하여 오·남용
방지, 해외광물자원개발용자 심의기준을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구분 평가, 용자심의회 운영기관 등이 용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제
출을 신청기업에게 요청하는 근거 마련으로 용자심의 내실화 등
성공불용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용자심의 강화('09.12.28)
- ▶ 용자금의 목적외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현행 수시접수·결정방식 개선 필요
- 용자금의 목적외 사용업체에 대한 용자원리금 조기회수 외에 2년
간 용자지원 대상 제외 제재조치 마련
 - '08년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 용자시행계획 수립시 일괄접수하여
지원순위 결정
- ▶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방식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성공불용자방식의 출자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
한 출자를 위한 관련법령 근거 우선 마련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출
자여부를 결정하고 출자사업을 관리(one project one company)하
는 전담기관 설립 등 필요
 - 기존 용자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등 사전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지원계획 수립-지경부, 용자대상 평가·심의-용자심의회(해자협),
사후관리·정산-석유공사)

- ▶ 성공불용자 대상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 및 협회의 업무 위탁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특별부담금 효율(15% → 20%) 및 이자율(1% ↑ : 국채수익률- 2.25% → 국채수익률-1.25%) 상향 조정 등 용자 제도개선, 용자심의회 운영 관련하여 협회에 위탁한 업무가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화 등(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24호, '12.12.28)
- ▶ 성공불 용자 심의 및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협회회원사 심사기관 참여배제, 융심위원 제척·기피·회피 자발적 통지 의무화, 용자심의 현장실사 확대(2회→4회 이상), 심의의결 기준 강화(과반수→2/3이상 찬성), 위법부당 의결에 대한 산업무 장관의 재심의 요구권 신설 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84호, '13.12.16 개정 및 협회운영규정 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해외자원 용자지원 제도
 - 해외석탄개발자금(NEDO)
 - 석탄개발전문업체(일본 국내탄광업체)에 무이자 용자
 - 석탄개발전문업체에 대한 출자
 - 채무보증(보증수수료 0.4%)
 -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 기구(JOGMEC)
 - 금융기관의 일반광 개발업체 용자채무보증(보증수수료 0.4%)
 - 금융기관의 용자금리 1% 인하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성공불 용자사업 지원 필요성

1. 성공불 용자사업 개요

< 해외자원개발용자 사업개요 >

- ☐ (취지)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용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여, 적극적 탐사 투자 유도
- ☐ (지원내용)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 시 원리금 外 용자비율에 따라 순수익금의 일정부분(20%)를 추가하여 회수
- ☐ (지원조건) 탐사비 30~50% 수준 용자, '13년은 예산부족으로 15% 지원

2. 성공불 용자사업 지원필요성

- ☐ (시장 실패) 장기간 대규모 투자와 탐사 리스크가 커서 민간기업이 소극적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리스크 분담이 필요

* (대우 미얀마 사례) 99년 대우 부도로 채권단은 미얀마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 성공불용자 지원으로 미얀마 사업 추진을 결정, 대우는 탐사에 성공하여 국내 3년치 소비량의 가스전을 발견하여 향후 연간 3~4000억원 수익을 기대

- ☐ (수요대비 공급부족) '08년 이래 예산 축소로 수요대비 용자지원 감소 상황이 지속, 민간투자도 감소('11년 40억불 → '12년 23억불)

* 용자예산(억원) : ('07) 4260 → ('08) 4260 → ('09) 3582 → ('10) 3093 → ('11) 2901 → ('12) 2000 → ('13) 1300

- ☐ (재정건전성 유지) 탐사 성공시 원리금 外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가능('13.10월 기준 회수율은 146%)

< 성공불용자 사업 회수율 ('13.10월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천\$)	용자액(A)	회수액(B)	감면액	회수율(B/A)
총 용자금	2,673,723		578,606	
기준용자금	927,473	562,797		
특별부담금		792,712		
계		1,355,509	578,606	146%

* 기준용자금 : 성공여부가 결정된 사업(총 97개 사업 = 생산 13개 + 감면 84개)

- ☐ (후방산업 동반진출) 탐사 성공시 유전 개발·운영권 획득할 경우 후방산업(개발·생산·운송)에 우리기업의 패키지형 진출이 용이

* 대우 미얀마 가스전 : 가스전 생산 플랫폼(포스코 플랜텍), 발전소 건설(현대 중공업), 발전소 유지·운영(포스코 에너지) 등 국내기업이 총 14억불 수주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사업코드 : 21-24-04-110-115-5330-5335-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사무관(윤용석, 044-203-51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7~계속
총사업비	법정자본금 2조원('13년까지 누적 납입액 14,853억원) * 기관출자 13,337억원, 비축출자 1,516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산업 핵심원료인 6대 전략광물, 新전략광물* 등 주요광물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 형태로 자원개발 투자재원 지원

○ 정부 출자금은 광물공사 자체수익, 자산매각, 회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된 재원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사용(출자금의 2~5배** 규모)

* 6대 전략광물 :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신전략광물 : 리튬·희토류

** 광물공사 투자/출자액 비율 : (10) 2.8 → (11) 4.3 → (12) 3.8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14년 광물공사의 해외광물개발 기존사업 투자계획 (7,740억원)의 33%에 해당하는 2,600억원 출자지원

▪ 최근 광물공사가 진행 중인 既투자 탐사·개발사업들이 점차 개발·생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투자비 급증(기존사업 투자가 '14년 총 투자계획의 90%)

* '17년까지 5개 이상의 탐사·개발사업이 생산단계로 진입할 전망 (멕시코 볼레오(銅), 미국 로즈몬트(銅), 파나마 꼬브레파나마(銅)) 등

▪ 반면, 최근 차입 등을 통해 출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적극적 투자를 수행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투자재원 확보 절실

* 투자액/출자액 : ('09) 3.2 → ('10) 2.8 → ('11) 4.3 → ('12) 3.8 → ('13) 5.5

* 부채비율(%) : ('09) 120 → ('10) 168 → ('11) 151 → ('12) 177 → ('13.추정) 197

○ 산출근거 : 7,740억원*('14년 해외광물개발 기존사업 투자 총액) × 출자지원 33%

* 광물공사가 진행중인 14개 해외광물개발 사업의 설비, 인프라 구축비 등

(백만원)

구 분	'13예산(추경포함)	'14예산
□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180,000	260,000
▪ 해외자원개발투자 계획	180,000	260,000
- 既 투자사업	177,289 볼레오 동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	260,000 꼬브레파나마 동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
- 신규 투자사업	2,711	-

□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보유한 자원빈국(6대전략광물 수입 의존도 99.9%)으로, 국내산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광물자원 확보’ 절실
 - * 수입액(억불, '12년) : [석유] 1,069 [6대전략광물] ('00) 53 → ('07) 182 → ('12) 356
 - * 수입액 증가율('02~'12년, %) : [석유] 457 [6대전략광물] 554
- 최근 자원민족주의 확산, 공급 독·과점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세계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개발 역량 강화 필요
 - * 100대 자원개발 메이저('12년, 개) : (한국, 81위) 1 (일본) 8 (호주) 9 (캐나다) 11(중국) 17
 - * 현재 광물공사는 세계1위 Vale社 대비 자산의 2.3%, 인력의 0.6% 수준
 - * 자원개발투자액('12년, 억불) : (광물공사, 81위) 8, (Vale, 1위) 180, (Chinalco, 14위) 62
- 광물공사 출자금 조기 납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필요
 - * 당초 '12년 법정자본금 2조원 달성이 목표였으나, 예산 제약으로 '12년 까지 63%만 납입, '13년 추경예산 편성시 당초 광물공사 출자 예산 2700억원에서 900억원 삭감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원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출구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유망사업 매물이 증가해 전략적인 자원확보 필요
 - * < 예시 > 세계 1위 광업 메이저인 Vale社(브)는 '06~'07, '09~'10년 광물가격 약세 상황을 활용해 공격적 M&A를 수행하여, '05년 자산 226억불에서 '12년 1,303억불 규모로 급성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광물자원개발투자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비목(합계)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 출자금(460-01)	220,000	180,000	260,000	80,000	44.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그간의 투자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수익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중인 탐사·개발사업의 생산단계 진입을 위한 역량 집중
 - * 멕시코 볼레오(동), 미국 로즈몬트(동), 파나마 꼬브레파나마(동) 등
- 小지분·분산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주기 사업역량 축적 및 비상시 재량권 행사 등 투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대형 운영사업에 중점 투자
- 국내 기관간 역량을 결집한 공동진출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 자원서비스기업, 건설·플랜트 동반진출을 통해 투자효과 극대화
 - * (광물공사) 기술력, 대외신인도 + (실수요기업) 구매력 + (민간상사) 마케팅 등
- 동, 희유금속 등 자원확보 실적이 미흡한 광종을 중심으로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미개척 지역 유망 사업 진출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800	해외자원개발투자 9,910억원 (출자금 1,800억원, 차입금 등 8,110억원)
'14	2,600	해외자원개발투자 8,600억원 (출자금 7,740억원, 차입금 등 860억원)
'15	1,500	해외자원개발투자 8,690억원 (출자금 1,500억원, 차입금 등 7,190억원)
'16	1,500	해외자원개발투자 8,820억원 (출자금 1,500억원, 차입금 등 7,320억원)
'17	1,500	해외자원개발투자 8,537억원 (출자금 1,500억원, 차입금 등 7,037억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제10조(사업)
 - * 공사법 제4조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
 - * 공사법 제10조 : 광물자원 등의 탐사·개발과 이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제2항 제3호
 -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추진경위

- '67. 6. 광물공사창립 : 출자금 지원 개시
- '97. 8. 광물공사법 개정 : 법정자본금 증액(1,500억원→3,000억원)
- '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출자
- '04. 12. 광물공사법 개정 : 법정자본금 증액(3,000억원→6,000억원)
- '67. 6. 광물공사법 개정 : 명칭변경 및 기능변경(직접투자강화)
법정자본금 증액6,000억원→20,000억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한국 광물 자원 공사출자	1,307	1,800	2,200	1,800	2,6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307 (1,307)	- ()	- ()	1,307 (1,307)	1,307 (1,307)	- ()	- ()
'11년	1,800 (1,800)	- ()	- ()	1,800 (1,800)	1,800 (1,800)	- ()	- ()
'12년	2,200 (2,200)	- ()	- ()	2,200 (2,200)	2,200 (2,2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11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중국, 칠레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기업에 의한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추세
 - * JOGMEG(일), BRGM(프), NFO(중) 등 과거 민간 지원위주에서 직접 투자로 전환
- 세계 100대 광업 메이저 중 18개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설립·성장

< 주요국 광물자원개발 메이저 비교 >

구 분	1위	...	14위	...	16위	...	81위
회사명	Vale	...	Chinalco	...	Codelco	...	광물공사
국적	브라질	...	중국	...	칠레	...	대한민국
총자산(백만불)	131,478	...	26,957	...	20,835	...	3,472
연매출(백만불)	48,753	...	23,024	...	17,515	...	265
인력(명)	79,646	...	101,259	...	18,247	...	472

- ① Vale(브라질) : 자산 1,315억불 규모의 세계 1위 광업 메이저로 현재 브라질 정부가 12.2% 지분 보유
 - 브라질 국영 철 공사(舊 CVRD)로 BHP, Rio-tinto와 함께 세계 철광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브라질 고속성장의 主 동력원
- ② Chinalco(중국) : 자산 270억불 규모의 세계 14위 광업 메이저로 현재 중국 정부가 100% 지분 보유
 - 국영기업 중심의 M&A, 생산광산 인수 등으로 세계 메이저를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근 급성장한 광업메이저
- ③ Codelco(칠레) : 자산 208억불 규모의 세계 16위 광업 메이저로 현재 칠레 정부가 100%의 지분 보유
 - 동광 개발 전문 기업으로 칠레 경제의 주축인 동 광산의 탐사-개발-가공-제련-판매 등 전 분야 Value Chain 보유

(5) 사업추진절차

- ①정부출자(산업통상자원부) → ②자금수령(광물공사) → ③출자
증권 발행 및 제출(공사→기획재정부) →④광물공사 자금수지와
연계하여 해외 직접투자사업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부 산출내역(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사업 현황
-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
-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금 지원 필요성

참고1

2014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13년말 기준)

구 분	'13년 예산안(본 예산)	'14년 예산
□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 해외자원개발투자자금	2,700억원	2,600억원

(단위 : 억 원)

구분	사 업 명	국 명 (광종명)	공사지분 (한국,%)	~'12	'13	'14년 투자계획	현 황
생산단계 (14)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5(50)	237.8			연산 300만톤 규모
	라푸라푸	필리핀(동)	28(70)	245.3			연산 Cu금속 1.1만톤, Zn금속 1.3만톤
	서안맥스	중국(희토류)	49(49)	134.4		71	연산 희토류 4.3천톤 규모
	장 가 항	중국(석회석)	49(100)	142.9		54	연산 석회석 46만톤 규모
	미네르바	호주(유연탄)	4(4)	71.3			연산 280만톤 규모
	코 카 투	호주(유연탄)	4.7(16.6)	120.5			연산 76만톤 규모
	양구스플라이스	호주(유연탄)	25(50)	248.6		489	연산 330만톤 규모
	북방동업	중국(동)	6(45)	319.0			연산 Cu금속 10만톤 규모
	몰 라 벤	호주(유연탄)	4(10)	591.0		80	연산 800만톤 규모
	나라브리	호주(유연탄)	2.5(7.5)	609.8			연산 600만톤 규모
	테 기 다	니제르(우라늄)	4(4)	170.7			2012년 201톤U('15년 700톤U)
	포두영신	중국(희토류)	48.3(100)	49.3	22		연산 NdFeB 1.5천톤 규모
	캠 스 톤	캐나다(동)	10.6(10.6)	1,960.7			연산 Cu금속 3.6만톤 규모
	암바토비	미얀마(리튬)	22.5(27.5)	12,083.3	1,401	1,030	Ramp-up 중(년 Ni금속 6만톤)
개발단계 (8)	토가리노스	호주(유연탄)	81.3(25)	136.4			개발준비 중
	와 이 웅	호주(유연탄)	82.25(95)	484.4	52	1,377	개발준비 중
	마르코나	페루(동)	15(30)	236.0	95	143	2019년 생산(년 Cu금속 11만톤)
	세익스피어	캐나다(동)	0.19(0.19)	24.7			개발검토 중
	볼 레 오	멕시코(동)	70(90)	4674.7	4,866	465	2014년 생산(년 Cu금속 5.1만톤)
	코브레파나마	파나마(동)	10(20)	1,699.7	1,227	2,603	2017년 생산(년 Cu금속 26.1만톤)
	로즈몬트	미국(동)	10(20)	394.0		400	2016년 생산(년 Cu금속 10.6만톤)
탐사단계 (13)	엔엑스우노	칠레(리튬)	12(30)	182.6			환경영향평가 승인 추진 중
	아 데 나	호주(유연탄)	4(4)	17.1		1	정밀탐사 진행중
	에르데넬	몽골(동)	25(51)	-			사업성 검토중
	크리이스트	캐나다(우라늄)	12.5(50)	50.8			탐사 진행중
	화이트클리프	호주(니켈)	17.5(17.5)	17.6			사업종료 후속조치 중
	마 리	호주(우라늄)	20(40)	27.7			탐사 진행중
	꼬로꼬로	볼리비아(동)	23(45)	59.0			예비타당성분석 중
	볼 리 아	호주(아연, 동)	33.3(100)	18.9			사업종료 후속조치 중
	블락플라츠	남아공(유연탄)	37(37)	186.7			1차 탐사 완료
	살데비다	아르헨(리튬)	10(30)	60.0		200	탐사 진행중
	산토도밍고	칠레(동, 철)	30(30)	2,324.3	98	304	탐사 진행중
	카푸아스	인니(유연탄)	39(39)	259.9	94	222	2014년 개발예정
	잔트콕스포트	남아공(희토류)	10(10)	261.6	11	301	탐사 진행중
	므쿠주	탄자니아(우라늄)	50(50)	5.9	34		탐사 진행중
신규사업					-	860	
계 (17개국, 35개 사업)				28,107	7,900	8,614	

참고2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12년말 기준)

구분	사 업 명	국 명 (광종명)	참여 시기	공사지분 (한국,%)	투자비(억원)			현 황
					~'07	'08~'12	계	
생 산 단 계 (14)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000	25(50)	237.8	-	237.8	연산 300만톤 규모
	라푸라푸	필리핀(동)	2002	28(70)	101.3	144.0	245.3	연산 Cu금속 1.1만톤, Zn금속 1.3만톤
	서안맥스	중국(희토류)	2003	49(49)	71.5	62.9	134.4	연산 희토류 4.3천톤 규모
	장 가 항	중국(석회석)	2005	49(100)	130.3	12.6	142.9	연산 석회석 46만톤 규모
	미네르바	호주(유연탄)	2006	4(4)	71.3	-	71.3	연산 280만톤 규모
	코 카 투	호주(유연탄)	2006	4.7(16.6)	32.5	88.0	120.5	연산 76만톤 규모
	양구스플레이스	호주(유연탄)	2007	25(50)	248.6	-	248.6	연산 330만톤 규모
	북방동업	중국(동)	2007	6(45)	-	319.0	319.0	연산 Cu금속 10만톤 규모
	물 라 벤	호주(유연탄)	2008	4(10)	-	591.0	591.0	연산 800만톤 규모
	나라브리	호주(유연탄)	2009	2.5(7.5)	-	609.8	609.8	연산 600만톤 규모
	테 기 다	니제르(우라늄)	2009	4(4)	-	170.7	170.7	2012년 201톤U('15년 700톤U)
	포두영신	중국(희토류)	2010	48.3(100)	-	49.3	49.3	연산 NdFeB 1.5천톤 규모
	킨 탐	인니(유연탄)	2012	15(80)	-	-	-	사업종료 추진('13.9월)
	캡 스톤	캐나다(동)	2011	10.6(10.6)	-	1,960.7	1,960.7	연산 Cu금속 3.6만톤 규모
개 발 단 계 (9)	토가리노스	호주(유연탄)	1994	8⅓(25)	15.1	121.3	136.4	개발준비 中
	암바토비	파라과이(동)	2006	22.5(27.5)	1,165.7	10,917.6	12,083.3	Ramp-up 中(년 Ni금속 6만톤)
	와 이 웅	호주(유연탄)	1995	82.25(95)	207.6	276.8	484.4	개발준비 中
	마르코나	페루(동)	2004	15(30)	124.5	111.5	236.0	2019년 생산(년 Cu금속 11만톤)
	세익스피어	캐나다(동)	2005	0.19(0.19)	24.7	-	24.7	개발검토 中
	볼 레 오	멕시코(동)	2008	70(90)	-	4,674.7	4,674.7	2014년 생산(년 Cu금속 5.1만톤)
	꼬브레파나마	파나마(동)	2009	10(20)	-	1,699.7	1,699.7	2017년 생산(년 Cu금속 26.1만톤)
	로즈몬트	미국(동)	2010	10(20)	-	394.0	394.0	2016년 생산(년 Cu금속 10.6만톤)
	엔엑스우노	칠레(리튬)	2010	12(30)	-	182.6	182.6	환경영향평가 승인 추진 中
탐 사 단 계 (15)	아 데 나	호주(유연탄)	2006	4(4)	14.1	3.0	17.1	정밀탐사 진행 中
	타로보라	호주(유연탄)	2006	50(100)	-	0.8	0.8	지분매각 추진('13.2월)
	에르데넛	몽골(동)	2006	25(51)	-	-	-	사업성 검토 中
	크리이스트	캐나다(우라늄)	2007	12.5(50)	8.3	42.5	50.8	탐사 진행 中
	셀 렌 딘	페루(동)	2008	40(40)	-	-	-	사업종료 추진('13.4월)
	화이트클리프	호주(니켈)	2008	17.5(17.5)	-	17.6	17.6	사업종료 후속조치 中
	마 리	호주(우라늄)	2008	20(40)	-	27.7	27.7	탐사 진행 中
	꼬로꼬로	볼리비아(동)	2008	23(45)	-	59.0	59.0	예비타당성분석 中
	볼 리 아	호주(아연, 동)	2009	33.3(100)	-	18.9	18.9	사업종료 후속조치 中
	블락플라츠	남아공(유연탄)	2010	37(37)	-	186.7	186.7	1차 탐사 완료
	살데비다	아르헨(리튬)	2010	10(30)	-	60.0	60.0	탐사 진행 中
	산토도밍고	칠레(동, 철)	2011	30(30)	-	2,324.3	2,324.3	탐사 진행 中
	카푸아스	인니(유연탄)	2011	39(39)	-	259.9	259.9	매장량평가 中(2014년 개발예정)
	잔도콥스도프	남아공(희토류)	2011	10(10)	-	261.6	261.6	탐사 진행 中
	므쿠주	탄자니아(우라늄)	2012	50(50)	-	5.9	5.9	탐사 진행 中
계 (17개국, 38개 사업)					2,453.3	25,654.1	28,107.4	

참고3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

- (국내 여건) 광물은 산업 핵심원료로 사용되어 약 10배의 부가가치(300조원)를 창출하며, 광물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 수출경쟁력과 직결
 - * 한국 산업 위상 : 휴대폰(세계 1위), 조선(1위), 디스플레이(1위), 반도체(3위), 자동차(5위)
 - * 한국 광물소비('12년) : 유연탄(세계 7위), 우라늄(6위), 철(5위), 동(5위), 아연(4위), 니켈(4위)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자원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 부품소재, 첨단소재 산업 부각, FTA 체결 등으로 중요성이 지속 증가할 전망
 - * 국내 제조업 비중 : ('07) 48% → ('10) 52% → ('11~'15) 51% (추정)
 - * 광물자원 해외수입 의존도(%) : ('00) 84.3 → ('05) 90.7 → ('11) 95.7
- 반면, 한국은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해 주요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광물 수입액은 급증하는 추세
 - * 광물자원 수입의존도('11년) : 95.7% (에너지(석탄) 98.5%, 일반광물 93.9%)
 - * 6대전략광물 수입액(억불, '12년) : ('00) 53 → ('06) 156 → ('12) 356
 - * 수입액 증가율('02~'12년, %) : [석유] 457 [6대전략광물] 554
- (대외 여건) 중국 등 개도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자원민족주의 심화 등으로 자원확보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도 확대
 - * 중국 : 희토류 수출관세 부과, 연간 수출량 제한('11년 3만톤), 희토류 산업협회 설립
 - * 호주 : 철광석·유연탄 생산 기업(연수익 A\$75백만불 이상) 순이익의 30% 과세 등
- 글로벌 자원시장은 광업 메이저들의 독과점 심화로 Seller's Market化 추세이며, 향후 메이저들의 수급·가격 통제로 자원안보에 차질 우려
 - * 10대 메이저 점유율('05 → '10년, %) : (유연탄) 37.7 → 40.5 (우라늄) 47.5 → 87.5 (철) 34.1 → 67.0 (동) 48.8 → 53.9 (아연) 38.6 → 41.9 (니켈) 56.1 → 63.5
- (자원개발 필요성)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광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망 광산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투자 적기
- 자원개발 확대시 국내 광물 수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는 국가 자산으로 축적되어 국가 위기대응능력 제고*
 - * '97년 외환위기사 공공·민간이 보유한 자원개발사업을 매각하여 외환보유고 마련
- 아울러, 자원개발은 제련, 유통, 건설·인프라,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등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막대한 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장려 필요

□ (자원개발 현황) '12년말 기준 우리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은 116억불이며, '12년에는 전년(12.3억불) 대비 50% 증가한 18.4억불 기록

○ '07년 이후 투자액이 급증('07년 6.7억불 → '12년 18.4억불)하여, 자주개발률은 18.5% → 32.1%로 상승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산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주요 광물의 수급 안정성 및 자원개발 경쟁력이 열악한 수준

* 한국 자주개발률('12년, %) : (6대전략광물) 32.1, (철광) 14.5 (아연) 19.9, (동) 11.5

* 일본 자주개발률('11년, %) : (6대전략광물) 63.3 (철광) 77.7, (아연) 58.2, (동) 63.0

□ (국내 도입) '12년 자주개발량의 33.2%를 국내로 도입*했으며, 대부분의 광물개발 사업은 off-take계약 등이 체결되어 비상시 국내 도입 가능

* 국내도입률(% , '12년) : (유연탄) 21.2 (우라늄) 82.7 (철) 114.6 (동) 19.6 (니켈) 84.3

※ 광물(아연, 동 등)은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광산과 연계된 제련소에서 공급·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개발 물량을 100% 국내로 도입하기는 어려움 (예시 : 호주 타운스빌 아연 광산은 현지 제련소고려아연 자회사에 생산물을 전량 공급)

○ 광물공사* 사업도 초기탐사, 소지분참여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 사업은 off-take 계약 또는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되어 비상시 국내도입 가능

* off-take 계약 20개, 운영사업 4개, 장기공급계약 4개, 초기탐사·소지분 참여 사업 등 8개 → 향후 국내 반입물량 확보가능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접투자 추진 및 민간지원

□ (메이저 육성) 규모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광물공사를 글로벌 메이저('12년 81위 → '20년 20위)로 육성할 필요

* '08~'12년간, 한국 전체 광물개발 투자액(86억불)은 세계 4위 메이저인 Xstrata 1개사의 투자규모(82억불)와 유사하며, '12년 광물공사 투자액(8억불)은 세계 1위 Vale社(180억불)의 4% 수준

* 세계 100대 광업 메이저('12년, 개) : (한국, 81위) 1 (일본) 8 (호주) 9 (캐나다) 11 (중국) 17

○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인력, 경험 등 역량이 부족하고, 주력광물 편중, 투자변동 심화 등으로 안정적 자원수급기반 마련에는 한계

* 주력광종 : 심탄(유연탄), 고려아연(아연), 포스코(철, 유연탄), 한전(유연탄, 우라늄) 등

*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억불) : ('08) 16.2 → ('09) 3.8 → ('10) 13.9 → ('11) 5.1

* '99년 고려아연은 니켈사업 매각, '00년 한전은 유연탄, 우라늄사업 전량 매각 등

○ 최근 광물공사는 공격적 광물개발 투자 확대에 차입금이 급증해, 부채비율 및 이자비용이 상승하여 추가 투자 여력이 제한적

* 부채비율(% , 추정) : ('09) 120 → ('10) 168 → ('11) 186 → ('12) 177 → ('13) 216

* 이자비용(억원, 추정) : ('09) 149 → ('10) 285 → ('11) 363 → ('12) 571 → ('13) 790

⇒ **광물공사를 세계 Top 20 광업 메이저로 육성하여, 무역 2조불, 1인당GDP 4만불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 개척자로 활용할 필요**

① 재무건전성 악화

- '08년 이후 광물공사는 본격적으로 해외광물개발 투자 수행, 그간 투자액 대비 출자금 비중이 감소하여 부채규모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 출자금/투자액(%) : ('09) 31 → ('10) 36 → ('11) 23 → ('12) 26 → ('13, 추정) 18

* 부채비율(%) : ('09) 120 → ('10) 168 → ('11) 186 → ('12) 177 → ('13, 추정) 197

* 이자비용(억원) : ('09) 149 → ('10) 285 → ('11) 363 → ('12) 571 → ('13, 추정) 790

- 광물공사는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그간 수익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탐사·개발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현금 흐름 취약

* 투자액 비중('06~'12년) : 탐사·개발단계 70%(개발 63, 탐사 7) > 생산단계 30%

- 최근, 광물공사가 진행중인 既투자 탐사·개발사업들이 점차 개발·생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사업 투자비 지속 소요

* '17년까지 5개 이상의 탐사·개발사업이 생산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② 자본금 납입 미흡

- '13년말 광물공사의 자본금 납입액은 법정자본금 2조원의 74% 수준

- '13년 추경 편성시 광물공사 출자금을 900억원 삭감*하여 부채비율·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계획을 축소**하는 등 사업 진행 애로

* '13년 추경시 출자금 삭감액 : 석유 1,000억, 가스 400억, 광물 900억(절대액으로는 석유공사보다 작으나 자본금 대비 비중으로는 석유·가스공사의 10~20배 수준)
→ 연간 약 30억원 이자비용 추가발생(금리 2.7%), 부채비율 약 13.5%p 증가 효과

* '13년투자계획 : (당초) 9,910억원 → (1차 변경) 8,500억원 → (2차 변경) 7,900억원

< 출자금 납입 현황(억원)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누계
□ 광물공사	3,934	1,385	1,192	1,392	2,100	2,600	2,250	14,853
- 출자금	3,823	1,300	1,107	1,307	1,800	2,200	1,800	13,337
- 비축출자	111	85	85	85	300	400	450	1,516
□ 석유공사	46,849	12,299	7,346	14,808	8,350	7,717	2,936	100,305
- 출자금	7,296	9,647	5,094	12,556	7,100	6,903	2,200	50,796
- 비축출자	39,553	2,652	2,252	2,252	1,250	814	736	49,509

일반광업육성지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일반광업육성지원	13,354	16,754	15,967	△787	△4.7%

* 사업코드 : 21 - 24 - 04 - 110 - 115 - 5300 - 5336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사무관(최재영, 044-203-515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7~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2,524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자본) 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 국가 기간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국내부존 원료광물의 “광량확보”와 효율적 개발을 위한 “광업선진화”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광량확보 :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정밀조사, 시추, GIS 구축을 위한 사업비 7,210백만원

- 정밀조사 : 광량확보 목표 180억톤 달성을 위해 '13년과 동일한 1,73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55광구 → '14년 55광구
 - 사업단가 : '13년 31,455천원/광구 → '14년 31,455천원/광구
- 시 추 : 정확한 광체규모 파악 및 매장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13년과 동일한 4,68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55,000m → '14년 55,000m
 - 사업단가 : '13년 85.1천원/m → '14년 85.1천원/m
- GIS 구축 : 탐사사업 성과물의 공간정보화 및 민간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추주상도 GIS DB 구축을 위해 80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500km → '14년 500km
 - 사업단가 : '13년 1,229천원/km → '14년 1,192천원/km
- 광업선진화 :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광업생산성 목표 달성과 원료소재의 산업화, 친환경개발을 통한 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산 6,143백만원
 - 현대화장비 : 인당 생산성 43톤 달성 및 친환경 갱내생산량 확대를 위해 3,353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6.8 SET → '14년 6.8 SET
 - 사업단가 : '13년 493,200천원/SET → '14년 493,200천원/SET
 - 설비갱내전환 : 자원산업의 녹색성장 산업화를 위한 갱도구축, 갱외 시설의 갱내전환 지원 실효성제고를 위해 '13년과 동일하게 1,75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14종 → '14년 14종
 - 사업단가 : '13년 125백만원/점 → '14년 125백만원/점
 - 갱도현대화굴진 : 금속광체의 정확한 규모와 품위를 파악 및 신규 광량 확보를 통한 자급을 제고를 위해 '13년과 동일한 80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3,000m → '14년 3,000m
 - 사업단가 : '13년 266.5천원/m → '14년 266.5천원/m

- 전문인력양성 : 광업계의 고령화 및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해 '13년과 동일한 24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50명 → '14년 50명
 - 사업단가 : '13년 4,800천원/인 → '14년 4,800천원/인
- 광업분쟁해소사업 : 광업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광업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백만원
 - 사 업 량 : '13년 21건 → '14년 20건(광업조정위원회 3~4회)
 - 사업단가 : 광업조정위원회 수당, 현지조사비용 등 1억원
- 국가암추센터 구축 : 탐광시추로 발생하는 암추 및 광물자원 탐사
자료 보관, 관리를 위한 국가암추센터 구축비
지원예산 2,514백만원
 - 사업예산 : '13년 400백만원 → '14년 2,514백만원
 - 산출내역 : '13년 : ① 7,715m²(리노베이션 5,215m², 신축 2,500m²)
(신규) ②단가 : 52천원/m²
'14년 : ①설계·감리비 부족분 및 조달수수료 : 246백만원
②건물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비 : 2,26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광량확보
 - 정밀조사, 시추, GIS구축 등의 탐사지원을 패키지화로 집중 지원
하여 광량확보 목표(180억톤) '18년 달성
 - 개발유망광구의 신규매장량 확보, 부존광물의 품위별, 용도별
분포상태를 파악, 민간투자자에 제공하여 광산개발로 연계 추진
 - 축적된 전국토대상 탐사자료의 공간정보화 조기구축으로 부존자원의
입체적관리, 광물자원지리정보망(www.kmrgis.net)을 통한 민간
업체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 광산개발 리스크로 인해 민간 초기 투자 기피로 국가자원 확보 측면
에서 정부지원 필요

○ 광업선진화

- 광업은 생산유발(계수 : 광업 2.076, 산업 1.986)과 부가가치유발(계수 : 광업 0.9, 산업 0.86) 효과가 높아 국가차원의 적극지원이 필요함
- 원료광물의 효율적 개발과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대화 장비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설비갱내전환, 갱도굴진, 광업전문 기능인력 양성, 광업분쟁해소 등 개발에서 채련(가공)까지 패키지화 집중 지원으로 광업선진화 목표 달성(2018년 생산성목표 43톤/인)
- 현대화 장비지원으로 친환경 갱내개발 생산량을 확대하여 환경 훼손 최소화와 산업원료광물의 공급목적 달성
- 산업클러스터 구축, 원료소재산업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연계산업의 공동 활성화와 광업의 자립형 산업화 지원 필요
- 녹색광산개발을 위한 갱외시설의 갱내설치 전환 집중지원
- 시추 등으로 확인된 광체의 정확한 광체 규모 및 품위 파악하고 신규광량 확보
- 광업전문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신규기능인력 창출 및 광업현장 중간관리인력 공급

○ 광업분쟁해소사업 :

- 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관계 증대로 광업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문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점 확인을 통한 공익과 개발 이익간 균형점 모색, 법률전문가의 행정심판 판결문 작성으로 대국민의 신뢰도 증가,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 도움으로 대국민의 신뢰도 증가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조정위원회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 수행

○ 국가암추센터 구축

- 산재된 양질의 광물자원 탐사자료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향후 발생되는 신규물량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관 전문 공기업에서 암추 및 광물 표본시료 관리 운영이 필요

* 현재까지 국내 광물 시추('67~'11)로 시추된 암추 3,547km(약 1천억원)와 석유시추('79~'11)로 시공된 68공(3조 4천억원 추산)의 암추가 대부분 사장

- 자원시장변화와 기술발달에 따른 자원 재평가를 통해 신규 광산 개발과 재개발 등 국내 광업 활성화 도모

- * 최근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광산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간의 암추시료 폐기로 재시공을 위한 자본 투입 불가피
- ☞ 광산 신규 또는 재개발시 수억~수백억의 시추탐사 비용 발생
- 산림훼손 방지, 암추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사전차단, 지질 자료 재활용을 통한 탐사비용 절감, 자원개발 인력양성 기여 등
- * (호주)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정부 주도하에 최소 18개의 암추센터가 운영중, (캐나다) 주정부 산하 최소 17개소 이상의 암추센터가 운영 중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일반광업육성	13,357	16,754	15,967	△787	△4.7
▪ 광량확보	7,210	7,210	7,210	-	-
- 정밀조사	1,730	1,730	1,730	-	-
- 시추	4,680	4,680	4,680	-	-
- GIS 구축	800	800	800	-	-
▪ 광업선진화	6,144	6,144	6,143	△1	△0.02
- 현대화장비	5,104	5,104	5,103	△1	△0.02
- 갱도현대화굴진	800	800	800	-	-
- 전문인력양성	240	240	240	-	-
▪ 광업분쟁해소사업	-	-	100	100	순증
▪ 국가암추센터 구축	-	400	2,514	2,114	528.5
▪ 가은석탄박물관	-	3,000	-	△3,000	순감
☐ 비목(합계)	13,357	16,754	15,967	△787	△4.7
○ 민간경상보조(320-01)	8,250	8,250	8,350	100	1.2
○ 민간자본보조(320-07)	5,104	5,504	7,617	2,113	38.4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000	-	△3,000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 추진방안

- 민관(民官) 역할 분담
 - 정부 : 인프라 및 생산환경 지원 / 민간 : 생산투자 활동 및 인프라 구축
- 탐사, 개발, 안전, 제련(가공)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연계
 - 광량 확보(180억톤) 및 현대화 목표(갱내생산 2,200만톤) 달성 (2018년)
 - 장기 가행광산을 선정(2년 주기)하여 중·대형광산 육성 및 원료 소재 10종 산업화 유도
- 채광, 파·분쇄, 운반, 선광(제련)시설의 갱내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구축
- 광산 및 연계산업의 공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지원
- 탐사자료 GIS DB구축으로 민간업체 공유 및 광업전문기능인력 양성 공급
- 실업계 고교 광산학과 폐지에 따른 보안계원(광산보안법) 공급

-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암추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최적의 시설 구축
-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탐사자료 보관/관리시스템 정착으로 국가 지하지질 정보 구축

○ 기대효과

- 광산의 중·대형화를 통한 수직계열화 및 관련산업 선진화
 - 원료광물 180억톤 확보 및 주요 광종 갱내채광으로 80% 공급(2018년)
 - 금속광산 22개 재개발과 연계하여 내수액 1%를 4%까지 공급(2020년)
-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산림훼손 방지 : 2,500억원/년)
 - 비금속 원료소재의 수입대체 및 시장창출 효과 : 15,750억원
- 광업전문기능인력 공급 및 탐사자료의 전산화로 민간제공
- 환경문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점 확인을 통해 공익과 개발 이익간 균형점 모색
- '20년까지 278km의 암추, 1,000여개의 산업광물 표준시료, 500여개의 암석 표본 보관을 통한 기반구축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67.5	○ 광량확보 : 72.1 ○ 광업선진화 : 61.4 ○ 국가암추센터 : 4 ○ 가은석탄박물관 : 30
'14	159.6	○ 광량확보 : 72.1 ○ 광업선진화 : 61.4 ○ 광업분쟁해소사업 : 1 ○ 국가암추센터 : 25.1
'15	78.9	○ 광량확보 : 40 - 정밀조사 : 10.2 - 시추 : 26.9 - GIS 구축 : 2.9 ○ 광업선진화 : 34 - 현대화장비 : 19.3 - 설비갱내전환 : 9.3 - 갱도현대화굴진 : 3.8 - 전문인력양성 : 1.6 ○ 광업분쟁해소사업 : 0.7 ○ 국가암추센터 : 4.2
'16	72.3	○ 광량확보 : 36.7 ○ 광업선진화 : 31.1 ○ 광업분쟁해소사업 : 0.6 ○ 국가암추센터 : 3.9
'17	59.6	○ 광량확보 : 30.5 ○ 광업선진화 : 25.5 ○ 광업분쟁해소사업 : 0.5 ○ 국가암추센터 : 3.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광업법 제86조(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방지 사업의 지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 추진경위

- 광량확보 : 정밀조사, 시추, GIS 예상항목 통합 및 조정('10)
 - 정밀조사 : '00년부터 일반광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
 - 시 추 : '67년부터 민영광산의 개발촉진을 위해 사업시행
 - GIS 구축 : '10년부터 민영광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
 - 광업선진화: 현대화개발, 굴진, 전문인력양성 예산 항목 통합 및 조정('10)
 - 현대화개발 '91년부터 국내광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현대화장비, 부가가치설비), '08년부터 녹색광산개발을 위하여 파·분쇄, 운반, 선광(제련)시설의 갱내설치 지원(설비갱내전환)
 - 갱도현대화굴진 : '67년부터 민영광산 개발촉진을 위해 사업시행
 - 전문인력양성 : '10년부터 광산의 중간관리자(보안계원) 공급을 위해 광업전문 기능인력양성 교육·훈련 실시
 - 광업분쟁해소사업(신규) : 광업권자와 민원인과의 광업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지원('52)
- * 광업조정위원회는 '52. 7월에 설치되었지만, '14년부터 신규예산 반영
- 국가암추센터 : 암추 등의 지질정보를 통합·관리기반 구축을 통해 산·학·연에 국가 지질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을 위해 센터구축('1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일반광업육성	110	110	133.5	167.5	159.6
- 광량확보	60	60	72.1	72.1	72.1
- 광업선진화	50	50	61.4	61.4	6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10 (110)	- (-)	- (-)	110 (110)	110 (110)	- (-)	- (-)
'11년	110 (110)	- (-)	- (-)	110 (110)	110 (110)	- (-)	- (-)
'12년	133.5 (133.5)	- (-)	- (-)	133.5 (133.5)	133.5 (133.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별첨참고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세부산출내역
- 사업추진 근거법령
- 정밀조사
- 시 추
- GIS 구축
- 현대화장비/산업클러스터/설비갱내전환
- 갯도현대화굴진
- 광업전문기능인력 양성
- 광업분쟁해소사업
- 국가암추센터 구축

'13년 예산(16,754백만원)	'14년 예산(15,967백만원)
☐ 광량확보 7,2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1,7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광구 × 31,455천원 =1,730백만원 ○ 시추 4,6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0m × 85.1천원/m ○ GIS구축 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위탁용역비 614.6백만원 500km×1,229천원 -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비 145.3백만원 - 용역인건비 37.1백만 - 여비교통비 3백만원 	☐ 광량확보 7,2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 1,7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광구 × 31,455천원 =1,730백만원 ○ 시추 4,6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0m × 85.1천원/m ○ GIS구축 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위탁용역비 596백만원 500km×1,192천원 -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비 165백만원 - 용역인건비 36백만 - 여비교통비 3백만원
☐ 광업선진화 6,1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개발 5,104백만원 (현대화장비+산업클러스터+설비갱내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장비 6.8SET × 493,200천원 = 3,354 - 설비갱내전환 14중 × 125,000천원 = 1,750 ○ 갱도현대화굴진 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m × 266.5천원 = 800백만원 ○ 광업전문기능인력양성 2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 240백만원 	☐ 광업선진화 6,14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개발 5,103백만원 (현대화장비+산업클러스터+설비갱내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장비 6.8SET × 493,200천원 = 3,354 - 설비갱내전환 14중 × 125,000천원 = 1,750 ○ 갱도현대화굴진 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m × 266.5천원 = 800백만원 ○ 광업전문기능인력양성 2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 240백만원
☐ 국가암추센터구축 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 광업분쟁해소사업 1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조정위원회 수당 2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350천원 × 9명 × 4회 - (현지조사) 270천원 × 4회 × 4명 × 2일 ○ 현지 조사전문가수당 2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200천원 × 4회 × 4명 × 5일 - (사후) 200천원 × 4회 × 4명 × 2일 ○ 속기사수당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천원 × 4회 × 5시간 ○ 법무법인 자문 : 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천원 × 40건 ○ 인쇄비, 회의비 등 27백만원
☐ 가은석탄박물관 3,000백만원	☐ 국가암추센터구축 2,51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부족분 등 : 246백만원 ○ 건물 리모델링, 신축공사비 : 2,268백만원

□ 광업법**제86조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자원의 조사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제10조 (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참고

정밀조사

□ 사업개요

- 국내 전 국토 부존자원 현황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산업원료 광물의 장기 안정적 공급, 국내광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자원개발을 유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탐사를 실시, 용도별·품위별 매장량을 산출하여 광산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80%)

□ 사업지원절차



□ 지원실적 및 계획

구분	지원실적								지원계획	
	'0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2014	'15~'17
광구수(광구)	350	45	35	50	50	55	55	640	55	165
금액(백만원)	7,806	996	870	1,530	1,530	1,730	1,730	16,192	1,730	5,304

□ 사업 추진계획

- 정밀조사 : '00년~'18년까지 총 915광구를 조사할 계획

구분	'00~'12	'13	'14	'15	'16	'17	'18	합계
광구	585	55	55	55	55	55	55	915
예산(백만원)	14,462	1,730	1,730	1,768	1,768	1,768	1,768	24,994

- 재개발조사 : 50개 유망광산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합계
예비조사	-	3	3	4	4	5	5	4	5	4	14	50
재개발조사 (신규)	2	2	4	5	5	5	6	6	5	5	5	50
		(2)	(2)	(1)	(2)	(1)	(2)	(2)	(1)	(2)	(3)	(2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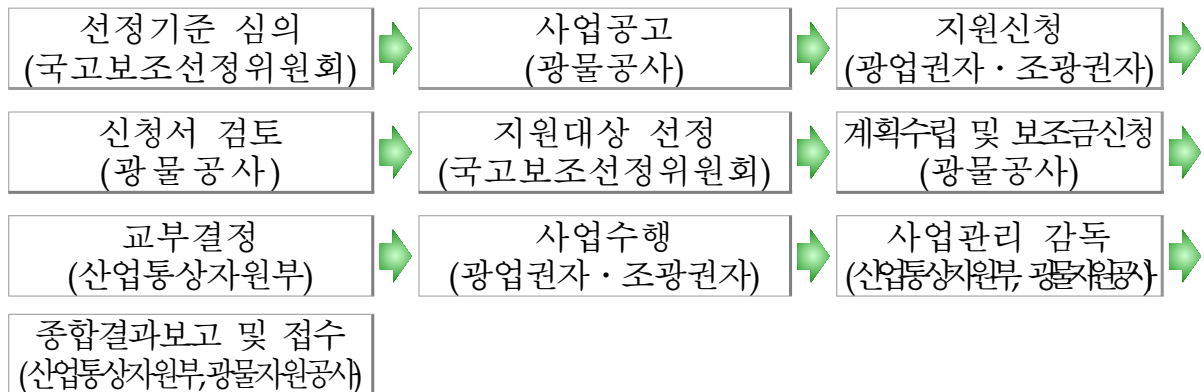
시추

□ 사업개요

- 지질광상조사 결과 확인된 광물자원의 부존예상지점에 대한 시추를 통해 자원의 지하발달상태(맥폭, 품위)를 정확히 파악
- 국가 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계획생산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광체의 심부 또는 주변부에서 지속적인 시추탐사 필요(시추확보 광량 증가를 통한 연간 생산물량 조달)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 민간시추업체(보조율 70%)

□ 사업 지원절차



□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67~'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사업량(m)	2,197,041	35,098	52,666	52,092	56,782	55,000	55,000	165,000
금액(백만원)	84,004	2,580	4,000	4,000	4,680	4,680	4,680	14,349

□ 시추 지원량 변화 추이

(단위 : m,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청량(A)	102,500	110,000	117,215	156,480	139,445	172,060
지원량(B)	46,219	44,587	35,098	52,666	52,092	56,782
지원율(B/A (%))	45.1%	40.5%	29.9%	33.6%	37.4%	33.0%

-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어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하여 입력·저장·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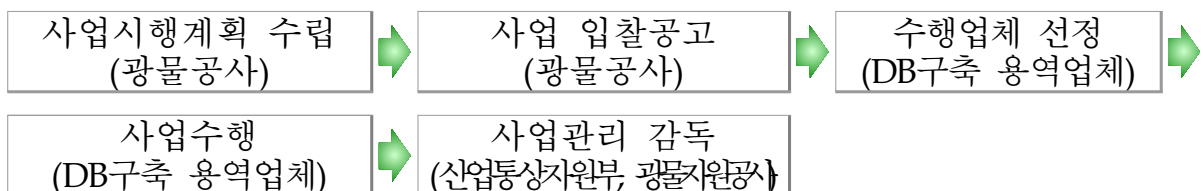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광물공사가 수행중인 시추 및 정밀조사의 성과물에 GIS 최신기술을 적용시켜 민간업체의 자원개발 및 관련분야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 되도록 시스템 구축
- 시추지질자료는 광물자원개발은 물론 삼차원 지하공간정보로서 국가 SOC사업의 계획수립,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100%)



□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합계
구축량(km)	300	316	505	506	500	750	785	3,662
단가(천원)	1,400	1,400	1,600	1,600	1,600	1,700	1,750	-
금 액	420	420	800	800	800	1,275	1,374	5,889

※ 중기소요재정 및 시추사업계획에 의거, 계획수립됨.

□ 예산내역

2013 예산	2014 예산
○ GIS구축 -500km×1.6백만원×100%=800백만원	○ GIS구축 -500km×1.6백만원×100%=800백만원
800백만원	800백만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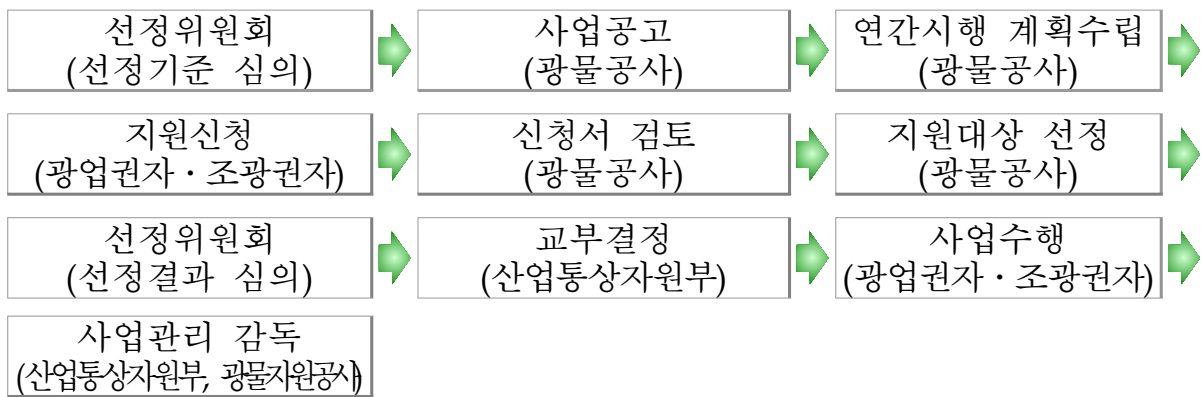
현대화장비/산업클러스터/설비갱내전환

□ 사업개요

- 갱외 채굴광산의 갱내 현대화채굴 방식으로 전환, 파·분쇄, 운반, 선광(제련)시설의 갱내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광산 및 연계산업의 공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국내광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40~60%이내)

□ 사업추진절차



□ 지원실적

구 분	'91~'06	'07	'08	'09	'10	'11	'12
현대화개발 광산수	42	44	45	47	50	52	51
투자비(억원)	522	88	99	91	122	118	144
생산액(10억원)	1,322	144	228	266	333	386	411
생산량(천톤)	97,991	14,704	15,566	14,660	17,502	20,703	20,842

□ 2014년 현대화개발 내역

(금액 : 백만원)

구 분	주요장비	'91~'12 지원수량	'14예산			
			수량 (Set)	금액	보조율 (%)	보조액
현대화장비	점보드릴, 화약장전기 등	363	6.8	8,385	40	3,354
산업클러스터	광학선별기, 자력선별기 등	29	-	-	60	-
설비갱내전환	파·분쇄설비 등	7	14	4,375	40	1,750
계	-	399	20.8	12,760	-	5,104

참고

갱도현대화굴진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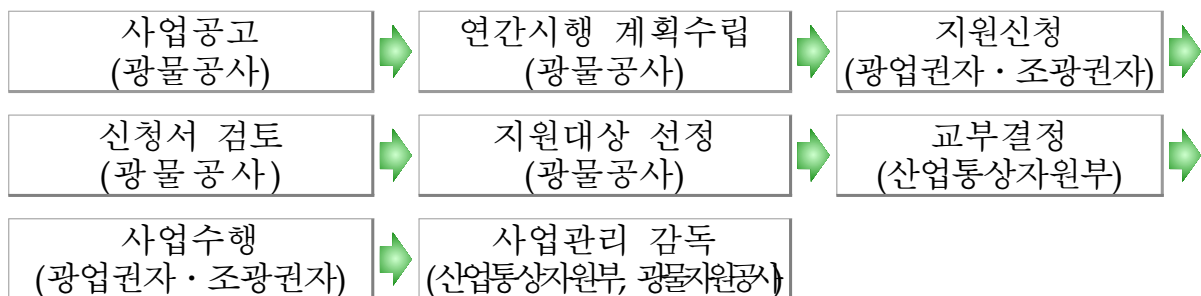
- 지질조사 및 시추에 의해 확인된 광체의 정확한 광체 규모 및 품위를 파악하고, 신규광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갱도굴진 시공비를 지원

□ 지원근거

- 광업법 제86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및 제16조(보조금)

□ 사업수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보조율 50% 이내)

□ 사업수행절차



□ 지원실적 및 계획

구분	'67~'09	'10	'11	'12	'13	'14	'15~'17
수 량(M)	916,489	2,135	2,110	3,060	3,200	3,000	9,000
금액(백만원)	49,102	500	500	800	800	800	2,454

□ 굴진 지원량 변화추이

(단위 : 천m,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신 청 량(A)	31.6	20.6	10.6	8.0	12.4	7.7	
지 원 량(B)	10.3	8.6	2.1	2.1	3.1	3.2	
지 원 율(B/A (%))	32.6	41.7	19.8	26.3	25.0	41.6	

□ 사업개요

- 광업전문기능인력양성 교육훈련기관 부재, 청년층의 광업분야 취업 기피, 광산근로자의 고령화 등에 따른 광산현장 인력난, 전문기능인력 공백을 광업전문기능인력양성을 통한 광업의 생산성 제고, 광산 의식교육을 통한 재해예방 등 광물자원산업의 합리적 육성에 기여

□ 사업수행 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

□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교육인원	52	52	54	50	50	50	50
단위(천원/인)	4,800	4,800	4,800	4,800	4,800	5,280	5,280
금액	240	240	240	240	240	264	264

□ 광산현장 초급관리자 육성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광산현장실습 내실화
 - 실습광산(Test Mine)의 운영, 교육 내용 및 방법 개선
- 현장실무 교육 확대
 - 실기/실습교육 비율을 80% 수준으로 확대
- 광산현장의 추천 및 위탁교육 확대
- 교육생 1인 1자격 취득 지원

※ 분야별 광업전문기능인력양성 계획 : 채광발파과정(20명), 유압장비과정 30명(2회교육)

□ 지원효과('10년~'13년)

- 4년간 총 2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149명이 취업함.

□ 2014년 예산 : 24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교육훈련비	92,000	93,000	1,000
재료비	19,000	17,000	△2,000
여비교통비	7,000	8,000	1,000
광고선전비	12,000	14,000	2,000
인건비	84,000	82,000	△2,000
수선유지비	5,000	5,000	-
통신 및 전력수도료	21,000	21,000	-
계	240,000	24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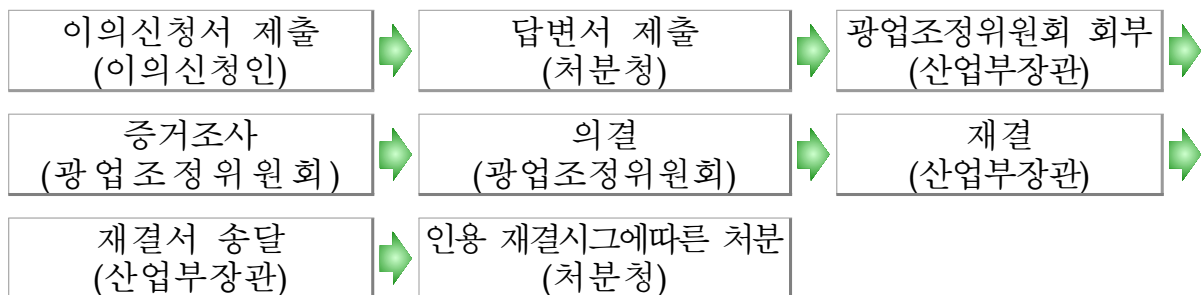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관계 증대로 인한 광업관련 분쟁 증가
 - 최근 5년간 약 90건 분쟁 발생('07년 ~ '12년)
-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국가산업의 발전 도모

□ 설치목적 및 주요 기능

- 광업조정위원회는 1952.7.8일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광업법에 따른 처분(채광계획인가 불인가처분, 광업권 설정 불허가 처분 등)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광업법 제93조)
 - 광업법상의 처분에 대한 준사법적 행정심판위원회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조정 및 의결의 권한을 가짐

□ 사업수행절차



□ 기대효과

- 환경문제, 주민생활 관련 문제점 확인을 통한 공익과 개발 이익간 균형점 모색
- 분쟁 법리해석, 현지조사 등 법률·기술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대 국민 신뢰도 증가, 지역주민과 개발권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새정부 과제인 동반성장 유도

□ 추진 배경

- 암추 보관공간 부족으로 중요한 지하자원 정보인 암추자료 사장화 우려
 - * 약 40억원/년 규모의 암추발생, 국내 영세광산 보관·관리 애로
- 세계 자원시장 환경변화로 탐사 자료의 재평가 기반 마련 시급
 - * 저품위 광물자원 개발 증가 → 기존 암추자료 분석을 통해 재개발 가능성 검토

□ 사업 개요

- 목적 : 암추 등의 지질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학·연에 국가 지질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01.1억원 ('13~'16년)
- 대상부지 : 한국폴리텍대학 정선캠퍼스('09.2월 폐교, 북평면)
 - * 정선군과 본교 부지(17,900평), 건물(2,350평) 무상임대 협의 완료('13.4)
- 주요 내용 : 리모델링 연면적(5,215m²), 신축건물(2,500m²)을 구축하여 '20년까지 암추 278km 보관 및 정보제공

□ 기대 효과

- (기반구축) '20년까지 278km의 암추, 1000여개의 산업광물 표준시료, 500여개의 암석표본 보관 가능
 - * 호주 등 광업선진국은 '60년대부터 국가암추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운영 중, 러시아·몽골·베트남 등도 중앙정부가 직간접 보관·운영 중
- (비용절감)
 - ① 광산 재개발시 '국가암추센터' 활용을 통해 탐사비용 절감
 - * '11년 20개 신규광산 개발 : 과거의 암추시료를 보관하였다면 수 천억원의 비용(예산) 절감 가능
 - ② 지자체의 유휴시설 활용성을 제고하고, 센터 구축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 신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산안전시설(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광산안전시설	3,321	3,487	3,487	-	-

* 사업코드 : 21-24-4-110-115-5300-5336-302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주무관(최용균, 044-203-51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2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1,049억원)
사업규모	해당사업 없음
지원조건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비의 60~70%(광업권자) 광산안전사업비, 구호·검사·교육장비 구입비 100%(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 심부작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시설의 선진화와 확충을 위한
광산안전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과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해 광산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
- 고빈도재해 및 대형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인명 및 시
설물 피해 최소화 유도
- 광산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광산안전
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재해예방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대형 및 고빈도 재해예방을 위한 광산안전시설 구입비와 광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광산안전사업비 3,487백만원
- 산출근거
 - 작업환경개선시설 : 통기수갱 등 814점 1,082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가스중앙감시장치 등 16점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 : 복합가스검정기 등 56점 360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록볼트머신 등 7,342점 1,189백만원
 - 기타시설 : 수중펌프 등 136점 684백만원
 - 계 8,364점 3,48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노천 광산개발에서 갱내채굴로 전환되는 광산이 늘어나고 작업장이 심부화됨에 따라 작업환경 악화 및 낙반붕락 등 재해발생요인이 급증
- 대부분의 광산은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안전시설 투자에는 미온적이며, 타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광산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 필요
- 갱내작업장의 심부화로 광산재해 발생요소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안전관리 취약 작업장의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고빈도 재해 예방시설인 낙반방지시설의 중점지원으로 백만인당 재해율 감소 목표 달성('12년 31.4명 ⇒ '15년 24.4명)
-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발생을 낮춰 취업기피로 인한 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광산의 안정적인 개발 및 광산지역 발전 유도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광산안전시설	3,321	3,487	3,487	-	-
▪ 광산안전시설	3,321	3,487	3,487	-	-
- 작업환경개선시설	1,306	1,082	1,082	-	-
- 낙반방지시설	1,392	1,189	1,189	-	-
- 광산안전보안	322	360	360	-	-
- 중앙집중감시설		172	172	-	-
- 기타시설	301	684	684	-	-
☐ 비목(합계)	3,321	3,487	3,487	-	-
○ 민간자본보조(320-07)	3,321	3,487	3,487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빈도·대형재해 예방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중점지원으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 재해예방을 위한 첨단 안전장비의 적극적인 투자유도로 안전관리 선진화
- 지원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장비교육·훈련 강화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저변확대로 지원효과 제고
- 백만인당 재해율 매년 5%씩 감소 목표('12년 31.4명 ⇒ '17년 22.0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 기타시설 : 684백만원
'14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 기타시설 : 684백만원
'15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 기타시설 : 684백만원
'16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 기타시설 : 684백만원
'17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개선시설 : 1,082백만원 • 중앙집중감시시설 : 172백만원 • 광산안전보안 등 : 360백만원 • 낙반방지시설 : 1,189백만원 • 기타시설 : 684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7조(사업비의 용도)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추진경위

- 광산개발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1982년부터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광산안전시설	35	35	33	35	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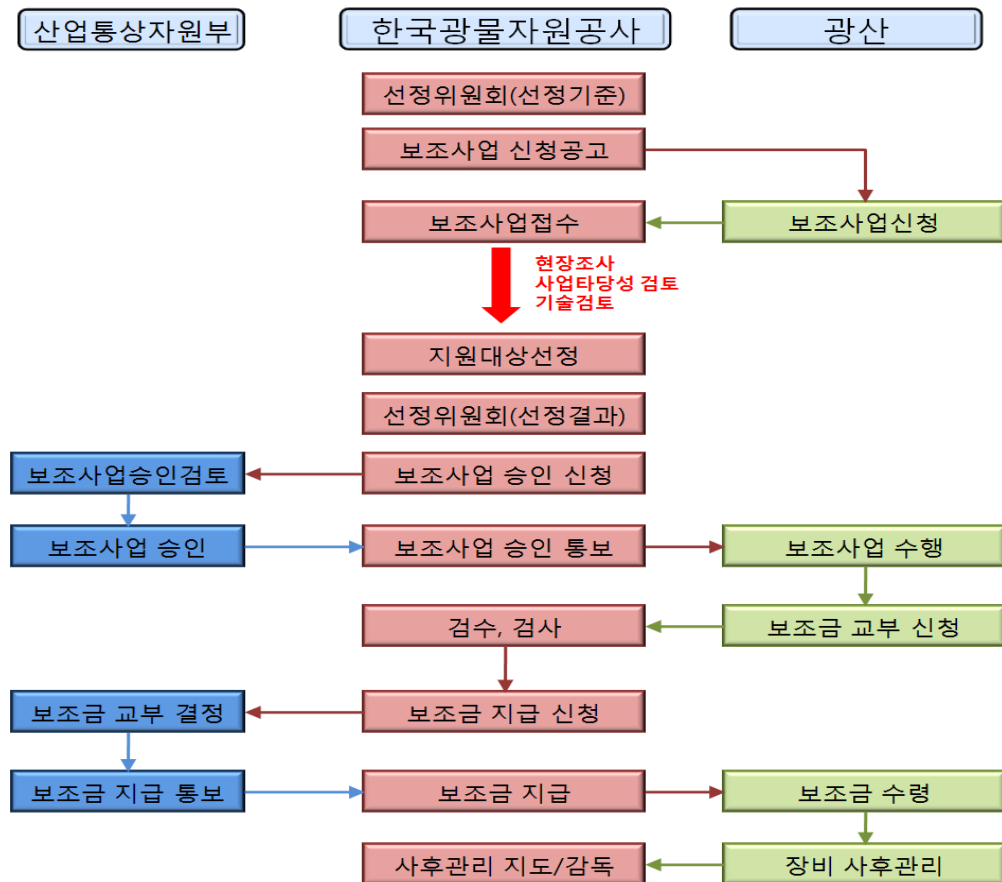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35 (35)	()	()	()	35 (35)	()	()
'11년	35 (35)	()	()	()	35 (35)	()	()
'12년	33 (33)	()	()	()	33 (3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광산안전사업 추진실적

참고

광산안전사업 추진실적(1982 ~ 2013)

(백만원)

연도	석탄광		일반광		한기연	광물공사	계	
	광산수	보조액	광산수	보조액	보조액	보조액	광산수	보조액
'82	45	2,323				33	46	2,356
'83	46	1,564				60	47	1,624
'84	41	1,950				42	42	1,992
'85	75	2,364			432	60	77	2,856
'86	93	2,148			390	63	95	2,601
'87	89	2,505	15	365	207	70	106	3,147
'88	88	2,660	8	97	495	108	98	3,360
'89	42	3,443	12	1,010	227	135	56	4,815
'90	32	3,216	15	1,059		252	48	4,527
'91	24	3,015	19	1,104		224	44	4,343
'92	14	3,089	27	1,476		57	42	4,622
'93	11	2,141	3	687		206	15	3,034
'94	10	1,443	4	1,337		124	15	2,904
'95	10	1,973	7	894		182	18	3,049
'96	11	1,226	9	1,381		117	21	2,724
'97	10	2,126	5	606		128	16	2,860
'98	11	1,848	8	1,114		41	20	3,003
'99	11	1,804	11	1,079		74	23	2,957
2000	10	2,235	9	604		118	20	2,957
2001	9	2,362	11	478		117	21	2,957
2002	9	1,614	14	989		354	24	2,957
2003	9	1,920	20	834		842	30	3,596
2004	8	1,762	18	1,679		359	27	3,800
2005	7	2,150	24	1,148		502	32	3,800
2006	6	1,591	27	1,859		350	34	3,800
2007	7	1,698	25	1,004		794	33	3,496
2008	6	1,203	19	1,740		553	26	3,496
2009	5	1,197	23	1,942		357	29	3,496
2010	5	1,105	24	1,918		473	30	3,496
2011	5	799	23	2,322		375	29	3,496
2012	5	459	26	2,524		338	32	3,321
2013	4	1,406	28	1,781		300	33	3,487
계	758	62,339	434	33,031	1,751	7,808	1,229	104,929

※ 한기연 : 한국기계연구소

광산물비축사업출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40,000	45,000	40,000	△5,000	△11.1

* 사업코드 : 24-4-110-115-5300-5341-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주무관(최용균, 044-203-51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1,516억원)
사업규모	희유금속 10광종의 국내수요량 60일분(79.3천톤) 비축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희유금속의 장기·전략적 비축으로 국가비상시 및 공급위기사 대응능력 제고

○ 희유금속 광물자원의 국내 수급안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광산물 비축사업 출자 지원

* 출자금 용도 : 전기·전자 등 신성장동력산업 필수원료인 희유금속 구매·비축

☐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하여 新성장동력산업의 원료광물인 희유금속의 자주적 공급능력 확보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출자금 전액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원료 광물과 희토류 등 미래성장광물의 장기전략적 비축을 위한 희유금속 구매재원으로 활용
- '13년도 희유금속 비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광산물 구매비축 재원으로 40,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희유금속 광물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출자지원 필요
 - 광산물비축사업 출자금은 크롬 등 10광종의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6년까지 79.3천톤을 비축할 계획
 - 자원의 극단적 지역편재성으로 인한 공급불안정성과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원확보 경쟁심화로 공급과 가격의 변동성 확대
- '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희유금속 비축량은 국내수요량의 30.5일분으로 목표(국내수요량의 60일분, 79.3천톤)대비 50.8%에 불과
 - '16년까지 희유금속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매소요재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자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40,000	45,000	40,000	△ 5,000	△ 11.1
▪ 비축광산물구매 (산출근거)	40,000	45,000 (9,824톤×4,581천원×100%)	40,000 (7,922톤×5,049천원×100%)	△ 5,000	△ 11.1
□ 비목(합계)	40,000	45,000	40,000	△ 5,000	△ 11.1
○ 출자금(460-1)	40,000	45,000	40,000	△ 5,000	△ 11.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및 자원정책에 반영
 - 정부는 광산물 비축사업을 승인('05.4)하고 비축규모는 정부비축기능 조정회의에서 확정('07.2)
- 광산물 공급위기에 대비한 광산물 비축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 '16년까지 10개 희유금속(79.3천톤) 비축에 3,311억원 투자

< 광산물 비축목표('16) >

구분	크롬 (Cr)	몰리브덴 (Mo)	안티모니 (Sb)	티타늄 (Ti)	텅스텐 (W)	니오븀 (Nb)	셀레늄 (Se)	희토류 (RE)	갈륨 (Ga)	지르코늄 (Zr)	계
비축량 (톤)	70,911	2,910	1,650	1,610	90	1,040	2	830	2	255	79,300

* 선정기준 : 희유금속 광산물 중 생산·수출 편중도, 시장의 불안정성, 첨단 산업원자재, 국내 생산능력, 저장성 및 군수물자 등 고려

- 희유금속 중심의 장기전략적 비축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및 新성장 동력산업에 필수적인 산업원료인 희유금속의 수급안정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50	14,857톤×3,029천원×100%
'14	400	7,922톤×5,049천원×100%
'15	300	8,078톤×3,714천원×100%
'16	300	7,929톤×3,784천원×100%
'17	300	7,638톤×3,928천원×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1항 3호(광산물의 비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추진경위

- '04.12 공사법 개정을 통해 광산물 비축사업 법정 사업화
- '05.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물비축사업 승인
- '06. 9 정부비축업무 조정회의 및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 '07. 2 조달청과 비축업무 조정, 비축기지 제공 합의
- '07.12 크롬 등 4광종 3,346톤 최초 비축
- '13.12 희토류 등 9광종 40,411톤(누적기준) 비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광산물비축 사업출자	85	300	400	450	4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5 (85)	- (-)	- (-)	85 (85)	85 (85)	- (-)	- (-)
'11년	300 (300)	- (-)	- (-)	85 (85)	300 (300)	- (-)	- (-)
'12년	400 (400)	- (-)	- (-)	85 (85)	400 (4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경위 국정감사시('10.10)에서 중국의 자원무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희유금속 비축의 조기 달성 필요성 제기하고 희토류는 온도, 습도에 매우 민감하여 항온항습 기능의 특수창고를 조기 완공하여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비축할 것을 주문
 - '11년 예산 300억원 반영, 희토류 비축을 위한 특수창고(항온,항습) 조기 완공('11.10), 희토류 비축량 확대('11년 300톤 계획)
- 지경위 국정감사시('11.10)에서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강구 주문
 - '12년 예산 400억 반영, 희토류 비축일수 및 비축량 확대('14년까지 국내수요량의 100일분인 1,500톤 조기비축 예정)
- 지경위 국정감사시('12.10)에서 공급위기를 대비한 비축노력 및 전문적·경제적 비축관점에서 공사와 조달청간의 비축품목 조정 관련 업무협의 주문
 - '13년 예산 450억 반영, 희유금속 비축확대(78,400톤 → 79,300톤), 비축광종 조정은 기재부와 산업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광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예결위 '12년 결산검토시 조달청과 재협의를 통해 군산비축기지 임대료 면제 추진
 -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33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공익 사업용(비축사업)으로 조달청과 면제 협의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감사원 '11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시 희유금속 비축목표 일수와 비축품목 결정 불합리 지적('12.4월 통보)
 - '12년 연구용역(희유금속 비축 적정성 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수행으로 개선방안 도출하여 비축품목 확대 및 비축목표일수 차등화 추진

3) 자체평가

- 지경위 '09에특회계 예산검토에서 광물공사에 신축창고를 제공함에 따라 군산 비축창고 이전 완료('12.6)
- 최근 중국 등 희유금속 수출 국가들의 수출규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비축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희유금속의 확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추가 예산 지원 절실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희유금속에 대한 통제 증가 등 규제 강화
 - ▶ 中, 희토류 광산 11곳 국가통제, 매일경제, '11.1.22
 - ▶ 中, 희토류 자원세 10배이상 올려, 서울경제, '11.3.26
 - ▶ 中, 희토환경우선, 희토관리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12.6.21
 - ▶ 中, 희토류공정 본격화, 국가차원 전략비축 나서, 조선일보, '12.7.7
 - ▶ 美, 분쟁광물 규제 전자업체 영향권, 전자신문, '13.7.15 등 다수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당초 목표대로 '16년까지 국내수요량의 60일분(79.3천톤) 비축을 위해 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가 요구
- 중국의 희유금속 수출규제에 대비하여 희유금속의 수입 다변화 전략을 수립 추진 예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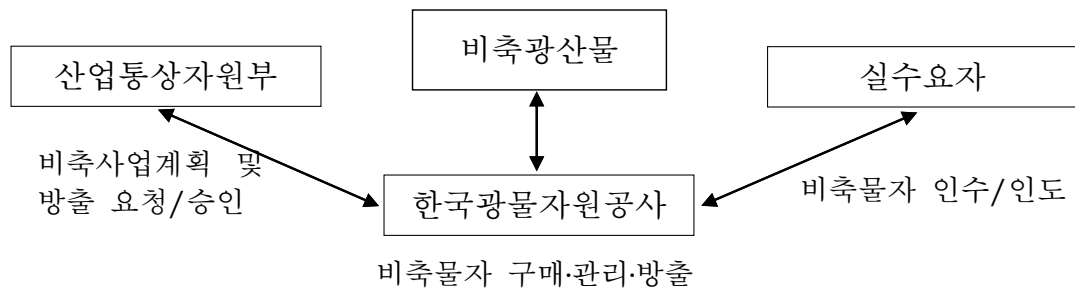
○ 외국의 사례

구 분	비축 목적	제도창설	비축품목(수)	비축목표	비축기관
미국	전략비축 국가비상사태대비	1939년	크롬, 탄탈륨 등 20개 품목	국내수요 3~4년분	- 연방비상관리처(FEMA), - 국방병참처(DLA) 산하 국가방위비축센터(DNSC)
일본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83년	니켈, 크롬 등 7개 희유금속	국내수요 60일분	- 국가(42일) : 석유가스 금속기구(JOGMEC) - 민간(18일) : 특수금속협회
중국	전략비축 경제안정보장비축	1953년	비철금속 및 안티모니 등 희유금속	품목별 상이 (1-3개월)	- 물자비축국(SRB) - 국가물자비축센터

○ 민간사례

비축물자	정부부처	비축관리기관
비철금속, 희유금속(10광종)	기획재정부	조달청
석유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무연탄	"	대한석탄공사
농·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	해양수산부	수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1) 세부산출내역
- (2) 광산물 비축사업
- (3) 희유금속 가격동향

참고 1

세부 산출내역

'13년 예산(45,000백만원)	'14년 예산(4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롬 구입 16,148백만원(8,901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크롬(HC) 1,667천원/톤×8,079톤=13,470 - 페로크롬(LC) 3,258천원/톤×822톤=2,678 ○ 몰리브덴 구입 4,597백만원(23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몰리브덴 19,987천원/톤×230톤=4,597 ○ 안티모니 구입 1,075백만원(1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티모니 10,750천원/톤×100톤=1,075 ○ 티타늄 구입 387백만원(8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티타늄 4,838천원/톤×80톤=387 ○ 텅스텐 구입 127백만원(3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텅스텐분 42,333천원/톤×3톤=127 ○ 니오븀 구입 1,468백만원(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니오븀 29,367천원/톤×50톤=1,468 ○ 희토류 구입 21,198백만원(46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륨화합물 42,855천원/톤×200톤=8,571 - 산화이트륨 113,200천원/톤×10톤=1,132 - 기타화합물 45,980천원/톤×250톤=11,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롬 구입 14,172백만원(7,153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크롬(HC) 1,981천원/톤×7,153톤=14,172 ○ 몰리브덴 구입 4,607백만원(2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몰리브덴 23,035천원/톤×200톤=4,607 ○ 티타늄 구입 1,559백만원(1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티타늄 15,590천원/톤×100톤=1,559 ○ 텅스텐 구입 1,427백만원(3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텅스텐 41,722천원/톤×18톤=751 - 텅스텐분 56,333천원/톤×12톤=676 ○ 니오븀 구입 4,025백만원(12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니오븀 33,542천원/톤×120톤=4,025 ○ 희토류 구입 12,820백만원(218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륨화합물 60,080천원/톤×100톤=6,008 - 산화이트륨 104,944천원/톤×18톤=1,889 - 기타화합물 49,230천원/톤×100톤=4,923 ○ 갈륨 구입 710백만원(1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륨 710,000천원/톤×1톤=710 ○ 지르코늄 구입 680백만원(1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지르코늄 6,800천원/톤×100톤=680

참고 2

광산물 비축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원료인 주요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 전략적 비축사업 추진으로 국가 비상시 대응력을 제고
- 비축목표량 : 주요 전략광물의 국내 연간소비량의 2개월(60일)분
 - * 단, 희토류, 텅스텐은 '14년까지 조기비축 달성
- 소요예산 : 3,311억원(~'16)
- 대상품목(10광종) :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텅스텐, 니오븀, 티타늄,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 비축현황 : '13년말 크롬 등 9광종 40,411톤(비축일수 30.5일, 누계) 비축 중
(단위: 톤)

구분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총계
목표량	70,911	2,910	1,650	1,610	90	1,040	2	830	2	255	79,300
'07	3,136	90	-	100	20	-	-	-	-	-	3,346
'08	2,200	100	200	50	10	30	-	-	-	-	2,590
'09	2,300	160	100	90	-	-	-	3	-	-	2,653
'10	1,600	80	100	30	5	30	1	59	-	-	1,905
'11	6,453	102	150	70	5	60	1	100	-	-	6,941
'12	6,726	400	400	70	2	320	-	200	1	-	8,119
'13	13,309	630	200	80	18	370	-	250	-	-	14,857
합계	35,724	1,562	1,150	490	60	810	2	612	1	-	40,411
비축일수	25.2	37.6	41.8	16.7	56.0	50.6	50.0	73.7	325	-	30.5

□ 비축기지 : '07.2월 '정부비축기능조정회의'에 의거 조달청 비축기지 임차 사용 중

- 군산비축기지(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76-1)
 - 임차면적 : 창고 30,167.6㎡(일반창고 27,170.0㎡, 특수창고 2,977.6㎡)

<비축기지 전경>



<비축광산물 관리 현황>



참고 3

희유금속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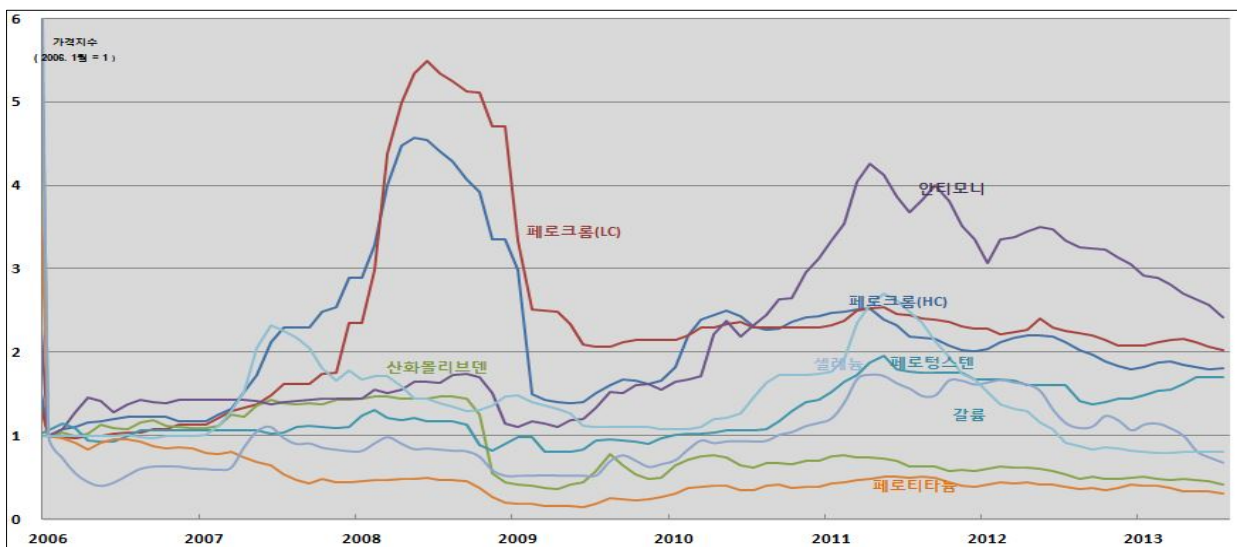
□ '14년 희유금속 시장동향

○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희유금속 가격상승 전망

- 단, 세계경기 회복전망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희유금속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 GDP전망('13→'14): World Bank(2.2%→3.0%), IMF(2.9%→3.6%)

< 희유금속 지수 동향 >



< 희유금속 가격 동향 >

(단위 : \$/kg, %)

구분	'07	'08	'09	'10	'11	'12 (A)	'13 (B)	변동율
페로크롬(HC)	2.4	4.7	2	2.8	2.7	2.5	2.2	△12.0
페로크롬(LC)	3.2	9.7	4.9	4.8	5.0	4.6	4.3	△6.5
산화몰리브덴	67.4	66.4	25.3	35	34.2	28.1	22.7	△19.2
페로몰리브덴	70.8	69.3	31.7	41	37.6	31.3	25.8	△17.6
안티모니	5.5	6.1	5.2	9.1	14.7	12.8	10.3	△19.5
페로티타늄	10.7	7.7	3.6	6.8	8.4	7.2	6.1	△15.3
텅스텐분	33	32.8	28	32.7	53.9	49.2	48.3	△1.8
페로니오븀	21.9	34.4	39.5	42	44.2	42.0	41.0	△2.4
희토류	디스프로슘	115.4	151.2	142.7	307.2	1,941.9	1,623.1	△56.9
	산화세륨	2.5	4.4	4.2	21.5	100.3	22.9	△65.9
	산화란탄	3	8	5.8	22.7	102.4	23.4	△67.5
	산화이트륨	7	15.3	13.5	25.9	138.5	88.2	△71.3
	산화네오디뮴	29.3	27.2	15.4	47.6	233.5	117.4	△40.4
갈륨	641.3	538.6	441.9	517.6	799.3	392.6	293.9	△25.1

※ 자료원 : Metal-pages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010	1,460	1,457	△3	△0.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300 - 5341 - 302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장(김남정,
044-203-5150), 주무관(최용균, 044-203-51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계속 (‘13년까지 기투자액 : 49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소요경비의 100% 이내)
사업시행주체	한국광물자원공사

2. 사업목적

☐ 광산물비축자산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 녹색성장 관련 국가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녹색성장 및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원료광물인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수행중인 광산물 비축사업과 관련된 비축 광산물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광산물 비축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관리 소요비용 1,457백만원

* 총액 1,457백만원 : 인건비 118백만원, 운영경비 1,33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속적 경비지원을 통한 광산물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
 - (광산물 구매관리) 광산물 시장동향분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기본방향설정, 합리적인 구매계획수립 후 구매실시, 광산물 인수시 검수·검사를 통한 광산물 심사
 - (비축시설 및 광산물 관리) 비축시설·광산물에 대한 재난예방, 보안, 기타 비축관련 장비 등 유지 보수
 - (비축사업 선진화 추진) 광산물 수급 등 시장동향에 적응토록 비축계획 조정 및 비축제도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자료획득, 연구, 회의 참석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010	1,460	1,457	△3	△0.2
▪ 인건비	103	118	118	-	-
▪ 운영경비	907	1,342	1,339	△3	△0.2
☐ 비목(합계)	1,010	1,460	1,457	△3	△0.2
○ 민간경상보조(320-01)	1,010	1,460	1,457	△3	△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전략 비축시설 및 비축광물의 차질 없는 관리·운영
- 비축량 증가에 따른 동산종합보험 등 고정관리비용 증가분을 절전 등 변동비용 절감을 통해 현 수준의 운영경비 유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4.6	- 인건비(3명):118백만원 - 운영경비:1,342백만원
'14	14.6	- 인건비(3명):118백만원 - 운영경비:1,339백만원
'15	14.6	- 인건비(3명):118백만원 - 운영경비:1,339백만원
'16	14.6	- 인건비(3명):118백만원 - 운영경비:1,339백만원
'17	14.6	- 인건비(3명):118백만원 - 운영경비:1,33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1항 3호(광산물의 비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추진경위

- '04. 12 공사법 개정을 통해 광산물비축사업 법정 사업화
- '05. 4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물비축사업 승인
- '07. 2 정부비축기능조정회의에서 비축품목, 기지 및 규모 확정
- '07. 12 광산물 비축(크롬 등 4광종 3,346톤) 개시
- '08. 1 광산물 비축자산관리보조 사업 개시
- '13. 12 광산물 비축(크롬 등 9광종 40,411톤) 및 자산관리 지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광산물비축자산 관리보조	6	6	10	15	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6 (6)	()	()	6 (6)	6 (6)	()	()
'11년	6 (6)	()	()	6 (6)	6 (6)	()	()
'12년	10 (10)	()	()	10 (10)	10 (1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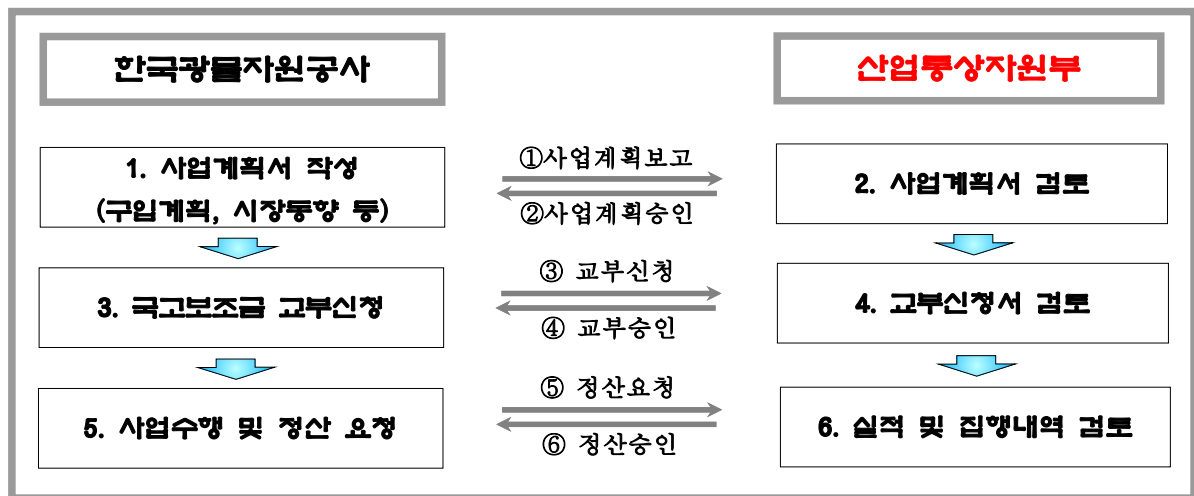
○ 외국외의 사례

구 분	비축 목적	제도창설	비축품목(수)	비축목표	비축기관
미국	전략비축 국가비상사태대비	1939년	알루미늄, 크롬 등 20개 품목	국내수요 3~4년분	- 연방비상관리처(FEMA), - 국방병참처(DLA) 산하 국가방위비축센터(DNSC)
일본	국가비상사태대비 경제안전보장	1983년	니켈, 크롬 등 7개 희유금속	국내수요 60일분	- 국가(42일) : 석유가스 금속기구(JOGMEC) - 민간(18일) : 특수금속협회
중국	전략비축 경제안정보장비축	1953년	비철금속 및 안티모니 등 희유금속	품목별 상이 (1-3개월)	- 물자비축국(SRB) - 국가물자비축센터

○ 민간의 사례

비축물자	정부부처	비축관리기관
비철금속, 희유금속(7광종)	기획재정부	조달청
석유류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무연탄	"	대한석탄공사
농·축산물	농림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	국토해양부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예산 세부산출 내역

참고 1

예산 세부산출 내역

'13년 예산안(1,460백만원)	'14년 예산안(1,4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1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3명) 39,500천원×3명=118 ○ 지급임차료 6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1,846.47원/㎡×30,147.6㎡×12월=668 ○ 보험료 16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종합보험 1,200억×0.14%=168 - 화재보험 1백만×1회=1 ○ 지급수수료 20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원 용역 2,187.5천원×12월×5명=131 - 검정료 1,300천원×50회=65 - 보안시스템 용역비 275천원×12회=3 - DHL발송료 111천원×50회=6 ○ 여비교통비 4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촉광산물인수 243천원×3인×50회=37 - 비촉기지점검 163천원×2인×12월=4 - 업무협의(조달청 등) 163천원×2인×4회=1 - 시장조사(중국) 2,000천원×2인×1회=4 - 자료수집 참가비 2,000천원×1회=2 ○ 도서인쇄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탈페이지 및 아시아메탈 연간 구독료 1,500천원×1회×2종=3 - 회유금속 통계집 발간 1,500천원×1회=1 - 회유금속 설명자료 발간 1,300천원×1회=1 ○ 차량비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촉기지 지게차 유류대 1,000ℓ(연)×1,800원=2 - 비촉기지 차량 유류대 5,000ℓ(연)×1,800원=9 - 지게차 보험 1백만×1회=1 ○ 운반보관료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토 순환비축 운반비 39대×500천원=20 ○ 전력수도료 20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수도료 16,917천원/월×12월=203 ○ 기타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동 연료유지비 333천원(월)×3월=1 - 통신비 100천원(월)×12월=1 - 잡비 등 833천원(월)×12월=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1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3명) 39,500천원×3명=118 ○ 지급임차료 6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1,846.47원/㎡×30,147.6㎡×12월=668 ○ 보험료 16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종합보험 1,600억×0.106%=169(요일하락) - 건물화재보험 삭제 (조달청 부담) ○ 지급수수료 2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원 용역 2,187.5천원×12월×5명=131 - 검정료 1,300천원×66회=86 - 보안시스템 용역비 275천원×12회=3 - DHL발송료 111천원×50회=6 ○ 여비교통비 5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촉광산물인수 243천원×3인×60회=44 - 비촉기지점검 163천원×2인×12월=4 - 업무협의(조달청 등) 163천원×2인×4회=1 - 시장조사(중국) 2,000천원×2인×1회=4 - 자료수집 참가비 2,000천원×1회=2 ○ 도서인쇄비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탈페이지 연간 구독료 2,600천원 - 아시아메탈 연간 구독료 2,400천원 ○ 차량비 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촉기지 지게차 유류대 1,300ℓ(연)×1,800원=2 - 비촉기지 차량 유류대 6,600ℓ(연)×1,800원=12 - 지게차 보험 2백만×1회=2 ○ 운반보관료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토 순환비축 운반비 39대×500천원=20 ○ 전력수도료 168백만원(계약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수도료 14,000천원/월×12월=168 ○ 기타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동 연료유지비 333천원(월)×3월=1 - 통신비 100천원(월)×12월=1 - 잡비 등 833천원(월)×12월=10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28,612	35,115	43,789	8,674	24.7

* 사업코드 : 24 - 4 - 110 - 115 - 5500 - 5531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종), 에너지안전과장(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김진준, 044-203-51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97년~계속
총사업비	▪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5,151억원)
사업규모	▪ 가스안전관리 검사, 점검, 시험·인증, 교육 등 약 1,650 만건
지원조건	▪ 출연(수지차 보전)
사업시행주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검사, 점검, 진단, 교육, 홍보 및 연구개발 등 가스 안전관리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5,579백만원 중 자체수입(86,264백만원)을 제외한 39,315백만원(수지차 보전)

$$\begin{aligned}
 & \text{총사업비}(125,579\text{백만원}) \\
 & (-) \text{ 자체수입}(86,264\text{백만원}) \\
 & = \text{출 연 금}(39,315\text{백만원})
 \end{aligned}$$

- 가스안전검사, 점검, 교육, 홍보 및 연구개발 등 가스안전관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43,789백만원
 - '14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총지출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차액 지원(수지차 보전)
 - * 출연금(A-B) : 43,789백만원
 - * 총지출예산(A) : 130,808백만원, 자체수입(B) : 87,099백만원
- 자체수입(85,410 → 87,099백만원, +1,689백만원)
 - 증가요인(+41.7억원)
 - 도심지 노후 도시가스배관 정밀안전검사(+21.5), LPG사용시설 완성 검사대상 확대 등 검사대상 물량 증가(+20.2)
 - 감소요인(△24.7억원)
 - LPG 용기재검장 상주인원 배치(26명) 등 정부대책 수행에 따른 검사 인력 축소(기술용역 축소, △5), 해외공장 등록심사 주기경과(△16.7), 자율검사 민간검사기관 이관(△3)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75,919 → 80,233백만원. +4,314)
 - 인건비는 공통인상률(1.7%) 및 정원조정(59명) 등을 반영하여 4,136백만원 증액
 - 경상비는 수선유지비(200백만원) 정평 A등급(48백만원) 증액, 비경직성경상비 (70백만원) 감액
- 가스안전사업비(44,606 → 50,655백만원, +6,049백만원)
 - 국정과제 및 국감지적사항 이행 소요 3,024백만원
 - * 국정과제 II-6-87 : 도심지 노후 도시가스 배관 정밀안전검사 장비 구입소요 2,411백만원
 - * 국정감사 지적
 - ① 폐기 대상 LPG용기 유통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시범사업비 492백만원
 - ② 삼척 가스폭발사고 후속대책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확대' 소요 121백만원

- 개원 10년경과 가스안전교육원 대규모 수선유지 등 소요 723백만원
 - * 내·외벽 및 바닥 크랙, 누수, 진공 강화유리창 교체 등 시설 안전유지를 위한 대규모 수선유지 소요 523백만원
 - * LPG사용시설 점검실습장 현대화 리모델링 소요 200백만원
- 본사 지방이전 특이요소 반영 2,302백만원
 - * 이전비(785백만원), 청사유지관리비(1,517백만원) 증액

□ 지원 필요성

- 가스는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안전 확보가 필수적임
 - 가스안전관리 분야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공익사업 영역이며,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
 - * 가스안전관리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약 3조원(한국조세연구원 연구결과)
- '94.12 아현동 사고(사망 12명, 부상 101명, 재산피해 199억원)
 - '95. 4 대구지하철공사장 사고(사망 101명, 부상 201명, 재산피해 540억원)
 - '98. 9 부천 LPG충전소 사고(사망 1명, 부상 84명, 재산피해 137억원)
 - '10. 8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중상 6명, 경상 12명)
- 최근 첨단산업의 발달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다양한 가스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시설의 노후화·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형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최근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출사고로 국민의 불안 가중
 - 1960~1980년에 집중 설치된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 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대형사고 위험 상존
 - 전국 도시가스배관망 확대 설치에 따른 타공사 사고위험 상존
- 또한, 가스소비량 및 안전관리 업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 최근 5년간 가스안전관리 대상 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감(%)
가스소비량	36,383	35,249	41,812	43,674	46,316	6.2
안전관리 대상 업소수(개)	548,439	600,909	640,933	713,682	753,607	8.3

- 안전관리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체수입으로는 안전관리 투자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28,612	35,115	43,789	8,674	24.7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28,612	35,115	43,789	8,674	24.7
☐ 비목(합계)	28,612	35,115	43,789	8,674	24.7
▪ 출연금	28,612	35,115	43,789	8,674	24.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가스 사용량의 증가와 국민의 안전수요 확대에 걸맞게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가스사고 사망자수 저감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최근 5년간 연평균 가스소비량 증가율(6.2%) 및 물가인상률(3%)을 반영하고, 자구노력(수입증대)에 따른 출연금 감소액 반영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51	▪ 가스안전 검사, 점검, 시험, 진단, 연구개발, 교육 등 16,338천건
'14	438	▪ 가스안전 검사, 점검, 시험, 진단, 연구개발, 교육 등 16,623천건 ▪ 국정과제 및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반영
'15	295	▪ 물가 인상률 : 3% ▪ 안전관리 대상업소 증가율 : 6% 반영 ▪ 수입 증대에 따른 출연금 감액 : 9억
'16	266	▪ 물가 인상률 : 3% ▪ 안전관리 대상업소 증가율 : 6% 반영 ▪ 수입 증대에 따른 출연금 감액 : 14억
'17	239	▪ 안전관리 대상업소 증가율 : 6% 반영 ▪ 수입 증대에 따른 출연금 감액 : 20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3호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74. 1. 7 고압가스보안협회 설립(공사 전신)
- 1979. 2. 1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 발족
- 1984. 7. 1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 개시 및 운영비 지원
- 1997. 1. 1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에특회계 편입 및 운영비 보조
- 2007. 4. 4 정부출연기관 전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한국가스안전 공사 지원	206	25,1	286	351	4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06 (206)	()	()	206 (206)	206 (206)	()	()
'11년	251 (251)	()	()	251 (251)	251 (251)	()	()
'12년	286 (286)	()	()	286 (286)	286 (28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정부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 기관평가 "A", 기관장평가 "A"

○ 2010. 10월 국회 국정감사[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의원(한) 지적 사항

▪ 보유장비 노후화가 심각(63.1%가 내용년한을 경과).

▪ 노후장비의 교체 방안을 마련 할 것

※ 노후장비 개선 및 관련예산 확보 방안마련

○ 2011. 2월 감사원 감사의 지적(권고) 사항

▪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장비는 중요성을 감안 연차적 구입이 아닌
조기 확충 필요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험·검사장비 선진화 연차별 구입계획 수정
지적

< 시험·검사장비 선진화 계획 감사원 권고(안) >

(단위 : 점,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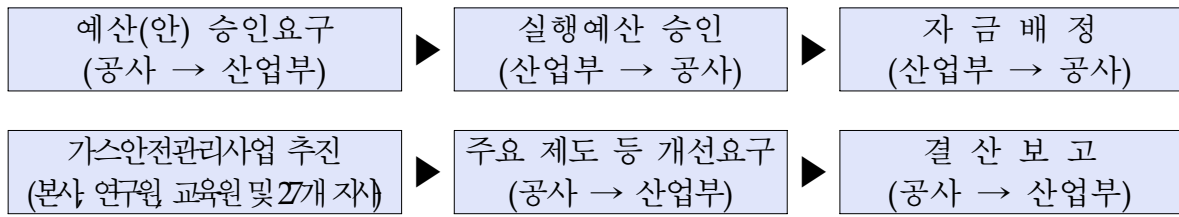
구분	계		'12년		'13년		'14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196	47,144	4,979	17,269	154	19,284	63	10,591
기존장비	5,058	14,975	4,919	6,606	110	4,748	29	3,621
신규장비	138	32,169	60	10,663	44	14,536	34	6,970

- 2012. 10월 국회 국정감사[지식경제위원회] 지적 사항
 - LPG 사고 점유율이 높은 비검사대상 시설의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권은희(새), 전순옥(민) 의원]
 - LPG 용기관리가 부실하므로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확보할 것[우윤근(민) 의원]
- 2013. 4월 국회(임시회) 지적사항
 - 도심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전정희(민), 오영식(민) 의원]
 - 폐기대상 노후 LPG용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정수성(새) 의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의 경우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로 인식하여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준 정부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국가별로 차이
 - 환경, 보건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를 지속 강화하는 추세
 - 운영 재원은 부담금, 기금 등으로 충당
- 민간에서는 제품분야 등 수익성이 큰 일부 분야에만 참여
 - 수익성이 낮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및 관련법령 현황

참 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및 관련법령 현황

- 고유목적사업 : 가스시설 등에 대한 검사, 점검, 교육, 홍보, 연구 개발 및 기술건설등
 - 정부위탁사업 ▶ 3개 법령, 22개 업무
 - 공공목적사업 ▶ 진단·시험·인증 등 14개 업무

【 검사사업 】

○ 시설검사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1	중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	고압가스제조, 충전, 저장시설 등의 설치 시 시설완공 후 확인이 불가한 배관·탱크의 매몰공정 등에 대하여 시설완공 전에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도처
2	완성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및 제20조제4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가스3법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완공) 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도처
3	시공감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사업소 경계 밖의 고압가스배관과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도처
4	정기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가스3법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1~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도처
5	정밀안전검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3항	대형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15년 경과) 된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검사(15년 경과 후 매 4년마다 실시)	공정·장치진단처
6	정밀안전진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9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도시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하여 설치년도 15년 경과 후 5년마다 실시	공정·장치진단처
7	안전성평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9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안전성 평가	공정·장치진단처

○ 제품 검사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8	용기신규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고압가스 용기에 대하여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시험검사실
9	용기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생산된 용기에 대하여 1~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시험검사실
10	특정설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저장탱크 등의 특정설비에 대하여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시험검사실
11	특정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생산된 저장탱크 등의 특정설비에 대하여 1~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시험검사실
12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1조제2항	LP가스 또는 도시가스용 연소기·기기 등의 용품을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시험검사실
13	정밀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제2항	용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등의 시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형식승인 검사	시험검사실
14	냉동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냉동기 등에 대하여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도처

○ 심 사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15	기술검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허가신청의 허가 또는 신고·승인 전에 검토	검사지도처
16	안전성향상 계획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대규모의 고압가스 제조·저장 시설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성확인 평가	공정·장치진척 단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17	가스안전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안전성 평가	검사지도처
18	안전관리규정심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가스 3법 허가시설의 신규사업 시 및 시설변경시에 사업자가 작성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사업 허가 관청 제출전에 공사가 실시하는 심사	검사지도처

【 기술컨설팅사업 】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19	시험인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제2항	금속성분분석, 강도시험 등의 의뢰시험, 천연가스, 독성가스 등의 가스성분분석, 우리 공사의 방폭기기 인증 등	시험검사실 해외사업지원 처
20	수탁안전진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가스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	공 정 · 장 치 진 단 처
21	송유관검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5조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검사를 위탁받아 실시	공 정 · 장 치 진 단 처
22	자율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사업자의 위탁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검사지도처
23	고압가스수입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를 처리	검사지도처

【 교육사업 】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24	특별교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제28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제1항	가스3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으로 가스분야 신규종사자의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평생 1회 수강(예, LP가스 차량 운전자 교육)	교육연수실
25	전문교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1항	가스3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으로 가스산업체에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기술교육(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	교육연수실

【 점검사업 】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26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안전장치 보급 등	사고점검처
27	재난안전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재난안전관리시설 정기점검 및 사고예방활동	사고점검처
28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대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보일러 부적합 시설 D/B관리 및 실태조사, 가스보일러 설치 현황 종합분석집 발간 등	사고점검처
29	가스사고조사 및 분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사고 현장조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가스사고 모의실험 등	사고점검처
30	가스사고 원인 분석 및 정보 제공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가스사고연감 발간, 사고발생 취약시기별 분석·대책 수립 등	사고점검처
31	가스사고 예방 활동 및 지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8조	통합상황실 운영, 가스사고 사고 사례집 발간, 가스사고우려시설 현장실태조사 등	사고점검처

【 홍보사업 】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32	대중매체홍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TV 캠페인 및 CF, TV 기획 프로그램, 라디오캠페인, 신문·잡지, SP매체 광고, 네티즌 대상 온라인 홍보 등	홍 보 실
33	행사를 통한 홍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가스안전대상, 포스터 순회전 시회, 시민단체 연계행사, 유관업체 연합홍보, 위밍업코리아 등	홍 보 실

【 연구개발사업 】

구분	업 무 명	법 적 근 거	주요 업무내용	소관부서
34	수탁연구용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정부 또는 기업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연구용역	연구관리실·안전연구실
35	자체연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연구관리실·안전연구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재량, 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4,776	13,187	13,187	-	-

* 사업코드 : 24 - 4 - 110 - 115 - 5500 - 5531 - 304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에너지안전과장(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박상철, 044-203-51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15년
총사업비	718억원 (‘13년까지 기투자액 : 439억원)
사업규모	서민층 408,532가구
지원조건	지자체 경상보조(‘11년 : 전액 국비보조, ‘12년부터 지자체 매칭), 민간경상보조(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
-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안전기기 시범보급을 통해 가스안전 확보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시설개선을 위해 13,187백만원
 -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 12,860백만원(71,620가구)
 - * '14년 지원 대상 71,620가구에 대해 지자체 매칭(20%)으로 사업 추진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시범보급 지원 327백만원(1,000개소)

<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비 고
합 계		13,187	서민층 71,620 가구, 가스안전기기 1,000개소
금속배관 교체	▪ 시설개선	10,944	▪ 71,620가구×80%×19.1만원/가구 = 10,944백만원
	▪ 부대비용	312	▪ 홍보 및 인쇄비 160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18백만원 ▪ 지자체회의 및 일반비용 134백만원
	▪ 점검비용	1,604	▪ 71,620가구×80%×28천원/가구 = 1,604백만원
	소 계	12,860	71,620가구
다기능 가스안전 기기 시범보급	▪ 시설 설치	220	▪ 1,000개소×22만원/개소 = 220백만원
	▪ 부대비용	79	▪ 홍보 및 인쇄비 30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2백만원 ▪ 회의비 및 일반비용 47백만원
	▪ 점검비용	28	▪ 1,000가구×28만원/개소 = 28백만원
	소 계	327	1,000개소

* 부대비용 : 지역별 평가위원회 및 지역별 협의회 회의비용, 홍보비, 인지세 등

** 점검비용 : 시설개선 후 가스누출여부 등 안전성 확인 제반비용

□ 지원 필요성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호스를 2015. 12.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의무화*

* (개정 2010. 12. 23) 금속배관 교체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LP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안전기능이 부가된 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지원

- 자비(自費)로 가스안전설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안전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가스안전과 생활안정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14,778	13,187	13,187	-	-
▪ 금속배관 교체 지원사업	14,778	13,187 (78,900가구 ×209천원×80%)	12,860 (71,620가구×80% ×230천원/가구)	△ 327	△ 2
▪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보급 시범사업	-	-	327 (1,000개소 × 327천원)	327	순증
□ 비목(합계)	14,778	13,187	13,187	-	-
○ 자체단체경상보조	14,475	12,884	12,548	△ 336	△ 3
○ 민간경상보조(320-01)	303	303	639	336	11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LP가스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12년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 '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20%)으로 사업 추진
 - * 지자체에 공동사업 주체로서의 자격 부여와 예산 매칭을 통해 지원 대상가구 명단 확보 등 원활한 업무협조와 책임 의식 제고
-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다기능(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 보급사업 추진
 - '14 ~ '15년 시범사업 실시후 '16년부터 본격 보급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31.9	· 가스시설개선 지원 : 78,900가구
'14	131.9	· 가스시설개선 지원 : 12,860백만원(71,620가구) · 가스안전기기 설치사업 : 327백만원 (1,000개소)
'15	106.0	· 가스시설개선 지원 : 15,028백만원 (81,600가구) · 가스안전기기 설치사업 : 1,011백만원 (3,770개소)
'16	-	
'1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LPG 고무호스 사용주택 2015. 12. 31일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개정 2010. 12. 23)

○ 추진경위

- 1995년 ~ 2010년(가스안전공사 자체예산과 지자체 합동 사업 추진)
 - LPG호스 사용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2,764가구 중 '10년까지 267,695가구 가스시설개선 지원
- 2011년(신규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85,069가구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 2012년(계속사업)
 - 차상위계층 91,343가구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 2013년(계속사업)
 - 소외계층 등 서민층 78,900가구에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59	148	132	1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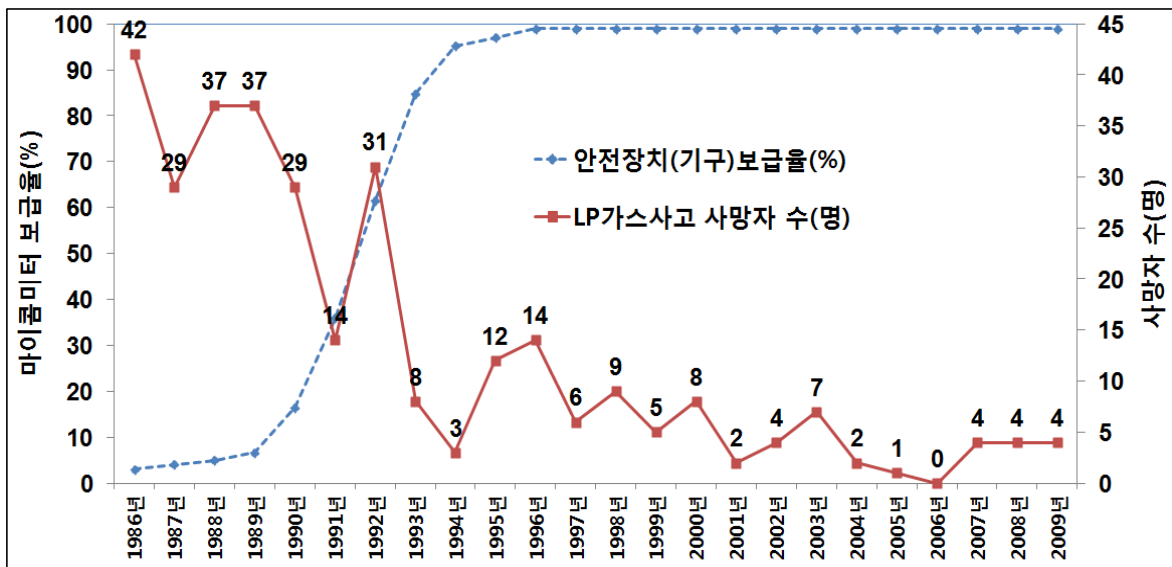
○ 국회 지적(2010년)

- 서민층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관련, 차상위 계층까지 예산지원 확대 필요(김성회의원, 정태근의원)
- 국민기초 시설개선 실적 지역별 편차 지적 및 조기 개선 필요(이종혁의원, 이상권의원, 강창일의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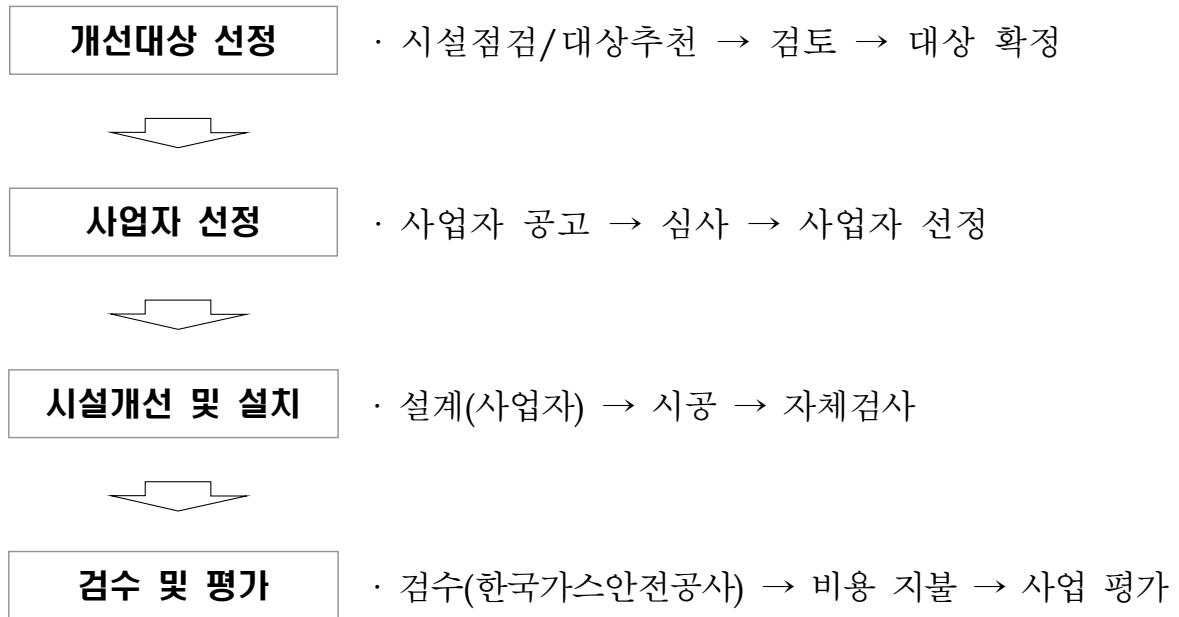
- 일본은 1986년부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보급하여 LP가스 사고 사망자수가 약 1/10 수준으로 감소

《일본의 안전기구 보급에 따른 LP가스사고 사망자 수 추이》



* 일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보급률 : 99.7%이상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7)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8)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9)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부 산출내역
- 가스시설 개선 사례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시범보급사업

'13년 예산(13,187백만원)	'14년 예산(13,187백만원)
<p>○가스시설개선 사업(13,187백만원)</p> <p>▪시설개선비용 $78,000\text{가구} \times 80\% \times 18.54\text{만원/1가구}$ $= 11,569\text{백만원}$</p> <p>▪부대비용 - 홍보 및 인쇄비 151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18백만원 - 지자체회의 및 일반비용 134백만원</p> <p>▪시설검수비용 $78,000\text{가구} \times 80\% \times 21\text{천원} / 1\text{가구}$ $= 1,315\text{백만원}$</p>	<p>○가스시설개선 사업(12,860 백만원)</p> <p>▪시설개선비용 $71,620\text{가구} \times 80\% \times 19.1\text{만원/1가구}$ $= 10,944\text{백만원}$ *'14년 가구당 시설개선비용 인상 반영</p> <p>▪부대비용 - 홍보 및 인쇄비 160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18백만원 - 지자체회의 및 일반비용 134백만원</p> <p>▪시설검수비용 $71,620\text{가구} \times 80\% \times 28\text{천원} / 1\text{가구}$ $= 1,579\text{백만원}$</p> <p>○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보급 시범사업 (327백만원)</p> <p>▪시설개선비용 $1,000\text{가구} \times 22\text{만원/1개소} = 220\text{백만원}$</p> <p>▪부대비용 - 홍보 및 인쇄비 30백만원 - 제세공과금(계약인지) 2백만원 - 회의비 및 일반비용 47백만원</p> <p>▪시설검수비용 $1,000\text{가구} \times 28\text{천원} / 1\text{개소} = 28\text{백만원}$</p>

참고

가스시설 개선사례

개 선 전



호스시설(내부)



호스시설(외부)

개 선 후



배관시설 교체 및 퓨즈콕 설치



배관시설 교체 및 용기차양설치

□ 사업 목적

- 도시가스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다기능(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 사업 추진

《최근 5년간(2008~2012) LP 및 도시가스 시설미비 사고 비교(고의사고 제외)》

구분	사용가수('11년)	총 사고 건수	시설 미비사고	
			사고건수	사고빈도(백만개소당)
LP 가스	약 612만 개소	535건	85건	11.89건
도시가스	약 1,510만 개소	135건	27건	1.7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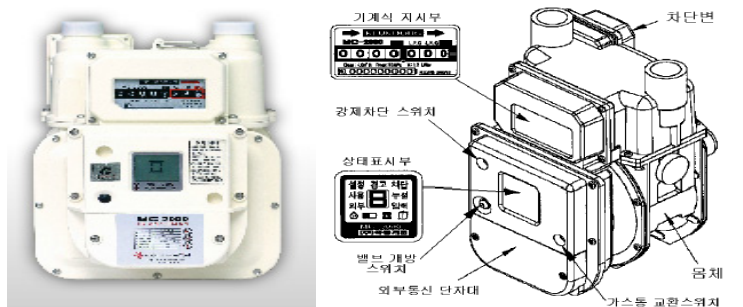
* 시설미비로 인한 LP가스사고는 도시가스에 비해 6.6배이상 많이 발생

□ 사업 내용

-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LP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안전기능이 부가된 지능형 가스안전계량기를 무료로 설치
 - 자비(自費)로 가스안전설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가스계량기능과 가스압력이상 미량누설 등 안전사고 경고 기능 및 가스검지기와 연동하여 누출감지 경보, 지진 발생시 자동차단기능 등을 갖춘 종합 가스안전장치



○ 가스안전기기 설치대상 시설 : 약 559,000가구

- * 서민층 약 95만가구 중 대상중복, 도시가스, 이사, 부재자 등 설치불가 가구를 제외
- 자비(自費)로 가스안전설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서민층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대상》

대상구분		가구수(A)	설치대상 가구수(B)	설치비율 (B/A×100)	비 고(대상제외사유)
사회복지시설		110,000	55,000	50.0%	·도시가스, 시설없음, 대상 중복 등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350,000	280,000	80.0%	·도시가스전환, 이사 등
차 상 위	장애인	120,000	78,000	40.0%	·대상중복, 도시가스사용, 시설없음 등
	한부모	100,000	40,000	40.0%	
	미취업	20,000	8,000	40.0%	
	희귀, 만성질환자	245,000	98,000	40.0%	
	소 계	590,000	406,000	40.0%	
총 계		945,000	559,000	54.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는 95~2011년까지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완료한 가구

□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4 ~ 2015 (2년간)
- 주요추진내용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기간(~2015)동안에는 본 사업 추진준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행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및 가스경보기 설치

구 분	2014년	2015년
설치가구수	1,000	3,770
소요예산(백만원)	327	1,011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1대당 설치비용 : 약 220,000원 소요

합 계	제품 구입비		설치 및 검수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가스경보기	
220,000원	140,000원	20,000원	60,000원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	1,831	4,000	6,832	2,832	70.8

* 사업코드 : 24 - 4 - 110 - 115 - 5500 - 5531 - 306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에너지안전과장(조응환,044-203-5130),
사무관(김진준, 044-203-51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15(4개년)
총사업비	307억원(‘13년까지 58억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6,684㎡, 건축연면적 : 4,236㎡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가스 화재·폭발실증 실험동 1동 - 초고압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1동 - 초저온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1동 - 공용 및 시편 보관동 1동 • 구조 및 외장재료 : 철근 콘크리트(내진설계) 및 외장판넬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 가스화재·폭발 사고의 재현·실증을 통한 원인규명, 고압장치의 부품 개발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센터 건립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4년 성능평가센터의 건축물 공사비(13,208백만원)의 50%인 66,040백만원
 - 공사비 6,545백만원 : $[1\text{m}^2\text{공사비}(2,052\text{천원}) \times 1.5\text{배} \times \text{연면적}(4,236\text{m}^2)] \times \text{공정율}(350\%)$
 - 감리비 48백만원 : $[\text{총공사비}(13,038\text{백만원}) \times \text{요율}(1.131\%)] \times \text{공정율}(35\%)$
 - 부대비 11백만원 : $[\text{총공사비}(13,038\text{백만원}) \times \text{요율}(0.244\%)] \times \text{공정율}(35\%)$
- 센터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건설비 228백만원 반영

□ 지원 필요성

- 사고의 예방·대책은 사고 재현실험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국내에는 가스사고 화재·폭발 실증설비가 없는 실정
 - * 과거에는 외국에 화재·폭발 실증시험을 의뢰하여 실험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 및 실증설비를 비공개하는 추세
- 과학·산업의 발달로 신소재를 이용한 초고압 저장·수송 제품과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능평가 시설 또한 없음
 - 선진국의 화재·폭발시험 등 안전성 인증요구가 국내기업 진출 장애로 작용
 - 현재, 고압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등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을 지원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생산 원가의 증가요인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	1,831	4,000	6,832	2,832	70.8
▪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	1,831	4,000	6,832	2,832	70.8
□ 비목(합계)	1,831	4,000	6,832	2,832	70.8
○ 출연금(350-01)	1,831	4,000	6,832	2,832	70.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건축 공사, 주요설비 제작·설치 등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3,938백만원 : [1㎡공사비(2,052천원) × 1.5배 × 연면적(4,236㎡)] × 공정율(30%) ▪ 감리비 52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요율(1.131%)] × 공정율(30%) ▪ 부대비 10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요율(0.244%)] × 공정율(30%)
'14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6,545백만원 : [1㎡공사비(2,052천원) × 1.5배 × 연면적(4,236㎡)] × 공정율(350%) ▪ 감리비 48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요율(1.131%)] × 공정율(35%) ▪ 부대비 11백만원 : [총공사비(13,038백만원) × 요율(0.244%)] × 공정율(35%) ▪ 도로건설비 228백만원 : 도로건설비(228백만원) × 공정율(100%)
'1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설비 제작비 1,313 백만원
'16	-	-
'17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최근 들어 CNG버스에서 10차례의 가스누출 및 폭발 사고 발생
 -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발생('10. 8월, 중상 6명, 경상 12명)
 - '10. 10월 국정감사시 CNG버스 용기폭발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시험센터 구축 필요성 지적
 - '11. 8월 사업예산 편성시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반영
- * 총사업비 222억원, 사업기간 4년('12~'15년), 초고압시험동 등 5개 시험·연구동 건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가스화재폭발·성능 평가센터구축	-	-	-	18	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10. 국정감사시 김종훈의원(한)과 조경태의원(민)이 CNG버스 용기폭발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시험센터 구축할 것을 요구
- * 당시 지경부장관이 화재·폭발 실증시험센터 구축 의사 피력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캐나다 Powertech Lab

- CNG 및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 시험기반 구축
- 시험 및 인증, 파괴해석, 설비 및 시스템 시험, 시뮬레이션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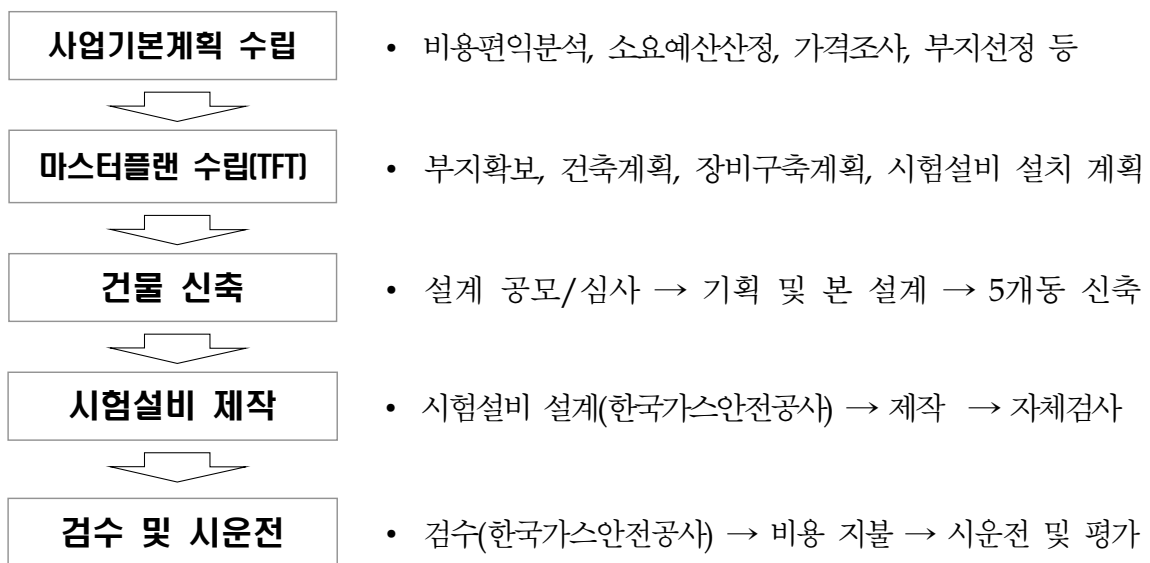
○ 일본 자동차연구소

- 초고압 복합재료용기 연료공급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설비 구축하여 700bar이상 연소·폭발 실험 실시

○ 독일 BAM

- 독일연방 물질연구 및 실험기관으로서 재료, 화학, 안전, 기초소재 등에 대한 연구
- 가스폭발, 화재폭발 분야 선도기술 개발, 국제인증규정 제정 및 개정과 성능인증 실시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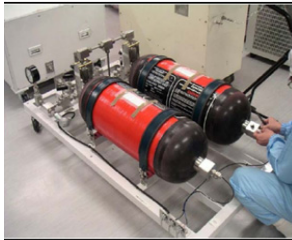
6. 참고자료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세부내역

① 사업개요

가스 화재 · 폭발 성능평가센터 개요

연료가스에 의한 화재·폭발 성능 평가와 초고압, 초저온 용기·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Test Bed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를 갖춘 연구시설

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	초고압 부품 성능평가	초저온 부품 성능평가	미래에너지 융·복합기술개발
			
			

◎ 핵심기능

- ◇초고압/ 초저온 및 대용량 가스 공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스 누출 화재·폭발 실증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가스안전관리 수준 향상
-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초고압, 초저온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인증 수행으로 기업의 시험·인증 수요 충족
- ◇기반시설을 활용한 미래에너지 융·복합 연구 수행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② 사업목적

- 각종 화재·폭발 사고 재현·실증을 통한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
 - 실증시험을 통한 사고현장 재현으로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실증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의 정량화 가능
 - 실증시험을 통한 용기·제품·시설의 안전성 검증으로 근원적 사고예방
- 고압장치의 화재 · 폭발 실험 및 부품개발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 인증을 지원·실시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CNG(207bar), 수소(350bar, 700bar) 등의 용기 및 부품은 국내 인증기관이 없어 외국에서 인증을 받고 있음

* 국내 CNG용기 제조사가 ECE(EN규격) 또는 NGV2(북미규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용기 1개당 평균 인증비용 7천7백만원과 8개월의 기간 소요

③ 건축비 산출내역('12년 예산심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 출 근 거
공사비	13,038	○ 산출연면적(4,236㎡) × 1㎡당공사비(3,078천원) - 폭발실험동 등 5개동 신축 연면적 ¹⁾ : 4,236㎡(약 1,283평) - 1㎡당공사비: 연구소 평균건축단가 ²⁾ (2,052천원) × 1.5배 ³⁾
부지매입비	1,121	○ 66,684㎡×16,700원/㎡(실거래가 환산가)
설계비	710	○ 산출공사비(13,038천원) × 설계요율 ⁴⁾ (5.449%)
감리비	148	○ 산출공사비(13,038천원) × 감리요율 ⁴⁾ (1.131%)
부대비용	32	○ 산출공사비(13,038천원) × 부대비추정율 ⁵⁾ (0.244%)
도로건설비	255	○ 센타 진입도로 공사비 - 진입 거리 0.15km × 1,697백만원/km
주요설비	6,860	○ 필수 설비 비교견적 최저가
합 계	22,164	

주1」 면적산출 세부내역 참고1 참고

주2」 2009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참조('10.05. 조달청 발표)

- 연구소 평균 1㎡공사비(2,052천원) 적용

ex)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02,691원/㎡,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2,248,925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2,303,239원/㎡

주3」 연구소 평균 1㎡공사비의 1.5배 적용 근거

- ◆ 가스 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는 폭발시험 압력 900bar 이상의 초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함
- ◆ 일본 자동차연구소 내압폭발시험 DOME의 경우 건물의 벽두께 1.2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

주4」 건축부문 제3종(복잡) 상급 설계비(감리비) 요율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주5」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주6 ‘호명-운곡간 郡道’에서 센터예정부지까지 150m 정도의 진입로 필요

* ‘호명-운곡간 郡道’ : 2차선, 폭 8m의 증평군 군도로서 2~3년에 완공예정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진입도로(郡道) 700M 공사시 1,188백만원 소요(‘11.1.1 설계 기준)

③ 연차별 건립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요구	검토				
부지매입비	2,334	1,121	1,121			
설계비	698	710	710			
공사비	13,038	13,038		3,938	9,100	
감리비	325	148		52	96	
부대비	655	32		10	22	
도로건설비	4,100	255			255	
주요설비	6,860	6,860			2,027	4,883
합 계	28,010	22,164	1,831	4,000	11,500	4,883

④ 주요건물 및 설비

○ 초고압/초저온부품성능평가실험동, 연소가스화재·폭발 실증실험동 등 구축

구 분	주요 실험실	소요면적[m ²]
연소가스화재·폭발 실증실험동	가스혼합설비실, 가스성분분석실, 기·액상누출실험실, 소형용기실험실, 화염가시화실험실, 유동해석실험실	792 (132×6개 실)
	실외 대형화재실험실 및 실험통제실	264
	소계	1,056
초고압 용기·부품 성능평가실험동	폭발 방호 DOME 및 실험통제실	626
	초고압 부품 성능평가실험실	432
	소계	1,058
초저온 용기·부품 성능평가실험동	초저온 용기 성능평가실험실	264
	열 물성실험실	432
	초저온 부품 성능평가실험실	432
	소계	1,128
사 무 동	사무실	900
시편 보관동	대형 실험시편 보관실	94
합 계		4,234

5 센터면적 산출세부내역

실험동	실험실명	면적 (㎡)	산 출 근 거
연소가스 화재·폭발 실험동	가스혼합설비실	132	○ 리시버탱크 2기 등 5종의 실험장비 설치 공간 : 132㎡(11m×12m)
	가스성분분석실	132	○ TD-GC/Mass등 4종의 분석시스템 설치 공간 : 132㎡(11m×12m)
	가·액상 누출실험실	132	○ 전기 가열식 수조등 4종의 실험장비 설치 공간 : 132㎡(11m×12m)
	소형 용기 폭발실험실	132	○ 소형용기 실내폭발 피해영향 분석 공간 : 132㎡(11m×12m)
	화염가시화 실험실	132	○ Nd-Yag레이저를 이용한 누출 길이 10m이상의 가스누출 상황 가시화 실험장비 설치 : 132㎡(11m×12m)
	유동해석실험실	132	○ 항온항습시스템, 클라이언트 시스템 등 9종의 유동 해석실험장비 설치 공간 : 132㎡(11m×12m)
	실외 대형화재 실험실 및 실험통제실	264	○ 실외화재 실험장(35m×80m×10m의 凹자형 모래 PIT 내 에서 화재·폭발 실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실 : 264㎡ (11m×24m) - 가·액상 가스 유량제어 시스템 설치 및 긴급차단시스템 설치 ※ 최대 10명 동시 수용 가능 공간
	소계	1,056	
초고압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폭발방호DOME 및 실험통제실	626	○ 폭발방호 DOME : 314㎡(3.14×10 ²) - 지름 20m의 원통형 구조, 버스의 화재 폭발 실험에 필요한 절대 공간(15m) 및 실험 여유 공간(5m) ○ 실험통제실 : 312㎡(12m×26m) - 폭발 실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가스공급 긴급차단 시스템 및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최대 10명 동시 수용 가능 공간
	초고압부품성능 평가실험실	432	○ 초고압 가스공급시스템, 초저온 부품 내구성능시스템 등 13종의 대형 실험 장비 설치 공간 : 432㎡(12m×36m)
	소계	3,170	

실험동	실험실명	면적 (㎡)	산 출 근 거
초저온 용기부품 성능평가 실험동	초저온 용기 성능평가실험실	264	▪ 초저온 용기에 대한 단열성능 평가 등을 실험하기 위한 공간 및 5종의 실험장비 공간 : 264㎡(11m×24m)
	열 물성 실험실	432	▪ 가스관련 부품의 열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로 등 13종의 실험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 432㎡(12m×36m)
	초저온 부품 성능 평가실험실	432	▪ 초저온용 부품의 내구성능을 평가할수 있는 안전 밸브 성능평가 설비등 7종의 실험장비 설치공간 : 432㎡(12m×36m)
	소계	1,128	
사무동	사무실	390	390㎡(3m×5m×26명)
	간이 회의실	100	100㎡(10m×10m)
	민원인접견실	50	50㎡(10m×5m)
	창고	50	50㎡(10m×5m)
	자료보관실	50	50㎡(10m×5m)
	직원휴게실	50	50㎡(10m×5m) → 휴게실, 샤워장, 체력단련실
	전산실	50	50㎡(10m×5m)
	기반설비실	160	160㎡(20m×8m) →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UPS실
	소계	900	
시편 보관동	대형 실험시편 보관실	94	▪ 지름 20inch이상 대형 밸브, 길이 2m이상 복합 재료용기등 민원인 의뢰한 실험용 시편을 보관 할수 있는 공간 ▪ 시편의 무게를 고려하여 지게차(4.5톤)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공간 고려(폭 2m)
합 계		4,236	

⑥ 건축 설계의 Scope

◇ 최대 폭발시험압력 2,000bar에서 연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

◇ 모든 건물은 폭발 충격파에 의한 진동에 안전하도록 설계

○ 시험용 가스의 공급원 및 사양

- 가연성가스 : LPG(20톤), LNG(24.75톤), 수소(H₂) (100리터×6기)
- 일반고압가스 : LN₂(12.5톤), Air(25m³×4)

○ 시험 압력 및 시험 온도

- 초고압 : 900bar(수소연료전지 용기 상용압력(720bar)×운전여유(1.25))
- 초저온 : -196℃(액체질소)
- 파열압력 : 2,000bar(수소연료전지 최대 수압 파열시험 압력)

○ 폭발 피해 반경

- 용기 폭발 반경 : 82m(350bar 복합재료 용기 폭발 기준)
- 화염 길이 : 20m (40bar에서 분출되는 LPG 액상 분출 화염 기준)

○ 가스 누출원 및 가열원의 크기

- 액상 및 기상 누출원의 크기 : 지름 20cm
 - ※ LCNG가 207bar에서 20cm의 Crack발생에 의한 가스 누출시 피해면적 산출
- 가열원의 크기 : 가로(10m)×세로(3m)×깊이(50cm)
 - ※ 버스가 화재에 노출되는 상황 Simulation

○ 시험 지속시간

- 화재폭발시험 지속시간 : 1시간
- 내구성시험 지속시간 : 20만 cycle 기준(약 6개월 연속 시험)

가스안전관리 용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가스안전관리 용자	22,000	19,800	20,900	1,100	5.6

* 사업코드 : 19 - 24 - 4 - 110 - 115 - 5500 - 5532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에너지안전과장(조웅환,044-203-5130),
사무관(김기동, 044-203-51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과제('97 ~)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연평균 약 160개 가스취급 업소에 자금 용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용자 - 지원조건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변동금리)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스안전공사

2. 사업목적

☐ 가스유통구조 개선과 노후가스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가스유통구조 개선과 노후 가스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14년 가스
안전관리 용자자금 20,900백만원

○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 10,880백만원('13년대비 백만원 증액)

- 충전시설 설치 및 개선(3,430백만원)
 - 19개소 × 200백만원 × 90%
- LPG저장탱크 구입 및 설치(600백만원)
 - 20개소 × 33백만원 × 90%
- 용기구입, 재검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500백만원)
 - 45,000개 × 12,500원 × 90%
- 집단공급시설설치 및 개선(300백만원)
 - 5개소 × 66백만원 × 90%
- 판매사업자 공급설비 확충 및 유지·관리(4,050백만원)
 - 90개소 × 50백만원 × 90%
- LPG소형용기 안전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충(500백만원)
 - 1개소 × 550백만원 × 90%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1,500백만원)
 - 3개소 × 550백만원 × 90%
- LPG공급방식 개선사업 : 3,800백만원('13년 동결)
 - 용기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2,250백만원)
 - 업소용 : 2,600개소 × 68만원 × 90%
 - 주택용 : 1,400세대 × 52만원 × 90%
 - 소형저장탱크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용(1,150백만원)
 - 공동주택 : 445세대 × 1.1백만원 × 90%
 - 산업용 LPG시설 : 140개소 × 5.7백만원 × 90%
 - 벌크로리 및 운반차량(400백만원)
 - 10대 × 45백만원 × 90%
-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 : 5,500백만원('13년대비 80백만원 감액)
 - 노출장기사용배관(2,300백만원)
 - 10.4km × 250백만원 × 90%
 - 전기방식시설개선(355백만원)
 - 80개소 × 4.925백만원 × 90%

- 배관망도전산화(700백만원)
 - 240km × 3.254백만원 × 90%
- 위해시설 정압기 이설(1,445백만원)
 - 22개소 × 73백만원 × 90%
- 원격감시장치 등 개선(300백만원)
 - 24개소 × 14백만원 × 90%
- 기타안전성 향상, 안전검사 장비구입(400백만원)
 - 135개소 × 3.3백만원 × 90%
- 검사기관시설 개선사업 : 720백만원('13년 동결)
 - 안전검사시설, 장비(720백만원)
 - 4개소 × 200백만원 × 90%

□ 지원 필요성

- 국내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 필요
- 안전관리투자의 비수익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는 여전히 안전관리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자금의 지원이 필요
- 가스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 사고예방 중심의 선진국형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분야의 적극적 예산 지원 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가스안전관리용자	22,000	19,800	20,900	1,100	6
▪ 가스안전관리 용자	22,000	19,800	20,900	1,100	6
□ 비목(합계)	22,000	19,800	20,900	1,100	6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2,000	19,800	20,900	1,100	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가스안전관리 강화 및 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투자비용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개선 10,35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공급방식개선 3,15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14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개선 10,88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공급방식개선 3,8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720백만원
'15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개선 10,4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공급방식개선 3,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1,500백만원
'16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개선 10,4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공급방식개선 3,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1,500백만원
'17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개선 10,400백만원 ▪ 도시가스시설개선 5,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공급방식개선 3,500백만원 ▪ 검사기관시설개선 1,5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추진경위
 - 1992 ~ 1996년 :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용자
 - 1997 ~ 계속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용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가스안전관리 (용자)		261	384	220	1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도 예산전용 및 불용

- CNG용기 점검 및 노후용기 교체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발생
(예비비 3,107백만원)
- 용자 대상업체의 담보 미비에 따른 불용(46백만원) 발생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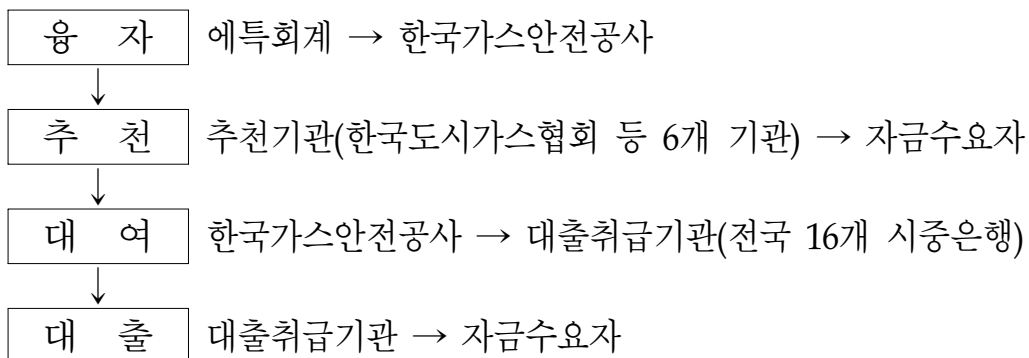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30 ()	()	31 (31)	261 (261)	26,061 ()	()	46 ()
'11년	384 ()	()	()	38,400 ()	38,400 ()	()	()
'12년	220 ()	()	()	22,000 ()	22,000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67.5점(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7)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8)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9)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무 산출내역

'13년 예산(19,800백만원)	'14년 예산(20,9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10,3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시설 설치 및 개선(3,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소 × 200백만원 × 90% ▪ LPG저장탱크 구입 및 설치(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소 × 33백만원 × 90% ▪ 용기구입, 재검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000개 × 12,500원 × 90% ▪ 집단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소 × 66백만원 × 90% ▪ 판매사업자 공급설비 확충 및 유자관리(3,3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개소 × 50백만원 × 90% ▪ IPC소형용기 안전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충(1,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 550백만원 × 90%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1,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 550백만원 × 90% ○ LPG공급방식 개선사업 3,1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1,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용 : 1,880개소 × 68만원 × 90% - 주택용 : 960세대 × 52만원 × 90% ▪ 소형저장탱크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용(1,1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445세대 × 1.1백만원 × 90% - 산업용 LPG시설 : 140개소 × 5.7백만원 × 90% ▪ 벌크로리 및 운반차량(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 45백만원 × 90% ○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 5,5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장기사용배관(2,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km × 250백만원 × 90% ▪ 전기방식시설개선(3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개소 × 4.925백만원 × 90% ▪ 배관망도전산화(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km × 3.254백만원 × 90% ▪ 위해시설 정압기 이설(1,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소 × 73백만원 × 90% ▪ 원격감시장치 등 개선(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소 × 14백만원 × 90% ▪ 기타안전성 향상, 안전검사 장비구입(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개소 × 3.3백만원 × 90% ○ 검사기관시설 개선사업 7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시설, 장비(7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 × 200백만원 ×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10,8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시설 설치 및 개선(3,4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소 × 200백만원 × 90% ▪ LPG저장탱크 구입 및 설치(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소 × 33백만원 × 90% ▪ 용기구입, 재검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000개 × 12,500원 × 90% ▪ 집단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소 × 66백만원 × 90% ▪ 판매사업자 공급설비 확충 및 유자관리(4,0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개소 × 50백만원 × 90% ▪ IPC소형용기 안전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충(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 × 550백만원 × 90%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1,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소 × 550백만원 × 90% ○ LPG공급방식 개선사업 3,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2,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용 : 2,600개소 × 68만원 × 90% - 주택용 : 1400세대 × 52만원 × 90% ▪ 소형저장탱크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용(1,1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445세대 × 1.1백만원 × 90% - 산업용 LPG시설 : 140개소 × 5.7백만원 × 90% ▪ 벌크로리 및 운반차량(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 45백만원 × 90% ○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 5,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장기사용배관(2,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km × 250백만원 × 90% ▪ 전기방식시설개선(35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개소 × 4.925백만원 × 90% ▪ 배관망도전산화(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km × 3.254백만원 × 90% ▪ 위해시설 정압기 이설(1,44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소 × 73백만원 × 90% ▪ 원격감시장치 등 개선(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소 × 14백만원 × 90% ▪ 기타안전성 향상, 안전검사 장비구입(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개소 × 3.3백만원 × 90% ○ 검사기관시설 개선사업 7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시설, 장비(7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 × 200백만원 × 90%

자원개발기술개발(계속, R&D)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자원개발기술개발	-	29,961	28,215	△1,746	△5.8

* 사업코드 : 21-24-4-110-115-6300-6301-303

* 담 당 자 : 에너지자원정책관(송유중), 자원개발전략과장(유법민, 044-203-5140),
사무관(김종현, 044-203-514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Matching, 연구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와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24,666백만원('13년 대비 4.1% 감액)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R&D를 추진하여 R&D가 광구개발에 직접 적용되어 성공 사례로 이어지는 기술개발 추진
 - 산출내역
 - 계속과제 : 1,857.3백만원/과제 × 11개 과제 = 20,430백만원 (2013년)
1,857.3백만원/과제 × 9개 과제 = 16,716백만원 (2014년)
 - 신규과제 : 2,650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5,300백만원 (2013년)
2,650백만원/과제 × 3개 과제 = 7,950백만원 (2014년)
- 미래선도형 기술 1,350백만원('13년 대비 31.1% 감액)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R&D 수행에 필요한 미래유망 원천기술 연구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산출내역
 - 계속과제 : 729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1,458백만원 (2013년)
675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1,350백만원 (2014년)
 - 신규과제 : 500백만원/과제 × 1개 과제 = 500백만원 (2013년)
해당사항 없음 (2014년)
- 서비스 기술개발 1,430백만원('13년과 동일)
 - 선진 기술의 단기 catch-up 등을 통하여 국내 서비스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망 서비스 기술 집중 지원
 - 산출내역
 - 계속과제 : 465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930백만원 (2013년)
476.7백만원/과제 × 3개 과제 = 1,430백만원 (2014년)
 - 신규과제 : 500백만원/과제 × 1개 과제 = 500백만원 (2013년)
해당사항 없음 (2014년)
- 기획평가관리비 769백만원('13년 대비 8.8% 감액)
 - 평가관리비 : 843백만원 (2013년) → 769백만원 (2014년)

□ 지원 필요성

- 자원개발 분야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자주개발률 제고 등 일정 수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술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 자원개발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 이하 수준(석유가스 44%, 광물 51%)
- 국내기업들의 탐사 성공률 제고 및 자체 광구 개발·운영 능력 배양을 통한 주도적 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기술력 강화 필요
 -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연10조를 상회하나 R&D투자는 정부재정지원을 제외하면 미미한 실정
 - ** '13년도 정부 에너지R&D 예산(6,798억원) 중 자원분야 : 4.4%
-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극한지·심해저 개발, 비전통 자원개발 수요 증대로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이에 따른 R&D 예산 확대 필요성 배가
 - * 셰일가스 등 신석유가스 생산기술은 10% 수준으로 기술격차 심각
 - ** 수압파쇄·수평시추 등 신기술 확보 없이는 자원개발 불가
- 광물의 품위 저하, 현장 오지화 등에 따른 선광 및 제련 전주기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연구를 통한 안정적 산업기반 확보 필요
 - 특히, 희유금속, 전략광물 등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산업의 보호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창적 고도선광 및 신제련기술 등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시급
- 자원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운영권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 시급
 - 자원개발기업 지출의 대부분이 서비스기업 외주비용으로 지출될 정도로 서비스 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자원개발 투자 증대에 따라 외국 서비스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 극심
 - * 석유개발기업의 총지출 중 85~95%가 서비스기업에 지출
 - ** '10년 유·가스 분야 1~3위 서비스기업(솔럼버제이, 헬리버튼, 베이커 휴즈)의 매출액은 약60조, 영업이익은 약10조원에 육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자원개발기술개발	-	29,961	28,215	△1,746	△5.8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개발	-	25,730	24,666	△1,064	△4.1
▪ 미래선도형기술개발	-	1,958	1,350	△608	△31.1
▪ 서비스기술개발	-	1,430	1,430	-	-
▪ 기술기획평가관리비	-	843	769	△74	△8.8
□ 비목(합계)	-	29,961	28,215	△1,746	△5.8
○ 출연금(350-01)	-	29,961	28,215	△1,746	△5.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1) 및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을 토대로 국가자원안보 달성, 새로운 자원환경에 대응하여 중장기 자주개발률 제고 및 자원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추진
 -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0.8%('10) → 20%('12) → 30%('19)
 -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7.0%('10) → 32%('12) → 42%('19)
 - * 新전략광물 자주개발률: 8.5%('10) → 12%('12) → 26%('19)
- 탐사성공 중심 자원개발 등 현장연계형 R&D 활성화를 통한 질적 성장 추진
 - * R&D 체계개선을 위해 학계·연구소 중심의 소규모·실험실 위주 연구에서 기업 중심의 대규모, 현장적용기술 연구를 통해 성과 활용도 제고
 - * 현장 연계형 R&D를 위해 자원개발 R&D 예산을 확대하고, 실증을 위한 현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 * 최근 부각된 비전통 자원개발기술, 자원개발의 핵심인 탐사기술, 기존 광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수증진기술 집중 개발

〈 추진 방향 〉

□ 기업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전략품목/핵심기술로 선정

* 8대 분야 / 26개 전략품목 / 84개 핵심기술 도출

[광물 분야]

-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인 희유금속광 확보 기술
- 저품위 비금속/에너지광물 선별 및 고순도화 기술
- 광물자원 원격/무인 탐사·개발 기술

[석유·가스 분야]

- 新 석유·가스 자원별(오일샌드, 셰일가스, CBM 등) 생산기술
- 일반 석유·가스 심해/극한지 개발 및 자원회수증진 기술
- 일반 석유·가스 탐사기술 고도화 및 전략지역 유망성 분석

□ 자원개발 특성 및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R&D 추진

- ① 자원개발 단계별(탐사→개발→생산→활용), 자원 종류별(석유, 가스, 광물)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핵심기술 개발
- ② 개발주체(공기업·민간기업·연구소)별 적합한 기술개발 미션 부여 및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
- ③ 선진국 선점기술은 해외 선두 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조기 Catch-up 하고 미선점 틈새 기술은 원천기술 확보 추진
- ④ 첨단산업 등 하류부문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상류부문 기술개발 추진
- ⑤ 민간 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맞춤형 R&D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00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257) 미래선도형기술(20) 서비스기술(14) 기술기획평가비(9)
'14	282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247) 미래선도형기술(13) 서비스기술(14) 기술기획평가비(8)
'15	300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257) 미래선도형기술(20) 서비스기술(14) 기술기획평가비(9)
'16	300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257) 미래선도형기술(20) 서비스기술(14) 기술기획평가비(9)
'17	300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257) 미래선도형기술(20) 서비스기술(14) 기술기획평가비(9)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광업법 제86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광업법시행령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 추진경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
- '02.12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
- '06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10개년)계획
- '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 '08.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9.11월 희유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10.10월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 확정
- '10.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0~'19)
- '11.11월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 '11.11월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11~'2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자원개발기술 개발	-	-	-	300	2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의해 조성된 연간 5,000만달러 규모의 석유가스 R&D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tra-Deepseawater program, Unconventional Resources program, Small Producer Program 등 DOE(에너지부)는 셰일가스 개발 핵심기반 연구를 위해 '78~'92년까지 1억 3,700만달러를 투입하여 상용화 기술 확보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M(Geomapping for Energy and Mineral)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석유/가스, 우라늄 등)을 위한 자원탐사, 조사, 평가기술 개발에 5년간('08~'13) 1억달러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스 시추기술, 초중질유 업그레이딩 기술, 희소금속 개발 등 자원분야 R&D를 위해 '13년도 240억엔 투자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Gas Shales in Europe(GAS) 연구단을 설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xonMobil, Statoil, Schlumberger, 아헨공대 등 산학연 15개 기관 참여 폴란드는 비전통에너지자원 기술개발을 위해 10년간 2억 4천만 유로 규모의 지원에 합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까지 셰일가스 매장량 평가와 중국 셰일 구조에 특화한 개발·생산 기술 개발 및 주요 설비 자주개발 추진 AMR Tech, Baotou 등 희토류 업체들 중심으로 기존 광상 및 신규 광상에 대한 재탐사, 재평가, 채광, 선광/제련 기술 등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5) 사업추진절차

○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② 중장기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¹⁾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²⁾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³⁾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주요 내용
-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개요
- 자원개발기술 8대 분야별 전략품목
- 관련근거 법령조문

참고 1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주요 내용

□ 수립 배경

- 신성장동력 창출,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안보 등 에너지분야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자력, 효율향상·온실가스 감축, 자원개발 분야의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와 민간 역량 집중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창출 강화 등 정책 요구를 R&D 전략에 반영

□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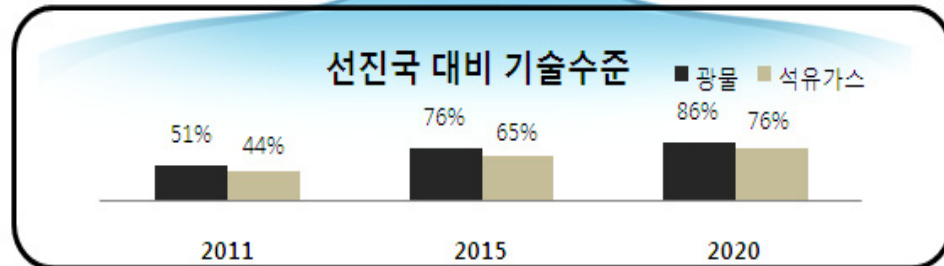
- 자원개발(석유·가스·광물) 분야 체계적인 R&D 추진을 위해 '06년,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 수립
 - 자원개발 단계(조사·탐사→개발→생산→활용)상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핵심기술별 기술지도 마련
 - R&D 과제 기획 및 업계 사업 추진시 활용하였으나, 전략성 부족 및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미흡
- 최근 5년간 자원개발 환경 변화로 기술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기존 자원 고갈 및 고유가 지속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극한지/심해저 개발 및 新 석유가스 개발 수요 증대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에 따른 희유금속 수요 증가로 인해 신규 광종 개발에 적합한 기술 요구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간 자본투자 위주로 자원개발을 추진(광구 지분 매입, M&A 등)하여 기술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
 - 탐사 성공률이 저조하며 자체 광구 개발 및 운영 능력 부재
 - * 국내 기업 탐사성공률 15% 수준(해외 Major社 30%)
 - 자원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외로 유출
- 새로운 자원환경에 대응하여 중장기 자주개발 목표* 달성 및 자원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가 필수
 -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0.8%('10) → 20%('12) → 30%('19)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7.0%('10) → 32%('12) → 42%('19)
 - 新전략광물 자주개발률: 8.5%('10) → 12%('12) → 26%('19)

□ 비전 및 목표

비
전

자원개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자원강국 실현

목
표



전
략

[전략1] 광종·에너지원별 전주기 上 필요 핵심기술 개발

[전략2] 공공·민간부문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전략3] 선진국 선점/미선점 기술 확보

[전략4] 하류부문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전략5]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육성

8대 분야 R&D 추진



□ 추진 전략

- 광종·에너지원 별 전주기 상 필요 핵심기술 개발
 - 자원개발 전주기상 광종·에너지원별 필요한 전략품목/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전주기 기술개발
- 공공-민간부문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개발
 - 공공부문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기술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대형 핵심기술개발 추진
 - * 극한지 유가스전 개발기술, 지능형 로봇 채광시스템 등
 - 민간부문은 활용도가 높은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에 집중
 - * 저류층 모델링 기술 및 매장량 평가 기술 등
- 선진국 선점기술 추격 및 미선점 틈새 기술 확보
 - 기술 자립화가 필요한 선진국 선점기술 조기 Catch-up
 - * 해외선두기업 및 연구소의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조기 확보
 - **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확보
 - 선진국 및 메이저사가 미선점한 틈새 분야 원천기술 확보
 - * 미래 선도형 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적 미래원천기술개발 추진
- 하류부문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 첨단 및 녹색산업 등 하류부문 산업 성장과 밀접한 상류부문 기술 개발로 공급 가치 사슬 전 과정 시너지 효과 제고
 - * 장기적·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기술 플랫폼 개발, 안정적인 원광 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채광·선광·제련·정련기술 개발 추진
 - 오일샌드 등 신석유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플랜트 산업 동반성장 견인
-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 육성
 - 민간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한 자원개발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기술 개발

〈 추진 방향 〉

□ 기업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전략품목/핵심기술로 선정

* 8대 분야 / 26개 전략품목 / 84개 핵심기술 도출

[광물 분야]

-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인 희유금속광 확보 기술
- 저품위 비금속/에너지광물 선별 및 고순도화 기술
- 광물자원 원격/무인 탐사·개발 기술

[석유·가스 분야]

- 新 석유·가스 자원별(오일샌드, 셰일가스, CBM 등) 생산기술
- 일반 석유·가스 심해/극한지 개발 및 자원회수증진 기술
- 일반 석유·가스 탐사기술 고도화 및 전략지역 유망성 분석

□ 자원개발 특성 및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R&D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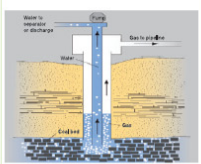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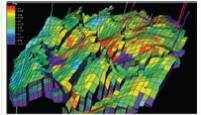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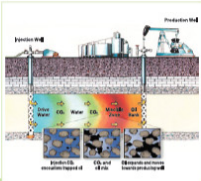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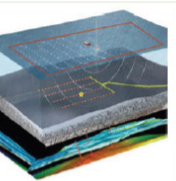
- ① 자원개발 단계별(탐사→개발→생산→활용), 자원 종류별(석유, 가스, 광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
- ② 개발주체(공기업·민간기업·연구소)별 적합한 기술개발 미션 부여 및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
- ③ 선진국 선점기술은 해외 선두 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조기 Catch-up 하고 미션점 틈새 기술은 원천기술 확보 추진
- ④ 첨단산업 등 하류부문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상류부문 기술개발 추진
- ⑤ 민간 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맞춤형 R&D 추진

참고 3

자원개발기술 8대 분야별 전략품목



* 장기품목

신석유	신가스	일반석유·가스	석유 가스탐사
 <p>오일샌드 고해상 저류층 분석 및 생산최적화 기술</p>	 <p>석탄층 메탄가스 (CBM) 생산기술</p>	 <p>저류시스템 복합모델링 기술</p>	 <p>석유가스 유망성 분석</p>
 <p>초중질유 회수 증진기술</p>	 <p>셰일/치밀가스 생산기술</p>	 <p>유가스전 융복합 회수증진기술</p>	 <p>석유가스 탐사기술 고도화</p>
 <p>치밀오일 특성화 및 생산완결기술</p>		 <p>심해 유가스전 개발기술*</p>	
 <p>오일셰일 근원암 특성분석 기술*</p>		 <p>극한지 유가스전 개발기술*</p>	

* 장기품목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융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 광업법시행령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3.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에특회계>	566,159	771,313	602,004	△169,309	△22.0
○ 한국가스공사출자(종료)	-	160,000	-	△160,000	순감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계속)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석유비축사업출자(계속)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석유유통구조개선(계속)	8,513	9,120	6,660	△2,460	△27.0
○ LP가스 품질검사(계속)	1,281	1,281	1,281	-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계속)	7,910	14,839	14,647	△192	△1.3
○ 탄가안정대책보조(계속)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 석탄비축자산관리비(계속)	1,126	1,149	1,714	565	49.2
○ 저소득층연탄보조(계속)	14,106	14,106	14,106	-	-
○ 폐광대책비(계속)	54,457	51,436	26,000	△25,436	△49.5
○ 광해방지비(계속)	82,000	88,000	82,000	△6,000	△6.8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계속)	7,000	10,000	21,693	11,693	116.9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계속)	4,000	2,000	2,000	-	-
○ 대한석탄공사출자(계속)	53,000	53,000	53,000	-	-
○ 도시가스배관망건설지원(종료)	37,535	37,535	-	△37,535	순감
○ LPG소형저장탱크보급(계속)	-	4,290	6,990	2,700	62.9

한국가스공사출자(재량, 종료)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가스공사출자	-	160,000	-	△160,000	순감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300 - 5331 - 302

* 담 당 자: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가스산업과장(이용환 044-203-5230), 사무관(안진호, 044-203-52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20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3년 정부출자 1,600억원을 포함하여 총 8.9조원의 세일가스 개발 투자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스공사

2. 사업목적

- 가스공사 자본확충을 통해 세일가스 등 해외 비전통가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천연가스 도입선을 북미 세일가스로 다원화함으로써 국내 가스가격 안정과 에너지자립도 제고 추진

* 자주개발목표 : ‘13년 500만톤 → ‘16년 700만톤 → ‘19년 900만톤

- 국내 저장시설 확충 및 해외 LNG 사업에서 국내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연관산업 효과 극대화

3. '13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3년 자주개발목표 500만톤 달성 및 셰일가스 개발·도입 관련 투자를 위해 '13년에 약 4,100억원의 투자재원 소요
- '13년 투자비 중 일부를 정부출자를 통해 확보, 이를 레버리지로 약 1조원 이상의 증자를 실시하여 향후 셰일가스 투자재원으로 활용
- * 셰일가스 투자 및 국내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12~'20년간 총 8.9조원 소요 전망

< '13년 셰일가스 투자비 세부내역(단위:십억원) >

사업 구분	세부 사업내용	'13년 투자비
① (캐) 액화플랜트	서부 캐나다(BC주)에 액화플랜트 건설	28
② (캐) 가스전	캐나다 서부 셰일가스전 지분 투자	361
- 혼리버		218
- 웨스트컷뱅크		98
- 코르도바		45
③ (국내) 인수기지	셰일가스 도입 위해 신규 인수기지 건설	<중장기 검토>
총 계		389

* 사업별 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 연도별 셰일가스 투자계획(단위:십억원) >

사업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① (캐) 액화플랜트	22	28	153	239	987	1,573	835	74	-	3,911
② (캐) 가스전	464	361	286	272	295	288	219	226	175	2,586
- 혼리버	307	218	147	132	150	175	106	94	46	1,375
- 웨스트컷뱅크	130	98	92	81	90	76	76	106	106	855
- 코르도바	27	45	47	59	55	37	37	26	23	356
③ (국내) 인수기지	-	-	<중장기 검토>							
총 계	486	389	439	511	1,282	1,861	1,054	300	175	6,497

구 분	'12예산	'13예산
□ 한국가스공사 출자		
▪ 한국가스공사 출자	-	'13년 셰일가스 개발투자비 3,890억원 약 40%인 1,600억원을 정부출자

□ 지원 필요성

- 국내 가스가격 안정 및 도입선 다원화를 위해 북미 셰일가스의 조기 확보 및 도입이 필요하나, 가스공사 재무구조 악화로 자체 투자재원 조달에 한계
 - 북미 가스가격이 10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셰일가스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에너지 자립능력 제고 및 국내 가스가격 안정화 필요
 - * 美 가스가격(Henry Hub) 추이(\$/MMBtu) : ('08) 8.90 → ('10) 4.30 → ('12.6) 2.78
 - 가스요금 동결 등으로 가스공사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셰일가스 투자재원을 전액 차입 조달시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 불가피
 - * 가스공사 부채비율 : ('07) 228% → ('11) 348%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한국가스공사 출자	-	160,000	-	△160,000	순감
▪ 셰일가스 개발 투자	-	160,000	-	△160,000	순감
□ 세출예산비목(합계)	-	160,000	-	△160,000	순감
○ 일반출자금(460-01)	-	160,000	-	△160,000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13년 1,600억원의 정부출자를 포함하여 약 1조원 이상의 가스공사 증자를 통해 세일가스 투자비('12~'20년간 8.9조원) 일부조달 추진 필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600	'13년 세일가스 개발 투자비 3,890억원의 약 40%인 1,600억원을 정부출자로 지원
'14	-	
'15	-	
'16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국가재정법 제12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5조

○ 추진경위

- 천연가스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셰일가스 등 해외 비전통가스 개발 필요성 증대
- 셰일가스 도입확대를 통한 도입선 다원화,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 역량 확충 등을 위해 셰일가스 종합대책 발표('12.9.7)
- '08.3월 이후 원료비연동제(유가변동에 따라 요금조정) 유보로 가스공사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셰일가스 개발 투자재원 조달에 한계가 발생한 바, 자본확충 방안 강구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출자금액 및 증자규모 확정 → 이사회결의 및 공시 → 주간사 인수계약체결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사업설명서 제출 → 우리사주조합 청약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명부폐쇄) →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및 상장 폐지 → 최종발행가액 확정 → 구주주 청약 → 일반공모 청약 → 배정 및 환불(사전 공고 필요) → 주금납입 → 신주상장 → 증자등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가스공사 셰일가스 투자비 세부내역

1 액화플랜트 사업

1. 사업 개요

- 캐나다 서부의 비전통가스를 활용, British Columbia(BC)주에 액화플랜트를 건설, 수출하는 4자간 공동 프로젝트
 - 사업자 : 가스공사(20%), Shell(40%), 미쯔비시(20%), CNPC(20%)
 - 위치 : Kitimat 지역 Douglas Channel 내 (캐나다 BC주)
 - 규모 : 1,200만톤 (600만톤 × 2 Train)
 - * 향후 4개 Train, 2,400만톤까지 확장가능
 - 생산 개시 시기 : 2019년
 - 가스전 위치 : Horn River, Montney 등 캐나다 서부지역



2. 필요성

□ 저렴한 캐나다産 세일가스 도입을 위해 액화플랜트 건설 불가피

- 캐나다 세일가스는 저렴한 Feed Gas 가격과 짧은 운송기간(캐나다 서부해안에서 약 10日 소요) 등으로 인해 미국産보다 원가구조가 저렴

< 미국 및 캐나다 LNG 예상 가격비교 >

(단위: \$/MMBtu)

구 분	Sabine Pass 외 미국 LNG 프로젝트	LNG Canada
가 격	115% * HH + 3~4(액화비용) + 2.5~3(수송비)	AECO + 5.5(액화비용) + 1.2(수송비)
수준	10.8 ~ 12.3	10.9

* HH: \$4.6/mmbtu, AECO: \$4.2/mmbtu(HH - 0.4) 적용(EIA의 '20년 유가, 가스가격 전망치)

* AECO(Alberta Energy Company) : 캐나다 Alberta주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Benchmark 가격(Henry Hub에 비하여 약 30~50¢ 저렴)

- 현재 캐나다에는 LNG 터미널이 全無하여 캐나다産 세일가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액화플랜트 건설이 불가피

□ 액화플랜트 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신규 수익원 창출

- 세계 최대의 LNG 인수기지 건설·운영 경험에 액화플랜트 개발·운영역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외 중·하류 사업 진출확대 도모
 - 기존의 단순한 해외 LNG 인수기지 사업*(시운전, 기술자문, 교육훈련 등)에서 판매형 LNG 사업* 및 EPC 사업 등으로 진출영역 확대
 - * 멕시코 만싸니요 LNG 터미널 사업('08), 싱가포르 LNG 터미널 사업('10) 등
 - * LNG 조달, 기화 및 천연가스 판매역무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

□ 상·하류 수직일관체제 구축으로 공급안정성 제고

- LNG 전 밸류체인(탐사→개발→생산→수송→공급)을 통합하는 상·하류 수직일관체제 구축으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 가능
 - * 중동지역에 집중된 LNG 포트폴리오를 북미 등 기타 지역까지 확대하여 공급안정성 향상

3. 투자비 세부내역

구분 (단위 : 십억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연도별 투자비		-	51	22	28	153	239	987	1,573	835	74	-	3,962
사업단계	Feasibility Study	Pre-FEED		FEED		EPC		Operation					
	단계별 업무내역	-액화 Plant 부지 검토 및 확보 -타당성조사 등		-Plant 기초설계 -Pipeline 기초설계 -원주민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FEED 사업자 선정 -Plant 기본설계 -원주민 보상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EPC 사업자 선정 -Plant 상세설계 -건설물자 발주 및 구매 -액화설비, LNG 탱크, 선적설비 등 건설 -건설 완료 및 시운전		-사업운전 개시			

*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기본설계) : LNG 체인의 수출설비 개발을 위한 2차 계약단계

*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 LNG 생산설비의 상세설계, 구매, 건설 및 시운전 단계

4. 기대효과

□ (경제성) 생산된 LNG의 판매가격을 0.13JCC*로 가정하는 경우, 내부수익률(IRR)은 약 15.9%로 추정

* '15~16년경 아시아로 도입되는 LNG의 가격공식은 0.145*JCC~0.148*JCC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북미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으로 가격이 일부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 '20년경 생산되는 LNG의 아시아시장 가격을 0.13*JCC로 예측

□ (공급안정성 확대) 중동지역에 집중된 공급원을 북미 지역까지 확대, 공급 안정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대규모 지분물량 확보로 LNG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고

□ (자주개발능력 제고) LNG 프로젝트의 개발 운영능력 확보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JGC, Bechtel 등 일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LNG EPC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2 가스전 지분투자

1. 사업 개요

□ LNG 캐나다 사업에 Feed Gas(원료가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캐나다 서부 지역의 가스전 지분 매입

① 혼리버(Horn River) : 엔카나(EnCana)사가 보유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혼리버 지역의 키위거나 광구에 50% 지분참여

* 참여사(지분) : 엔카나(50%), 가스공사(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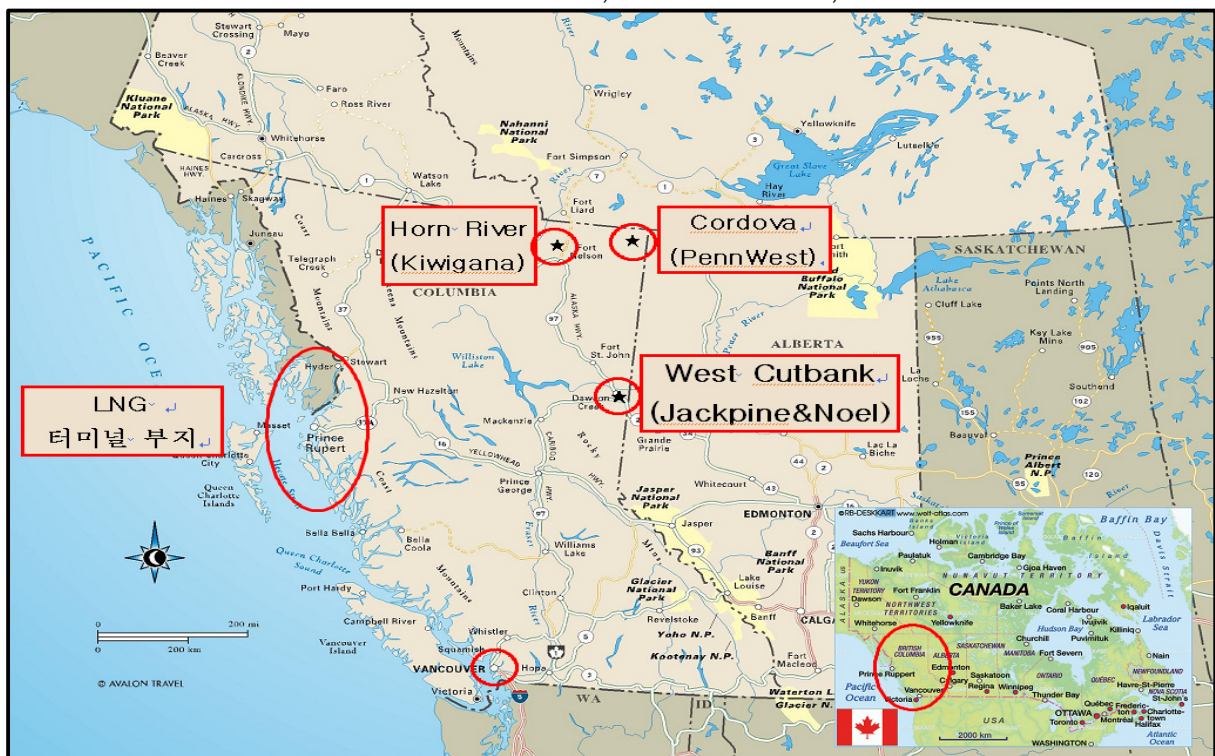
② 웨스트컷뱅크(West Cut Bank) : 엔카나사가 보유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컷뱅크 지역의 잭파인 및 노엘 광구에 50% 지분참여

* 참여사(지분) : 엔카나(50%), 가스공사(50%)

③ 코르도바(Cordova)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Cordova 지역의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는 CGR(Cordova Gas Resource)사의 지분 10% 매입

* 참여사(지분) : PennWest사(50%), CGR사(50%)

* CGR사 지분구성 : 가스공사 10%, 미쯔비시 60%, 기타(추부전력 등) 30%



2. 필요성

□ '가스전' 부문과 'LNG 사업' 부문의 통합 추진을 통한 리스크 해지

- LNG 캐나다 사업과 가스전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시 현지 Feed Gas 가격변동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안정적 사업운영 가능

* 가스공사가 feed gas를 100% 자체 확보하는 경우, 시장가격에 무관하게 일정수익 확보 가능하나, 시장에서 조달시 시장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

□ 광구 직접 운영에 따른 국내 연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

- 가스공사가 광구 운영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하청업체 (Sub-Contractor) 선정 및 기자재(배관, 기기) 조달시 국내업체 참여가능성 증대

* 하청업체 예 : (건설) 진입도로, 시추부지, 현장 캠프건설 등 (자재) 시멘트, 모터, 펌프, 수압파쇄용 기자재 등 (용역) 시추작업, 물리탐사, 각종 해석작업 등

□ 캐나다 내 LNG 자산확보 경쟁 심화 전망

- 현재 캐나다 서안 4개 LNG 프로젝트(2,380만톤)의 Feed Gas 소요물량 감안시, 가격상승 이전에 Feed Gas 조기확보 절실

< 국가별 LNG 자산확보 필요성 >

- ◆ 중국 : '20년까지 약 4,300만톤의 LNG 추가소요 예상('10 수입량 : 950만톤/년)
- ◆ 일본 : '22년까지 약 3,500만톤의 LNG 추가소요 예상('10 수입량 : 7,110만톤/년)
- ◆ 말레이시아 : '15년부터 연간 3백만톤 이상의 LNG 신규수입 예상
- ◆ 태국 : '15년부터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신규수입 예상
- ◆ 인도 : '15년부터 연간 1,000만톤 이상의 LNG 추가수입 예상('10 수입량 : 845만톤/년)

3. 투자비 세부내역

□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코르도바 가스전 지분 매입은 '12년까지 완료, 지분 매입과 함께 지분율에 따라 총 투자비의 일부를 부담

○ 투자비는 시추, 수압파쇄, 건설(도로, 배관, 시추부지 정비 등), 육상 설비(압축기, 물탱크, 펌프설비 등), 현장운영 및 인허가 행정비용 등으로 구성

< 연도별 투자비 내역 >

(단위 : 십억원)

사업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 혼리버	307	218	147	132	150	175	106	94	46	1,375
- 웨스트컷뱅크	130	98	92	81	90	76	76	106	106	855
- 코르도바	27	45	47	59	55	37	37	26	23	356
합 계	464	361	286	272	295	305	237	245	195	2,586

* 1 CAD = 1,138원 기준

4. 기대효과

□ (경제성 분석) 예상 IRR은 약 8.4~10.4%로 추정(캐나다 기술평가 기관 GLJ의 AECO 전망 기준)

구 분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코르도바
총 투자비	3,416백만CAD	398백만CAD
예상 사업기간	2010년 ~ 2055년	2011년 ~ 2059년
확보 자원량	2.47 Tcf	0.23 Tcf
예상 내부수익률(IRR)	8.4%	10.4%

* 총 투자비는 프로젝트별 전체 사업기간 기준

□ (수직통합 시너지효과 극대화) 천연가스 산업은 밸류체인이 통합되어 있어 소비처, 파이프라인 및 액화시설 보유 기업이 여타 기업군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 기대

- (유망광구 선점효과) 축적된 셰일가스전 개발역량을 향후 국내 에너지기업의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 신규 유망광구 확보 추진시 동반진출 등의 형태로 활용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용자)(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용자)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사업코드 : 21-24-5-110-115-5400-5435-301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가스산업과장(이용환, 044-203-5230),
사무관(조현훈, 044-203-5239)/주무관(이경미, 044-203-521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 도시가스사의 배관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7~8%의 수준)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 신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시설비용(가구당 평균 4백만원 수준)을 용자 지원
지원조건	○용자 - 공급배관건설 대출이자율(변동) :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1.25%P - 사용자시설설치비 대출이자율(고정) : 1.5%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도시가스협회, 전국지자체, 시중은행, NH농협)

2.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용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 지원 :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 지원(도시가스사 '14년 총 투자계획 대비 7.7% 수준)을 위한 사업비 59,000백만원

< 2014년 도시가스사 공급배관건설 사업 규모 >

사업목표		시설투자계획		에 특회계 용자	총투자 대비 지원비율
공급가구수	도시가스 보급률*	신규 공급배관망	시설투자 총 액		
57만가구	78%	2,177km	7,620억원	590억원	7.7%

* 도시가스 보급률 : ('12년) 74.5% → ('13년) 76.7% → ('14년) 78% 목표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 :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의 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전국 약 3,750가구 × 가구당 약 400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용자)		
▪ 도시가스공급배 관건설용자지원	50,000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용자 지원)	59,000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용자 지원)
▪ 도시가스 사용 자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	12,000 (도시가스신규보급가구의 시설 설치비 지원)	15,000 (도시가스신규보급가구의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필요성

-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투자 한계에 따라 정부 용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조기 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또한 도시가스사에서 투자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용자지원	51,500	50,000	59,000	9,000	18
▪ 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 용자지원	10,500	12,000	15,000	3,000	25
☐ 비목(합계)	62,000	62,000	74,000	12,000	19.4
○ 기타민간용자금(450-04)	62,000	62,000	74,000	12,000	19.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의 공급배관 건설에 대한 용자 지원과 농·어촌/지방 등의 우선배정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
 - *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 ('12년) 74.5% → ('17년) 약 80% 수준
- 신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초기 시설투자비용(내관, 보일러 등)에 대한 용자지원을 통해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620	공급배관건설 500억원 (투자계획 7,116억원 × 7.0%수준) 사용자시설 120억원 (3천가구 × 평균 4백만원)
'14	740	공급배관건설 590억원 (투자계획 7,620억원 × 7.7%수준) 사용자시설 150억원 (3,750가구×평균 4백만원)
'15	690	공급배관건설 540억원 (투자계획 7,620억원 × 7.0%수준) 사용자시설 150억원 (3,750가구×평균 4백만원)
'16	690	공급배관건설 540억원 (투자계획 7,620억원 × 7.0%수준) 사용자시설 150억원 (3,750가구×평균 4백만원)
'17	690	공급배관건설 540억원 (투자계획 7,620억원 × 7.0%수준) 사용자시설 150억원 (3,750가구×평균 4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특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 에특회계 운용요령(산업부 연초 고시)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지원 지침(산업부 연초 공고)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용자지원 지침(산업부 연초 공고)

○ 추진경위

- 전국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 '87년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용자 지원
- '94년까지 석유사업기금으로 지원, '95년부터 에특회계로 통합 운영
- '09년부터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시설설치비 용자지원도 병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용자)	500	620	620	620	7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00 (500)	()	()	()	500 (500)	()	()
'11년	620 (620)	()	()	()	620 (620)	()	()
'12년	620 (620)	()	()	()	620 (62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12년도 국정감사)
- (개선사항) '13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관용자 우선 배정과 용자율 조정(기존 대비 1.25%p 인하), 상환기간 다양화 등을 통해 수혜자의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 여건을 개선
- (조치결과) '11년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보통(60점)이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 : 계획수립 및 지침공고(산업부) → 용자신청 및 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지사) → 지원지역 선정(산업부) → 지원지역 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용자대여 및 대출실행(한국석유공사, 시중은행)
○ 사용자시설설치비 용자 : 계획수립 및 지침공고(산업부) → 용자 신청 및 추천서 발급(도시가스사용자, 시도지사) → 용자대여 및 대출실행(한국석유공사, 농협)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근거 법령조문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내지 제6조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회계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3조(사업의범위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제4조(용자조건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기관에 대한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용자이자율과 용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용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용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용자는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사업출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비축사업출자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1 -301

* 담 당 자: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유산업과장(강경성 044-203-5220), 사무관(김정은 044-203-52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0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3조7,124억원)
사업규모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95~'13)에 따라 '11년까지 비축시설 146백만배럴(완료), '13년까지 비축유 141백만배럴 확보 * 현재 제4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수립중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2. 사업목적

- ☐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석유비축사업의 효과적 수행으로 석유 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
 - 이를 위한 비축유 구입, 비축시설 건설, 유지·보수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비축유 구입, 울산비축기지 해상 입출하설비 이설, 9개 비축기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61,427백만원

- 비축유 구입 : 휘발유 272천B 구입을 위한 사업비 41,649백만원
 - 휘발유 272천B×\$127.26/B×1,130원/\$ = 39,115백만원
 - 운임·보험료·부대비용: 2,041백만원
 - 물량·품질정산 등 : 493백만원
- 비축기지 건설 : 울산비축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을 위한 1차년도 조사·설계비 8,000백만원
 - 조사설계비 : 공사비 1,450억원 x 5.455%(설계요율) = 8,000백만원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차('14)	2차('15)	3차('16)	4차('17)
1,530	80 1,450억원x5.455%	435 1,450억원x30%	580 1,450억원x40%	435 1,450억원x30%

<p align="center"><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개요 ></p> <p>○ 목적 : 울산신항 남항지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p> <p>○ 사업비 : 1조 2,556억원('13~'19년)</p> <p>○ 규모 : 남방파제 3.2km, 방파호안 1.42km</p> <p>○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p>					
구 분	전체	'12까지	'13예산	'14예산	'15이후
총사업비	12,556	26	194	624	11,712
공사비	10,618	-	136	560	9922
시설부대비	796	26	58	64	648
예비비	1,141	-	-	-	1,141
* '13.12월 1공구 착공 예정('12.4~'12.12월, 기초조사용역 시행)					

- 비축기지 유지보수 : 9개 비축기지 유지보수, 거제 지하비축기지 기밀성 보완공사를 위한 사업비 11,778백만원
 - 기계장치 : 평택 수배전 설비 교체 등 3,469백만원
 - 구축물 : 서산 매설소화배관 교체 등 1,161백만원
 - 건물 : 평택 건물 창호교체 등 184백만원
 - 저장품 : Buoy Hose(해상입출하설비) 등 외자 397백만원, CCTV zoom lens 등 내자 46백만원 등 443백만원
 - 공기구비품 : 비축비품 215백만원, 전산장비 56백만원 등 271백만원
 - 차량운반구 : 노후차량(취득: '06년 4대, '07년 7대) 교체 280백만원
 - 거제 지하비축기지 기밀성 보완 2차년도 공사비 5,970백만원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차('13)	2차('14)	3차('15)	4차('16)	5차('17)
410	12 실시설계비	60 398억원x15%	120 398억원x30%	120 398억원x30%	98 398억원x25%

구 분	'13예산	'14예산
□ 석유비축사업출자		
▪ 비축유구입	휘발유 263천B 구입	휘발유 272천B 구입
▪ 비축기지건설	평택 소형탱크 건설	울산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신규요구
▪ 비축기지유지보수	서산비축기지 송유관 연결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1 차년도(실시설계비)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 보완 2차년도 공사비

□ 지원 필요성

-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당시 석유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 동종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80년부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기지건설과 비축유 확보를 추진
-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40%에 달하며, 세계 5위의 석유순수입국 및 8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원유의 85.1%(총 947백만배럴 대비 806백만배럴)를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
- 중동사태, 수송로의 봉쇄 등으로 인한 석유공급 중단과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축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
- * 그간 4차례(독자방출 1, 국제공조 3) 방출로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

구분	등유방출	걸프전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비아 사태
기간	'05.12.~'06.3.	'90.8.~'91.3.	'05.9.~'05.10.	'11.7.~'11.8.
물량	○ 등유 980천B - 이상 기온으로 난방용 등유 독자 방출	○ 총 4,940천B - 원유 3,130천B - 제품 1,377천B - LPG 433천B	○ 총 2,916천B - 원유 2,523천B - 제품 393천B	○ 총 3,465천B - 원유 1,943천B - 제품 1,522천B

- 또한, 휘발유 비축량은 9일분(166만B)으로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비축 확대 필요 (계획 15일분, 일소비량 19만B)
- * 원유를 정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15일 소요
- * 일본은 '11.3월 동북부 지진시 정제설비 피해(약 17%)로 우리나라에 휘발유 등 제품(360만B) 긴급지원 요청(일본은 원유 437백만B 비축중)
- 정부는 비축유 141백만B 확보(직접 101백만B, 국제공동 40만B)할 계획이며, '13년말 현재, 비축량은 135.2백만B(직접 91.0백만B, 국제공동 44.2백만B)
- * 현재, 정부 직접비축분은 IEA기준(연료유 순수입량) 124일, 소비량기준(산업용 포함) 36일간 공급 가능(원유 78.4백만B, 제품 12.6백만B 비축)
- * 민간 정유사의 재고(100백만B)를 포함한 국내 비축물량은 191백만B로 IEA기준 245일, 소비량기준 100일간 공급 가능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비축사업출자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비축유 구입 (산출근거)	63,138 휘발유 45만B	44,197 (휘발유 263천B× \$139.1/B×1,130원/\$) +부대비용 등	41,649 (휘발유 272천B× \$127.26/ B×1,130원/\$)+부대비용등	△2,548	△5.8
▪ 비축기지 건설 (산출근거)	9,800 서산기지 혼유 방지설비공사	10,000 (평택 소형탱크 10,000백만×100%)	8,000 (울산해상입출하설비 145,000백만 ×5.455%)	△2,000	△20.0
▪ 비축기지 유지보수 (산출근거)	8,458 (9개기지 유지보수)	19,381 (9개기지 18,181백만원 + 거제기밀성 보완 실시설계 100%)	11,778 (9개기지 유지 보수 5,808백만원, 거제 기밀성보완 2차 39,800백만 ×15%)	△7,603	△39.2
☐ 비목(합계)	81,396	73,578	61,427	△12,151	△16.5
○ 일반출자금(460-01)	81,396	73,578	61,427	△12,151	△16.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공급 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상시 비축시설 안전 관리 강화, 울산 신행만 개발에 따른 해상 입출하설비의 적기 이설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 출 근 거
'13	736	-비축유구입: 442(휘발유 262천B) -비축기지건설: 100(평택소형탱크 120천B) -유지보수: 194(9개기지 82, 서산기지 송유관 연결 100,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1차 실시설계비 12)
'14	614	-비축유구입: 416(휘발유 272천B) -비축기지건설: 80(울산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1차 1,450억원×5.455%) -유지보수: 118(9개기지 58,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2차 398억원×15%=60)
'15	614	-비축유구입: 137(휘발유 82천B) -비축기지건설: 263(울산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2차 1,450억원×18%) -유지보수: 214(9개기지 94, 거제 지하비축기지 기밀성보완 3차 398억원×30%=120)

(억원)

년 도	금액	산 출 근 거
'16	614	-비축유구입: 137(휘발유 82천B) -비축기지건설: 263(울산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3차 1,450억원x18%) -유지보수: 214(9개기지 94,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정보완 4차 398억원x30%=120)
'17	614	-비축유구입: 137(휘발유 82천B) -비축기지건설: 285(울산기지 해상입출하설비 이설 4차 1,450억원x20%) -유지보수: 192(9개기지 94, 거제지하비축기지 기밀정보완 5차 398억원x5%=9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제16조(석유비축시책)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 추진경위

- 제12차 석유파동이후 정부는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
- '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 석유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사업비는 '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 수행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기 시작('95년부터는 에특회계에서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 석유비축사업출자	2,252	2,252	1,250	814	7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250 ()	()	()	1,250 ()	1,250 ()	()	()
'12년	814 ()	()	()	814 ()	814 ()	()	()
'13년	736 ()	()	()	736 ()	736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60.0점)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실적이 다소 미흡
- '12.4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 (지적사항) 국제공동비축물량을 임대물량이 아닌 실제 비축량으로 산정
 - (후속조치) 정부 비축물량 산정시 국제공동비축물량 구분 및 임대물량과 실재고량을 구분하여 파악
- '10년도 예결위 결산심사
 - (지적사항) 비축유 대여시 계절별 가격차를 이용한 정유사 특혜여부
 - (후속조치) 비축유 긴급대여 77건중 대여시점 유가가 높은 경우가 31건, 상환시점 유가가 높은 경우가 46건으로 정유사가 대여와 상환시점의 유가차이로 인해 손실을 본 경우가 더 많으며
 - 대여료(연 15%) 감안시 손실액은 더 증가하므로 정유사 특혜로 볼 수 없음
- '10년도 지경위 결산심사
 - (지적사항) 비축출자사업을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 필요
 - (후속조치) '10년부터 결산서에 구분하여 표기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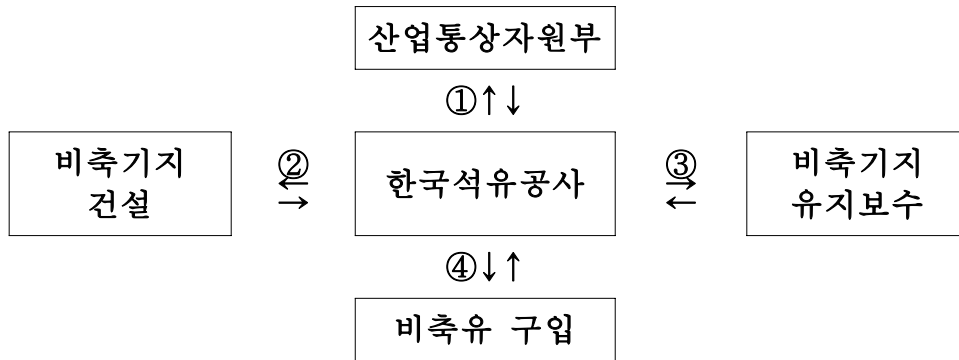
(단위 : 백만배럴)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프랑스	IEA
비축물량	186	591	1,809	287	162	4,212
- IEA 기준(일)	216	165	175	142	102	184
- 소비량 기준(일)	76	120	86	109	85	83

주1) 국가별 비축물량 : IEA Oil Market Report('13.11월호/'12년말 재고기준, 정부 및 민간부문 포함 물량

주2) IE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OECD 33개국중 28개국

(5) 사업추진절차



- ① 비축계획수립 및 승인
- ② 비축기지 연도별 건설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③ 비축기지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④ 비축기지 연도별 비축유 구입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사업근거 해당 법령 조문내용
- 정부비축계획 추진현황
- 비축기지별 비축현황
- 비축기지 유지보수 예산내역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비축·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국가 에너지위기와 석유파동으로 인한 석유공급 부족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유 확보를 추진

< 정부석유비축계획 >

(단위 : 백만배럴)

구 분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계
건설기간	'80~'89년	'90~'03년	'95~'13년	'80~'13년
저장용량	43.6	51.9	50.5	146.0
- 원 유	40.1	43.4	44.0	127.5
- 제 품	1.6	6.0	6.5	14.1
- LPG	1.9	2.5	-	4.4
사업비(억원)	9,376	19,960	26,714	56,050

□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확보('13.12월말)	달성률
비축시설	'11년까지 146백만B 건설	146백만B	100%
비 축 유	'13년까지 141백만B 확보 - 직접비축 101백만B - 국제공동비축 40백만B	135.2백만B - 직접비축 91.0백만B, - 국제공동비축 44.2백만B	96.1%

-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비축목표는 총 141백만B로, 직접비축 101백만B, 국제공동비축에 의한 간접비축 40백만B로 구분
- '13.12월말 기준 정부 비축물량은 91.0백만B로 직접비축 목표(101백만B) 대비 90.3% 달성
- 비축시설 용량 및 비축량 ('13.12월말)

(단위 : 백만B, 일)

구분	비축시설 용량			비 축 량			지속일수	
	원유	제품	합계	원유	제품	합계	소비량기준	IEA기준
정부	127.5	18.5	146.0	78.4	12.6	91.0	36.2	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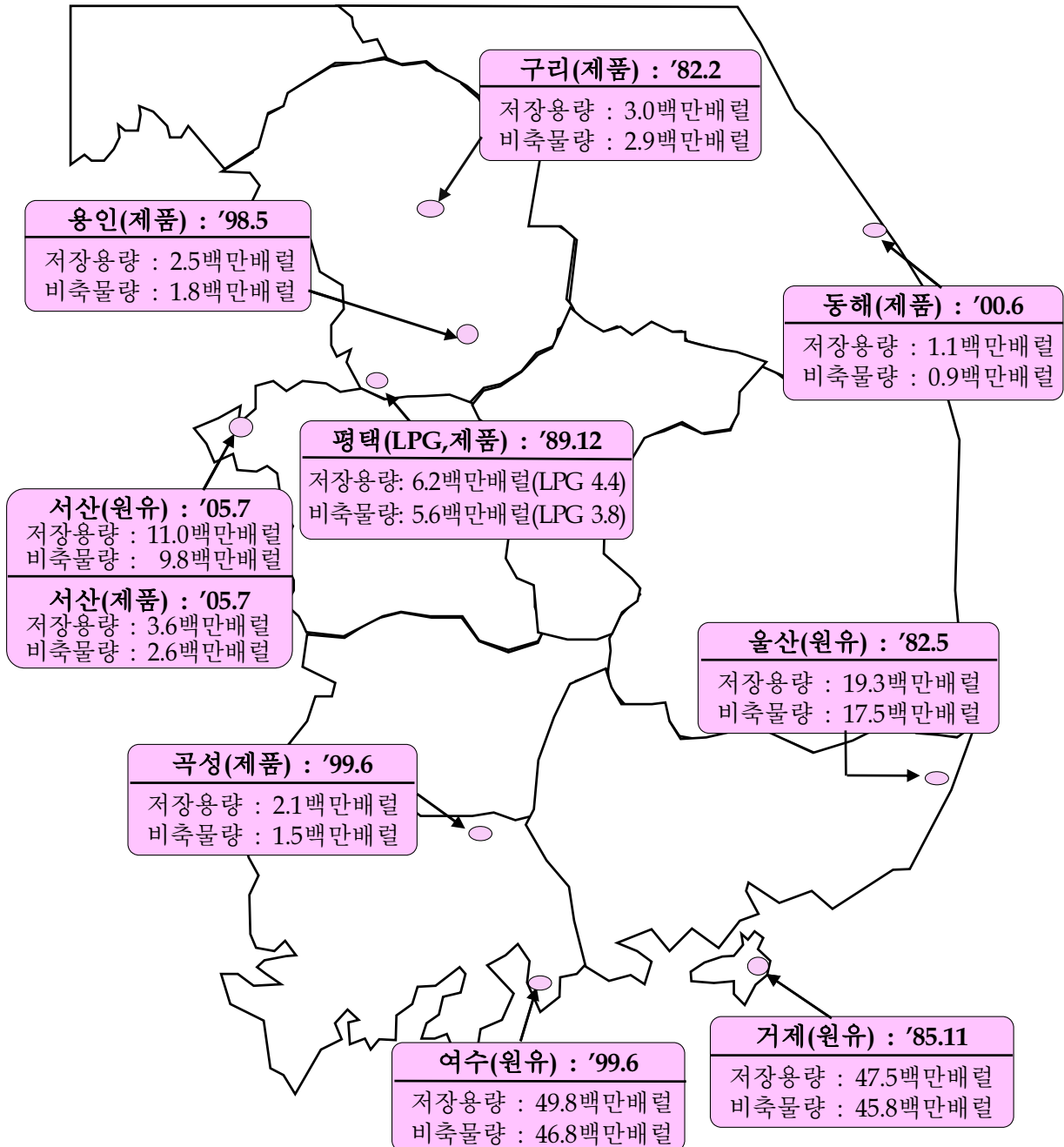
* 국제공동비축물량은 제외

* IEA기준: 비축량을 전년도 일일 순수입량(연료유)으로 나누어 산정(공동비축제외)
 - 세계 각국은 IEA 권고규정(자국의 일일 순수입량기준 90일분 이상 확보)을 준수하면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비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

참고 3

비축기지별 비축현황 ('13.12월 말 기준)

구 분	기지	비축유 보유물량(백만배럴)			
		원유	제품	LPG	계
저장용량	9	127.5	14.1	4.4	146
비축물량		119.9	11.5	3.8	135.2



* 비축물량에는 국제공동비축량 포함

참고 4

비축기지 유지보수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결산	2013 예산	2014예산		비 고
			예산	증감	
○ 저장품	534	1,051	443	△ 608	- 비축 시설보수를 위한 예비품
- Buoy Hose 등 외자예비품	390	975	397	△ 578	
- CCTV zoom lens 등 내자예비품	144	76	46	△ 30	
○ 비축시설보수	7,160	6,368	4,814	△ 1,554	- 노후장비 및 구축물을 교체·보강함으로써 비축시설의 안전 향상을 위한 투자
- 구축물 (16건)	4,002	189	1,161	972	
거제 외곽웬스 철조망 교체 등 4건			159		
여수 외곽웬스 윤형철조망 교체 등 4건			400		
서산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지붕설치 등 2건			275		
구리 산지 외곽초소 보수 등 4건			327		
- 기계장치 (41건)	3,158	6,147	3,469	△ 2,678	
울산 CCTV 및 부속설비 교체 등 2건			59		
거제 CCTV 광케이블 설치 4건			304		
여수 지하수위 무선감측시스템 설치 등 12건			879		
서산 탱크 히팅배관 설치 등 3건			352		- 비축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
평택 수배전설비 VCB 교체 등 12건			1,229		
구리 탱크 계량탱크 전환시설 개선 등 2건			317		
용인 UPS 및 차단기 축전지 교체			20		
곡성 출하대 Loading Type 개선 등 4건			240		
동해 적외선 감시시스템 보완			69		- 비축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
- 건물 (5건)	-	32	184	152	
여수 정문 경비동 리모델링 등 3건			106		
평택 건물 창호 교체			53		
곡성 각 건물 출입문 교체			25		- 비축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
○ 비축자산관리효율화	764	762	551	△ 211	
- 공기구비품	628	463	271	△ 192	-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
전산장비	289	288	56	△ 232	
비축비품(노후 비품교체 및 신규구입)	339	175	215	40	
- 차량운반구	136	299	280	△ 19	
노후차량 교체	136	299	280	△ 19	○ 총사업비 410억원 ('13~'17년)
신규구입	-	-	-		
○ 거제 1차 지하비축기지 기밀성 보완	-	1,200	5,970	4,770	
- 2차년도 공사비	-	1,200	5,970	4,770	
○ 서산비축기지 송유관 연결공사	-	10,000	-	△ 10,000	
계	8,458	19,381	11,778	△ 7,603	

석유유통구조개선(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유통구조개선	8,513	9,120	6,660	△2,460	△26.97

* 사업코드 : 21-회계번호-계정번호-110-115-5400-5432-303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유산업과장(강경성, 044-203-5220), 주무관
(김수은, 044-203-52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209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2. 사업 목적

- 석유수급시스템,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등 국내 석유정보 시스템 운영·개선 및 석유유통정보 DB 고도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 및 석유수급 안정도모
- 알뜰주유소 등 자가상표 주유소 육성·지원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국내석유시장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개선 사업 지원 : 가격 조사 및 오피넷 등 정보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480백만원(△2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가격조사 및 오피넷 시스템 운영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 가격 정보 수집 - VAN(Value Added Network) 주유소 가격정보 이용료(신용카드 수집체계 개선으로 정보 이용료 증액) - 콜센터 운영 등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정보 시스템 운영 - ARS 가격수집 시스템 운영 - VAN 전용선 이용료 - 오피넷 지도 서비스 등
합 계	480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사업 지원 : 석유제품 및 LPG 거래자료 수집·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동결)

▪ 산출내역 : 석유제품 및 LPG 거래자료 수집·처리 비용

- 석유제품 : 3개 협회 × 50백만원 = 150백만원

* 석유유통협회(대리점 500개), 주유소협회(주유소 13,000개), 일반판매소협회(판매소 3,000개)

- LPG : 1개 협회 × 50백만원 = 50백만원

* LPG산업협회(충전소 2,000개)

- 유통시장경쟁촉진 사업 지원 :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장의 시설개선 비용, 자가포 및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5,680백만원(△2,440백만원)

- 알뜰주유소 전환대상주유소 감소(250개→170개, △80개) 및 지원액 조정(26백만원→24백만원, △2백만원)으로 '13년 대비 30% 감액
- 산출내역 :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액 4,100백만원 = 24백만원 × 170개소
 - * 신규 개소되는 150개('14년 목표)에 기존 알뜰주유소 중 퇴출/교체되는 20개를 감안하여 170개 주유소 지원 계획
 - * 1개소당 지원액: 24백만원
 - 자가폴 및 혼합판매 주유소 품질보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13년 대비 70백만원 감액된 1,580백만원
 - * 품질보증 프로그램 사업비 6백만원중 90%(540만원) 지원
- 석유유통질서확립 및 투명성제고 사업 지원 : 석유시장 감시 (가짜석유 퇴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등)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백만원(동결)
 - 산출내역 : 석유시장 감시 관련단체 지원
 - 소비자 시장감시단 : 15백만원 × 12월 = 180백만원
 - 주유소협회 등 2개 협회 × 5백만원 × 12월 = 120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 오픈넷 운영 및 개선	가격조사 및 오픈넷 시스템 운영·개선 지원	'13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 석유유통 정보 고도화	지원대상은 4개 협회 (석유관련 3개, LPG관련 1개)	'13년과 같음
▪ 유통시장 경쟁촉진	자가폴 주유소 육성 지원	대상주유소 감소(250개소→170개소) 및 지원액 감액(26백만원→24백만원)
▪ 유통시장 투명성제고	지원대상은 3개 단체(소시모, 주유소협회, 자영주유소연합)	'13년과 같음

□ 지원 필요성

-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은 과거 수십년동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판매가격 등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유사의 과점 등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

리및사업법'에 근거하여 정부 예산 등 재원 투입을 통해 수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임

- (오피넷 운영 및 개선)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가격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유사, 주유소 등 판매업자 일방의 가격결정 구도를 타파하여 소비자의 유류구매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조사 및 서비스제공은 국민 개개인 및 국가편익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는 석유수입, 생산, 수출, 판매, 소비, 재고, 비축 등 국내 전반의 석유유통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석유통계 및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에너지수급, 물가, 세제, 통계 등 다양한 정부 정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사업임
- (유통시장 경쟁촉진) 4대 정유사 과점체제로 시장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내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유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며,
- 정유사가 정유사폴 주유소에 대하여 시설, 자금,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알뜰주유소 사업의 안정적·일관적 추진을 통한 가격하락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유통구조개선	8,513	9,120	6,660	△ 2,460	△ 27
▪ 오피넷운영 및 개선	500	500	480	△ 20	△ 4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200	200	200	-	-
▪ 유통시장 경쟁촉진	7,693	8,120	5,680	△ 2,440	△ 30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120	300	300	-	-
☐ 비목(합계)	8,513	9,120	6,660	△ 2,460	△ 27
○ 민강경상보조(320-01)	8,513	9,120	6,660	△ 2,460	△ 2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경쟁촉진을 위한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하고, 석유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91	- 오픈넷운영 및 개선 사업 : 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2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81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14	66	- 오픈넷운영 및 개선 사업 : 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2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57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3
'15	61	- 오픈넷운영 및 개선 사업 : 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2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53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1
'16	56	- 오픈넷운영 및 개선 사업 : 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2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48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1
'17	46	- 오픈넷운영 및 개선 사업 : 5 -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 2 -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 38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 : 1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금융대책회의('12.4.16)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12.4.19)을 실시한 바 있는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 법령상 근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의 2,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동법시행령 43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 추진경위

- '04 .9월 :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위해 유류카드제 운영 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
- '05.12월 : 민간업체의 참여율 저조 등 시장의 미온적 반응으로 카드제 중단
- '06. 1월 : 유류카드제의 대안으로 석유공사에서 운영중인 석유수급정보시스템의 보완·개선을 통해 제도권내에서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추진
- '08. 1월 : 주유소 가격공개를 국정과제([일반]2-1-6(물가안정방안))로 지정하여 추진
- '08. 4월 : 실시간 주유소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류 구매 선택권 제고 투명한 석유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오픈넷을 오픈
- '09. 3월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내비게이션, 모바일,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부가서비스 개시
- '09. 5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정제업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09.5~11.4월)
- '10. 5월 : 스마트폰 유가정보 서비스 개시

- '11. 4월 : 정유사 등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공개 연장 (~'14.4월)
- '11. 4월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발표
- '11. 7월 : '대안주유소 검토계획' 발표
- '11.11.3 :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발표
- '11.11월 : 국내유가예보시스템 구축, 모바일 등 오피넷 고도화 서비스 개시
- '11.11월 :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확정하여, 알뜰주유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11.12월 : LPG 사업자(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사업자)의 전수 판매가격 공개
- '11.12.29 : 알뜰주유소 1호점 개설
- '12.3.16 : 알뜰주유소 조기정착 및 확산방안
- '12.4.19 :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 '12.6.15 : 물가관계장관회의 보고
- '12.9. 6 : 물가관계장관회의 보고
- '12.12.3 : 물가관계장관회의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석유유통구조개선	5.3	11.2	85.1	91.2	6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3 ()	()	()	5.3 ()	5.3 ()	()	()
'11년	11.2 ()	()	()	11.2 ()	11.2 ()	()	()
'12년	85.1 ()	()	()	85.1 ()	85.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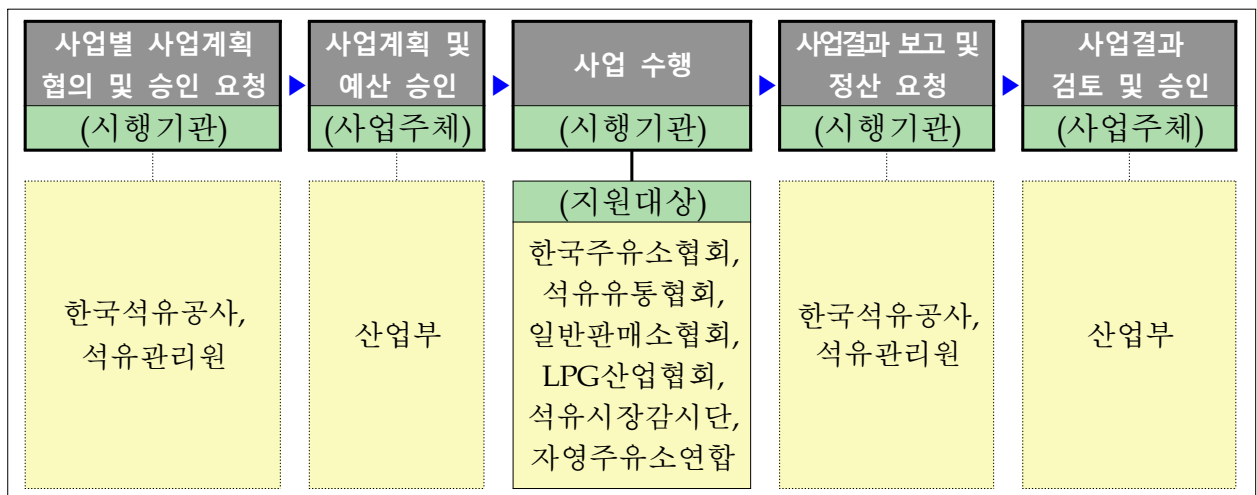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을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등 조정이 필요('09년 결산 지경위 검토 보고서)
- 알뜰주유소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12년 예산 예결위 검토 보고서)

- 알뜰주유소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방안을 강구하고 품질점검을 강화할 것 ('12년 지경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알뜰주유소사업은 저가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익제공이 주요 취지이므로 지속적으로 저가판매 방안을 강구할 것 ('12년 지경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알뜰주유소 간의 판매가격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가능성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알뜰주유소의 운영실태, 문제점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12년 지경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LP가스품질검사(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사업코드 : 21-24-4-110-115-5400-5434-301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가스산업과장(이용환, 044-203-5230), 주무관
(정정식, 044-203-52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141.6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관리원 (LP가스품질 전문 검사기관)

2. 사업목적 : LP가스 품질검사비용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LP품질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81백만원

- 품질검사 대상업소(충전소) 및 품질위반 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최소한 전년도 수준 유지

* 충전소(개) : ('07)1,552→('08)1,648→('09)1,739→('10)1,887→('11)1,960→('12)1,994

* 위반건수 : ('08)25(0.5%)→('09)27(0.6%)→('10)32(0.7%)→('11)31(0.7%)→('12)35(0.7%)

- 4,762건(대상업소 1,994개×업체당 1회~5회) × 단가*(269,000원) = 1,281백만원

* '14년 단가(269,000원) : 시험분석비(수수료 30% 적용), 인건비 등 검사비용

* '06~'13년까지 검사단가 동결, 추후 단가 현실화 필요

□ 지원 필요성

- LP가스 품질검사는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탈세*를 방지함은 물론, 프로판 과다혼합에 따른 연비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 부탄과 프로판의 세금차이(358원) = 개별소비세 차이[부탄(275원)-프로판(20원)=255원]+교육세(부탄만 41원)+판매부과금(부탄만 62원)

- 품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LP가스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치이고,
- 세수 확보와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소요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함

- 또한 프로판 불법혼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충전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LP가스 품질검사의 지속적인 실시가 요구됨

* 충전소(개) : ('07)1,552→('08)1,648→('09)1,739→('10)1,887→('11)1,960→('12)1,994

* 위반건수 : ('08)25(0.5%)→('09)27(0.6%)→('10)32(0.7%)→('11)31(0.7%)→('12)35(0.7%)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1,281	-	-
□ 비목(합계)	1,281	1,281	1,281	-	-
○ 민간경상보조(320-01)	1,281	1,281	1,28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신축적인 품질검사 실시
 - 품질검사 이력* 등을 중심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하여 품질 불량 LP가스 제조·판매 가능업소 중점관리
 - * 위반유인이 높은 프로판 충전(용기 충전) 검업 업소, 품질위반 이력 업소 등
 - 취약시기·시간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 위반율이 높은 지역이나 변절기(5월, 10월) 등 전략적 품질검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2.81	4,762건(1,994개×1~5회) × 단가(269,000원)
'14	12.81	4,762건(1,994개×1~5회) × 단가(269,000원)
'15	8.40	3,123건(1,994개×1~3회) × 단가(269,000원)
'16	7.70	2,862건(1,994개×1~3회) × 단가(269,000원)
'17	6.34	2,357건(1,994개×1~2회) × 단가(269,000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6조제4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또는 위탁검사기관)에 대해 품질검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특별소비세법 개정('00.12, 수송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부탄의 특별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액차이로 인해 자동차용 부탄에 불법으로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LP가스품질검사 추진
 - 2001.12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품질검사 근거 신설)
 - 2002. 4 : LPG품질기준제도 도입관련 법령 시행 및 고시 제정
 - 2002. 8 : 품질검사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LP가스품질검사	11.72	11.72	12.81	12.81	12.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1.72 (11.72)	()	()	11.72 (11.72)	11.72 (11.72)	()	()
'11년	11.72 (11.72)	()	()	11.72 (11.72)	11.72 (11.72)	()	()
'12년	12.81 (12.81)	()	()	12.81 (12.81)	12.81 (12.8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LP가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충전소당 품질검사 횟수 증대 필요
 - ⇒ 조치사항 : '05년 LP가스 품질검사 예산 증액을 통한 횟수 증대
 - * ('04) 8.7억원(충전소당 2~3회) → ('05) 13.0억원(충전소당 3~4회)
- '08년 국감시 지적사항 : LP 가스 품질검사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기관 일원화 필요(주승용 의원 등)
 - ⇒ 조치사항 : 품질검사 공정성을 위하여 상호 경쟁하에서 투명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지역 상호교체 정례화 시행
 - * '09년 변경된 검사지역 : 한국석유관리원(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 → 한국석유관리원(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
- 제298회 지경위 법안상정 전체회의('11.3월) : LPG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도시가스 품질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전담 방안 제언('11.3.3, 도법 개정안 심의시 김성희·조경태의원)
 - ⇒ 조치사항 : LPG 품질검사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11.12.19)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12. 1. 1.부터 시행)
 - * LPG 품질검사 일원화에 따른 검사인력 6명 총원 확정('11.9월, 기재부)
 - * '12. 1.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독 수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 본 : 품질규격 표시제(미표시 판매금지), 지자체 품질검사
- 미 국 : LP가스 품질규격에 따라 州정부가 품질검사 실시
- 영 국 : CALOR GAS가 자율 실시
- 이태리 : 품질규격 적합여부 확인 및 탈세방지 위해 정부가 품질검사 실시

(5) 사업추진절차

① 실행계획수립·통보(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석유관리원) → ② 세부실행계획 마련(한국석유관리원) → ③ 품질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④ 자금신청(한국석유관리원) → ⑤ 자금교부(산업통상자원부) → ⑥ 자금집행(한국석유공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관련근거 법령조문
- 연도별 부탄 - 프로판 세액 비교
- LP가스 품질기준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처벌기준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연도별 부탄 - 프로판 세액 비교

(단위 : 원/Kg)

구 분		'02.7~	'03.7~	'04.7~	'05.7~	'06.7~	'07.7~	'08.4~
프로판 (A)	개소세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
부탄 (B)	소 계	259.40	370.96	483.08	414.18	414.18	378.53	378.53
	개소세	203.00	297.00	382.00	306.00	306.00	275.00	275.00
	교육세	30.45	44.55	57.30	45.90	45.90	41.25	41.25
	판매 부과금	25.95	29.41	43.78	62.28	62.28	62.28	62.28
차이 (B-A)	계	219.40	330.96	443.08	374.18	374.18	338.53	358.53
	개소세	163.00	257.00	342.00	266.00	266.00	235.00	255.00

* 근거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프로판 20원), 바목(부탄 275원)

참고

LP가스 품질기준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처벌기준 비교

	LPG		석유제품
	'06년 이전	현 행 ('06.5.3~)	
①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좌 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근거)	(액법 제48조)	“	(석대법 제45조)
②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제한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근거)	(액법 제9조) (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	(액법 제9조) (액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0)	(석대법 제13조) (석대법 시행규칙 제16조)
- 1회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3월(중과실) 경고(경과실)
- 2회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6월(중과실) 사업정지 3월(경과실)
- 3회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20일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정지 6월(중과실)
- 4회위반시	허가취소	-	-

□ 연도별 LP가스품질검사 사업 추진실적

- '02년부터 LP가스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품질위반율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소 증가 추세를 보임

<연도별 품질위반율 추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검사건수(위반건수)	4,867(25)	4,859(27)	4,407(32)	4,440(31)	4,871(35)
위반율	0.51%	0.56%	0.73%	0.71%	0.71%

□ 기대효과

- 가짜석유 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따른 약 1조 900여 억원의 세수탈루 차단
 - * 가짜석유 이외에도 무자료, 유가보조금, 면세유 등 불법거래 관리 가능
- 석유시장 유통구조 건전화(지하경제 양성화)
 - 수급·거래상황 전산화로 석유사업자들의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 욕구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 기대
 - 가짜석유 유통 차단에 따른 부정 수요가 정상 석유제품의 수요로 환원됨에 따라 석유사업자 영업이익 증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 가짜석유 유통 차단에 따른 국민 보호
 - 소비자가 저렴하게 양질의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
 -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및 차량손상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14년(2차 사업)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에특회계 용도 설명

- 석유사업자 연계 지원(3,375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석유 사업자 연계 지원	전산장치 미보유 주유소(1,300업소*2.2)	2,860
	전산장치 기보유 주유소(150업소*0.1)	15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성과검증 외부기관 용역	500
합 계		3,375

□ 사업의 필요성

- 가짜석유의 생산 및 유통은 사회·환경·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 금지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폭발 사고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
- 가짜석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석유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를 개선하여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입출하 정보를 확보하고,
 - 이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IT기반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매월 수기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석유수급·거래상황 보고를 휘발유·등유·경유에 한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일 전산보고'하도록 개선

□ 사업내용

- (개요) 석유사업자의 가짜석유 취급 등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거래상황 보고 전산화
 - 現 월1회 수기보고하는 수급·거래상황을 매일 전산보고토록 변경
 -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ERP, POS 등 전산장치를 통합 서버와 연결하여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가격정보 제외)를 관리
 - 물량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선별, 단속에 적용
 - *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거래량 급변 등
- (예산) 142억원('13년 65억원, '14년 34억원) 소요
 - 1단계('13년도) :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알뜰주유소 사업자)
 - 2단계('14년도) : 전산보고 시범사업 참여 주유소 전산장치 지원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7,910	14,839	14,647	△192	△1.3

* 사업코드 : 21-24-4-110-115-5400-5434-302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유산업과장(강경성, 044-203-5220),
사무관(나한균, 044-203-52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3년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석유관리원

2. 사업목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8조에 따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향상에 기여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용 법정시험장비 보강, 석유유통관리
강화 및 가짜석유제품 단속 사업 실시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품질검사시험장비 (1,966백만원)
 - 시험장비 보강 및 교체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12종 16대(1,461백만원)
 - 이동 검사·시험차량 보강 : 이동시험실차량 등 2대(505백만원)
- 성능평가 분석보조장비 (1,424백만원)
 - 석유누출분석시스템 등 7종 7대(1,424백만원)
- 가짜석유제품 단속 지원 (292백만원)
 - 길거리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위한 여비, 시험·검사 비용 지원
 - 단속활동을 위한 경비 : 242백만원(여비교통비·검사비·차량유지비)
 - 소비자의 신고의식 고취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효율적 차단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 포상금 : 50백만원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지원 (310백만원)
 - 석유수입부과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환급확인을 통하여 부과금의 과다환급, 부당환급 방지 및 환급의 적정성 확보
 - 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경비(인건비·경비) : 310백만원
- 석유유통관리 지원 (7,280백만원)
 -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취급외 제품 취급, 차량용 연료 이외 석유제품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 등의 석유시장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 석유유통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충원된 단속인력 인건비, 경비 지원 : 7,280백만원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지원(3,375백만원)

- 주유소 전산장치 연계 및 지원(3,375백만원)

- 전산장치 미보유 주유소에 대해 수급·거래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설치 지원

<전산장치 설치 지원항목>

- ①컨트롤러(H/W) : 주유기의 주유데이터를 수집하여 사무실 PC로 전송하는 통신장치
- ②배선공사 : '주유기-POS'간 케이블 연결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 ③전산프로그램(S/W) : 석유제품의 입·출·재고 물량에 대한 입력·관리 프로그램

- 기존에 전산장치를 보유한 주유소로부터 보고데이터를 추출하여 정부 통합서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을 설치

* 미들웨어(S/W) : 주유소 POS로부터 보고 데이터를 추출 및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프로그램

□ 지원 필요성

-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는 그 품질과 가격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의 개연성 상존
- 석유제품은 고액의 세금이 차등 부과되고 유통시 품질, 상표, 계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가짜석유 불법유통 지속
-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산업부 정책연구용역결과, '12.12)
- 이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근절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 가짜석유 제조·판매관련 정보수집, 시험검사기법 연구개발·개선 등 첨단·정밀 분석장비 확보,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사업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및 환경오염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사업으로서, 유통·품질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품질검사시험장비 및 성능평가 분석보조장비 구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 신규 및 교체도입
- 가짜석유제품 단속의 기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등 장기적인 정부정책 수립에의 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분석보조장비 확보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원
- 다만,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가짜석유 불법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확인·점검업무는 단속 실효성을 감안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주도하에 가짜휘발유 신고포상제 운영 및 시험분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지원 필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 석대법 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서 석유 수입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석유제품 등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에 대한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환급 확인사무는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인 필요사업으로써, 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

<석유유통관리 지원>

- 석유유통관리지원사업은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여 세금탈루 및 환경오염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사업임

- 특히, 최근 소비자를 우롱하는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행위가 증가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유통 이외의 불법행위가 증가추세임
- 또한, 기존의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
- 참고로, 최근 지능화, 변칙화 되고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비노출정량검사차량 등 첨단검사장비를 투입·대응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인력을 확대('11년 35명, '12년 85명)
- 따라서,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전방위 단속하기 위해 증원된 120명에 대한 인건비·경비 지원 필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 '11.9·10월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건(4명 사망) 등으로 국민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 차단을 위한 근본적 추가 대책 필요성 대두

※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11.10.14),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12.5.4),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국회 청문회('11.11.8) 등에서 추진방안 논의

- 주요 이행과제로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IT기반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추진을 결정

<참고>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 현재 '매월 수기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석유수급·거래상황 보고를 휘발유·등유·경유에 한하여 '전산·전자·서면의 방법으로 매주 보고'토록 개선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142억원의 예산이 소요, '13년 '석유품질관리지원사업'에 1차 사업예산 65억 반영
 - * 1단계('13년도 65억원) : 통합시스템 구축,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 전산장치 연계 프로그램 개발(알뜰주유소 등 1,150여업소 시범연계)
 - * 2단계('14년도 34억원) : 전산보고 시범사업 참여 주유소 전산장치 지원(29억원),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검증 컨설팅(5억원)

- 新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2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가짜석유로 인한 세수탈루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사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7,910	14,839	14,647	△192	△1.3
▪ 품질검사시험장비	1,479	1,331	1,966	635	47.7
▪ 성능평가분석보조장비	693	624	1,424	800	128.2
▪ 가짜석유제품단속지원	233	233	292	59	25.3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299	299	310	11	3.7
▪ 석유유통관리지원	1,906	5,852	7,280	1,428	24.4
▪ 단속인력 및 첨단장비 지원	3,300	-	-	-	-
▪ 석유제품수급보고전산시스템 개발지원	-	6,500	3,375	△3,125	△48.1
☐ 비목(합계)	7,910	14,839	14,647	△192	△1.3
○ 민간자본보조(320-07)	3,448	8,135	3,390	△4,745	△58.3
○ 민간경상보조(320-01)	4,462	6,704	11,257	4,553	67.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확보 및 가짜석유제품의 근절,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증과 기준설정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48	- 품질검사 시험장비 13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6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2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3 - 석유유통관리 59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65
'14	146	- 품질검사 시험장비 19 - 성능평가운영 보조장비 14 -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3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3 - 석유유통관리 73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34
'15	106	- 석유유통관리 63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43
'16	52	- 석유유통관리 52
'17	43	- 석유유통관리 43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 1호 및 제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3
-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5.4)

○ 추진경위

- 석유품질관리원 설립 당시 모든 예산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
- 1988년 이후부터 품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부 비용을 충당하고, 정부예산에서 지원

※ '83 ~ '94년간 석유사업기금 17,889백만원 보조

※ '95 ~ '13년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검사기기 보강, 실험실 확충 및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으로 73,738백만원 보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47.52	47.17	79.10	148.39	146.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다만, 실집행액 중, 가짜석유 신고포상금(38백만원) 불용액 발생
- 가짜석유 원료공급 차단과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 분석을 통한 제조·판매자의 단속으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7.52 (47.52)	()	()	47.52 (47.52)	47.52 (47.52)	()	()
'11년	47.17 (47.17)	()	()	47.17 (47.17)	47.17 (47.17)	()	()
'12년	79.10 (79.10)	()	()	79.10 (79.10)	79.10 (78.72)	()	(0.38)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12년 실시)

- 11년 석유품질관리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69점)

○ '09년 지경위 시정요구사항(권대수 전문위원)

-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단속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및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 수집 등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시행기관 변경 요구(석유공사→석유관리원)
- '10년 국정감사(김성희 의원)
 - 가짜석유의 적시성있는 단속을 위해 석유수급상황보고를 관리원으로 일원화하거나,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토록 조치 요구
- '11년 가짜석유 유통근절 청문회(김재균, 조경태 의원 등)
 - 가짜석유 근절의 근본적 대책으로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 요구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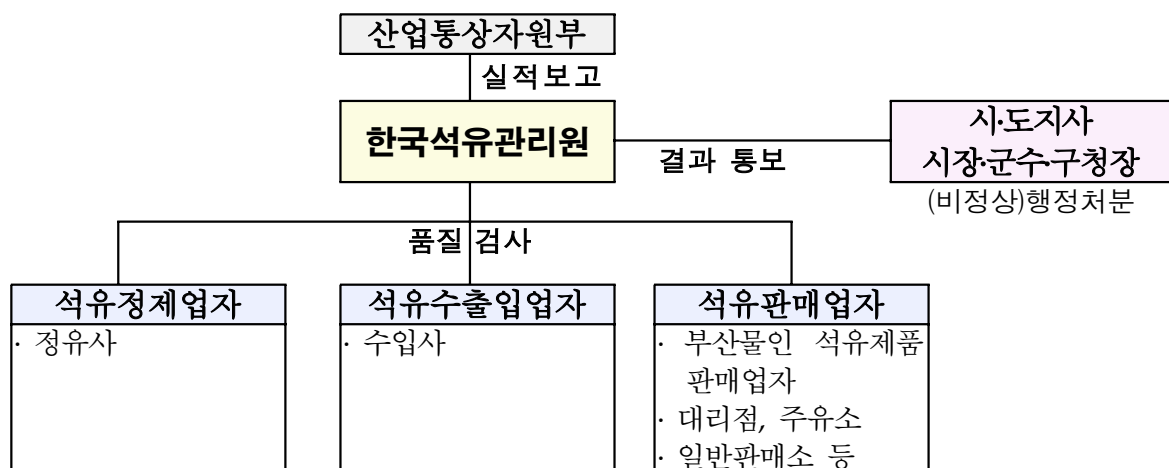
◆ 세계 주요국들은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는 자체 연료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기관도 다양

-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에서는 베네수엘라 등 인근국가의 저가 연료*가 밀수되어 자국의 연료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거래상황 모니터링시스템(콜롬비아 : SICOM, 페루 : SCOP)을 도입하여 운영
 - * 베네수엘라 휘발유 : 0.0045\$, 콜롬비아 휘발유 : 1.26\$
- (영 국) 주로 면세된 등경유 제품(가정용/산업용)이 정상경유에 불법 혼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전체 연료시장의 4%(최대 7%), 세액손실 £ 650~1,150백만(1조2천억~2조)으로 추정(영국국세청 09~10년 연차보고서)
 - 국세청(HMRC)에서 탄화수소유법에 의해 가정용·산업용 등경유 제품의 유통업자와 사용자 등을 의무 등록시키고 거래상황 등을 전산통합관리하고 있으며(등록요건 준수여부, 거래내역 허위여부 등 확인)
 - 길거리 자동차 연료에 대한 불시 노상검사(연 10만건, 적발율 3~4%)를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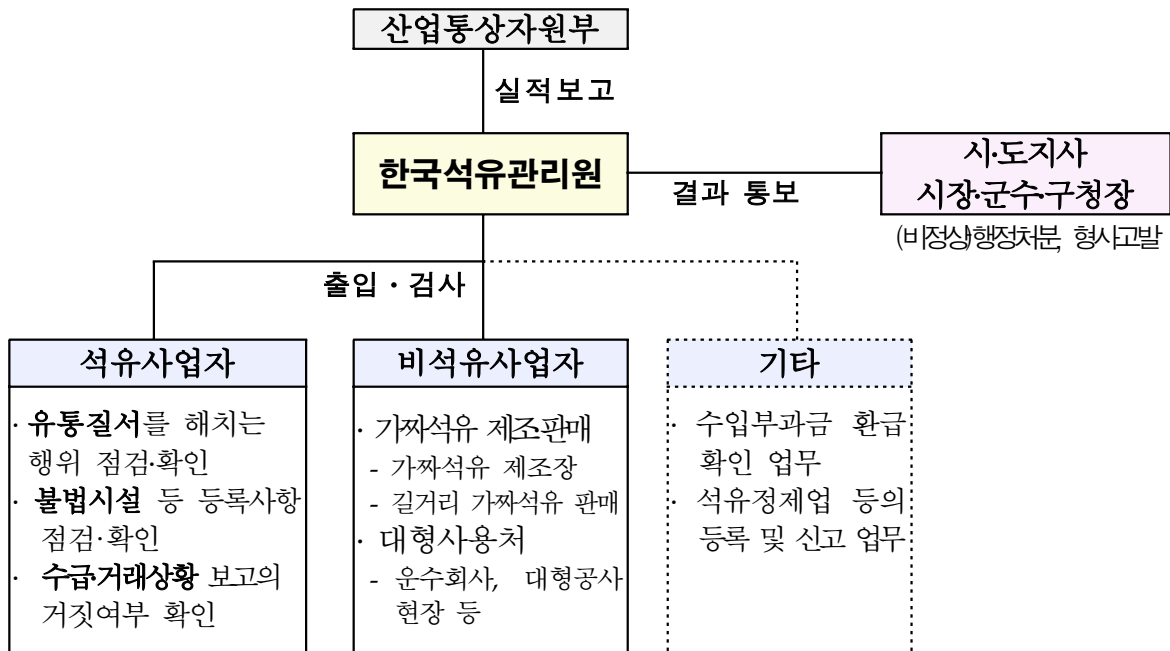
- (일 본)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은 없으나 전국적으로 가짜석유 4~10%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2009)
 - 전국석유협회(경제산업성에서 위탁)에서 품질확보법에 의거 시행하는 ㉠시료매입검사(연 20만건, 석대법 제25조제2항 검사와 동일)와 ㉡분석수탁검사(연 20~23만건, 휘발유판매업자에게 시료분석을 의무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용경유 노상검사(동경도기준 연 7~8천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가짜휘발유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변성제 투입, 고가판매정책 등의 제도를 운영
- (미 국)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동차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 탈세보다는 주로 소비자보호(주정부에서 수행), 대기환경측면(연방정부(EPA)에서 수행)에서 품질관리를 수행
 - 각 주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도량형사무국(Office of Weights & Measures)에서 주법에 의해 품질검사(뉴욕의 경우 18,000건 적발율 1~3% 수준)를 수행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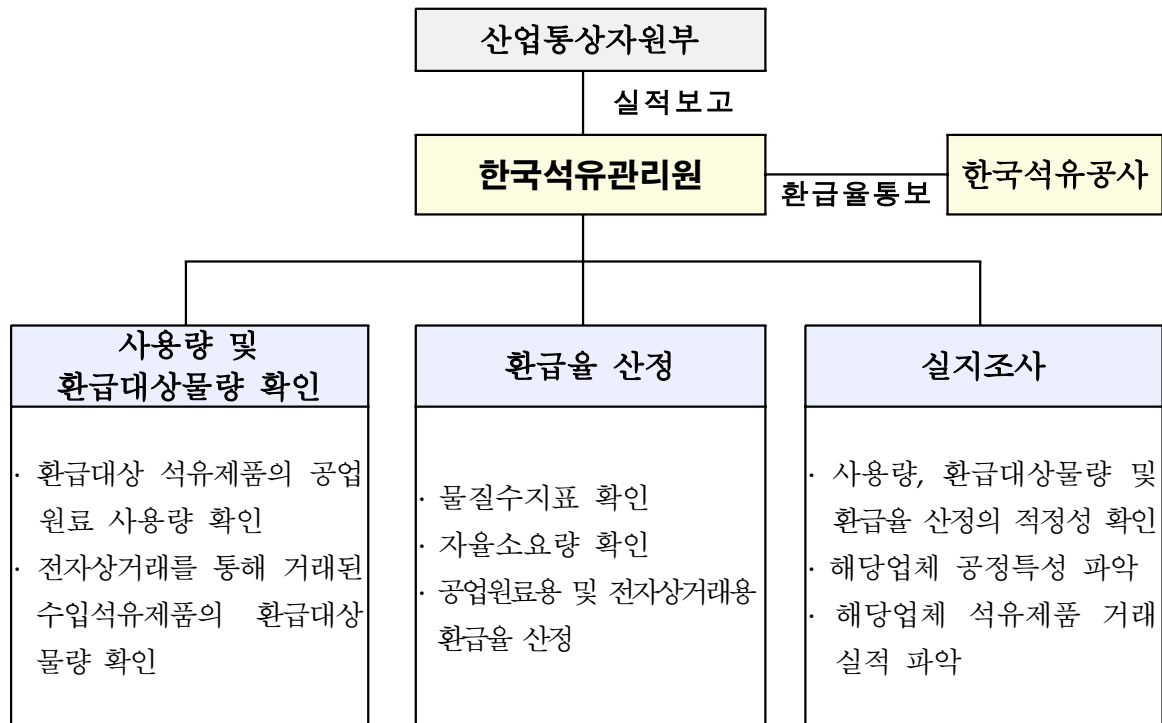
< 품질검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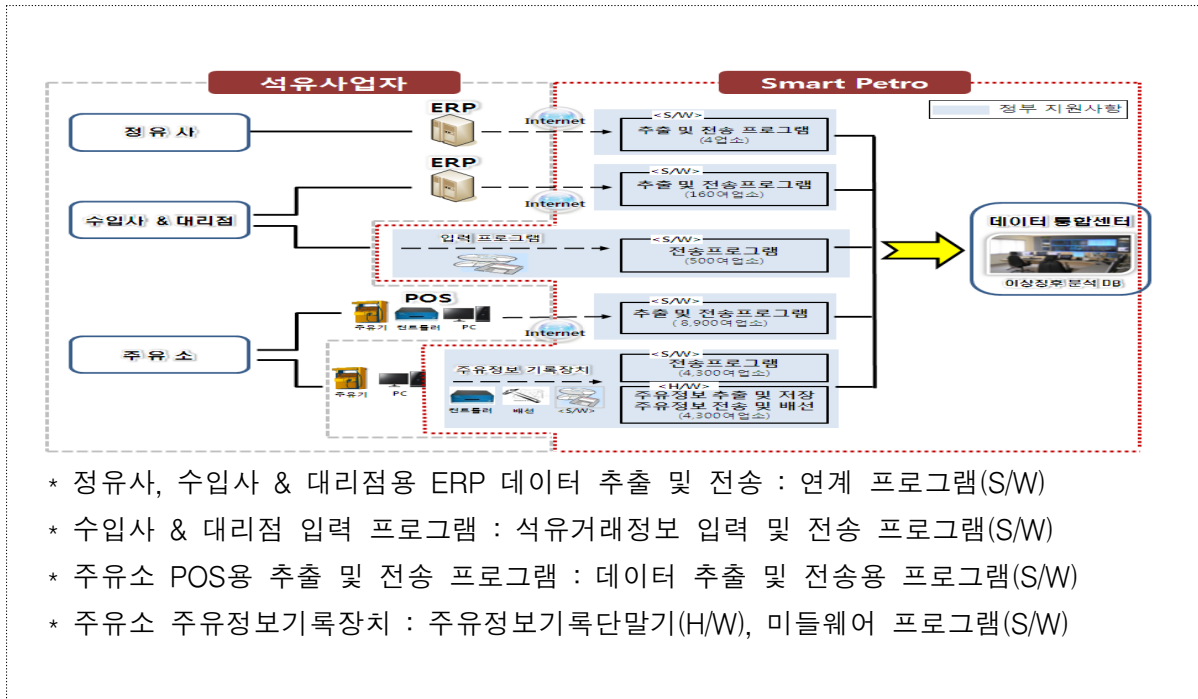
< 유통검사 체계 >



< 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 체계 >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범위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가짜석유제품 단속 지원 필요성
- 참고2)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원 필요성
- 참고3)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지원 필요성
- 참고4) 석유유통관리 지원 필요성
- 참고5)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개요 및 지원 필요성

참고 1

가짜석유제품 단속 지원 필요성

□ 사업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사업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추세인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절한 품질유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의 생산·수입단계 의무검사와 대리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등의 유통단계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검사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가짜석유 불법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확인·점검업무는 단속 실효성을 감안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주도하에 가짜휘발유 신고 포상제 운영 및 시험분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

가짜석유제품 단속지원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여비 교통비	1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회 × 15천원 × 2명 = 29,700 ▪ 442회 × 100천원 × 2명 = 88,400 	당일 출장 1박2일 출장
검사비	28,000	▪ 5,643건 × 5천원 = 28,215	시료비 및 검사소모품 등
차량 유지비	9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회 × 1.9천원 × 20L = 37,620(당일출장) ▪ 442회 × 1.9천원 × 40L = 33,592(1박2일출장) ▪ 212천원 × 10대 × 12개월 = 25,440 	유류대 수리비 등
계	242,000		

참고 2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원 필요성

□ 사업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현장 적발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04년 9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운영 실적

(‘12. 12. 31까지)

구 분	신 고 접 수	지 급 건 수	포상금 지급액
2004년	1,395업소	80건	116,000천원
2005년	2,750업소	1,660건	1,049,600천원
2006년	3,189업소	1,932건	486,100천원
2007년	690업소	1,600건	393,650천원
2008년	473업소	129건	115,500천원
2009년	163업소	315건	105,250천원
2010년	105업소	154건	121,800천원
2011년 ^{주)}	1,352업소	101건	102,600천원
2012년	1,607업소	70건	62,200천원
계	11,724업소	6,041건	2,552,700천원

주)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11. 1. 31)에 따라 석유사업자 추가

- 신고포상금 제도는 가짜석유제품의 비밀 제조·판매 현장의 적발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의식 고취 및 준법정신 확립 등 공익적 기능이 인정되므로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임

□ 지급액 기준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업소당 지급액)
포상금	석유사업자	20	50만원
	제조장	27	100 ~ 500 만원
	판매소	3	5만원
계		50	

- 주) 1. 업소당 지급액은 '11. 12. 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1-250호) 기준임
 2. '12년 포상금 지급 총액 62,200천원(비석유 : 38,200천원, 석유 : 24,000천원)

참고 3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지원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환급 확인사무는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인 필요사업으로서, 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

* '07년 부당 환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 약 1,371억원('08.3월 감사원 감사결과)

- 석대법 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석유제품 등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에 대한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33호, 2012.12.28.)

□ 사업내용

-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의 환급대상물량 확인, 부과금 환급을 산정 및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 실시
- 원료의 환급대상 용도 사용여부 및 사용량, 부산물 판매실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실지조사 실시

구 분	사용량 확인	환급대상물량 확인	환급율 산정		실지조사
			공업원료용	전자상거래용	
확인시기	매월 13일, 23일	매월 23일	매분기	매월	수시
주요내용	· 공업원료용 석유제품의 사용량 확인	·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의 환급대상물량 확인	· 환급대상공정의 물질수지표 확인 · 주부산물 용도별 판매내역 확인	· 월별 부과금 환급의 한계 수량에 따른 환급대상물량 비율 산정	· 업체 공정특성 파악 · 기 제출된 사용량 및 환급을 산정 서류의 적정성 확인 · 부당환급 여부 확인

□ 기대효과

○ 개선효과

- 정유사, 석유화학사, 석유수출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및 석유정제·화학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부과금 환급 확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급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환급확인에 기여

○ 기대효과

- 부과금의 과다환급, 부당환급 방지 및 환급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국고손실방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사업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인건비	26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 78,021천원 × 1명 = 78,021 ▪ 3급 : 61,486천원 × 1명 = 61,486 ▪ 4급 : 45,117천원 × 2명 = 90,234 ▪ 5급 : 38,354천원 × 1명 = 38,354 	-
경 비	4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교통비 : 11,500 ▪ 차량유지비 : 11,300 ▪ 통 신 비 : 1,600 ▪ 검 사 비 : 3,600 ▪ 세금과공과 : 800 ▪ 기타 경비 : 14,200 	기타경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도서인쇄비 등)
계	310,000		

□ 사업의 필요성

-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여건 조성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
 - 석유시장의 규제 완화에 따라,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석유 제품 불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동종의 판매업간 석유제품 거래 허용,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 최근 허가된 영업시설을 개조한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가스가 폭발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
 - 가짜석유는 세수탈루,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
 - * 수원·화성 소재 주유소폭발(11.9.24, 9.28), 안산 가짜석유 주입차량 폭발(11.10.5)
- 이에 따라,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석유 유통흐름 분석 등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

□ 사업내용

- 석유유통관리는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포함)의 유통 수단(생산, 공급, 운송, 저장, 소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석유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거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 운영을 통한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 자료 분석 등 석유제품 유통경로 상시파악
 - 수급상황보고 등 용제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가짜 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
 - 정량미달 판매행위, 용도변경 판매행위(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취급외 제품 취급 등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점검
 - 수급·거래상황 보고의 확인,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
 - 기타 품질검사로만으로는 적발이 곤란한 가짜석유 공급경로 추적, 면세유 불법거래, 무자료거래 등에 대한 점검체계 확립

□ 기대효과

- 불법시설물 및 용제 불법유통업무 단속·시험인력을 확대하여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짜석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 국민의 안전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기대
 -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 확립, 가짜석유 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수탈루 방지
- * 가짜석유로 인한 탈루세액 연간 약 1조 910억원 추정('12.12)
- 주유소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로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가 도심의 시한폭탄으로 돌변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 석유유통의 순기능 정착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

□ '14년 석유유통관리사업 에특회계 용도 설명

- 석유유통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경비
 - 석유유통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20명의 인건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에 충당
- * 석유유통관리사업은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인건비	6,016,000	▪ 1급 : 108,900천원 × 2명 = 217,800 ▪ 2급 : 78,021천원 × 11명 = 858,231 ▪ 3급 : 61,486천원 × 24명 = 1,475,664 ▪ 4-5급 : 41,736천원 × 83명 = 3,464,088	-
경 비	1,264,000	▪ 여비교통비 : 383,000 ▪ 차량유지비 : 210,000 ▪ 검 사 비 : 143,000 ▪ 수선유지비 : 70,000 ▪ 통 신 비 : 30,000 ▪ 교육훈련비 : 120,000 ▪ 도서인쇄비 : 50,000 ▪ 광고선전비 : 150,000 ▪ 정보시스템 보안관제서비스 : 108,000	광고선전비 : 가짜석유 폐해 공익광고
계	7,280,000		

□ 사업의 필요성

- 가짜석유의 생산 및 유통은 사회·환경·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 금지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폭발 사고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
- 가짜석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석유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를 개선하여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입출하 정보를 확보하고,
 - 이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IT기반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매월 수기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석유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휘발유·등유·경유에 한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일 전산보고'하도록 개선

□ 사업내용

- (개요) 석유사업자의 가짜석유 취급 등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거래상황 보고 전산화
 - 現 월1회 수기보고하는 수급·거래상황을 매일 전산보고토록 변경
 -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ERP, POS 등 전산장치를 통합 서버와 연결하여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가격정보 제외)를 관리
 - 물량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선별, 단속에 적용
 - *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거래량 급변 등
- (예산) 142억원('13년 65억원, '14년 34억원) 소요
 - 1단계('13년도) :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알뜰주유소 사업자)
 - 2단계('14년도) : 전산보고 시범사업 참여 주유소 전산장치 지원

□ 기대효과

- 가짜석유 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따른 약 1조 900여 억원의 세수탈루 차단
 - * 가짜석유 이외에도 무자료, 유가보조금, 면세유 등 불법거래 관리 가능
- 석유시장 유통구조 건전화(지하경제 양성화)
 - 수급·거래상황 전산화로 석유사업자들의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 욕구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 기대
 - 가짜석유 유통 차단에 따른 부정 수요가 정상 석유제품의 수요로 환원됨에 따라 석유사업자 영업이익 증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 가짜석유 유통 차단에 따른 국민 보호
 - 소비자가 저렴하게 양질의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
 -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및 차량손상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14년(2차 사업)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에특회계 용도 설명

- 석유사업자 연계 지원(3,375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석유 사업자 연계 지원	전산장치 미보유 주유소(1,300업소*2.2)	2,860
	전산장치 기보유 주유소(150업소*0.1)	15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성과검증 외부기관 용역	500
합 계		3,375

탄가안정대책보조(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탄가안정대책보조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6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윤한성, 044-203-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9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6조 770억원)
사업규모	'13년기준 5개 탄광, 47개 연탄공장
지원조건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매년 별도 고시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서민생활보호 및 석탄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지정,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 등 보전
- 서민연료인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석탄가격지원 : 석탄광 간접비(산재보험료 및 근로자(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59,989백만원(1,890천톤 x 31,740원/톤)
- 생산감축지원 : 태백탄광 38.5천톤 생산감축 광업자분 사업비 2,174백만원(지원물량 38.5톤 x 56,480원/톤)
- 갱도굴진지원 : 석탄광업자의 굴진지원을 위한 사업비 8,979백만원

- 지원물량 : 7,033m(단가 : 1,824천원/m, 지원을 70%)
- 연탄가격지원 : 연탄을 생산·판매한 연탄제조업자(제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1,514백만원(지원물량 520.56백만장 × 310.27원/장)
- 자동차수송비지원 : 연탄제조용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800백만원
- 회계사수임료 : 석탄·연탄 원가분석 및 그동안의 지원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비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석탄 및 연탄의 판매가격을 매년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연탄판매가격 동결로 인한 연탄제조단가 인상 요인 발생
- 서민연료인 연탄수요를 매년 감소(3.16%)하는 것으로 중기재정을 수립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12년도 연탄수요가 전년대비 8.2% 증가하고 있어 연탄가격보조 지원사업 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탄가안정대책보조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 석탄가격보조	22,362	28,421 (1,866천톤× 15,231원/톤)	59,989 (1,890천톤 × 31,740원/톤)	31,568	111.1
▪ 감산지원보조	-	9,770 (160천톤× 61,060원/톤)	2,174 (38.5천톤× 56,480원/톤)	△7,596	△77.7
▪ 갱동굴진보조	2,710	7,950 (7,072m× 1,606천원×70%)	8,979 (7,033m× 1,824천원/m×70%)	1,029	12.9
▪ 연탄가격보조지원	122,623	139,016 (462백만장× 300.90원/장)	161,514 (520.56백만장× 310.27원/장)	22,498	16.2
▪ 자동차수송비지원	4,124	3,800	3,800	-	-
▪ 수임료	15	22	30	8	36.4
□ 비목(합계)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 민간경상보조(320-01)	151,835	188,979	236,486	47,507	25.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G20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계획에 따라 단계적 석·연탄 가격인상 추진으로 정부재정 부담 경감추진
- 석탄산업 기반유지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석탄 생산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격보조 284억원 : 1,866천톤x15,220원/톤 ○ 감산지원보조 98억원 : 160천톤x61,060원/톤 ○ 갱도굴진지원 80억원 : 7,072mx1,606천원/mx70% ○ 연탄가격보조 1,390억원 : 488백만장x284.87원/장 ○ 자동차수송비 38억원 ○ 수입료 0.3억원
'14	1,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격보조 600억원 : 1,890천톤 x 31,740원/톤 ○ 감산지원보조 22억원 : 38.5톤 x 56,480원/톤 ○ 갱도굴진지원 80억원 : 7,072mx1,606천원/mx70% ○ 연탄가격보조 1,390억원 : 488백만장x284.87원/장 ○ 자동차수송비 38억원 ○ 수입료 0.3억원
'15	1,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격보조 284억원 ○ 감산지원보조 30억원 ○ 갱도굴진지원 80억원 ○ 연탄가격보조 1,458억원 ○ 자동차수송비 38억원 ○ 수입료 0.3억원
'16	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격보조 284억원 ○ 감산지원보조 61억원 ○ 갱도굴진지원 80억원 ○ 연탄가격보조 927억원 ○ 자동차수송비 38억원 ○ 수입료 0.3억원
'17	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격보조 284억원 ○ 갱도굴진지원 80억원 ○ 연탄가격보조 456억원 ○ 자동차수송비 20억원 ○ 수입료 0.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판매가격 지정등)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추진경위

-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 및 석탄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탄가를 동결,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조 지원
-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석탄 및 연탄가격 현실화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탄가안정대책 보조	1,855	1,636	1,518	1,890	2,36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181억원 불용 사유

- 산재보험료 지원을 하향 조정(80%→66.24%)에 따른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875 (1,875)	- ()	△20 ()	1,855 (1,855)	1,673 (1,673)	- ()	181 (181)
'11년	1,636 (1,636)	- ()	- ()	1,636 (1,636)	1,636 (1,636)	- ()	- ()
'12년	1,518 (1,518)	- ()	- ()	1,518 (1,518)	1,518 (1,518)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0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

- ① '10년 갱도굴진 단가는 1,480천원/m으로 '09년 평균단가 1,272천원/m (예산상 단가는 1,009천원/m)에 비해 16.4%나 상승한 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필요
- ② 경동은 '09년에 갱도굴진량을 증가시킨 후 '10년에 대폭 감소시켜 감산량이 20만톤에 달한 것인데 단순히 전년대비 감축량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 필요
- ③ 산재료 계상시 '10년 감산에 따른 인력감소 감안시 과대편성된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0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

- ① '09년 총 굴진비는 17,568백만원으로 정부지원을 70%를 적용하면 12,298백만원(30%는 업체부담)임. 총 굴진비와 굴진량으로 굴진단가를 산정하면 1,441천원/m이며, 1,480천원/m은 '09년 대비 2.7% 상승에 불과함
- ② 정부지원대상인 시설갱도굴진은 채탄량과 비례하는 것이 아님. 경동은 상부 회목 및 통리구역의 채탄작업이 종료되어 하부채탄을 위한 굴진작업을 한 것임
- ③ 생산감축에 따른 인력감소분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산재보험료임

3)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2.0)*

* 관리과제 : 석탄수급안정, ,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석탄광업자·연탄제조업자→공단)→공단 실사 및 자금교부 신청→교부결정(산업통상자원부)→자금수령 및 집행(공단→석탄광업자·연탄제조업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석탄비축자산관리비(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26	1,149	1,714	565	49.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6 - 303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윤한성, 044-203-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9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884억원)
사업규모	3개 정부비축장의 비축무연탄 관리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대한석탄공사

2. 사업목적

- 정부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3개 정부 석탄비축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794백만원
* 16명 × 49,625천원/명
- 물건비 : 3개 정부 석탄비축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경비 332백만원
* 278천톤 × 1,194천원/천톤

- 임대저탄장의 임대기간이 끝나 토지소유주가 원상회복을 요구함
으로 저탄장 복구비 231백만원

$$* 34,084\text{m}^2 \times 6,777\text{원}/\text{m}^2$$

- 인천비축장내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 '14. 1월까지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 157백만원

$$* 668\text{m}^2 \times 235\text{천원}/\text{m}^2$$

- 폐수처리기준 강화로 전북 김제 소재 저탄장에서 금강유역으로
방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장 설치비 200백만원

$$* 120\text{m}^2 \times 1,667\text{천원}/\text{m}^2$$

□ 지원 필요성

- 정부비축탄 및 비축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정부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26	1,149	1,714	565	49.2
▪ 인건비 (산출근거)	752	794 (16명×49.6백만원)	794 (16명×49.6백만원)	-	-
▪ 물건비 (산출근거)	246	355 (278천톤×1.3백만원)	332 (278천톤×1.2백만원)	△23	△6.5
▪ 저탄장복구비 (산출근거)	-	-	231 (34,084m ² ×6,777원)	231	순증
▪ 국유재산 대부료 (산출근거)	-	-	157 (668m ² ×0.2백만원)	157	순증
▪ 폐수처리 시설공사 (산출근거)	-	-	200 (120m ² ×1.7백만원)	200	순증
□ 비목(합계)	1,126	1,149	1,714	565	49.2
○ 위탁사업비(210-15)	1,126	1,149	1,714	565	49.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석탄 수급안정을 위해 조성된 정부비축장 및 비축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1	· 인건비 8 · 물건비 3
'14	17	· 인건비 8 · 물건비 3 · 저탄장복구비 2 · 국유재산 대부료 2 · 폐수처리 시설공사 2
'15	17	· 인건비 8 · 물건비 3 · 폐수처리 시설공사 1 · 정부비축탄 비축 5
'16	17	· 인건비 8 · 물건비 3 · 정부비축탄 비축 6
'17	17	· 인건비 8 · 물건비 3 · 정부비축탄 비축 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석탄산업법」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위탁)

○ 추진경위

- 1975년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국내 무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1980년에 인천비축장 설치를 시작으로 1982년

옥마, 1983년 석항 및 강릉, 1987년 와룡에 토지 매입을 통해서 5개 비축장을 설치하고, 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및 도계광업소에 추가로 산지 비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무연탄 수급조절과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79년부터 사업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석탄비축자산관리비	50	25	11	11	1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0 (50)	()	()	50 (50)	50 (50)	()	()
'11년	25 (25)	()	()	25 (25)	25 (25)	()	()
'12년	11 (11)	()	()	11 (11)	11 (1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2.0)*

* 관리과제 : 석탄수급안정, ,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저소득층연탄보조(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	14,106	14,106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6 - 304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윤한성, 044-203-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8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705억원)
사업규모	연탄사용 저소득층 약 8만여 가구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국비(100%)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에 연탄가격 인상차액분 만큼을 쿠폰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완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07년부터 시작된 연탄가격인상정책에 대한 보완 조치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연탄가격 10%인상시 쿠폰금액은 200,000원

$$- 894\text{장} \times 226.85\text{원} = 202,804\text{원}(\approx 200,000\text{원})$$

* G20회의 관련 화석연료보조 철폐 계획에 따른 연탄가격 인상

- 200,000원 × 70,415가구 = 14,083,000,000원(A)

○ 사업추진 관련 부대경비 : 23,000,000원(B)

- 연탄쿠폰, 사업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비, 홍보비 등

⇒ 14,083,000,000원(A)+23,000,000원(B)=14,106,000,000원

□ 지원 필요성

- 정부재정 부담완화 및 화석연료보조금 철폐시한을 감안하여 연탄 가격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가격 인상차액분 만큼 지원 필요
- G20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보조금 철폐와 관련하여 탄가안정대책비 (생산안정지원금, 연탄제조비)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에 따른 보전차원으로 동 사업 지원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	14,106	14,106	-	-
▪ 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	(73,350가구×192천원=14,083백만원) 쿠폰제작 등 부대 비용(23백만원)	(70,415가구×200천원=14,083백만원) 쿠폰제작 등 부대 비용(23백만원)	-	-
□ 비목(합계)	14,106	14,106	14,106	-	-
○ 민간경상보조(320-01)	14,106	14,106	14,106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연탄 수급안정 및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만큼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연탄쿠폰 지원
- 지원대상은 연탄사용 저소득층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로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자체 협조(대상자 선정 등)를 통해 사업 시행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장애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41	○ 14,083백만원(사업비)+23백만원(쿠폰제작 등 부대비용) = 14,106백만원 * (사업비) 192,000원 × 73,350가구 = 14,083백만원
'14	141	○ 14,083백만원(사업비)+23백만원(쿠폰제작 등 부대비용) = 14,106백만원 * (사업비) 200,000원 × 70,415가구 = 14,083백만원
'15	101	○ 200,000원 × 50,500가구 = 101억원
'16	93	○ 200,000원 × 46,500가구 = 93억원
'17	76	○ 200,000원 × 38,000가구 = 76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최고판매가격 지정)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추진경위

- 정부는 연탄수급조절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 중

* 연탄 공장도가격 인상 추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13년
인상률(%)	-	20%	30%	30%	동결
가격(원)	[184.00]	[221.00]	[287.25]	[373.50]	

-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08년부터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인상 차액분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G20 화석연료보조금 철폐계획의 보완책으로 확대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저소득층 연탄보조	142	151	141	141	14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42 (142)	()	()	142 (142)	142 (142)	()	()
'11년	151 (151)	()	()	151 (151)	151 (151)	()	()
'12년	141 (141)	()	()	141 (141)	141 (14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예결위 결산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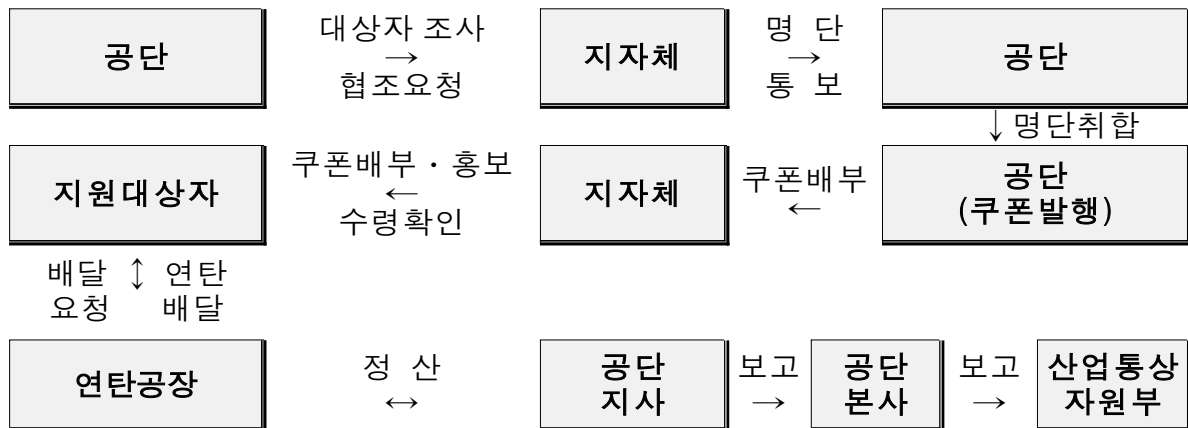
- 연탄 쿠폰 금액을 적절히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탄쿠폰 현금화 방지를 위한 대책과 가스·석유 등 포괄적 연료비 보조예산으로 전환하여 연탄 외의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2.0)*

* 관리과제 : 석탄수급안정,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 관련근거 법령 조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판매가격 지원)

- * 제2조(최고가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최고가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폐광대책비(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폐광대책비	54,457	51,436	26,000	△25,436	△49.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7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윤한성, 044-203-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9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9,756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정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고비용·저효율 탄광의 조기폐광 또는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태백광업 감축근로자대책비 : 4,939백만원 >

- 사업규모 : 감축 이직자수 50명(물량 38.5천톤)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6호, '13.12.30)

○ 산정기초

- 일 평균임금 : 81,000원/일
- 평균근속기간 : 15년

○ 지원항목별 소요액

- 전업준비금 : 1,458백만원
 - * $81,000\text{원/일} \times 30\text{일} \times 50\text{명} \times 12\text{월} = 1,458\text{백만원}$
- 특별위로금 : 3,181백만원
 - * $81,000\text{원/일} \times 30\text{일} \times 34\text{명} \times 29.016\text{개월} = 2,397\text{백만원}(13\text{년이상})$
 - * $81,000\text{원/일} \times 30\text{일} \times 16\text{명} \times 20.169\text{개월} = 784\text{백만원}(13\text{년이하})$
- 태백광업 사후대책비 300백만원
 - * 감축이직자 학자금 : 300백만원(3년 수혜기간 중 1년차)

< 경동탄광 사후대책비 : 648백만원 >

- 감축이직자 학자금 : 648백만원(3년 수혜기간 중 3년차)

< 태백광업 폐광대책비 : 20,413백만원 >

- 사업규모 : 폐광근로자60명 / 폐광지원물량 66천톤
 -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60호, '13.1.1)
- 산정기초
 - 일 평균임금 : 178,200원/일('12년 평균임금 163,721원x8.9%인상율)
 - 평균근속기간 : 18.4년
- 지원항목별 소요액
 - 퇴직금 4,427백만원
 - * $178,200\text{원/일} \times 30\text{일} \times 60\text{명} \times 18.4\text{년} \times 75\%$
 - 임금 642백만원
 - * $178,200\text{원/일} \times 30\text{일} \times 60\text{명} \times 2\text{월}$

- 실직위로금 321백만원
- * 178,200원/일x30일x60명x1월
- 전업준비금 3,849백만원
- * 178,200원/일x30일x60명x12월
- 특별위로금 9,307백만원
- * 178,200원/일x30일x60명x29.016개월
- 재해위로금 1,041백만원
- * 153,630원/일x616일x11명
- 폐광이직자 학자금 166백만원
- * 산출근거 60명x66%=40명
- * 3,951천원x5%/‘14년인상율

- 폐광광업 광업자지원금 660백만원
 - 66천톤x10천원/톤

□ 지원 필요성

- 석탄생산 감축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탄광근로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전제로 석탄생산 감축과 폐광을 시행하고 있어 적기에 사업비 지원이 요구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폐광대책비	54,457	51,436	26,000	△ 25,436	△ 49.5
▪ 근로자대책비	-	1,018 (60명x32.2백만)	19,753 (60명x329.2백만)	18,735	1,840%
▪ 광업자대책비	-	-	660 (66천톤x10천원/톤)	660	순증
▪ 감산근로자대책비	54,457	50,418 (191.74백만x50명)	5,587 (111.74백만x50명)	△ 44,831	△ 88.9
□ 비목(합계)	54,457	51,436	26,000	△ 25,436	△ 49.5
○ 출연금(350-01)	54,457	51,436	26,000	△ 25,436	△ 49.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기반유지 및 생산규모 축소로 국가재정부담 경감
- 고비용·저능률의 한계탄광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문제(지역경제위축, 임금체불, 실직 등) 최소화
- 폐광 및 감축탄광 이직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산근로자 대책비 50,418백만원 : 250명x201.7백만원 ○ 석탄공사 사후대책비(3년차) : 1,018백만원
'14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책비 19,753백만원(폐광지원물량 66천톤, 폐광근로자 60명) ○ 광업자대책비 660백만원(66천톤x10천원/톤) ○ 감산근로자 대책비 5,587백만원(감축이직자 50명, 물량 38.5천톤)
'15	300	○ 감축 근로자대책비 및 사후대책비(학자금) 등 300억원
'16	300	○ 감축 근로자대책비 및 사후대책비(학자금) 등 300억원
'17	300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감산근로자 대책비 등 30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 지급)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폐광대책비)

○ 추진경위

- 석탄산업합리화방안 확정 : '88.12.21(석탄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석탄산업법 개정 공포(법률 제4030호) : '88.12.26
- '89년부터 폐광지원사업 추진('89~'11 기간중 340개 탄광 폐광)
- 석탄산업법시행령 개정('00.12.29) : 폐광대책비 현실화 등
- 제2차 석탄산업구조조정 추진 : (주)삼탄, 영월, (주)동원, (주)홍진, (주)태안, (주)성하 폐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폐광대책비	899	17	545	514	26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6억원 불용 사유

- 석탄공사 감산근로자대책비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99 (899)	- (-)	- (-)	899 (899)	893 (893)	- (-)	6 (6)
'11년	17 (17)	- (-)	- (-)	17 (17)	17 (17)	- (-)	- (-)
'12년	545 (545)	- (-)	- (-)	545 (545)	545 (545)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

* 관리과제 : 광산지역진흥,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폐광대책비 : 폐광예비신청(석탄광업자)→폐광대상탄광 선정(공단, 산업부)→광업권 소멸후 폐광대책비 신청(석탄광업자)→실사 및 폐광대책비 집행(공단)

- 감산대책비 : 감축승인신청(석탄광업자)→감축대상선정·승인(공단, 산업부)→감축지원금 신청(석탄광업자)→실사 및 감산대책비 집행(공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조문

□ 석탄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

- *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 *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 석탄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 석탄산업법 제39조의 3(폐광대책비의 지급)

-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

-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 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 *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 광업권 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 이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당해 채굴 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 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석탄산업법 제41조(폐광대책비)

- 법 제39조의3 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 2월분 해당액
- 법 제39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 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 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
-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 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함.
-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 *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 : 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 : 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 : 퇴직일부터 3년

-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 *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 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 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광해방지비(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광해방지비	82,000	88,000	82,000	△6,000	△6.8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7 - 302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성길웅, 044-203-528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연 180개소 이상
지원조건	출연 (폐광산 100% 지원 / 가행·휴지광산 70%)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광해 요인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 광산개발 초기단계부터 광해발생의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 광해방지 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 방지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복구하여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2,000백만원

- 오염토양복원사업 28,631백만원(99개소)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석면광산 등 중금속 오염광산 주변의 오염토양 개량사업
- 폐석(광물찌꺼기)유실 방지사업 9,945백만원 : 광산 주변 중금속 오염원인 광물찌꺼기를 차단, 매립·무해화 작업을 통한 식수원 보호구역인 하천, 댐 등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 폐석유실방지 4,550백만원(7개소), 광물찌꺼기유실방지 5,395백만원(6개소)
- 오염수질개선, 산림복구, 지반침하방지, 먼지날림방지 등 34,800백만원 : 광산개발에 따른 오염수질개선, 훼손된 산림의 복구, 지반침하 및 먼지날림 등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
 - 오염수질개선사업 11,272백만원(29개소), 산림복구사업 2,151백만원(18개소), 지반침하방지사업 3,818백만원(34개소), 소음·먼지날림 방지사업 16,798백만원(24개소), 폐시설물철거사업 761백만원(2개소)
- 기술개발사업, 사후관리운영사업 8,624백만원 : 광해방지 R&D, 수질정화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 등
 - 사후관리운영 7,624백만원(17개소), 기술개발사업 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 등을 특징으로 피해가 장기간 다양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속한 복구 필요
- 광해는 대부분 원인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폐광산에서 발생되어 방치할 경우 피해확산이 우려되어 정부의 주도적인 복구 필요
 - 광해방지사업은 적시에 추진이 안 될 경우 막대한 피해유발과 확산으로 민원발생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
- 광해방지사업은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요청한 사업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사정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추진 중
- 또한, 환경복원사업의 특성상 다년도 계속사업 비율이 매년 75% 수준(사업비 기준)으로,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 광해방지사업 계속사업 비율 >

구 분	2012년		2013년	
	계속사업비	총 사업비	계속사업비	총 사업비
예산액(백만원) 총사업비 대비 비율(%)	60,316 (74%)	82,000 (100%)	66,209 (75%)	88,000 (100%)

- 예산부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중지 등에 따른 피해유발 등으로 추진사업의 왜곡 및 민원발생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 상존
- 정부에서 승인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상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
 - '11.9월 정부에서 확정, 공표한 광해방지기본계획 상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왜곡 발생
 - 2단계 5개년 광해방지기본계획은 연도별 평균 1,000억 규모로 편성되어 승인되었으나, 지원예산은 하향 조정 배정되어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으로 신규 사업 추진 곤란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기본계획	800	1,100	1,100	1,152	1,249	1,024	1,109	7,534
실편성예산	800	710	740	790	820	820	880	5,560
증△감	-	△390	△360	△362	△429	△204	△229	△1,974

* 1단계 5개년('07~'11) 사업은 기 완료, 2단계 5개년('12~'16) 사업은 현재 추진중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광해방지비	82,000	88,000	82,000	△6,000	△7
▪ 오염토양복원사업	31,590	27,411 (108개×253.8백만)	28,631 (99개×289.2백만)	1,220	4
▪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6,803	11,354 (15개×756.9백만)	9,945 (13개×765백만)	△1,409	△12
▪ 수질개선사업 등	35,486	40,611 (130개×312.4백만)	34,800 (107개×325.2백만)	△5,811	△14
▪ 기술개발사업, 사후관리운영	8,121	8,624 (17개×507.3백만)	8,624 (17개×507.3백만)	-	-
☐ 비목(합계)	82,000	88,000	82,000	△6,000	△7
○ 출연금(350-01)	82,000	88,000	82,000	△6,000	△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광해방지정책 목표

- 향후 15년내(2026년까지) 광해방지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
-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예방으로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 추진전략

-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광해방지시스템 구축
-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880	폐석(광미)유실방지(114), 지반침하방지(50), 오염수질개선(135), 오염 토양개량(274), 소음·먼지날림방지(183), 폐시설물철거(10), 산림복구(28), 사후관리운영(76), 기술개발(10)
'14	820	폐석(광미)유실방지(99), 지반침하방지(38), 오염수질개선(113), 오염 토양개량(286), 소음·먼지날림방지(168), 폐시설물철거(8), 산림복구(22), 사후관리운영(76), 기술개발(10)
'15	738	폐석(광미)유실방지(99), 지반침하방지(33), 오염수질개선(128), 오염 토양개량(271), 소음·먼지날림방지(62), 폐시설물철거(13), 산림복구(46), 사후관리운영(76), 기술개발(10)
'16	664	폐석(광미)유실방지(142), 지반침하방지(66), 오염수질개선(30), 오염 토양개량(172), 소음·먼지날림방지(59), 폐시설물철거(10), 산림복구(99), 사후관리운영(76), 기술개발(10)
'17	598	폐석(광미)유실방지(121), 지반침하방지(60), 오염수질개선(27), 오염 토양개량(153), 소음·먼지날림방지(53), 폐시설물철거(9), 산림복구(89), 사후관리운영(76), 기술개발(1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조, 6조~9조, 11조~12조, 18조, 22조, 41조

○ 추진경위

-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행광산 「폐석유실방지사업」 추진('80)
-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시·도 위임사업으로 추진('87)
-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시행('90)
- 광해방지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00, 석탄산업법 개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06.6)
- 광해방지전담기관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06.6)
- 제1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년) 수립·시행('06.10)
- 광해방지 관련 사업 통합('07.1)
- 제2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년) 수립·시행('11년)

< 광해방지사업 추진체계 개편과정 >

구 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최초 시행	1980년	1990년
지원 대상	가행광산, 휴폐업 일반광산	합리화로 인한 폐탄광
지원 금액 (‘06년까지)	2006년까지 2,288억원	2,071억원
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 통합 (‘07년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통합하여 시행('07. 1월 이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광해방지비	790	820	820	880	8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790 (790)	- (-)	- (-)	790 (790)	790 (790)	- (-)	- (-)
'11년	820 (820)	- (-)	- (-)	820 (820)	820 (820)	- (-)	- (-)
'12년	820 (820)	- (-)	- (-)	820 (820)	820 (82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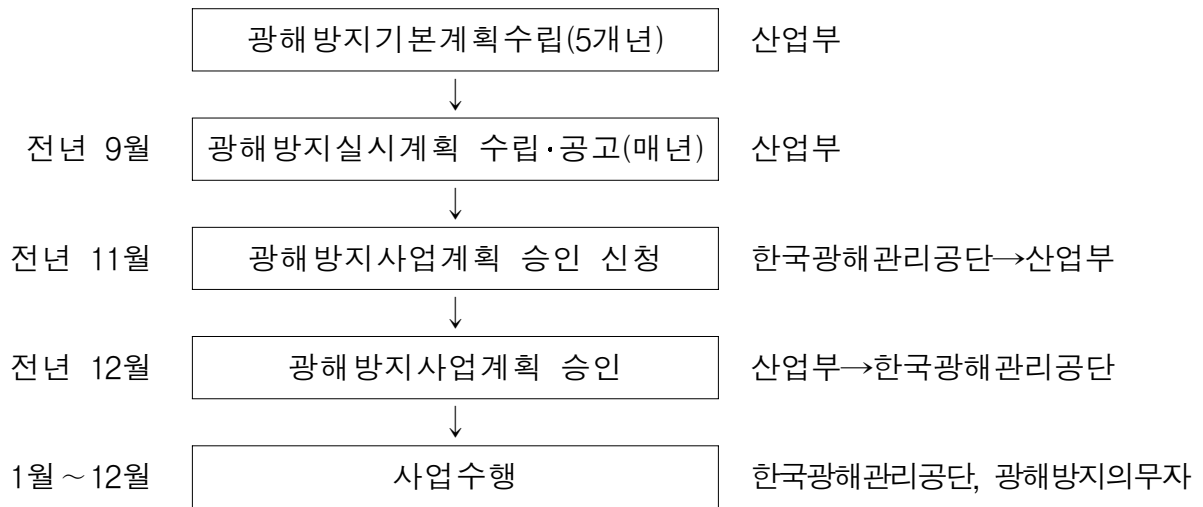
-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해복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인근 주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것
- 석면광산을 포함한 광해사업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 하천 중금속 오염 심각, 수질정화 등 광해 방지사업 조속한 시행 요구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적이고 2차 오염이 적은 상용화 기술 적용
 - 광물찌꺼기의 무해화 및 완전처리를 위하여 유가금속회수 후 갱내 충전방식 선택
 - 광산 오염수질개선은 박테리아 등을 이용한 자연정화시스템을 선택
 - 광산지역 위해성평가, 위험도 예측 모델링 등에 GIS 활용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2014년 예산 세부 산출내역 : 참고1
- 광해발생 현황 : 참고2
- 광해방지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참고3

참고1
2014년 광해방지비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광해 방지 사업	폐석유실방지사업	4,550	7개소 × 650.0백만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5,395	6개소 × 899.2백만원
	지반침하방지사업	3,818	34개소 × 112.3백만원
	오염수질개선사업	11,272	29개소 × 388.7백만원
	오염토양복원사업	28,631	99개소 × 289.2백만원
	소음·먼지날림방지사업	16,798	24개소 × 699.9백만원
	폐시설물철거사업	761	2개소 × 380.5백만원
	산림복구사업	2,151	18개소 × 119.5백만원
	사후관리운영	7,624	17개소 × 448.5백만원
	광해방지기술개발	1,000	
합 계		82,000	

참고2

광해발생 현황

- 광해실태조사(2010년, 한국광해관리공단) 결과, 전국의 총 개발광산 5,396개 (일반광산 4,996개, 석탄광산 400개) 중 2,871개 광산(휴·폐광산이 2,631개로 92% 점유)에서 광해 발생

(광해발생광산/개발광산, 단위 : 개)

구 분	일반광산			석탄광산	합계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소 계		
가행광산	26/56	208/531	234/587	6/6	240/593
휴지광산	7/21	36/101	43/122	0/0	43/122
폐 광 산	1,268/2,089	1,041/2,198	2,309/4,287	279/394	2,588/4,681
합 계	1,301/2,166	1,285/2,830	2,586/4,996	285/400	2,871/5,396

- 광해발생 휴·폐광 광산 2,631개 중 2,352개 일반광산의 4,380개소와 279개 폐석탄광의 625개소에서 광해 발생

구 분	광산수 (개)	광해 발생(개소)						
		수질 오염	산림· 폐석	폐시 설물	광미 유실	토양 오염	지반 침하	합계
휴·폐금속광	1,275	60	971	435	240	766	445	2,917
휴·폐비금속	1,077	6	962	354	-	67	74	1,463
폐석탄광	279	46	203	163	-	117	96	625
합 계	2,631	112	2,136	952	240	950	615	5,005

- 광해가 발생한 휴·폐광산 2,631개 광산 중 73%(1,922개소)가 충남, 강원, 충북, 경북 4개도에 집중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휴·폐금속광	88	191	193	338	73	67	204	121	810
휴·폐비금속	120	178	245	158	73	63	162	78	701
폐석탄광	1	117	29	58	2	23	49	-	205
합 계	209	486	467	554	148	153	415	199	1,716

참고3

광해방지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 2007년부터 광해방지사업 추진으로 1,759개소에 5,615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획	합계
소계	사업비 (개소수)	620 (183)	945 (295)	740 (219)	790 (256)	820 (266)	820 (270)	880 (270)	5,615 (1,759)
가행광산	사업비 (개소수)	189 (79)	230 (92)	40 (21)	134 (60)	194 (49)	169 (53)	285 (40)	1,241 (394)
폐금속광	사업비 (개소수)	229 (66)	424 (122)	345 (126)	427 (125)	348 (138)	279 (149)	258 (143)	2,310 (869)
폐 탄 광	사업비 (개소수)	202 (38)	291 (81)	255 (57)	165 (60)	164 (68)	199 (52)	190 (61)	1,466 (417)
폐석면광	사업비 (개소수)	- (-)	- (-)	100 (15)	64 (11)	114 (11)	168 (10)	135 (16)	581 (63)
폐비금속	사업비 (개소수)	- (-)	- (-)	- (-)	- (-)	- (-)	5 (6)	12 (10)	17 (16)

□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

○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14년 이후)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기본계획	예산안	증감		
소계	사업비 (개소수)	1,061 (152)	820 (236)	△241 (84)	1,098 (240)	1,061 (286)
가행광산	사업비 (개소수)	180 (71)	220 (37)	40 (△34)	181 (78)	186 (90)
폐금속광	사업비 (개소수)	421 (45)	299 (126)	△122 (81)	402 (102)	501 (122)
폐 탄 광	사업비 (개소수)	244 (30)	194 (44)	△50 (14)	256 (53)	151 (68)
폐석면광	사업비 (개소수)	216 (6)	104 (18)	△112 (12)	259 (7)	223 (6)
폐비금속	사업비 (개소수)	-	3 (11)	3 (11)	-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7,000	10,000	21,693	11,693	116.9

* 사업코드 : 19 - 24 - 4 - 110 - 115 - 5400 - 5437 - 304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사무관(남한규,
044-203-528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2~2015
총사업비	1,896억원(국비 948억원, 지방비 948억원)
사업규모	폐광지역 6개 시·군 지역별 경제회생 자립을 위한 9개 특화된 사업을 추진(태백시 1개, 삼척시 1개, 영월군 2개, 정선군 3개, 화순군 1개, 문경시 1개사업)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매칭 : 국비 50%)
사업시행주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2. 사업목적

- ☐ 석탄광산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그 간의 정부지원 효과를 제고시키고 경제자립형 자족도시로 육성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6개 시·군 9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21,693백만원

- 산출근거 : 6개 시·군 9개 사업에 대한 토목·건축공사, 기반조성공사, 부지매입비 반영(세부 산출내역 별첨)

* 지자체별 사업규모(수) : 강원도 7(태백 1, 삼척 1, 영월 2, 정선 3), 전남 1(화순 1), 경북 1(문경 1)

구 분	'13 예산	'14 예산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10,000백만원	21,693백만원
▪ 폐광지역 6개 시·군 9개사업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토목공사 등	토목·건축공사, 기반조성공사, 부지매입비 등

□ 지원 필요성

○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동법 1차 연장 적용시한('15년)까지 국비 확보를 통해 폐광지역을 경제자립형 도시로 육성

- 석탄산업의 정리로 인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

-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전환되어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고 재정지원(50%)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7,000	10,000	21,693	11,693	116.9
▪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	50	2,864	2,814	5,628
▪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1,060	1,370	2,768	1,398	102.0
▪ 당나귀와 봄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300	740	1,318	578	78.1
▪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	530	1,330	2,382	1,052	79.0
▪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400	1,190	2,078	888	74.6
▪ 신동묵은지 마을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280	400	1,497	1,097	274.2
▪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140	820	447	△373	△45.4
▪ 전통식품육성 산업단지 조성	350	1,200	2,691	1,491	124.2
▪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3,660	2,220	5,648	3,428	154.4
▪ 아라리마필마을 조성	280	680	-	△680	순감
☐ 비목(합계)	7,000	10,000	21,693	11,693	116.9
○ 지자체자본보조(330-03)	7,000	10,000	21,693	11,693	116.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육성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유도
 - 탄광지역의 고유 자원 활용 및 내생적 발전 유도를 통한 폐광지역 자생력 극대화 추진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00	폐광지역 3개시도 10개사업 실시설계,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등(200×50%)
'14	216	폐광지역 3개시도 9개사업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등(432×50%)
'15	50	폐광지역 3개시도 9개사업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등(100×50%)
'16		
'1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년까지 연장('05.3월)
- 해당 지자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발굴('10.7월~9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KDI 연구용역 수행, '11.4.20~9.2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개발	-	-	70	100	2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내역사업(보조사업자) 이월 금액 : 53억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12년	70 (70)	- (-)	- (-)	- (-)	70 (17)	- (5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 '13년 예산안 지경위 검토보고 :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체사업에 대한 B/C비율이 1.27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개별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실행 계획을 보완하여 경제성을 제고시키는 조정 필요
- '12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관련 정부부처(산림청, 문화재청 등)와 지자체 간 협조강화 및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필요
- '12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방안을 마련하고, 각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한 예산집행으로 교부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14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 : 예산 실집행을 부진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상황 및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외부기관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

* 관리과제 : 광산지역진흥,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경우, 폐광지역 재정지원을 40년 동안 실시

(5) 사업추진절차

○ 국고보조금 교부기준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교부 신청(해당
도지사) ⇒ 사업교부 결정(산업통상자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도지사) ⇒ 사업수행(해당 지자체)

- 교부기준 공고 근거 :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면 집행계획 공고에 사업비
교부신청 절차 등을 공고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2011.4.20~2011.9.20(5개월간)

* 7개 시·군 1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집단사업(Package Project)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편익/비용분석(B/C) : 1.27 (1.0 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 인정)

- 종합적정책분석(AHP) : 0.674 (0.5 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 인정)

6. 참고자료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 관련 근거 법령조문

참고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강원 태백,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산업 단지 조성사업>

'13년 예산(50백만원)	'14년 예산(2,86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0백만원×0.5(국비)=50백만원 ○ 금회 실시설계용역비 100백만원 (총 실시설계용역비: 757백만원) : 20,000백만원 X 3.783% = 75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728백만원×0.5(국비)=2,864백만원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3,25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보상비 $256,000\text{m}^2 \times 11,046\text{원}/\text{m}^2 = 2,828\text{백만원}$ - 지장물 보상비 토지보상비 X 15% = 424백만원 ○ 감리비 $27,133,844\text{천원} \times 4.05\% \times 1.1 = 1,210\text{백만원}$ ○ 도로개설(0.85km, B=20m) $0.85\text{km} \times 145\text{억원}/\text{km} \times 70\% \times 1.1 \times 50\% = 4,745\text{백만원}$ 중 1,266백만원

<강원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13년 예산(1,370백만원)	'14년 예산(2,7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740백만원×0.5(국비)=1,370백만원 ○ 부지매입비 : 27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26,834㎡×8,907원/㎡ = 239백만원 - 사유지 14,000㎡×2,912원/㎡ = 40백만원 ○ 금차 기반시설비 : 2,46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외 8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400㎡×170,090원/㎡ = 3,8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5,536백만원×0.5(국비)=2,768백만원 ○ 기반정비 공사 : 2,7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6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86,400㎡× 7,200원 ≒ 622백만원 - 구조물공 14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강토옹벽 425㎡×200,000원 ≒85백만원 법면보호공1,000m×60,000원 ≒ 60백만원 - 우수공 54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로 2,100m× 160,000원 ≒336백만원 측구 840m×117,000원 ≒ 100백만원 우수맨홀 27개소×1,000,000원 = 27백만원 우수처리시설 1식 = 80백만원 - 오수공 39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로 2100m×160,000원 ≒ 336백만원 오수맨홀 10개소×1,000,000원 =10백만원 오수처리시설 1식 = 50백만원 - 상수공 1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로 1,800m× 98,000원 ≒ 177백만원 변실 5개소× 1,000,000원 = 5백만원 - 포장공 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콘포장 100ax3,800,000원=380백만원 투수콘포장 80ax4,000,000원 =320백만원 - 금차 조경공 1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공 총 사업비 1,800백만원) ○ 건축공사 : 2,7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15동(5,2700㎡) 1식 = 2,492백만원 - 감리비 1식 = 27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공사 총 사업비 8,000백만원)

<강원 영월, 당나귀와 봄슬레이 체험마을 조성사업>

'13년 예산(740백만원)	'14년 예산(1,31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1,480백만원×0.5(국비)=740백만원 ○ 토목공사 1,1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 22,800㎡ × 50,000원/㎡ = 1,140백만원 ○ 금차 건축공사비 340백만원 (총 건축공사비 7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나귀 체험시설 : 885.2㎡×802천원/㎡ = 7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636백만원×0.5(국비)=1,318백만원 ○ 토공 : 69,680㎡×11천원 = 766백만원 ○ 주차장 : 7,640㎡×30천원 = 229백만원 ○ 상하수도 : 69,680㎡×10천원 = 696백만원 ○ 전기공사 : 69,680㎡×8천원 = 557백만원 ○ 건축공사 : 12,517백만원중 38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판매장 400㎡×1,449천원 = 579백만원 - 생산시설 800㎡×1,449천원 = 1,159백만원 - 산채먹거리촌 900㎡×1,449천원 = 1,304백만원 - 막걸리박물관 2,400㎡×1,449천원 = 3,477백만원 - 막걸리촌 2,800㎡×1,449천원 = 4,057백만원 - 생산및가공공장 740㎡×1,449천원 = 1,072백만원 - 로컬푸드센터 600㎡×1,449천원 = 869백만원

<강원 영월,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

'13년 예산(1,330백만원)	'14년 예산(2,3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660백만원×0.5(국비)=1,330백만원 ○ 오토캠핑장 2,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일원 (면적 : 2,000㎡) - 사업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공사 : 2,000㎡ × 200,000원(㎡) = 400백만원 ▫ 건축비 : 133.3㎡ × 3동 × 2,500,000원 = 1,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형 센터 및 관리소 : 1식(132㎡/2동) · 화장실 및 샤워장 : 1식(132㎡/1동) ▫ 각종 시설내역 : 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사이트 : 31면 · 족구장 : 1식 · 편의시설 : 급수대 2개소, 벤치등 10조 가로등, 잔디등 ○ 부지매입(산악레포츠) 2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일원 - 사업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공사 : 2,326㎡ × 86,000원(㎡) = 200백만원 ○ 금차 숙박시설 4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40평)형 미니콘도 건립 : 13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일원 - 사업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공사 : 2,740㎡×400,000원(㎡) = 1,09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4,764백만원×0.5(국비)=2,382백만원 ○ 토공 : 52,375㎡×11천원=576백만원 ○ 도로 및 주차장 : 65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9,200㎡×63천원=579백만원 - 주차장 2,470㎡×30천원=74백만원 ○ 상하수도 : 52,375㎡×10천원=523백만원 ○ 전기공사 : 52,375㎡ × 8천원=419백만원 ○ 건축공사 : 4,625백만원중 2,59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880㎡×1,449천원=1,275백만원 - 생산시설 500㎡×1,449천원=724백만원 - 동키힐링센터 600㎡×1,364천원=818백만원 - 수공예빌리지 400㎡×1,449천원= 579백만원 - 관리동 195㎡×1,449천원=282백만원 - 루지승차장 400㎡×1,827천원=730백만원 - 화장실 등 150㎡×1,449천원=217백만원

<강원 정선,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13년 예산(1,190백만원)	'14년 예산(2,07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380백만원×0.5(국비)=1,190백만원 ○ 금차 토목공사비 2,380백만원 (총 토목공사비 3,634백만원) - 총 부지조성 : 75,142㎡ . 상·하수도: 65,142㎡×12,000원/㎡ = 780백만원 . 도로공사: 75,142㎡×13,000원/㎡ = 976백만원 . 조경/전기: 75,142㎡×14,000원/㎡ = 1,052백만원 . 부대/토목: 75,142㎡×11,000원/㎡ = 82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4,156백만원×50%(국비)=2,078백만원 ○ 단지조성(토목)공사비 : 3,73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채재배단지 : 191,000㎡ × 10천원/㎡ = 1,910백만원 - 야생화원 : 45,050㎡×20천원/㎡=901백만원 - 철 쪽 원 : 10,300㎡×30천원/㎡=309백만원 - 디랭이화단 : 17,140㎡×70천원/㎡=1,200백만원 - 저 류 조 : 2,130㎡×150천원/㎡=320백만원 ○ 건축공사(4동) : 4,570백만원중 4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채관 등(4동)×1,142.5백만원=4,570백만원 ※ 전기, 설비 공사비 별도

<강원 정선, 신동묵은지 마을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13년 예산(400백만원)	'14년 예산(1,49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800백만원×0.5(국비)=400백만원 ○ 부지매입비 54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10㎡(사유지)×46,010원/㎡ = 548백만원 ○ 금차 도로 공사비 25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 34,154㎡×13,000원/㎡ = 4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994백만원×50%(국비)=1,497백만원 ○ 부지정지 4,000㎡×15천원/㎡=60백만원 ○ 건축공사 : 3,110백만원중 2,83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공시설 : 950㎡×1,800천원/㎡=1,710백만원 - 지하저장고 : 2,000㎡×700천원/㎡=1,400백만원 ※ 전기, 설비 공사비 별도 ○ 금차감리비 : 1식×100백만원=100백만원

<강원 정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13년 예산(820백만원)	'14년 예산(44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1,640백만원×0.5(국비)=820백만원 ○ 부지매입비 1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49㎡(사유지)×28,100원/㎡ ○ 토목공사비 75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부지조성 : 9,097㎡) - 상·하수도: 9,097㎡×12,000원/㎡ = 109백만원 - 도로공사: 9,097㎡×13,000원/㎡ = 118백만원 - 조경/전기: 9,097㎡×14,000원/㎡ = 127백만원 - 주차장: 3,000㎡×134,000원/㎡ = 402백만원 ○ 금회 건축공사비 75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냉장시설: 1,600㎡×1,500천원/㎡ = 2,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894백만원×0.5(국비)=447백만원 ○ 주차장 2,600㎡ × 30천원/㎡ = 78백만원 ○ 건축공사 2,785백만원중 77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터 : 3,000㎡×820천원/㎡=2,460백만원 - 전처리시설 : 500㎡×650천원/㎡=325백만원 ※ 전기, 설비 공사비 별도 ○ 금차감리비 : 1식×37백만원=37백만원

<전남 화순, 전통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

'13년 예산(1,200백만원)	'14년 예산(2,69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400백만원×0.5(국비)=1,200백만원 ○ 금회 부지매입비 : 2,1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104㎡×18,940원/㎡ ○ 금차 도로공사 2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공사 : 19,205㎡ × 62,818원/㎡ = 1,20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5,382백만원×0.5(국비)=2,691백만원 ○ 부지매입비 9,104㎡×18,940원/㎡= 172백만원 ○ 부지조성비 106,615㎡ × 28,970원/㎡ = 3,088백만원 ○ 도로공사 19,205㎡ × 62,818원/㎡ = 1,195백만원 ○ 상·하수도 33,898㎡ × 12,000원/㎡ = 407백만원 ○ 공원 및 녹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60㎡ × 203,120원/㎡ = 520백만원

<경북 문경, 신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년 예산(2,220백만원)	'14년 예산(5,64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4,440백만원×0.5(국비)=2,220백만원 ○ 토지보상금 1,698백만원 - 150,000원/㎡×11,320㎡(편입면적) = 1,698백만원 ○ 금회 공사비 2,610백만원 - 부지정지공사 28,000원/㎡×250,000㎡(작업장면적) =7,000백만원 - 부대공사 7,600원/㎡×240,000㎡(작업장면적) =1,824백만원 ○ 환경영향성조사 132백만원 - 300원/㎡×439,686㎡(작업장면적) = 13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11,296백만원×0.5(국비)=5,648백만원 ○ 금회 공사비 7,374 백만원 - 도로포장 및 구조물 40,000원/㎡×76,786㎡ =3,071백만원 - 단지조성 14,950원/㎡×287,749㎡(공장부지) =4,303백만원 ○ 산업단지 전기공사 1식 2,400백만원 - 가로등 169주, 신호등 11주 =2,400백만원 ○ 사후환경영향조사3차(공사시) 1식 444백만원 ○ 책임감리용역(2차) 1식 1,078백만원

<강원 정선,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

'13년 예산(680백만원)	'14년 예산(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360백만원×0.5(국비)=680백만원 ○ 부지매입비 905백만원 - 248,659㎡(사유지)×3,640원/㎡ = 905백만원 ○ 금회 부지조성비 455백만원 (총 부지조성 : 95,239㎡) - 도로공사: 95,239㎡×13,000원/㎡ = 1,23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취소

참고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사업명	총사업비	사 업 내 용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391 국 비 195.5, 지방비 195.5	○ 위 치 : 태백시 동점동 17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규모 : 286,700m ² ○ 유치업종 : 연구·지원·문화시설,제조업체(50개)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187 국 비 93.5 지방비 93.5	○ 위 치 : 도계읍 심포리 11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내용 : 유리공예센터, 유리 조형연구소, 유리 박물관, 유리창작체험스튜디오, 유리 갤러리, 유리공방 등
당나귀와 뽕슬레이 체험마을 조성사업	142 국 비 71 지방비 71	○ 위 치 : 영월 남면 북쌍리 임4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 사업내용 : 폐도로를 활용한 여가·레저·편의시설 등
상동온천 및 산악 레포츠 개발사업	257 국 비 128.5 지방비 128.5	○ 위 치 : 영월 상동읍 내덕리 산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 사업내용 : 온천시설, 임도(운탄도로)를 활용한 MTB 레포츠 등
산채·라벤더 재배단지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232 국 비 116, 지방비 116	○ 위 치 : 정선 고한읍 고한리 산216-36번지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내용 : A=291,029m ²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라벤더 허브 공원조성, 가공공장(2동), 건조시설, 체험장(5동) 전시관 및 판매시설 등
신동 묵은지 마을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81 국 비 40.5, 지방비 40.5	○ 위 치 : 정선 신동읍 예미리 79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 사업내용 : A=47,943m ² 시범사업장, 저장고(숙성토굴형), 콩발효 시범사업장, 묵은지체험장가공공장(2동) 식당 매점 등

사업명	총사업비	개 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49 국 비 24.5 지방비 24.5	○ 위 치 : 정선 신동읍 예미리 858번지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3년 ○ 사업내용 : A=9,702m ² 물류센터, 냉동·냉장시설, 부대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
전통식품 산업단지 조성	157 국 비 78.5 지방비 78.5	○ 위 치 : 화순군 능지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4년 ○ 사업내용 : A=132,000m ² 산업단지 기반조성, 연구시설, 유통 회사, 식품제조, 가공공장 등
신기 제 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400 국 비 200 지방비 200	○ 위 치 : 문경시 신기동 74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내용 : 공단조성 A=439,686m ² ○ 사 업 비 : 400(국비 200, 지방비 200)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 (사업취소)	574 국 비 187 지방비 187 민 자 200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159(육백산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한방체험장, 건강레저시설, 4계절 허브 화훼단지 조성 등
폐광지역 별빛마을 조성 (사업취소)	187 국 비 93.5 지방비 93.5	○ 위 치 : 보령 성주면 성주리 산3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내용 : 별빛마을 조성 (숙박시설 편의시설 판매 및 지원시설 등)
아라리 마팔마을조성 (사업취소)	134 국 비 67 지방비 67	○ 위 치 : 정선 신동읍 방제리 43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사업내용 : A=298,659m ² , 체험승마장 조성, 마팔구입, 친환경 마사 설치, 외승 코스조성, 마육산업 유치(민간) 등

참고

관련 근거 법령조문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000	2,000	2,000	-	-

* 사업코드 : 21 - 24 - 5 - 110 - 115 - 5400 - 5438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주무관
(임하영, 044-203-528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96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1,811억원)
사업규모	201개 업체
지원조건	○ 융자 -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 이내, 변동금리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전년도 매출액의 1/4 이내, 변동금리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관리공단

2. 사업목적

☐ 폐광지역 경제 진흥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내 대체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비 2,000백만원
 - 산출근거 : 400백만원(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 × 5개 업체

구 분	'13예산	'14예산
	2,000백만원	2,000백만원
□ 대체산업 창업지원	5~6개 업체 융자 지원 -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 (400백만원) * 5개 업체	5~6개 업체 융자 지원 -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 (400백만원) * 5개 업체

□ 지원 필요성

- 석탄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았던 폐광지역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및 삶의 질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 타 정책자금 대비 저리, 장기 회수기간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폐광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입주 업체들의 경영 개선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000	2,000	2,000	-	-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4,000	2,000 400백만원(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5개 업체	2,000 400백만원(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5개 업체	-	-
□ 비목(합계)	4,000	2,000	2,000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4,000	2,000	2,0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 장기 저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고, 설비확충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의 선순환 유도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폐광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증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0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400백만원) * 5개 업체
'14	20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400백만원) * 5개 업체
'15	29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400백만원) * 7.3개 업체
'16	26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400백만원) * 6.5개 업체
'17	22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액(400백만원) * 5.5개 업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3호)

○ 추진경위

- 최초 시작연도 : 1996년

-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지역의 공동화현상 및 경기침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95.12.29)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371호, '96.8.16)
- 1996년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사업 개시
- 1998년부터 직접대출방식에서 대리대출방식으로 전환(전액 대리대출 : '99~ 현재)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73호, '12.11.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대체 산업 창업 지원(융자)	47.5	43	40	20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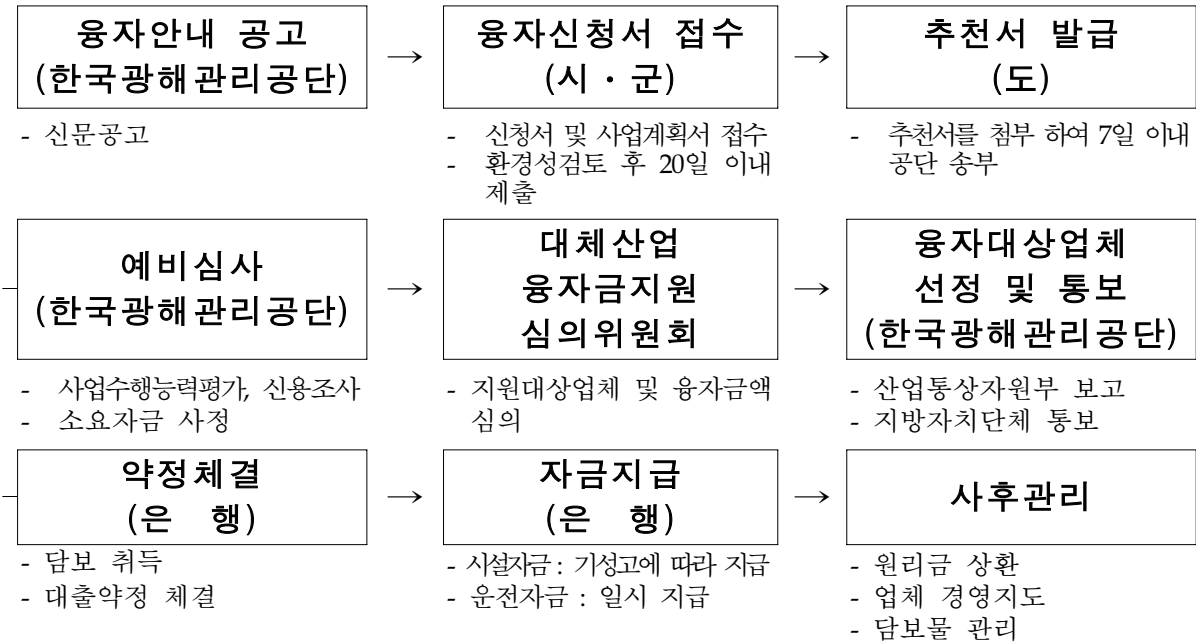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7.5 ()	()	()	47.5 ()	47.5 ()	()	()
'11년	43 ()	()	()	43 ()	43 ()	()	()
'12년	40 ()	()	()	40 ()	40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 근거 법령조문 : 참고

참고

관련근거 법령 조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 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대체산업의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이 탄광이직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 21 조(대체산업육성계획등의 수립)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기타 대체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대한석탄공사출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53,000	-	-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39 - 302

* 담 당 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석탄산업과장(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윤한성, 044-203-52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2,120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자
사업시행주체	대한석탄공사

2. 사업목적

- 과다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석탄공사에 출자지원함으로써 부채 증가를 완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중장기 정부 재정부담 완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순차입금 1,413,057백만원에 대한 이자 53,000백만원

* (2013년) 1,335,056백만원 × 3.97% = 53,000백만원

- 1,413,057백만원×3.77*% = 53,000백만원

* 금리 3.77= 3.4(국채수익률,국회예산정책처) + 0.37(스프레드 최근 4년치 평균)

- '13년말 순차입 = 1,281,400×(1+0.067) = 1,367,254백만원

- '14년말 순차입 = $1,367,254 \times (1+0.067) = 1,458,860$ 백만원
- '14년 평균 순차입 : 1,413,057백만원 $<(1,367,254+1,458,860) \div 2>$

< 연도별 채무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이자를 수반하는 부채	1,250,000	1,360,000	1,370,000	4.7%
이자를 발생하는 예금	125,300	104,300	88,600	△15.9%
순 차입금	1,124,700	1,255,700	1,281,400	6.7%

○ 국고채 수익률

- 2012 ~ 2017년 국내 경제전망 (국회 예산정책처 발행)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고채 수익률*	3.5	3.3	3.4	3.5	3.2	3.3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12. 10. 29) 자료 인용

○ 금리 스프레드

- 국고채 평균금리와 특수채 최상급의 스프레드 4년간 평균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5월	평균
국채	3.71	3.62	3.13	2.63	3.27
특수채	4.27	4.03	3.46	2.81	3.64
<u>스프레드</u>	0.56	0.41	0.33	0.18	<u>0.37</u>

□ 지원 필요성

- 석탄산업의 유지·보호를 위해 석탄공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및 서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석탄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 등으로 석탄공사의 차입금 증가
 - 출자지원을 통해 석탄공사의 신용등급을 유지시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공사의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53,000	53,000	-	-
▪ 대한석탄공사 출자 (산출근거)	53,000	53,000 (1,335,056백만원 ×3.97%)	53,000 (1,413,057백만원 ×3.77%)	-	-
☐ 출자금(합계)	53,000	53,000	53,000	-	-
○ 출자금(460-01)	53,000	53,000	53,0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출자를 통해 누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전하여 석탄원가의 증가를 억제하고 수급의 안정화 및 합리화를 실현
-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차입금의 증가 억제 및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관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530	○ 1,335,056백만×3.97%
'14	530	○ 1,413,057백만×3.77%
'15	530	○ 1,413,057백만×3.77%
'16	530	○ 1,413,057백만×3.77%
'17	530	○ 1,413,057백만×3.7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 석탄산업법 제27조
-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 ②호

○ 추진경위

- 석탄공사는 '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에 의한 구조조정 및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무연탄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원가 일부를 지원했으나 원가보전 부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하면서 차입금 및 이자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재무구조 악순환 상태
* '12년말 누적결손 △9,559억원, 차입금 13,700억원, 순자본 △7,969억원
- '98년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계획('98~'01년)”에 의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경영 정상화는 미흡
- 석탄공사는 '01.7월 수립한 석탄산업 장기계획('01~'05년)에 의거, '01년부터 '05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추가 구조조정 추진 하였으나, 경영악화는 지속
※ '02년 인력감축 351명(△13%), 생산량 감축 133천톤(△10%)
- 이에 '01년부터 금융비용에 의한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석탄공사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대체로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작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08년, '11년 부실규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재추진

구 분	'08년	'11년	계
인력감축(명)	384	301	685
생산량감축(천톤)	60	57	11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대한석탄공사 출자	530	530	530	530	5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530 (530)	()	()	530 (530)	530 (530)	()	()
'11년	530 (530)	()	()	530 (530)	530 (530)	()	()
'12년	530 (530)	()	()	530 (530)	530 (53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4년 예산안 산업위 검토보고서 ('13.11)

- 석탄공사의 경영부실을 초래한 원인의 상당부분이 정부정책(석탄 산업합리화정책)에 기인하며, 대규모 정부지원 없이는 석탄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60.0)*

* 관리과제 : 대한석탄공사지원, 평가시기 : '13. 5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 법령조문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 석탄산업법

-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 대한석탄공사법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재량, 종료)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7,535	37,535	-	△37,535	순감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400 - 5441 - 301

* 담 당 자: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가스산업과장(이용환 044-203-5230), 주무관(황동진 044-203-52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9 ~ 2013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주배관 1,050km 건설
지원조건	민간보조(이차보전)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스공사

2. 사업목적

□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의 특성상 경제성이 없는 인구저밀도 지역이나 주배관망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움(민간 투자 위축)

-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주배관 및 공급설비 건설 지원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과 지역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 완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 형평성 제고 및 공급 소외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 추진

3. '13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을 위한 투자비 7,100억원 조달
(회사채 발행)에 따른 연간 발생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535백만원
 - * 주배관망 건설투자비는 가스공사에서(회사채 발행) 조달하고, 정부에서는 회사채 이자비용만을 지원하여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한 사업임
 - 투자비와 지급이자율(고정금리)이 고정된 사업으로, '11년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 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투자비	이자율	산정기간	이자비용
'09년	1월	2,856	5.10	12개월	146
	2월	1,224	5.39	12개월	66
	3월	16,082	5.28	12개월	850
	4월	21,680	5.40	12개월	1,171
	5월	8,359	5.33	12개월	446
	6월	191,876	5.39	12개월	10,343
	7월	12,436	6.05	12개월	753
	8월	16,767	5.62	12개월	943
	9월	13,667	5.62	12개월	769
	10월	14,738	5.66	12개월	835
	11월	26,037	5.65	12개월	1,472
	12월	16,703	5.38	12개월	899
	소계	342,425			18,693
'10년	1월	36,278	5.49	12개월	1,993
	2월	32,439	5.43	12개월	1,761
	3월	32,228	4.89	12개월	1,576
	4월	39,226	4.97	12개월	1,950
	5월	53,221	5.10	12개월	2,714
	6월	160,457	5.08	12개월	8,151
	7월	13,726	5.08	12개월	697
	소계	367,575			18,842
총 계		710,000			37,535

구 분	'12예산	'13예산
□ 도시가스주배관 망건설지원		
▪ 도시가스주배관 망건설지원	37,535백만원 투자비7,100억원 * 5.32%(평균)	37,535백만원 투자비7,100억원 * 5.32%(평균)

□ 지원 필요성

-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경우 민·관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낙후지역 및 인구저밀도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배관망에 대한 이차보전과 용자사업 등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청정연료이자 타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또한, 동사업은 7,100억원('10.7월기준)이 전액 투자되어, '11년부터는 회사채 차입이자(고정금리)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이 사업 마지막해임을 고려하여 '12년 수준으로 반영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7,535	37,535	-	△37,535	순감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37,535	37,535	-	△37,535	순감
□ 세출예산비목(합계)	37,535	37,535	-	△37,535	순감
○ 이차보전금(320-05)	37,535	37,535	-	△37,535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에너지원간 가격 차이 확대에 따라 저렴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전국적인 주배관망과 공급설비 건설 확대 추진

- 산간지역으로 가스공급이 어려운 영동·강원권에 건설 중인 삼척 생산기지 준공시기와 연계한 공급설비 건설로 강원, 경북권에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75	7,100억원 x 5.32% * 회사채 평균발행이자율
'14	-	-
'15	-	-
'16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4호)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2항
 -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08.12, 지식경제부)
- 추진경위
 - 천연가스 보급확대 공급망 건설기본계획 확정 : '08. 12. 18
 - 정부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 '08. 12. 30
 - 17개 공사구간 계약 완료 : '09. 6
 - 배관건설공사 착공 : '09. 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	31,100	30,000	39,000	37,5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 ('09년) 대규모 건설공사(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20개 공구)로서 배관 노선 설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 등의 투명한 건설 공사 추진 절차 이행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협의를, 민원 해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착공 시기 지연으로 투자액 감소 및 투자시기 지연

* '09.4월 입찰공고, 6월 공사계약 체결, 7~8월 하도급 업체 선정, 8월 공사착수

* '09년 예상 투자비 7,100억원 → '09년 실소요 투자비 3,424억원

- ('10년) '09년 착공지연으로 다소 늦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 '10년 연초 조기착공과 함께 상반기 공사 독려 등으로, 투자비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도시가스주배관건설사업의 연중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전용집행

- 건설인원 증원, 본부인력의 현장재배치, 주말 작업, 공사관련 인허가 간소화, 지자체 협조요청 등을 통해 배관건설 독려

* 투자비의 경우 기성고 지급방식(건설실적에 비례 공사비 지급)이 적용

- ('11년) 편성(5.5%) 당시에 비해 회사채 발행금리(약 5.32%)가 인하하여 실제이자금액만 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9년	311 (311)	()	()	311 (311)	95.7 (95.7)	- ()	215.3 (215.3)
'10년	300 (300)	()	19.9 (19.9)	319.9 (319.9)	319.9 (319.9)	()	- ()
'11년	390 (390)	()	()	390 (390)	375.35 (375.35)	()	14.65 (14.6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09년 지경위·예결위 결산보고서) '13년까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40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보급하여 실질적인 에너지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배관망 건설 적기집행을 유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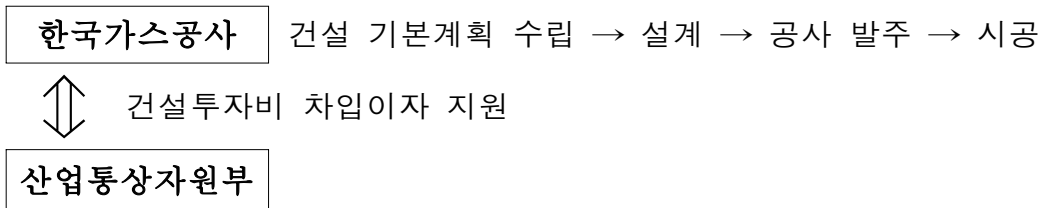
→ 건설인원 증원 및 주말작업 등을 통하여 현재 전구간 공사 정상 진행중

* '10년 상반기 공사의 조기착공과 계획대비 초과 건설로 예산(투자비 이자) 전액 집행

* 투자비의 경우 기성고 지급방식(건설실적에 비례 공사비 지급) 적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세무 산출내역
- 관련근거 법령조문

참고

세부 산출내역

'12년 예산(37,535백만원)	'13년 예산(37,535백만원)
○ 회사채 차입이자(37,535백만원) - 건설투자비 710,000백만원 차입에 따른 회사채발행이자(고정금리) 지원 * 아래 표 참조	○ 회사채 차입이자(37,535백만원) - 건설투자비 710,000백만원 차입에 따른 회사채발행이자(고정금리) 지원 * 아래 표 참조

-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사업 37,535백만원
- 주배관망 건설투자비와 지급이자율(고정금리)이 고정되어 4년간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13년이 사업 마지막 해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투자비	이자율	산정기간	이자비용
‘09년	1월	2,856	5.10	12개월	146
	2월	1,224	5.39	12개월	66
	3월	16,082	5.28	12개월	850
	4월	21,680	5.40	12개월	1,171
	5월	8,359	5.33	12개월	446
	6월	191,876	5.39	12개월	10,343
	7월	12,436	6.05	12개월	753
	8월	16,767	5.62	12개월	943
	9월	13,667	5.62	12개월	769
	10월	14,738	5.66	12개월	835
	11월	26,037	5.65	12개월	1,472
	12월	16,703	5.38	12개월	899
	소계	342,425			18,693
‘10년	1월	36,278	5.49	12개월	1,993
	2월	32,439	5.43	12개월	1,761
	3월	32,228	4.89	12개월	1,576
	4월	39,226	4.97	12개월	1,950
	5월	53,221	5.10	12개월	2,714
	6월	160,457	5.08	12개월	8,151
	7월	13,726	5.08	12개월	697
	소계	367,575			18,842
총 계		710,000			37,53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3조(사업의범위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제4조(융자조건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

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2항
 -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08.12, 지식경제부)

LPG소형저장탱크보급(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4,290	6,990	2,700	62.9

* 사업코드 : 21-24-4-110-115-5400-5443-304

* 국정과제 :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정승일), 가스산업과장(이용환, 044-203-5230), 사무관(황호준, 044-203-52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17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사회복지시설 : 1,800개소 [연간 360개소, 5년] · 농어촌 마을 : 18개소 [9개 도(道)별 2개소 시범사업]
지원조건	· 복지시설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8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농어촌마을 : 지자체(자본)보조 (보조율 5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한국LPG산업협회

2.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 공급·소외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지원을 통해 농어촌 서민과 사회복지시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

○ LPG 배관망 시설, 저장탱크 공급 통해 도시가스에 준하는 경제성과 편리성 제고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4,06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 360개소,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 * LPG소형저장탱크 세트,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정부 : 복지시설 = 8 : 2)
- 산출근거 : 360개소× 1,412만원(1EA 탱크설치비)× 80%(민간보조)= 4,065백만원

[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대상 시설 및 지원 규모

	구 분	사회복지시설수	지원대상시설	2013년 지원 내용	
				개선규모	수혜인원
1	노인복지시설	4,249	1,546	290	10,150
2	장애인복지시설	452	172	50	3,150
3	아동복지시설	280	104	20	1,220
	소 계	4,981	1,822	360	14,520

주)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0년 조사, 통계청 '10년 인구주택총조사

○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 지원 : 2,700백만원

- 30가구 이상 마을 단위 18개 지역에 LPG 저장탱크·배관망 인프라 구축
- * 마을단위 배관망, LPG소형저장탱크 세트 등 설치비 지원 (정부:지자체:사용자=5:4:1)
- * 9개 광역도별(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2개 마을단위 시범사업
→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광역시는 추후 예산확보시 지원
- 산출근거 : 18개 마을× 3억(LPG탱크·배관망비)× 50%(지자체보조)= 2,700백 만 원

○ 사업운영비 지원 : 225백만원

- 사업주관(수행)기관(한국LPG산업협회) 사업 운영비 지원
- * 실태조사·평가, 지자체 설명회, 계약관리 등
- 산출근거 : 인건비, 홍보(광고 등), DB·사업관리 운영비= 225백만원

- DB·계약관리 : 1명× 3백만원 × 12월= 36백만원
- 실태조사·사후관리·검수 : 2명 × 3백만원× 12월 = 72백만원
- 사업설명회·간담회 등 : 1.5백만원 × 7개(권역) × 2회 = 21백만원
- 운영위·실무위 운영 : 2백만원 × 9회 = 18백만원
- 전산시스템 관리 : 1.5백만원 × 12월 = 18백만원
- 광고·홍보 : 2백만원 × 15회 = 30백만원
- 기타 사업관리 :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 부담 완화

- (현 황)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보다 비싼 연료(LPG, 등유 등) 사용 → 도농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 심화

* 도시가스 보급률 : (서울) 92%, (대전) 91% vs (전남) 33%, 충남(45%)

- 특히, 서민 연료인 LPG는 도입원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약 2배 높아 농어촌 서민에게 큰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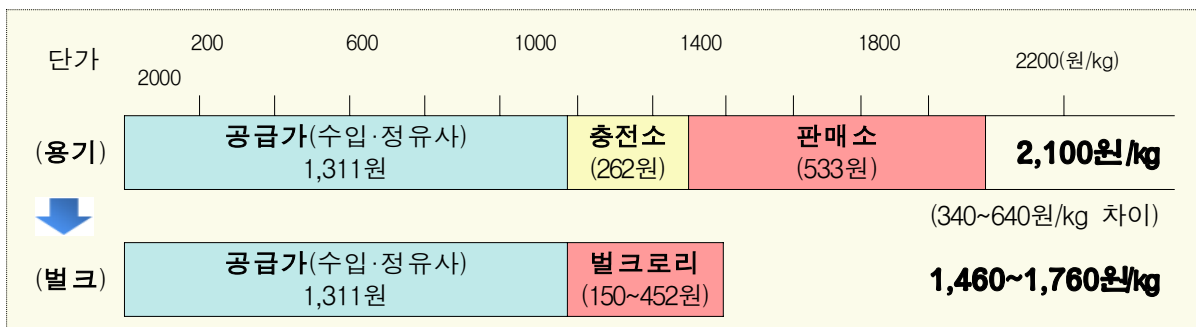
* 유효열량(천 kcal) 당 가격지수(도시가스 = 100) : LPG 2028, 등유 1925 (예경연, '11.12월)

- (기대효과)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LPG 공급가격을 낮춤 (15~30%)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 (충전소-판매소) →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 (벌크 공급)

- 또한, 향후 도시가스가 농어촌 지역에 보급될 경우 동 사업 배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관 투자비 절감 가능

<용기공급 vs 벌크공급 소비자 공급가격 비교>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한국LPG산업협회 조사자료 ('12. 12월말 기준)

나. 농어촌 서민의 LPG 안전강화 및 사용 편의성 제고

- (현 황) LPG 고무호스 연결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LPG 용기 수시교체, 배달지연 등에 따른 불편 감수

- (기대효과) LPG 벌크차량을 통해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 배송이 가능(도시가스에 준하는 끊임없는 가스 공급)

- 또한, LPG 용기 시설 대비 사고예방 및 안전성이 제고(5배)*되며, 사용자 주거환경 미관개선

<저장형태별 사고 발생빈도>

저장형태	연간 충전(교환)횟수	사고 발생빈도
▪ 50kg용기 5본 집합시설 (총 용량 250kg)	365	0.365
▪ 250kg 소형저장탱크 1기 (총 용량 250kg)	73	0.073

* 「소형저장탱크 보급활성화방안 연구용역」('06.12, 가스안전공사)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조감도>

가. LPG 배관망 조감도



나. 개선사업 전·후 비교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4,290	6,990	2,700	62.9
▪ 사회복지시설 지원	-	4,290	4,290	-	-
▪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	-	2,700	2,700	순증
☐ 비목(합계)		4,290	6,990	2,700	62.9
○ 민간경상보조(320-01)		225	225	-	-
○ 민간자본보조(320-07)		4,065	4,065	-	-
○ 자치단체보조(330-03)		-	2,700	2,7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13~'17년까지(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서민거주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을 설치 지원

* 농어촌 마을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을 통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가스수준의 연료공급 시스템 설치 지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LPG-LNG 균형발전 통한 1차 국가 에너지원 적정Mix 정책 유지 필요

* 연구용역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예경연, '12.12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42.9	○ 사회복지시설 4,065백만원 <360개소×1,412(탱크설치비)×80%보조> ○ 운영비용 225백만원 <인건비, 홍보, 사업관리 등>
'14	69.9	○ 사회복지시설 4,065백만원 <360개소×1,412(탱크설치비)×80%보조> ○ 농어촌 마을단위 2,700백만원 <18개 마을소×300(탱크설치비LPG탱크·배관망비)×50%보조> ○ 운영비용 225백만원 <인건비, 홍보, 사업관리 등>
'15	56.4	○ 사회복지시설 4,065백만원 <360개소×1,412(탱크설치비)×80%보조> ○ 농어촌 마을단위 1,350백만원 <9개 마을소×3,000(탱크설치비LPG탱크·배관망비)×50%보조> ○ 운영비용 225백만원 <인건비, 홍보, 사업관리 등>
'16	56.4	<상동>
'17	56.4	<상동>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 *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 실시(에경연, '12.12월)
 - * LPG-LNG 균형발전을 통한 에너지다원화 정책 시현
- (정부 사업) '13년 1차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경과
 - (수요조사) 17개 시·도별 시설개선 대상자 추천 ('13.2~)
 - (사업 규정·운영위) '13년도 사업운영 제규정·운영위 구성 ('13.4.3)
 - * 사업운영위 : LPG단체, 안전공사,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8인
 - (사업 공고) '13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공고 ('13.4.4)
 - (시공사 선정) 7개 권역별 시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13.5.22)
 - (사업실시) LPG 공급시설 개선 및 가스 공급 ('13. 6~10월)
- (민간 시범사업) LPG 업계에서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을 통해 농어촌 1개 마을 LPG 배관망 공급 시범사업** 실시('13.5~10월)
 - * LPG 업계(수입사E1, SK가스)에서 '12년도에 100억원 기금 조성·운영 중(바우처, 장학금 등 지원)
 - ** ①대상 : 70여가구 농촌마을, ②사업규모 : 5억, ③지원내용 : LPG배관망·저장탱크 등
- (연구 용역)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건설 타당성 용역」 추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13.4~9월>
 - * 도시가스 경제성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난방·취사 연료공급 방법에 대한 대안검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	-	-	42.9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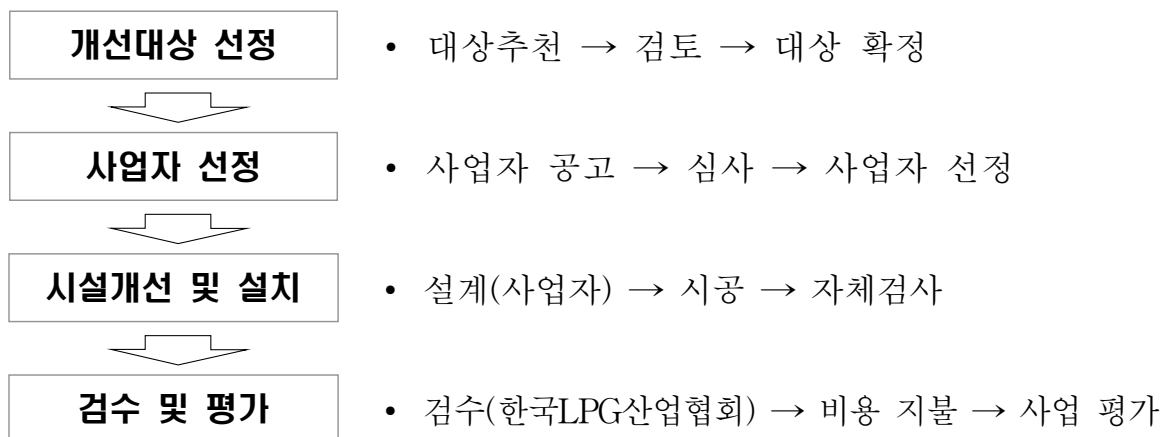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10~'12년)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영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소형저장탱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공급으로 보급이 활성화됨
 - 일본의 경우 가스의 53%를 LP가스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저장 탱크는 16만개 이상 설치·보급 중(2006년)
 - 도시가스 공급율은 일본의 경우 47%, 영국은 90% 수준
 - 영국은 LP가스 공급물량의 약60%를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저장 탱크는 8만개 이상 설치·보급 중(2006년)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세부 산출내역
-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조감도(사회복지시설)
-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범사업 사례

'13년 예산(4,290백만원)	'14년 예산(6,99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4,065백만원 360개소*1,412만원(1EA탱크설치비)*80%(민간보조)	○ 사회복지시설 지원 4,065백만원 360개소*1,412만원(1EA탱크설치비)*80%(민간보조)
○ 사업운영비 225백만원 인건비, 홍보(광고 등), DB·사업관리 운영비	○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2,700백만원 18개마을*3억원(배관망, 탱크)*50%(지자체보조)
	○ 사업운영비 225백만원 인건비, 홍보(광고 등), DB·사업관리 운영비

□ 지원 대상시설 현황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중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5년간 사회복지시설 1,800여 개소
- 대부분 취사·난방용 연료를 프로판 용기 또는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으며, 그 영세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시설전환이 사실상 불가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대상 시설 및 지원 규모]

구 분	사회복지시설수 ^(주1)	지원대상시설 ^(주2)	2014년 지원 내용	
			개선규모	수혜인원 ^(주3)
노인복지시설	4,249	1,546	290	10,150
장애인복지시설	452	172	50	3,150
아동복지시설	280	104	20	1,220
소 계	4,981	1,822	360	14,520

주)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0년 조사자료

☞ 지원대상시설 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14.1월중)를 통해 확정

(주1) 사회복지시설(의식주 제공) 4,981개소(전체 노인·장애인·아동시설 중 6.9%)

⇒ 전국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72,117개소 중 수혜자가 해당 시설에 거주하며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시설 (아래 참조)만 지원하며, 기타 비거주시설이나 방문서비스시설 등은 제외

① 노인복지법 제32조상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의료 시설”(양로/요양시설 및 전문병원)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생활 시설”(지체,시각장애 등)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양육시설(고아원) 등”

(주2) 지원대상시설 1,822개소

⇒ 전국 4,981개 사회복지시설 소재지(광역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반영 산출

* 대상 : 보일러등유 또는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시설 또는 신규 시설

(주3) 지원규모 360개소의 경우 약 14,520명 사회적 약자 지원

⇒ 개선 규모*(복지시설 수/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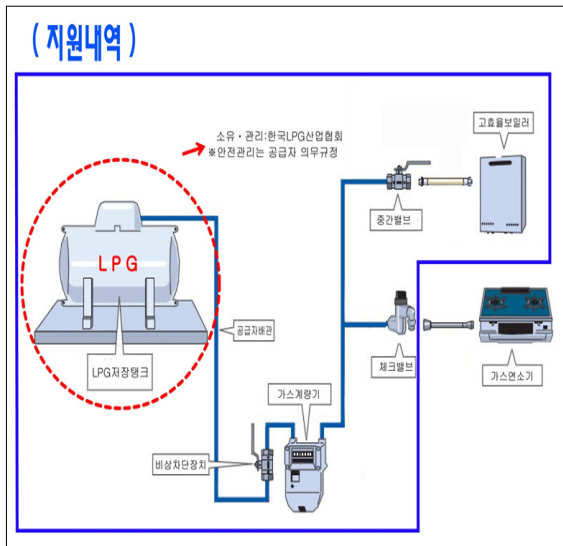
* 평균수용인원 : 노인(35명)·장애인(63명)·아동(61명)

참고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조감도(사회복지시설)

① 소형 LPG저장탱크 활용 이해도

가. LPG 배관망 조감도



나. 개선사업 전·후 비교도



② 설치 조감도



③ LPG공급설비 규모별 개요

○ 용 량 : 500kg 이하, 1.0톤, 2.0톤, 2.9톤등 총 4종류

	
500kg 이하	1.0톤
	
2.0톤	2.9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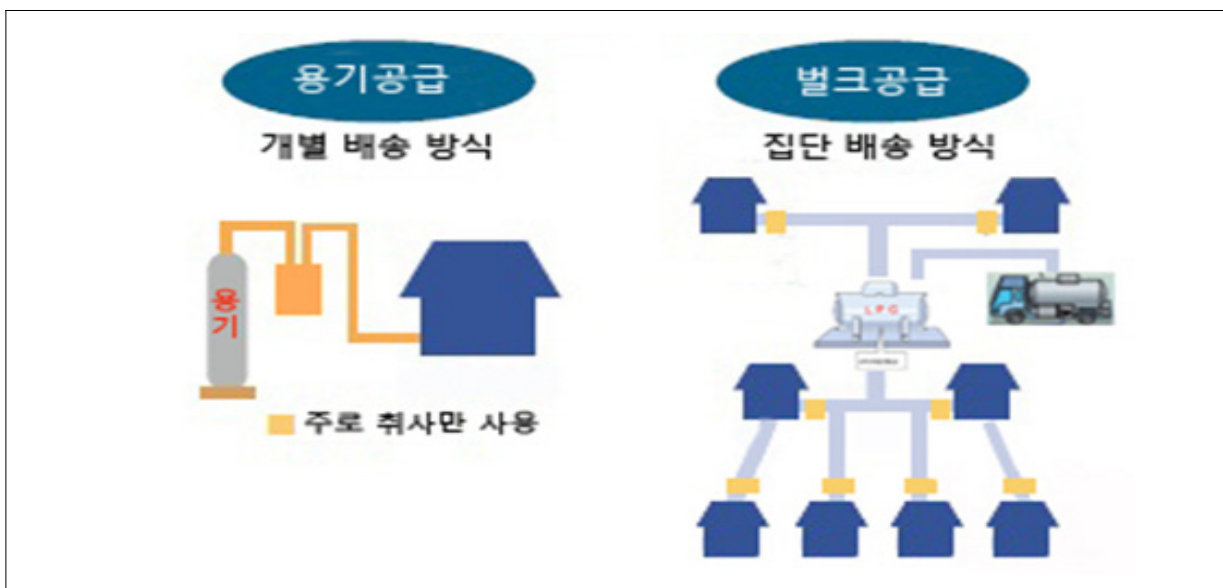
④ 주요설비 내역

명 칭	사 진	기 능
소형LPG저장탱크		0.2톤-2.9톤까지 시설개선 대상의 적정 사용량에 맞춰 공급
방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저장탱크가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
경계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경우 높이 1m이상의 경계책을 만들고 출입구 설치
기화기/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화장치 : 기온·사용량에 따라 프로판이 적절히 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 조정기 : 가스출구부의 압력을 조정
LPG벌크로리 참고사진	  	

□ 개선 사례

- 대상 : 충청북도 천안시 서북면 삼곡리 마을 69세대
- 예산 : 5억원
- 공사기간 : '13.10월 ~ '13.12월(3개월)
- 시행 : 한국LPG산업협회
- 내용 : LPG소형저장탱크(2.9톤 1기)/가스 배관망 구축

<개념도>



* 취사/난방 LPG 일원화로 편의 증가

□ 시범사업 연료비 절감 효과분석

○ 가구당 연료비용 연 약 34% 절감 예상

(단위 : 원)

구분	개선전			개선후			절감효과	비율
	연료	사용량	연료비	연료	사용량	연료비		
취사용	LPG(용기)	15kg	31,425	LPG(탱크)	15kg	19,410	- 12,015	-38%
난방용	등유	55ℓ	74,195		38.7kg	50,078	- 24,117	-33%
합계			105,620			69,488	- 36,132	-34%

<산출 근거>

* 3인가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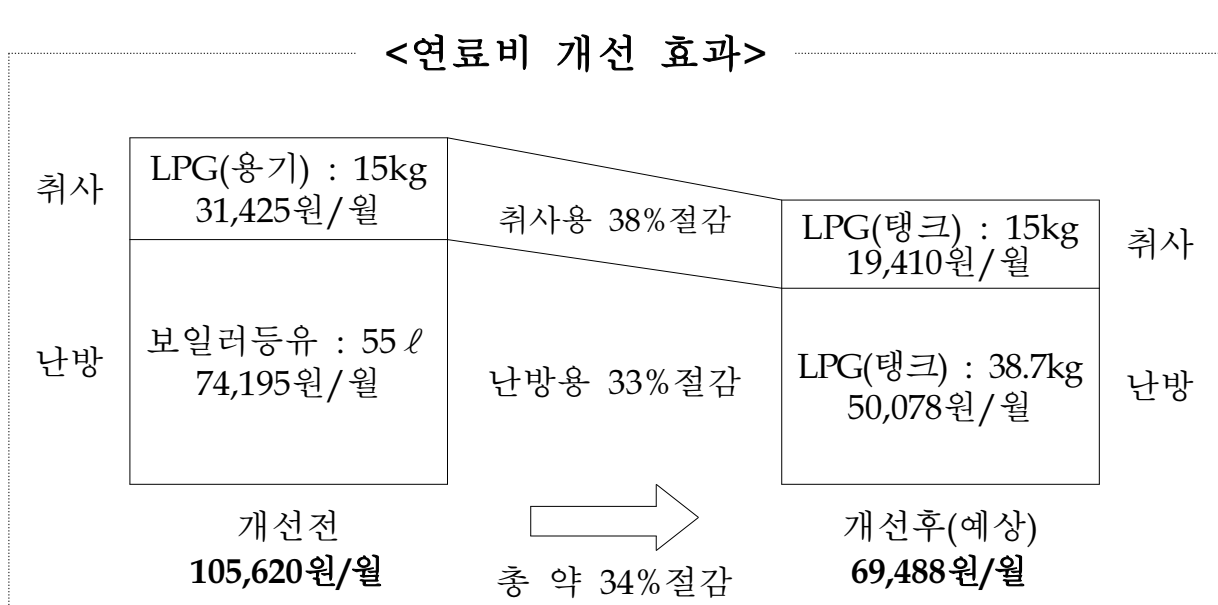
** LPG(용기) : 전국평균 2,095원/kg

보일러등유 : 전국평균 1,349원/ℓ

LPG(탱크) : 1,294원/kg

*** 난방용 보일러 등유 55ℓ의 유효열량(총 394,680kcal) / LPG(프로판:10,200kcal/ℓ) 유효열량 환산

<연료비 개선 효과>



□ 시범사업 사례 조감도(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 시범사업 전후 비교



<기존 LPG용기 사용환경>

<LPG 배관망 설비 후 사용환경>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에특회계>	622,914	440,759	364,960	△ 75,799	△ 17.2
○ 에너지진단보조(계속)	2,268	2,671	2,220	△ 451	△ 16.9
○ 지역에너지절약(계속)	35,308	35,409	21,690	△ 13,719	△ 38.7
○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계속)	15,602	15,254	13,759	△ 1,495	△ 9.8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계속)	3,360	6,750	15,203	8,453	125.2
○ 녹색생활 프로그램 활성화(계속)	3,595	1,053	1,153	100	9.5
○ 기후변화협약대응(계속)	11,012	10,850	11,054	204	1.9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지원(계속)	2,750	3,449	2,750	△ 699	△ 20.3
○ 에너지관리공단지원(계속)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에너지절약시설설치(계속)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전력기금>	47,000	60,000	66,203	6,203	10.3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계속)	14,600	24,600	35,603	11,003	44.7
○ 전력효율향상(계속)	32,400	35,400	30,600	△ 4,800	△ 13.6
<합계>	669,914	500,759	431,163	△ 69,596	△ 13.9

에너지진단보조(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진단보조	2,268	2,671	2,220	△451	△16.9

* 사업코드 : 19-24-4-110-115-5100-5139-303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장(나성화, 044-203-5390),
사무관(엄상후, 044-203-539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 ('09~'11년) 90% → ('12~'14년) 70%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에너지절감·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자체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단비용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의무진단보조 지원 : 의무진단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1만toe미만인 중소기업의 진단비용 지원을 위해 1,891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18.9백만원(기준단가) × 70% × 143개소(사업장수)
- 교육시설 진단보조 지원 : 경과년수 20년 이상의 노후 교육시설(초·중·고교)의 진단비용 지원을 위해 329백만원 지원
 - 교육부의 그린스쿨사업*과 연계하여 투자비가 확보된 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진단비용 지원
 - * (그린스쿨사업) 경과년수 20년 이상의 기존 노후 학교시설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
 - 이중창·단열 개선, 신재생설비 설치, LED조명 교체, 친환경자재 사용 등
 - 산출내역 : 4.7백만원(기준단가) × 70% × 100개소

□ 지원 필요성

- '07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시행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절감·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 유도
 - 국내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국가 전체의 61.6%를 차지, 이중 연간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소비량은 40.2%를 차지
-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단비용 보조 필요
 - 중소기업은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진단비용 대비 에너지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에너지비용 대비 진단비용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 진단의무화에 따른 진단비용이 부담
- 전문 시설관리자가 없고 소규모인 초·중·고교 교육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효율화 대책이 필요
 - 최근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에너지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그간 공공부문의 진단의무화에서 국·공립학교는 에너지효율개선의 사각지대로 방치
 - * 최근 3년간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증가율(1.2%)에 비해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증가율은 6.3%로 매우 높은 수준
 - 교육시설의 전기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절감 등 대책 마련,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
 - *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및 전기냉난방기의 보편화로 전기사용량 급증
 - * 학교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95%이상이 전력임 (취사용 연료사용량 제외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진단보조	2,268	2,671	2,220	△ 451	△ 16.9
▪ 의무진단보조	2,268	2,234	1,891	△ 343	△ 15.4
▪ 자율진단보조	-	437	-	△ 437	순감
▪ 교육시설진단보조	-	-	329	329	순증
☐ 비목(합계)	2,268	2,671	2,220	△ 451	△ 16.9
○ 민간경상보조(320-01)	2,268	2,671	2,220	△ 451	△ 16.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진단을 의무화하여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도모
- (민간부담)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진단비용은 민간이 자체부담
- (정부보조) 에너지절감·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자체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진단비용을 정부가 보조(7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22.7	
'13	26.7	(의무진단보조) 2,234백만원=17.44백만원×70%×183개소 (자율진단보조) 437백만원=3.9백만원×70%×160개소
'14	22.2	(의무진단보조) 1,891백만원=18.9백만원×70%×143개소 (교육시설진단보조) 329백만원=4.7백만원×70%×100개소
'15	19.56	(의무진단보조) 1,891백만원=18.9백만원×70%×143개소 (교육시설진단보조) 329백만원=4.7백만원×70%×100개소
'16	17.93	(의무진단보조) 1,891백만원=18.9백만원×70%×143개소 (교육시설진단보조) 329백만원=4.7백만원×70%×100개소
'17	14.77	(의무진단보조) 1,891백만원=18.9백만원×70%×143개소 (교육시설진단보조) 329백만원=4.7백만원×70%×100개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톤오이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추진경위

- '07.1월 :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시행 및 중소기업(2천~5천toe미만) 진단비용보조(70%)
 - * 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진단의무화 결정('04.12.28)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05.12.23 공포, '06.6.24 시행)
- '09.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비율 확대(70%→90%)
 - *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대책 보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08.8.24)
- '10.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2천~5천toe→2천~1만toe)와 2천toe미만 중소기업(2,000개소) 진단비용 지원
 -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 보고」 ('09.3월)
- '12.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비율 축소(90%→70%)
 - * 기재부 예산삭감으로 지원비율 축소[3,160백만원(요구) → 2,727백만원(확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에너지진단보조	89.6	38.0	27.2	26.7	22.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도) 자율진단보조 예산(459백만원)을 '에너지정책홍보' 예산으로 전용, 1개 업체당 지원할 의무진단비용(13,440,000원)의 부족으로 실집행 잔액(9백만원)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9.6 (89.6)	()	()	89.6 (89.6)	89.6 (89.6)	()	()
'11년	38.0 (38.0)	()	()	38.0 (38.0)	38.0 (38.0)	()	()
'12년	27.3 (27.3)	()	△4.6 ()	22.7 (22.6)	22.7 (22.6)	()	(0.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매년 에너지진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10년 진단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Energy Policy Act 2005
 - 에너지부에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전략과 개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수행 지원
 - 에너지진단은 수급이 불안정한 섬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측면보다는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접근
- 일본
 - 에너지진단의무제도와 같은 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省에너지센터에서 무료진단 전액지원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kl 이상~1,500kl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진단을 받지 않은 설비에 대해 지원
 - *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500kl 이상 사업자도 지원
- 호주 : EEO법(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Legislation, '06.7월)
 -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TJ(12천toe)이상인 사업장에게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인 EEO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 부여
 - * '12년 기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TJ 사업장은 220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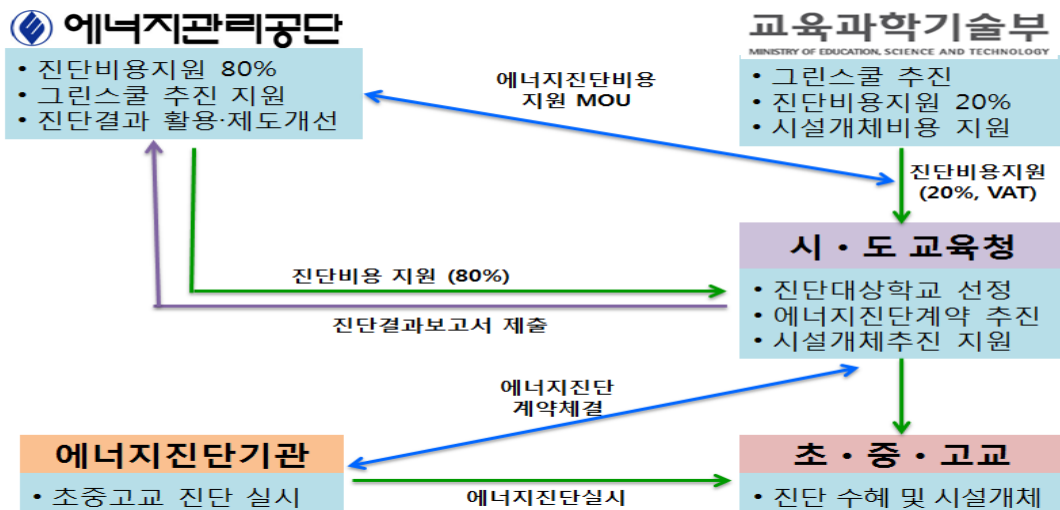
- EEO 프로그램 참여한 사업장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과 진단 결과에 개선활동을 수행
- EU : DIRECTIVE 2012/27/EU
 - 에너지효율 의무화제도로 회원국들의 중소기업에게는 권장, 대기업에게는 정부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15년 12월 5일까지 최초 진단을 받고, 매 4년 주기로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 진단의무화 대상 사업장중 에너지경영 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제외 가능

(5) 사업추진절차

- 의무진단보조(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1만toe미만)

구분	주 체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진단기관에 에너지진단 신청
②	진단기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③	진단기관	진단계약 및 일정통보
④	공단	진단현장 확인 후 선금금(계약금액의 50%이내) 지급
⑤	진단기관	진단완료 후 진단보고서 제출
⑥	공단	종합평가(보고서 평가, 고객설문조사 등) 및 잔액지급
⑦	진단기관	진단사업장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실시(3년)

- 교육시설 진단보조(노후화된 초·중·고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14년 의무진단 대상 및 추진실적
- 초·중·고등학교별 에너지사용실태

참 고

‘14년 의무진단 대상 및 추진실적

□ ‘14년 의무진단 대상 중소기업 현황

-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B, C급)의 사업장이 전체의 74.5%를 차지(2,075개소)
- 2,075개소 중 에너지진단주기(5년)가 도래한 사업장은 452개소로, 이중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약 200~250개소로 추정

< 의무진단 대상 사업장 현황(2013.1월 기준) >

진단등급	20만toe		10만toe		5만toe		2만toe		1만toe		5천toe		계		
	A5		A4		A3		A2		A1		B			C	
사업장수	56	20%	54	1.9%	86	3.1%	224	8.1%	290	10.4%	658	23.6%	1,417	50.9%	2,785
에너지 사용량	66,628	64.3%	7,371	7.8%	5,964	6.3%	6,978	7.4%	4,107	4.4%	4,598	4.9%	4,601	4.9%	100,247

□ 추진실적

구분	지원업체	지원금액(백만원)	에너지절감잠재량(toe/년)	온실가스감축잠재량(tCO2/년)
2007	145	2,093	44,579	99,672
2008	111	1,489	30,953	78,714
2009	152	2,660	39,256	87,821
2010	2,128	8,938	90,769	206,611
2011	574	3,795	69,997	152,675
2012	166	2,268	40,426	89,597
총계	3,276	21,243	315,980	715,090

* ‘10년 의무진단 128개소 및 자율진단(2천toe미만) 2,000개

** ‘11년 의무진단 144개소 및 자율진단(2천toe미만) 430개

*** ‘12년 의무진단 166개소, 예산전용으로 자율진단은 미 실시

참 고

초·중·고등학교별 에너지사용실태

- 에너지진단결과를 토대로 51개교 중 난곡중학교 등 17개교에 대해 교육부는 *그린스쿨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추진 중
 - * (그린스쿨사업) 기존 노후 학교를 ESCO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감학교로 개선하는 사업
- '12년에 교육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진단비용지원을 협약한 51개교 이외에도 99개 학교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교육부 예산(특교)으로 추진
- 51개교 전체 사용량 5,359toe 중 연료가 15%(825toe), 전력이 85%(4,534toe)로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학교가 EHP(전기식 냉난방기)와 에어컨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만 가스난로 및 온수기를 병행 사용
 - 연료(825toe)의 82%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취사용을 제외하면 전력의 비중은 97%로 매우 높음
- 1개교 당 연면적 및 사용량 평균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학교는 0.0133toe/m²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이 길어 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초·중·고교별 에너지사용현황(2011년 기준) >

구분	학교수	연면적 (m ²)	연료 사용량 (toe/년)	전력 사용량 (toe/년)	사용량 합계 (toe/년)	연면적 평균 (m ² /校)	사용량 평균 (toe/校)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toe/m ²)
초	22	158,245	278	1,400	1,679	7,193	76.3	0.0106
중	15	115,244	213	1,028	1,241	7,683	82.8	0.0108
고	14	182,757	334	2,105	2,439	13,054	174.2	0.0133
합계	51	456,247	825 (15.4%)	4,534 (84.6%)	5,359 (100%)	8,946	105.1	0.0117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지역에너지절약	35,308	35,409	21,690	△13,719	△38.7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9 - 308

* 담 당 자 : 에너지절약추진단장(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장(나성화,
044-203-5390), 사무관(김종범, 044-203-53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6 ~ 계속
총사업비	'13년까지 기 투자액 : 2,027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부담 조건 (Matching Fund) - 기반구축사업 : 50%이내 국고보조 - 시설보조사업 : 50%이내 국고보조 ※ 단, 서울시는 30%이내 국고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

☐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 지역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에너지절약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4년 예산액 : 21,690 백만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851 (17개 시도×50)
자본보조(시설보조사업)	20,839 (17개 시도×1,225)
합 계	21,690

○ 사업경비 산출내역

-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 851백만원 (17개 시·도 × 50백만원)
 - 교육·조사연구사업(851) : 에너지절약정책과 관련한 교육, 타당성 조사연구, 시민홍보 등에 지원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자본보조(시설보조사업) : 20,839백만원 (17개 시·도 × 1,225백만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20,839) : 지자체 LED조명 보급(보급목표 : 14년 50%), 폐열회수이용시설, 흡수식냉난방기 등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선도

□ 지원 필요성

-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시대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자체별 지역에너지 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국고지원이 필요
- 녹색법 시행 및 전력수급 위기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절약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탄소 에너지절약 기반을 마련

- 또한 지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홍보사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 지원 필요

-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지원은 동 사업이 유일하며 지자체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증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5,308	35,409	21,690	△13,719	△38.7
▪ 기반구축사업	873	976	851	△125	△12.8
▪ 시설보조사업	34,435	34,433	20,839	△13,594	△39.5
☐ 비목(합계)	35,308	35,409	21,690	△13,719	△38.7
○ 지자체 경상보조(330-01)	873	976	851	△125	△12.8
○ 지자체 자본보조(330-03)	34,435	34,433	20,839	△13,594	△39.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에너지절약분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고유가 대응 체제 구축 및 에너지절약산업 육성에 기여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설비의 시범보급 활동을 통한 민간 확산 유도

-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원하여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에너지절약 추진의지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원
-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절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선정·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철저 및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353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873백만원 (16개 시도×54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34,435백만원 (16개 시도×2,152백만원)
'13	354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976백만원 (17개 시도×57.4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34,433백만원 (17개 시도×2,025백만원)
'14	217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851백만원 (17개 시도×50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20,839백만원 (17개 시도×1,225백만원)
'15	200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600백만원 (17개 시도×35.3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19,400백만원 (17개 시도×1,141백만원)
'16	100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300백만원 (17개 시도×17.6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9,700백만원 (17개 시도×571백만원)
'17	100	교육·조사용역 등 경상보조 : 300백만원 (17개 시도×17.6백만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 9,700백만원 (17개 시도×571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
 - 광역자치단체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1-592호(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 지역에너지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
- 녹색위 VIP 보고('11.6.8) :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LED 조명 2060 계획)
 - 대표적 녹색산업인 LED조명 보급을 확대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산업육성 추진
 - * 공공기관 보급목표 : 12년 30%, 13년 40%, 14년 50%, 15년 60%, 20년 100%

○ 추진경위

- '93년 10월 상공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방안 수립
- '94년 12월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토록 함
 -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착수
- '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년부터 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으로 각각 분리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지역에너지절약	264	240	354	354	21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도 예산 전용

-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 103백만원 에너지정책홍보(5100-5131-302) 위탁사업비(210-15)로 예산 전용됨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64 (264)	()	()	()	264 (264)	()	()
'11년	240 (240)	()	()	()	240 (240)	()	()
'12년	354 (354)	()	1 (353)	353 (353)	353 (35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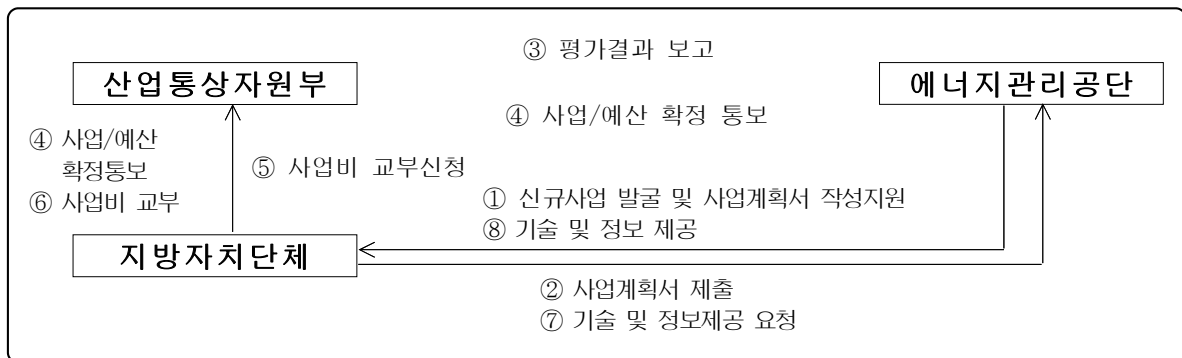
- 재정사업자율평가('13년) 등급 : 매우미흡 (37.5점)
- '09년 결산 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차년도 사업심사 시 예산투입당 에너지 절감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지자체 예산배분에 반영 필요
- (조치사항) 차년도 사업평가 시 배점 부여 등을 통해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에너지절약 효과)를 반영하여 사업선정 추진

- '12년 감사원 감사 :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건 조치 필요
 - (조치사항) 매년 초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집행잔액 반납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미반납 해당 지자체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여 반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전국의 17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기술적 타당성,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선지원 대상 순위 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범위, 예산 등을 조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 선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14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청현황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시도별 지원현황
- 관련근거법령 조문

참고 1

‘14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청현황

(백만원/건)

구분	기반구축				시설보조				신청종합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국비	자부담	계		국비	자부담	계		국비	자부담	계
강원	1	80	80	160	31	6,827	6,827	13,654	32	6,907	6,907	13,814
경기	4	345	345	690	40	9,481	9,777	19,258	44	9,826	10,122	19,948
경남	2	110	110	220	34	7,115	7,115	14,230	36	7,225	7,225	14,450
경북	1	40	40	80	42	8,501	8,501	17,002	43	8,541	8,541	17,082
광주	2	140	140	280	43	9,168	9,168	18,336	45	9,308	9,308	18,616
대구	1	50	50	100	31	4,942	4,942	9,884	32	4,992	4,992	9,984
대전	1	30	30	60	17	2,776	2,776	5,552	18	2,806	2,806	5,612
부산	1	45	45	90	36	5,928	5,928	11,856	37	5,973	5,973	11,946
서울	2	76	178	254	18	2,813	6,637	9,450	20	2,889	6,815	9,704
세종	1	10	10	20	-	-	-	-	1	10	10	20
울산	1	70	70	140	14	904	904	1,808	15	974	974	1,948
인천	3	146	146	292	23	3,551	3,551	7,102	26	3,697	3,697	7,394
전남	2	210	210	420	21	7,620	7,670	15,290	23	7,830	7,880	15,710
전북	5	3,410	3,410	6,820	25	5,924	5,924	11,848	30	9,334	9,334	18,668
제주	1	30	30	60	22	3,355	3,355	6,710	23	3,385	3,385	6,770
충남	1	60	60	120	28	4,018	4,018	8,036	29	4,078	4,078	8,156
충북	2	80	80	160	39	7,779	7,779	15,558	41	7,859	7,859	15,718
계	31	4,932	5,034	9,966	464	90,702	94,872	185,574	495	95,634	99,906	195,540

참고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96~'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지원 비율
강 원	3,854	2,023	1,786	2,209	335	2,336	2,176	14,719	6.2
경 기	5,218	8,735	5,167	813	2,370	1,176	862	24,341	10.2
경 남	2,285	3,356	1,235	2,272	1,101	2,765	1,773	14,787	6.2
경 북	2,174	3,206	3,291	1,516	1,757	2,232	3,775	17,951	7.5
광 주	3,640	920	499	2,116	1,105	6,036	2,635	16,951	7.1
대 구	4,697	966	2,030	3,225	3,665	1,237	3,228	19,048	8.0
대 전	3,530	851	725	1,913	1,698	1,090	2,736	12,543	5.3
부 산	2,417	1,549	2,111	985	2,743	3,547	4,506	17,858	7.5
서 울	1,962	5,440	5,027	318	1,087	1,815	1,983	17,632	7.4
세 종	-	-	-	-	-	-	10	10	0.1
울 산	1,216	620	453	119	1,232	515	655	4,810	2.0
인 천	2,685	1,015	3,482	1,057	1,659	1,777	1,602	13,277	5.6
전 남	1,442	1,707	2,146	4,445	2,377	1,973	1,978	16,068	6.7
전 북	1,729	2,692	1,164	738	1,127	1,701	1,909	11,060	4.6
제 주	936	2,146	400	107	1,128	1,761	1,885	8,363	3.5
충 남	1,592	1,767	2,085	3,199	170	2,778	1,953	13,544	5.7
충 북	4,637	2,480	1,872	1,395	446	2,569	1,743	15,142	6.4
합 계	44,014	39,473	33,473	26,427	24,000	35,308	35,409	238,104	1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에너지법 제7조 >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15,602	15,254	13,759	△1,495	△9.8

* 사업코드 : 21-24-4-110-115-5100-5139-309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채희봉), 온실가스감축팀장(김호철, 044-203-5370),
사무관(김등용, 044-203-537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 576.9억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2. 사업목적

☐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이행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이 핵심 수단으로 녹색법에 신규 도입,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제도 운영 및 기업 이행기반 확충
-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목표관리 대상기업(관리업체)의 차질 없는 목표 이행이 필수적

- '14년에는 목표관리제 지정 기준 강화로 인한 신규 관리업체의 유입으로 제도 운영 교육 및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 필요성 증가
- * 목표관리제 추진 개요 : 제도 시행 및 관리업체 최초 지정('10년) →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11년) →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 개시('12년) →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 평가 실시('13년)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역량 강화 (9,635백만원)

○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도 이행 지원 (5,300백만원)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인 중소기업에게 행정컨설팅 제공,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설 및 감축설비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 에너지진단 수행, 행정컨설팅 지원 : 1,000백만원
 - * Eco-Best: 15업체x53,3('13년) → 20업체x50('14년)=1,000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지원 : 3,300백만원
 - * 중소기업 모니터링시스템구축: 10업체x175x80%('13년) → 27업체x200x50%('14년)=2,700
 - * 중소기업 FEMS 도입방안 마련: 100('14년 신규)
 - * 지원기업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40업체x10('14년 신규)=400
 - * 해외지원제도 벤치마킹: 500('13년) →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 온실가스 국제협력 8개 과제 대응x12.5=100('14년)
 - 우수감축시설 도입 지원 : 1,000백만원
 - * BAT: 5업체x430x50%=1,075('13년) → 5업체x400x50%=1,000('14년)

○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촉진 (1,400백만원)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인 대기업(모기업)이 비관리업체인 중소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인력·자금·기술 제공을 지원
 - *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파견을 통한 에너지컨설팅을 지원하는 에너지동행: 10개 협력군x60x50%=300('13, '14년 동일)
 - *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item 발굴: 50업체x4=200 ('13, 14년 동일)
 - * 기업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차년도 1개협력군x400x50% + 1차년도 2개협력군(10社)x1,400x50%=1,600('13년) → 2차년도 2개협력군x400x50% + 1차년도 1개협력군(5社)x1,000x50%=900('14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공유·확산 (1,945백만원)

- 목표관리제 주요 이행수단인 공정별 감축기술 정보 제공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향상가이드북 제작 : 400백만원
 - * 4개업종x100=400('13년, '14년 동일)
 - 업종별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적정 효율관리 과제발굴·실증테스트 : 600백만원
 - * 2개과제x315('13년) → 2개과제x300=600('14년)
 - 업종별 기술정보 현장지도, 세미나 : 945백만원
 - * 현장지도, 세미나 등 업종별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16개업종x21.9=600('13년, '14년 동일)
 - * 감축연구회 자율과제: 8개업종x43.8('13년) → 8개업종x43.1=345('14년)

○ 제도 대응 교육과 홍보 (990백만원)

- 목표관리업체 제도 대응을 위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 홍보·성과 확산
 - 기업 실무자·임직원 교육 : 780백만원
 - * CGO(임원급) 교육: 60 ('13, '14년 동일)
 - * 실무자 교육: 250('13년) → 400('14년)
 - * 업종 공통 감축기술 교육: 220 ('13, '14년 동일)
 - * 금속·화학업종 특화기술 교육: 250('13년) → 140('14년)
 - 제도 간담회 : 210백만원
 - * 설명회·간담회: 110('13년, '14년 동일)
 - * 대국민 홍보와 우수기업 성과 홍보: 100('13년, '14년 동일)

② 제도 운영기반 확충 및 개선 (4,124백만원)

○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200백만원)

- 관리업체별 협상자료 수집, 분석 및 감축목표(안) 개발 등 : 1,550백만원
 - * 명세서 검토·분석 : 200('13년) → 100('14년)
 - * 관리업체별 자료수집·분석 : 433업체x5.25('13년) → 200업체x5.25('14년)
 - * 관리업체 목표 사후조정 검토·분석 : 500('13년) → 350('14년)
 - *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산정모델 개발 : 100('13년) → 50('14년)
- 목표설정 설명회 및 목표설정 협상 등 : 150백만원
 - * 목표설정 설명회/전문가 회의 등 : 24('13년) → 25('14년)
 - * 협상단 교육 및 관리업체별 협상 실시 : 200('13년) → 100('14년)
 - * 목표설정협의체 및 관리위원회 개최 : 25 ('13, '14년 동일)

- 업종별 예상증감률 전망 분석 : 500백만원('14년 신규)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체계 개선 (299백만원)

- 산정등급체계 개선 : 299백만원
 - * 고유배출계수 산정 등급 관리체계 표준화 : 120('13, '14년 동일)
 - * 산업공정 고유배출계수 적용기준 개선 : 280('13년) → 179('14년)

○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 점검, 실적평가 등 (625백만원)

- 관리업체 이행현황 점검 : 150백만원
 - * 관리업체 이행점검 : 12지역×2회×6.25('13, '14년 동일)
- 관리업체 목표달성 평가 및 개선·관리 : 275백만원
 - * 이행실적 평가 및 개선·관리 : 200 = 433업체 × 0.46('13, '14년 동일)
 - * 평가/관리체계 개선 : 25('13년) → 25('14년)
 - * 이행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50('13, '14년 동일)
- 장·단기 감축성과 분석: 200백만원
 - * 150('13년) → 200('14년)

○ 온실가스 벤치마크(BM) 계수 개발 (1,000백만원)

- 업종별 벤치마크계수 개발 : 1,000백만원
 - * 벤치마크 대상 배출시설경계 표준화작업 : 225 = 15업종 × 5제품 × 3('13, '14년 동일)
 - * 최적가용기술조사 등을 통한 BM개발 로드맵 수립 : 325 = 15업종 × 5제품 × 4.7
 - * 벤치마크 대상 원단위평가 및 BM계수 도출 : 400 = 15업종 × 5제품 × 5.3
 - * 전문위원회/간담회 개최 : 50('13, '14년 동일)

□ 지원 필요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 ('12년 1.4% → '13년 3.3% → '15년 10.0%),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이행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
- 관리업체 수 증가('13년 377여개 → '14년 426여개)에 따른 감축 목표 분석·설정 등 제도 운영소요 증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15,602	15,254	13,759	△1,495	△9.8
▪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15,602	15,254	13,759	△1,495	△9.8
☐ 비목(합계)	15,602	15,254	13,759	△1,495	△9.8
○ 민간경상보조(320-01)	15,602	15,254	13,759	△1,495	△9.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해 기업의 이행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비용효과적인 제도 정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52.54	○ 이행역량 강화 : 98.55 ○ 운영기반 확충 : 53.99
'14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15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16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17	137.59	○ 이행역량 강화 : 96.35 ○ 운영기반 확충 : 41.24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기본법 제42조 제10항

제42조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제26조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건물·교통 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8~36조

-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32조(검증기관 등)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 산업발전법 제6조

- * 제6조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생략.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 추진경위

- '08.12.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 '09.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목표관리제 근거규정 마련
- '09. 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의결된 「6. 4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0 TOE 이상 사업장에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이 결정
- '09.10. 「산업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 '09.11.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대통령 보고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업종 설명회, 공청회 개최
- '09.12. 47개 사업장과 시범사업 협약 체결
- '10.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녹색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로 확대·통합 운영
- '11.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1 - 29호)
- '11. 10. 산업·발전부문 366개 관리업체 '12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부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산업부문목표 관리제확산	80	181	162	152	1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 '12년 에너지정책홍보(5131-302) 사업으로 652백만원 전용
- (사유) '12년도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 예산 시급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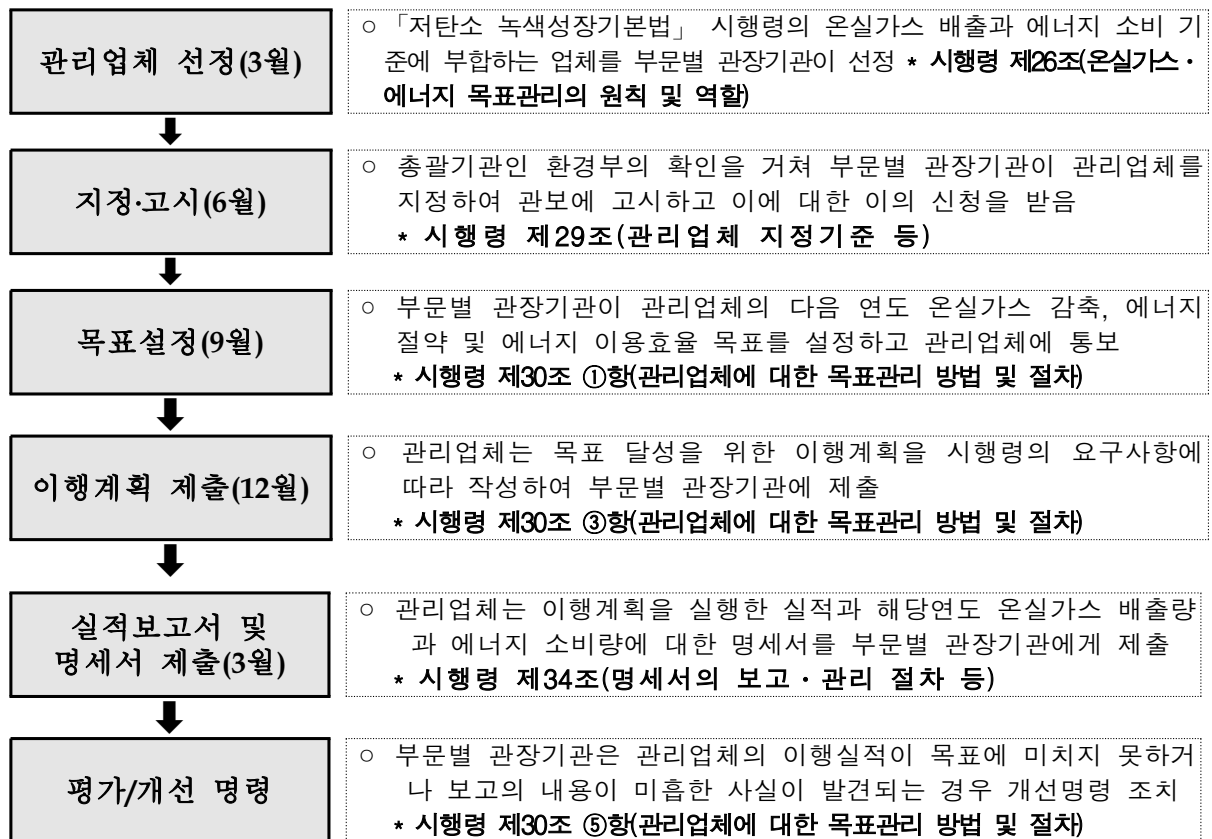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0 (80)	()	()	80 (80)	80 (80)	()	()
'11년	181 (181)	()	()	181 (181)	181 (181)	()	()
'12년	162 (162)	()	△6 (△6)	156 (156)	156 (15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전세계적으로 약 20개 국가에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목표관리제(VA/NA)를 시행 중이며, 유형은 국제협정, 국내산업 여건 등에 따라 강제성, 인센티브/벌칙체계 측면에서 다양
 - (완전 자발형) 핀란드, 호주 등이 운영 중이며,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외부검증 불필요
 - (준강제형)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운영 중이며, 목표달성시 환경규제완화 등 완전자발형보다 강한 인센티브 제공
 - (강제형) 한국,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이 운영 중이며, 절감실적에 대한 MRV가 시행되고,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와 연계된 강제수단 적용
- 특히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감축 설비에 대한 자금융자와 보조금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 중
 - J-CDM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와 컨설팅비용 지원을 병행 (경산성 및 NEDO)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3,360	6,750	15,203	8,453	125.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39 - 313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김정기, 044-203-536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1년~계속
총사업비	계속 사업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반 ESCO 사업) 에너지사용자·ESCO컨소시엄 : 50%이내 ▪ (민간융자 이차보전) 중소·중견기업 : 정책자금과의 금리차이 100% 보전, 대기업 : 2%p 보전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 확대, 국제적 기후변화 규제 강화,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단순 설비교체가 아닌 I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 사업영역을 발굴·확산
- 에너지절약시설 민간융자금 투자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효율 향상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IT 기반 ESCO 사업 발굴·지원 예산 2,040백만원
 -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관리 분야의 과제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
 - 산출내역 : 과제 당 지원액 800백만원 × 1개
 - IT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절약 분야의 과제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 1,240백만원
 - 산출내역 : 과제 당 지원액 250백만원 × 5개
- 민간자금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13,163백만원

- '11년도 대출금(98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196백만원
 - * $98\text{억원} \times 2\% \times 1\text{년} = 196\text{백만원}(2014\text{년})$
 - '12년도 대출금(429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858백만원
 - * $429\text{억원} \times 2\% \times 1\text{년} = 858\text{백만원}(2014\text{년})$
 - '13년도 대출금(3,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8,546백만원
 - * $1,500\text{억원}(\text{대기업}) \times 2\% \times 1\text{년} = 3,000\text{백만원}(2014\text{년})$
 - * $1,500\text{억원}(\text{중소·중견}) \times 3.7\% \times 1\text{년} = 5,546\text{백만원}(2014\text{년})$
 - '14년도 대출금(3,469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 3,563백만원
 - * $1,000\text{억원}(\text{대기업}) \times 1.5\% \times 0.4\text{년} = 600\text{백만원}(2014\text{년})$
 - * $2,469\text{억원}(\text{중소·중견기업}) \times 3.0\% \times 0.4\text{년} = 2,963\text{백만원}(2014\text{년})$
- ※ 단, '14년도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금리변동 등에 따라 일부조정 가능

□ 지원 필요성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감, 국제적 기후변화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필요
-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감(효율개선) 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비용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

- (IT기반 ESCO 사업 확산) 단순 설비 교체 이외에 EMS(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IT를 접목한 과학적인 에너지절약시스템을 확산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 (민간금융 활성화) 에너지절약시설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하여 민간 투자 확대 유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3,360	6,750	15,203	8,453	125.2
▪ IT기반 ESCO사업 지원	2,750	1,800	2,040	240	13.3
▪ 민간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610	4,950	13,163	8,213	165.9
☐ 비목(합계)	3,360	6,750	15,203	8,453	125.2
○ 출연금(350-01)	2,750	1,800	2,040	240	13.3
○ 이차보전금(320-05)	610	4,950	13,163	8,213	165.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발굴된 IT기반 신사업모델의 현장적용가능성 및 에너지절감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확대
-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공공기관 ESCO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외에 민간융자금 추가 공급
- 정부의 '정책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융자사업으로 전환 방침'에 따라 민간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42.5	
'13	67.5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49.5억원 ○ IT 기반 ESCO 사업 : 18억원
'14	133.75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17.5억원 ○ IT 기반 ESCO 신사업 : 30억원
'15	174.35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47.5억원 ○ IT 기반 ESCO 사업 : 30억원
'16	205.3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177.5억원 ○ IT 기반 ESCO 사업 : 30억원
'17	223.75	○ 민간융자금 이차보전 : 97.3억원 ○ IT 기반 ESCO 사업 : 30억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추진경위

- ('10년 10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절약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11년)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자금 이차보전, IT기술 기반 ESCO 신사업 모델 발굴 확산 사업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	-	27.5	42.5	67.5	15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이차보전 예산이 대출목표 대비 수요 미발생('11년 대출목표 1,500억원 → 실행 125억원, '12년 대출목표 700억원 → 실행 445억원)으로 '11년에 14.66억원, '12년에 1.9억원 불용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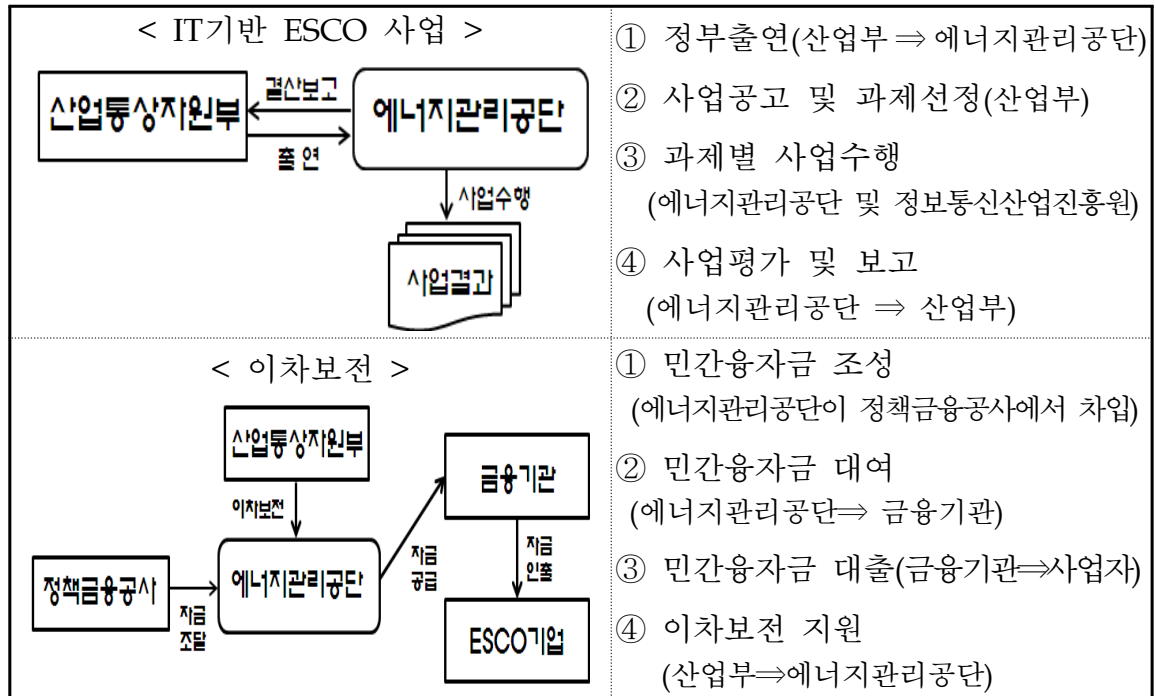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15)	(-)	(-)	(15)	(0.34)	()	(14.66)
'12년	(15)	(-)	(△7)	(8)	(6.1)	()	(1.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11년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15억원 중 3,400만원만 집행되어 부진('11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조치사항) 민간융자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4.55% → '12년 4%), 민간융자자금 지원 비율 확대(소요자금의 40% → 100%), 민간융자 자금 지원대상 확대(대기업 → 대기업+중소기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4년 “IT기반 ESCO 신사업 발굴” 추진 방향

- (추진현황) '11년부터 LED 디밍, IDC(인터넷데이터센터), EMS 등 IT를 접목한 에너지절약시설 구축 과제 발굴·지원

* (지원현황) '11년 4개(12.5억원), '12년 7개(27.5억원), '13년 6개(18억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개념) 에너지원별 센서·SW 등을 통신망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관리 모델
- (적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산 가능
 - * 건물 :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 공장 :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추진계획) ① 개별 사용자 이외에 다수 사용자 群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반 EMS」 과제를 중점적 발굴·지원

<클라우드 기반 (원격) EMS>

- (개념) 다수의 건물·공장 에너지 관리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원격 인터넷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 수행
- (장점) 규모의 경제(저비용 고효과)를 통한 보급 촉진 용이

- (대·중소 협력 모델) 자동차·조선 등 대·중소 협력분야 대상으로 보급

* ①(모기업) 중앙 EMS 구축 → ②(협력사) 각자 고객 시스템 구축 → ③(모기업 또는 협력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제어

- (산업단지 모델)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 유사업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보급

* ①(산단공) 중앙 EMS 구축 → ②(입주업체) 각자 고객 시스템 구축 → ③ (산단공 또는 입주업체) 에너지사용 모니터링·제어

- (대규모 건물 群) 프랜차이즈, 은행, 학교 등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건물 群 중심으로 중점 확산

* 건물 群 대표 지점에 중앙 EMS 구축 또는 에너지관리사업자에 위임 가능

- ② 기타 산업(발전·철강·기계 등 분야),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운송 등 미 적용 분야 신규 과제 발굴·추진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3,745	1,053	1,153	100	9.5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93 - 316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관(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한주현, 044-203-53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국민 참여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확산

○ 가정·상업부문의 녹색 소비 참여확대를 위한 탄소캐쉬백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편입 개편중

○ 가정 부문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상용화 사업

○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 유도 및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 추진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탄소 캐쉬백·탄소 중립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사업비 720백만원

- 에너지고효율 제품 소비에 대해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캐시백,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행동을 통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속 추진

① 탄소캐쉬백·탄소중립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반 조성(280백만원)

- 탄소중립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참여 분야 확대: 3개 분야 × 10백만원
- 탄소중립 생활실천 매뉴얼 제작 등 : 온라인 1식 × 20백만원, 오프라인 홍보물 5종 × 10백만원
- 탄소캐쉬백·탄소중립 IT 활용기반 유지·보수비용 : 180백만원

② 탄소캐쉬백·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고객접점 마케팅(340백만원)

- 권역별 실천운동 참여자(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발굴 : 4개 부문×10백만원
- 주요 유통점과 협력한 탄소캐쉬백 참여 마케팅 홍보 추진 : 전국 주요 10개 유통매장×20백만원

③ 탄소캐쉬백 제휴사(품목) 가입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100백만원)

- 설명회 개최 : 5개 분야별×연2회×1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업비 333백만원

-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동일평형 평균에너지소비량 대비 각 가정의 에너지사용량을 표시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실천을 유도

① 전산·출력 프로그램 개발(160백만원)

- 아파트 고지서 프로그램 개발지원 : 20백만원×8업체=160백만원

② 에너지사용량 통계 홈페이지 운영(130백만원)

- 에너지사용량 통계 홈페이지 Data 서버 증설 및 운영 : 130백만원

③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개선사업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비(43백만원)

- 홍보안내자료 제작(18백만원) : 2천원×1,500개, 3천원×5,000개
- 우수단지포상(5백만원) : 20곳×25만원,
- 활성화 이벤트(10백만원) : 2회×5백만원
- 광고 및 홍보비(10백만원): 2백만원×5회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지원 사업비 100백만원

- 주거지역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14년 시범사업)

① 에너지절약 우수 기초지자체 (90백만원)

- 아파트 지하주차장·공용부 전력 LED설치 등 = 90백만원

②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지원사업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탄소캐시백·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최소한의 홍보만으로 소비자 및 기업의 에너지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큼
- (에너지절약형 고지서)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고지서 시범사업 시행시, 세대당 평균 에너지사용 절감액을 기준으로 계산시 1개월(36.3억원), 1년(436억원) 절감효과 발생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지원) 아파트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3,745	1,053	1,153	100	9.5
▪ 탄소캐쉬백·탄소중립프로그램	720	720	720	-	-
▪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333	333	333	-	-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지원	-	-	100	100	순증
□ 세출예산비목(합계)	3,745	1,053	1,153	100	9.5
○ 출연금(350-01)	3,745	1,053	1,153	100	9.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
-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모색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0.53	○ 탄소캐시백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강화 : 72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사업 : 333백만원
'14	11.53	○ 탄소캐시백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강화 : 72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사업 : 333백만원 ○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 100백만원
'15	26.86	○ 탄소캐시백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강화 : 72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사업 : 333백만원 ○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 1,633백만원
'16	24.62	○ 탄소캐시백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강화 : 72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사업 : 333백만원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 1,409백만원
'17	20.28	○ 탄소캐시백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강화 : 720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사업 : 333백만원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 975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탄소캐시백 및 중립프로그램

-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및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 적극 전개(동법 제 59조 및 제60조)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시범보급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제1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지원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제1항

○ 추진경위

- 탄소캐쉬백 및 중립프로그램

① (탄소캐쉬백)

- 탄소캐쉬백제도 추진 발표('08.8.26) 및 주운영사 선정('09.3.12)
- 탄소캐쉬백제도 시범운영 착수(13개 기업, 8개 품목, 60종)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업무협약(MOU)체결(09.10.28)
 - * 탄소캐쉬백(지경부), 탄소포인트(환경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행안부)의 포인트 연계시스템구축과 제도홍보 공동추진 등

② (탄소중립)

- 기후변화 Week 행사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공식출범('08.2.18)
- 건국 60주년 경축행사 제1호 탄소중립마크 부여('08.8.15)
- '12.7월 현재 1,698건 누적 참여건수, 29,117tCO₂ 누적 참여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시범보급사업

- 에너지 소비전망 및 절약대책 국무회의 보고시 대국민 에너지절약 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사업' 보고('11.1.18)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11.2.27) 및 그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수요관리 대책' 발표('11.3.1, '11.3.14)

- *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11.3.1) 및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보고('11.3.14)시 '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개선' 포함
- 시범단지(600세대) 대상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발송('11.1월~'11.3월)
 - * 이웃집 평균 및 전년 동월비교 그래프 등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사용량에 따른 차별화된 고지서 발송
 - * 지경부 디자인브랜드과(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전문가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관리비 고지서 디자인 개발, 서울 서초구 방배동 600세대 대상 유인물 형태로 배포('11.1월~3월), 디자인 개발, 인쇄비 등 총 5천만원 소요
- 에너지절약형고지서 시범보급사업 추진단체 공모 및 선정(5월), 표준 고지서 디자인 개발(~8월), 시범보급적용 단지 선정(~8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녹색생활 프로그램활성화	-	-	37.45	10.53	11.5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에너지정책홍보(5131-302) 사업으로 150백만원 전용
 - (사유) '12년도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 예산 시급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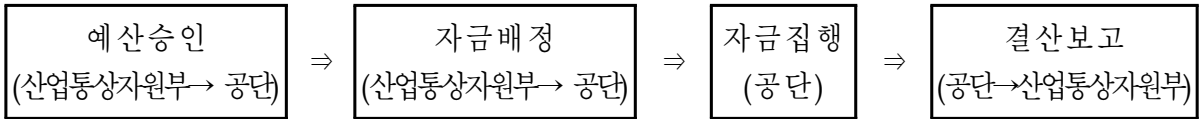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11년	(-)	()	()	()	()	()	()
'12년	(37.45)	(-)	(△1.5)	(35.95)	(35.9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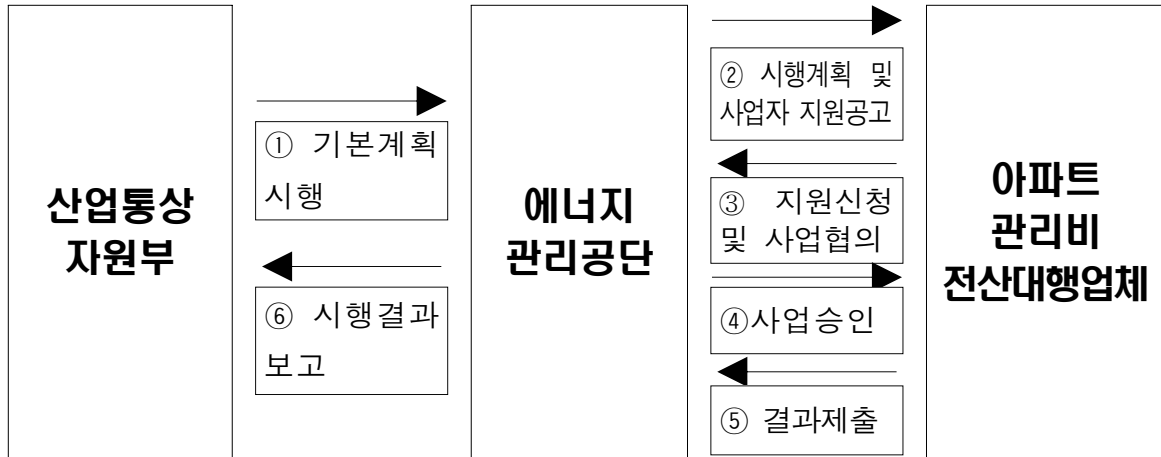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범국민적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을 위한 탄소캐쉬백·탄소중립 사업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시범 보급 사업



-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지원

구분	주 체	사 업 단 계
①	아파트 단지	지자체에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
②	기초지자체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단지 참여 접수
③	아파트 단지	개별세대 및 공용부 전력사용량에 대한 절약 실천
④	아파트 단지	기초지자체에 증빙자료(절약사례, 아이디어 등) 제출
⑤	기초지자체	취합한 증빙자료를 에관공에 제출
⑤	에관공	참여 기초지자체 내 아파트 단지의 전력사용 절감량 확인
⑥	에관공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 선정
⑦	기초지자체	우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설 지원 - 일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 등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기후변화협약대응(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계 획 (A)	2014계 획 (B)	증 감 (B-A)	
					%
○기후변화협약대응	11,011	10,850	11,054	204	1.9

* 사업코드 : 19 - 24 - 4 - 110 - 115 - 5100 - 5142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관(채희봉), 온실가스감축팀장(김호철, 044-203-5370),
사무관(윤종성, 044-203-537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 계속
총사업비	11,054백만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민간경상보조, 연구용역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사업목적

- 에너지·산업부문 통계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 Post-2020체제 대응방안 연구 및 수립 등을 통한 국가 기후변화협약대응 기반 확립
- 지자체·산업계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 및 일반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3. '14년 계획 내용

□ 계획 내용 및 산출근거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에너지·산업공정 온실가스 통계 및 감축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5,250백만원
 - 에너지 수요(산업)부문 온실가스통계 DB 구축사업: 2,300백만원
 -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700백만원
 - 글로벌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대응체계 구축: 300만원
 - 4단계 1차년도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수단 Pool 구축: 350백만원
 -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700백만원
 - 상시연구체계 구축 및 운영: 700백만원
 -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정책평가와 창조경제 연계방안연구: 200백만원
- 산업계 기후변화대응기반 구축 : 대국민 및 산업계 기후변화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3,284백만원
 - 국내 탄소시장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기반 구축 지원: 200백만원
 - 기후변화대응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 660백만원
 - 온실가스감축 기술 교육 : 300백만원
 -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 250백만원
 - 기후변화 교육 및 녹색홍보 : 1,874백만원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을 위한 사업비 500백만원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심사: 400백만원
 - 온실가스 검·인증 홍보 및 정보제공: 100백만원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新기후변화체제 대비를 위한 연구 및 기후변화협상 등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비 1,600백만원
 - 기후변화협상 지원: 50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 1,100백만원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P-CDM사업 지원 등을 통한 기후변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420백만원

- P-CDM 사업지원, CER 관리, DNA 지원 등: 150백만원
-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지수: 150백만원
- 기후변화홍보포털 추진: 120백만원

구 분	'13예산(추경포함)	'14
□ 기후변화협약대응	10,850	11,054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 - 조사대상 : 12만개 사업장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 - 조사대상 : 15만개 사업장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국내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대응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응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사업 조정 - 세사업중 일부를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내역사업으로 이동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사업 조정 (내역사업 추가)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내역 사업에 포함된 세사업을 분리 (P-CDM사업, CER관리,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지수 등)

□ 지원 필요성

- 산업·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 기반 마련, 감축 이행체계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전문성 강화
-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세부 대안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통계 기반구축 및 통계 품질 검증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를 위하여 CDM사업 등의 활성화와 산업계 및 일반시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의
검·인증 체계구축 및 국제 기후변화 협상력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계획 (A)	'14계획 (B)	증 감 (B-A)	
					%
□ 기후변화협약대응	11,011	10,850	11,054	204	1.9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5,736	5,000	5,250	250	5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2,567	3,130	3,284	154	4.9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561	500	500	-	-
▪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435	-	-	-	-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1,711	1,500	1,600	100	6.7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720	420	△300	△41.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기후변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온실가스 감축 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
-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일반인 및 산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에너지·산업부문 통계기반 구축, Post-2020의 新기후변화
체제 대응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반 확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0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0.00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1.30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5.00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7.20
'14	1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2.50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84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600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420
'15	1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2.50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84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600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420
'16	1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2.50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84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600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420
'17	1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체계 구축 : 52.50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32.84 ○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량 검·인증 : 5.00 ○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 1600 ○ 기후변화산업 경쟁력 제고 : 420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항 3호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범위등) ②항 1호, 2호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④항

④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항, ②항

①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항

①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및 공표) ②항, ③항, ④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①항, ②항 8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항

①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너지관리공단 사업) 1호, 12호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1. 1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일된 재정의 필요성 제기
 (국무조정실회의)
- '02. 3월 기후변화대응 제2차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의결
- '05. 3월 기후변화대응 제3차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의결
- '05년말 유럽배출거래시작, 교토의정서 발효(2월), Post-2012
 국가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 본격 시작
- '05.10월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제도 시행
- '07. 6월 국제엑스포박람회(BIE총회)에서 여수엑스포 유치에 위
 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약속 발표(국무총리 발표)
- '08. 9월 기후변화대책종합기본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의결
- '08.12월 기후변화대책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대책
 위원회 의결
- '10.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12.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 공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 기후변화협약대응	100	123	115	108.5	11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10년, 불용) 연구용역 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
- ('11년,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11년, 불용) 연구용역 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
- ('12년, 이·전용) 에너지자원정책지원(에너지정책홍보)사업으로
300백만원 전용

* 하절기 전력피크 방지를 위해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으로 전용

- ('12년,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12년, 불용) 연구용역 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00 (100)	4.61 (4.61)	()	104.61 (104.61)	102.34 (102.34)	2.2 ()	0.07 ()
'11년	123 (123)	2.2 (2.2)	()	125.20 (125.20)	122.34 (122.34)	2.6 ()	0.25 ()
'12년	115 (115)	2.6 (2.6)	3 (3)	120.6 (120.6)	110.11 (110.11)	4.21 ()	0.22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업종별 대책반 지원' 예산이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의 '감축연구회 운영' 예산과 중복 지적(예정처, '12년 예산안 예산분석보고서)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업종별 대책반과 감축연구회 운영사업을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 내에서 업종별 감축연구회로 통합 운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 '05.1월부터 EU 배출권 거래시장(상당부분이 유럽기후거래소(ECX, 네덜란드를 통해 거래) 개설
- '07.3월 EU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장기 대응정책 방향」(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채택
- 영국은 '09/10회계연도 예산에서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책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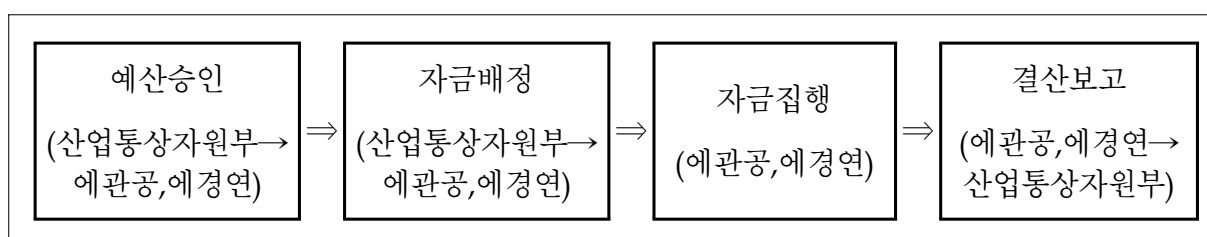
○ 미국

- 교토의정서에 의한 구속적 의무감축 방식보다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주요국회의를 주도
- '17년까지 향후 10년간 석유 소비량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15%로 확대기로 발표 ('07.1)
- 최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웁스만-마키법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기로 반영

○ 일본

- 전세계적으로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목표를 선언한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발표 ('07.5.24)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 개정('06)
- (중기목표) '20년까지 '05년 대비 15% 감축 및 (장기목표) '50년까지 '05년 대비 60~60% 감축하기로 발표('09.6)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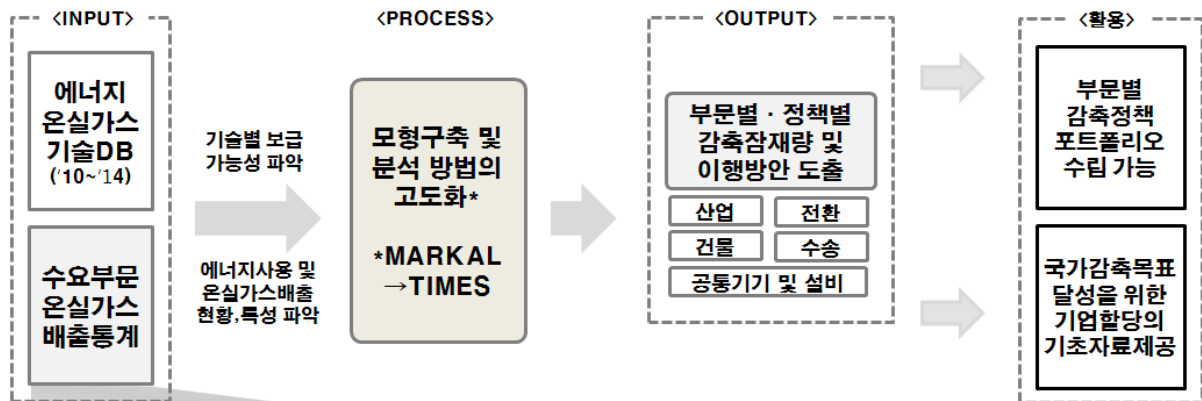
-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시스템 개요
- 기후변화 동향 및 향후 계획
- P-CDM(Program CDM) 개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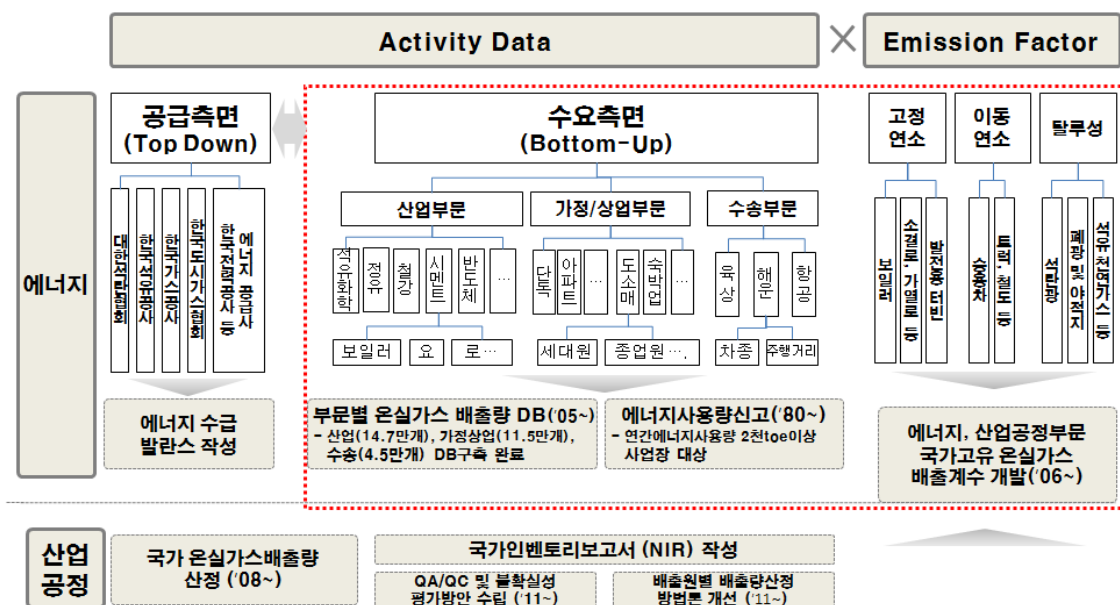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시스템 개요

- 최종수요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에 필수적인 온실가스 배출 활동 통계와 배출계수를 관리
 - 세분화되고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통해 감축잠재량 파악에 의한 기후변화 정책수립과 이행방안 마련 및 협상지원 체계를 구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감축이행 로드맵 수립



국제적 수준의 통계작성 체계화 및 통계분석 표준화



□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주요 결과(카타르 도하, '1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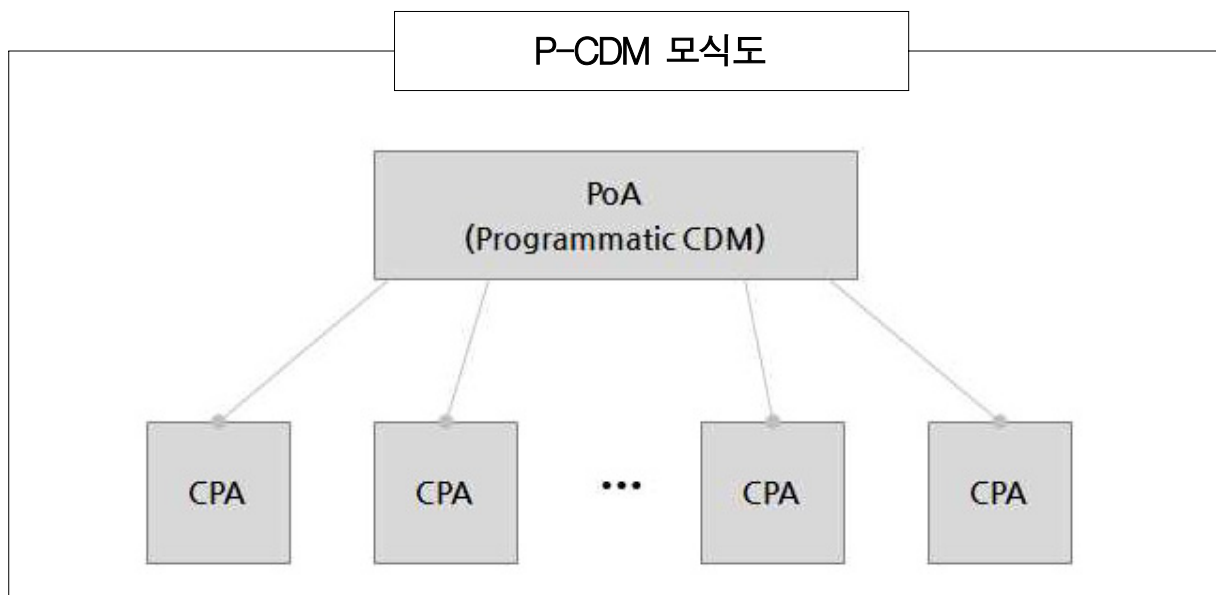
- 교토의정서(KP ; Kyoto Protocol) 2차 공약기간 협상 타결
 - '13년~'20년까지 EU, 호주 등 38개국이 참여하는 2차 공약기간 설정에 합의하고, 교토의정서 협상트랙(AWG-KP)을 종료기로 결정
 - 러시아(4위), 일본(5위)의 불참으로 세계 온실가스 상위 1~5위 배출국가들 모두 2차 공약기간에 불참
 - * 국가별 CO2 배출량(2011년 기준) 순위: ①중국(100억톤) ②미국(59억톤) ③인도(25억톤) ④러시아(18억톤) ⑤일본(13억톤)
- ⇒ 다자간 규칙기반 체제(rule-based regime) 지속에 의의가 있으나, 참여국의 배출량 비중(전세계 배출량의 15%, 1차 기간('08~'12)에는 25%) 저하, 낮은 목표 수준 등 체제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
- 더반플랫폼(DP ; Durban Platform) 협상 향후 작업계획 수립
 - '20년 이후 新기후체제 설립 및 '20년 이전 전 지구적 감축 노력 향상을 위한 '15년까지의 협상 일정, 논의 주제를 선정
 -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4년 '기후 정상 회의(Climate Leaders Summit)' 개최를 제안, 금번 총회 결정문에 반영됨
- ⇒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중국 등 개도국과, 변화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는 EU·미국 등 선진국 간 치열한 대립 예상

□ 향후 계획

-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관련, 先-개도국 가교 역할(폭넓은 참여 유도)과 함께, 우리의 국가 여건(산업구조, 한계감축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 부담 견지
- GCF 유치국으로서 재정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先-개도국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중재안 마련

1. P-CDM 개요

-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을 프로그램 형태로 표준화시켜 UN EB(집행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 이후 동일한 형태와 방법론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본 프로젝트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한 CDM사업의 형태
- 국가 정책목표 및 제도 기반아래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활동(PoA)을 통해 발굴된 단일 CDM 사업(CPA)을 사업의 수, 규모 및 지역적 경계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



- '07년 7월 UNFCCC EB 33차 미팅에서 승인되어 현재 시행 중

2. 국내 P-CDM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공공기관의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
- 사업기간 : 28년 (CPA의 경우 10년)
- 예상 감축량 : 총 1,057,030tCO₂ (국내 도로조명 10% 교체시)

○ 지자체 참여사례 (총 639tCO₂/년)

- (2011년) 광주광역시 1차 (예상감축량 : 51tCO₂/년)
- (2012년) 광주광역시 2차 (456tCO₂/년), 서울 특별시 (48tCO₂/년), 순천시(28tCO₂/년), 인천공항공사(18tCO₂/년), 인천광역시 (38tCO₂/년)

○ 추진경과

'09. 09~	P-CDM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및 검토	KEMCO, 광주광역시
'09. 10. 27	P-CDM추진 실무협약 체결	"
'09. 12. 29	사업추진의향서 UN EB 제출	KEMCO
'09. 12. 17	국가승인요청 (국무총리실)	KEMCO
'11. 02. 17	국가승인	지식경제부
'11. 7. 15	CDM 등록신청	한국표준협회
'11. 10. 19	UN등록 완료	등록번호 : PoA 5019
'12. 01. 31	신규 참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광기술원)	
'12. 02. 10 ~ 20	참여 의향서 접수	5개 기관*
'12. 05. 02	광주광역시 기등록 사업장 견학	참여기관 담당자
'12. 08. 07	DOE 첫 현장 검증	KEMCO 담당자 참여
'12. 10. 10	실무 협약	5개 참여 기관
'12. 11. 25	DOE측의 요청에 따라 EB측에 질의 (VVM, VVS form 사용문제 및 CPA 관련)	
'12. 12. 17	CPA-DD 5개 업로드 완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 5개 기관)

3. 해외 P-CDM 추진 현황

□ 스리랑카 소수력 P-CDM 추진

○ 사업개요

- 스리랑카내 건설예정인 248개 소수력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CDM 등록을 함으로써 연평균 554,536tCO₂를 (대상 사업소 50%참가時) 감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스리랑카내 소수력발전을 위한 지역허가 (Provincial Approval)를 받은 248개 사업소

○ 사업기간 : 총 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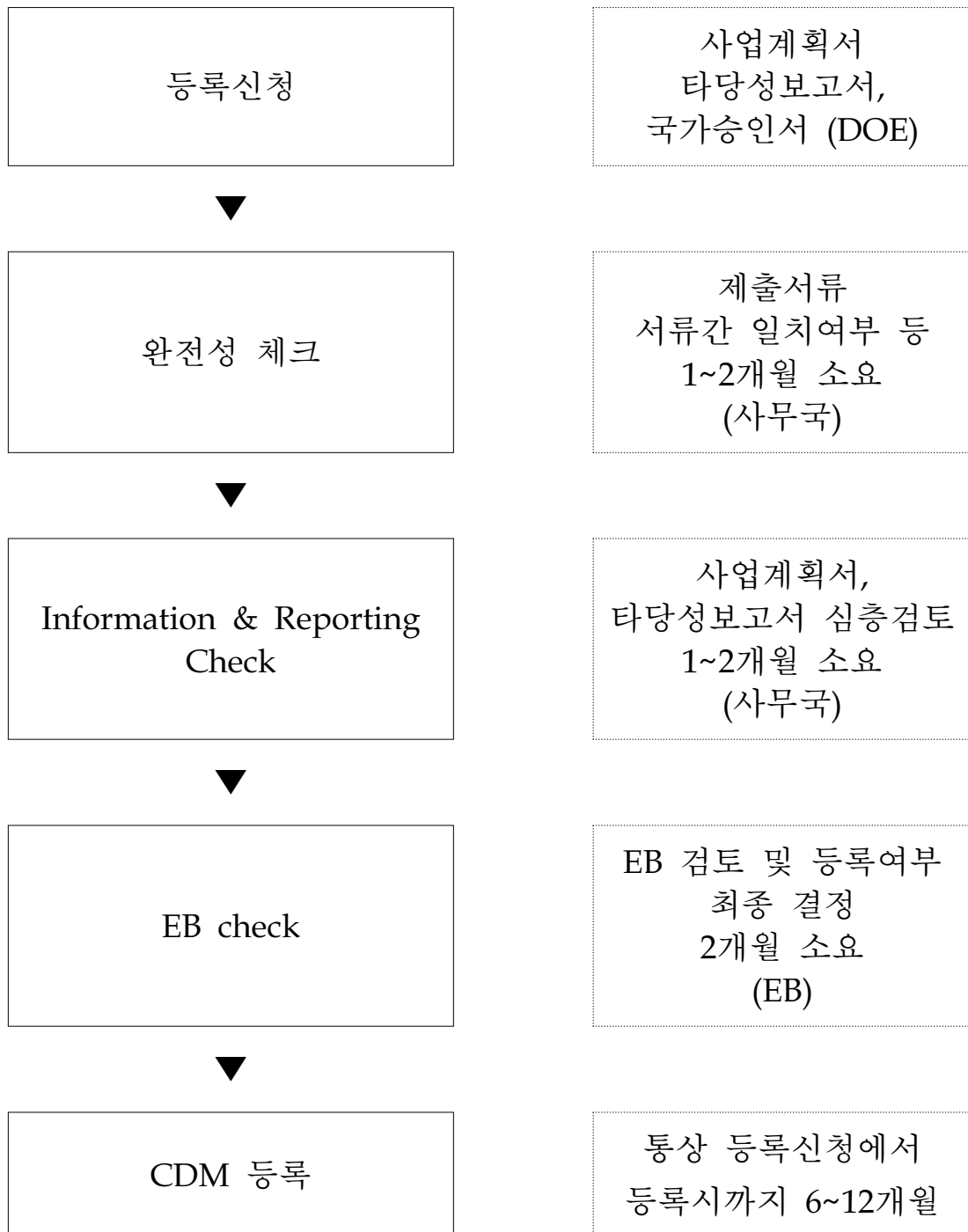
○ 예상 감축량 (연간)

- 554,536tCO₂ (248개 사업소 중 50%인 124개 참여 경우)
 - * (산정식) 1.87MW (발전소당 평균발전용량) × 365일 × 24시간 × 42% (설비이용률) × 0.65tCO₂/MWh (전력배출계수) × 124개 발전소

○ 사업추진 체계 및 주체별 역할 (잠정)

- SEA (스리랑카 지속가능개발청) : 사업총괄, 참여자 확대/관리, 모니터링 정보제공
- 공단 등 : 사업계획서 작성, CDM 등록, 모니터링 보고서, CER 거래, 스리랑카 정부와의 협약, 타당성 확인 비용, 검증 비용 등

<CDM 등록절차>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3,250	3,449	2,750	△ 699	△ 20.3

* 사업코드 : 19 - 24 - 4 - 110 - 115 - 5100 - 5142 - 302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채희봉), 온실가스감축팀장(김호철, 044-203-5370),
사무관(윤종성, 044-203-537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3년까지 기투자액 452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출연('12년 민간경상보조 → '13년 민간경상보조·출연)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감축 이행제도' 상에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s) 활용기반 강화
- 중소기업장의 감축사업 참여 확대기반 강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 이행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MRV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온실가스감축량 정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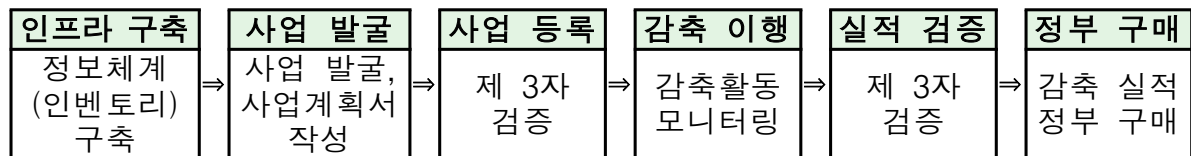
3. '14년 예산 내용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000백만원

- 감축의무가 없고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KVER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사업 전 단계별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인프라 구축' ⇒ '사업 발굴' ⇒ '사업 등록' ⇒ '감축 이행' ⇒ '실적 검증'의 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비용을 지원

* 1,000백만원 = 50건 × 20백만원(건당 총 지원비용)



- ①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장 세부 설비 및 공정별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인벤토리) 구축 지원(건당 4백만원)
- ② 사업 발굴 지원 : 기술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건당 5백만원)
- ③ 사업 등록 지원 : 사업계획서의 제 3자 검증(타당성평가) 비용 지원(건당 5백만원)
- ④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 모니터링 보고서 컨설팅 및 작성 지원(건당 3백만원)
- ⑤ 실적 검증 지원 : 실적 인증을 위한 검증(실적평가) 비용 지원(건당 3백만원)

○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250백만원)

- 온실가스 등록사업 및 검증기관 관리운영 등(155)
 - 온실가스 등록·인증평가위원회 운영(83)
 -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검증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60)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12)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등록사업 참여 확대기반 마련(50)
 - 시나리오별 KVER 활성화연구 및 관계기관 간담회, 워크숍 등(50)
- 중소기업 감축실적 활용기반 강화(45)
 - 참여안내책자 및 홍보팸플릿제작(10)
 - 신규 감축 방법론 개발 등(15)
 - 해외 정보교류 및 시장 조사 등(20)

○ 온실가스감축실적 정부구매 (1,500백만원)

-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구매 시행
 - * 1,500백만원 = 125,000tCO₂(’14년 예상 정부구매량) × 1만2천원/tCO₂(정부구매단가)
 - * 세계은행의 CER 평균가(1만2천원/tCO₂) 수준

구 분	’13예산	’14예산
□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3,449백만원	2,7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추진배경)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관리 대상이 아닌 30만개 기업(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이 필수적이나,
 - * 목표관리 비대상기업은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
- 인력·자금·기술·정보 등 독자적인 감축역량이 취약하여 그간 KVER 사업 참여 등 자발적 감축활동이 부족하였음
- (추진경과) KVER 사업을 중소기업(목표관리 비대상기업) 위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조성(’11.4)하였으나,
 - 감축 item의 발굴 등 기본적인 기술 역량의 부족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제3자 검증 등 행정비용 등의 애로 완화 필요
- (지원방향) 중소기업은 감축의무가 없고, 대응역량이 부족하므로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 필요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 item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제3자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 및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 감축실적 정부구매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감축활동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3,250	3,449	2,750	△ 699	△ 20.3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 (50개×20백만)	1,000 (50개×20백만)	1,000 (50개×20백만)	-	-
▪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449 (등록관리 및 중소기업기반확대)	250 (등록관리 및 중소기업기반확대)	△ 199	△ 44.3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2,250 (187천CO2×12천원)	2,000 (167천CO2×12천원)	1,500 (125천CO2×12천원)	△ 500	△ 25
☐ 비목(합계)	2,750	3,449	2,750	△ 699	△ 20.3
○ 민간경상보조(320-01)	2,750	3,000	2,500	△ 500	△ 16.7
○ 출연금(350-01)	-	449	250	199	△ 44.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관리 비대상 30만개 기업(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 확대 필요
- 감축의무가 없고,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KVER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4.49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000백만원 ○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449백만원 ○ 정부구매 : 2,000백만원
'14	27.50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000백만원 ○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250백만원 ○ 정부구매 : 1,500백만원
'15	23.31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200백만원 ○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539백만원 ○ 정부구매 : 2,200백만원
'16	21.37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440백만원 ○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647백만원 ○ 정부구매 : 2,640백만원
'17	17.60	○ 종합 지원 프로그램 : 1,728백만원 ○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 776백만원 ○ 정부구매 : 3,168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사업)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71호)

○ 추진경위

- '05. 3월 :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의결
- '05. 10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 제 2005-88호) 제정
- '07. 12월 : '07년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 정부구매 최초실시
- '08. 12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경부 공고 제2008-361호) 제정
- '09. 5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18호) 개정
- '09. 10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 개정
- '11. 4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1-71호) 개정
- '11. 4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11-72호) 개정
- '12. 3월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경부 공고 제2012-153호) 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110	44	32.5	34.9	2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이·전용) 절전대책 예산으로 5억원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4 (44)	()	()	44 (44)	44 (44)	()	()
'12년	32.5 (32.5)	()	5 (5)	27.5 (27.5)	27.5 (27.5)	()	()
'13년	34.9 (34.9)	()	()	34.9 (34.9)	34.9 (34.9)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 국가 중기온실가스감축 목표이행과 탄소 비즈니스 견인을 위해 '10.4월부터 연간 6GWh사용규모(약 2만개소)인 중소 제조업체 및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장단위의 감축 프로그램인 CRC(Carbon Reduction Commitment)를 시행

* 동 제도는 중견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강제 이행 프로그램으로 '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모니터링 설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였음

- 사업장단위 참여자는 지정된 온실가스배출 크레딧을 정부로부터 구매하게 되며, 정부는 조성채원으로 사업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거나 목표미달시 페널티(배출크레딧 구매 등) 적용

* 사업참여자의 개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율에 기초한 금융지원을 의미

□ 일 본

- '08.10월부터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계획의 대책중 대기업위주의 자주행동계획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설비 투자보조 및 감축크레딧 제3자 검증을 지원하는 국내크레딧(J-CDM) 제도 운영중 (경산성 및 NEDO)

- * 컨설팅 비용 :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평가비용, 모니터링보고서작성 비용, 검증비용 전액지원
- *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사업 : 감축실적 1톤당 1,500엔의 보조금 지원
- 그간 30회 인증위원회를 통해 사업승인 1,466건, 검증 1,444건 수행('13.3월 기준)
- * 신청사업 기준시 2012년까지 CO2 175만톤 감축예상(1건당 1,196톤 감축예상)

□ 캐나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4대 분야에서 실시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PERRL(Pilot Emission Removals, Reduction and Learning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해 '03~'07년간 인센티브 지급(총 15백만 캐나다 달러 : '05년 평균환율 적용시 약 130억원)
- * 4대 분야 : 매립지가스(LFG) 포집·연소, CO₂ 포집 및 저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온실가스 흡수원(산림 등) 구축 사업

(5) 사업추진절차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증한 감축실적을 인증

사업 등록		사업자→정부 감축사업 등록신청	▶	정 부 등록평가실시 (등록평가위원회)	▶	정부→사업자 등록증발급	
KCERs 인증	▶	사업자→정부 모니터링 및 보고서제출	▶	검증기관→정부 검증실시 및 인증신청	▶	정 부 인증평가실시 (인증평가위원회)	▶ 정부→사업자 인증서발급 (KCERs발급)
정부 구매	▶	정 부 정부구매 대상공지	▶	사업자→정부 KCERs 구매 신청	▶	정 부 가격공지 및 신청량 확인	▶ 정부→사업자 대금지급 및 구매완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세부산출근거

구 분	'13 예산	'14 예산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지원	3,449 백 만 원	2,750 백 만 원
○ 온실가스감축실적 정부구매	2000 백만원 (‘13년 예상인증량 166,667tCO ₂ ×12,000원)	1,500 백만원 (‘14년 예상인증량 125,000tCO ₂ ×12,000원)
○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및 관리	449 백 만 원 ○ 온실가스 등록사업 및 검증기관 관리운영 등(305)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인증 평가위원회 운영(210) - KVER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검증전문인력 양성·보수교육(80) - KVER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15)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등록사업 확대기반 마련(100) - 참여안내책자및 홍보팸플릿제작(45) - 중소기업용 방법론 개발 등(55) ○ 중소기업 감축실적 활용기반 강화(44) - 배출권거래제 연계방안 도모(44)	250 백 만 원 ○ 온실가스 등록사업 및 검증기관 관리운영 등(155)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인증 평가위원회 운영(83) - KVER 검증기관 사후관리 및 검증전문인력 양성·보수교육(60) - KVER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12)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등록사업 확대기반 마련(50) - 사나리오별 KVER 활성화연구 및 관계기관 간담회, 워크숍 등(50) ○ 중소기업 감축실적 활용기반 강화(45) - 참여안내책자 및 홍보팸플릿제작(10) - 신규 감축 방법론 개발 등(15) - 해외 정보교류 및 시장 조사 등(20)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 백만원 * 50건 × 20백만원(건당 지원비용) * 20백만원 세부내역 ①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장 세부 설비 및 공정별 온실가스·에너지 정보 체계(인벤토리) 구축 지원(건당 7백만원) ② 사업 발굴 지원 : 기술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건당 5백만원) ③ 사업 등록 지원 : 사업계획서의 제 3자 검증(타당성평가) 비용 지원(건당 5백만원) ④ 실적 검증 지원 : 실적 인증을 위 한 검증(실적평가) 비용 지원(건당 3백만원)	1,000 백만원 * 50건 × 20백만원(건당 지원비용) * 20백만원 세부내역 ①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장 세부 설비 및 공정별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인벤토리) 구축 지원(건당 4백만원) ② 사업 발굴 지원 : 기술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건당 5백만원) ③ 사업 등록 지원 : 사업계획서의 제 3자 검증(타당성평가) 비용 지원(건 당 5백만원) ④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지원 : 모니터링 보고서 컨설팅 및 작성 지원(건당 3백만원) ⑤ 실적 검증 지원 : 실적 인증을 위한 검증(실적평가) 비용 지원(건당 3백만원)

에너지관리공단지원(계속)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100 - 5143 - 301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채희봉), 과장(이상훈, 044-203-5360), 주무관(신홍섭, 044-203-536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1~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4,144억원)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수지차보전 : 총지출 - 자체수입)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종합적인 국가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본 운영비 지원

○ 주요기능 :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CO₂ 저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4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총 지출예산 중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출연(수지차 보전)
 - 정부출연금(A-B) : 47,131백만원
 - 총 지출(A) : 67,604백만원, 자체수입(B) : 20,473백만원
- 사업비 : 31,860백만원 → 31,054백만원(△806백만원)
 - 자체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06백만원 감액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 인건비 : 26,810백만원 → 27,776백만원(+966백만원)
 - * '13·'14년도 인력증원 +504백만원, 공통증가분 1.8% 462백만원
 - 경상운영비 : 2,066백만원 → 2,024백만원(△42백만원)
 - * '12년도 경영평가 결과(D등급)에 따른 0.5% 감액(10백만원), 비경직성 경비 5% 감액(32백만원)
- 그린카 연비 성능평가, 승용차 5개 주행모드별 시험, 표시연비와 체험 연비의 격차 분석 등을 위한 자동차연비관리센터 장비구축비(+3,000백만원)
- 이차보전분은 '14년 실소요 예상분 반영(2,383백만원, △307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동결(188백만원), 목적예비비(경영평가 성과급) 동결(1,179백만원)
- 자체수입 : 31,970백만원 → 20,473백만원(△11,497백만원)
 - 사업수입 : 14,547백만원 → 15,199백만원 (+652백만원)
 - 산업체 등 에너지진단 1,812백만원 → 1,812백만원
 - 열사용기자재검사 6,513백만원 → 7,816백만원 (+1,303백만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756백만원 → 917백만원(+161백만원)

-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1,520백만원 → 1,520백만원
- 직접대출 융자취급수수료 3,117백만원 → 2,161백만원 (△956백만원)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중단('10)에 따른 대출잔액 감소로 수입 감소
- 법정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수입 659백만원 → 735백만원 (+76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170백만원 → 238백만원 (+68백만원)
- 사업외 수입 17,423백만원 → 5,274백만원 (△12,149백만원)
- 탄소배출권 매각수입 : 13,480백만원 → - (△13,480백만원)
 - * UN이 규정한 온산로디아 CDM 탄소배출권 사업 기간('06~'12년) 종료

◇ 탄소배출권 사업 기간의 만료에 따라 해당 수입 감소

- 공단은 '05년 9월 정부(총리실) 방침에 따라 탄소배출권 지분 확보 후 배출권 매각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여 '08년부터 '13년까지 1,457억원을 정부 출연금 대용으로 활용

- 결산잉여금 세입계상 : 599백만원 → 599백만원
- 지역난방공사 배당수입 : 1,500백만원 → 2,175백만원 (+675백만원)
 - * '11~'13년 실수입실적 평균치 반영
- 이자수입 등 : 1,844백만원 → 2,500백만원 (+656백만원)
 - * '12년도 결산 실적치 반영

< '14년 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정부출연금(A-B)				32,823	47,131
지출예산 합계(A)	64,793	67,604	자체수입 합계(B)	31,970	20,473
▪ 사업비	31,860	31,054	▪ 사업수입	14,547	15,199
▪ 인건비	26,810	27,776	- 에너지진단	1,812	1,812
▪ 경상운영비	2,066	2,024	- 열사용기자재검사	6,513	7,816
▪ 목적예비비	1,179	1,179	- 고효율기자재인증	756	917
▪ 이차보전분	2,690	2,383	- 대한민국에너지대전	1,520	1,520
▪ 퇴직급여충당금	188	188	- 융자취급수수료	3,117	2,161
▪ 자동차 연비관리센터	-	3,000	- 에너지관리교육	659	735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170	238
			▪ 사업외수입	17,423	5,274
			- 탄소배출권 매각	13,480	-
			- 결산잉여금 세입계상	599	599
			- 지역난방공사 배당금	1,500	2,175
			- 이자수입 등	1,844	2,500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종합적인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관리공단지원(A-B)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지출금액(A)	67,268	64,793	67,604	2,811	4.3
▪ 사업비	32,064	31,860	31,054	△ 806	△ 2.5
▪ 인건비	24,596	26,810	27,776	966	3.6
▪ 경상운영비	1,970	2,066	2,024	△ 42	△ 2.0
▪ 목적예비비	794	1,179	1,179	-	-
▪ 이차보전	2,874	2,690	2,383	△ 307	△ 11.4
▪ 퇴직급여충당금	1,207	188	188	-	-
▪ 자동차연비센터	-	-	3,000	3,000	순증
▪ 에너지교육관	3,327	-	-	-	-
▪ 차년도 세입계상	436	-	-	-	-
○ 자체수입(B)	48,034	31,970	20,473	△ 11,497	△ 36.0
▪ 사업수입	14,107	14,547	15,199	652	4.5
▪ 사업외수입	33,927	17,423	5,274	△ 12,149	△ 69.7
□ 세출예산비목	19,234	32,823	47,131	14,308	43.6
○ 출연금(350-01)	19,234	32,823	47,131	14,308	43.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을 실효성 있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중점 추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등 10대 정책과제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 지속 추진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9~'30)」의 차질 없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28	○ 정부출연금(A-B) : 328억원 - 총지출(A) : 648억원, 자체수입(B) : 320억원
'14	471	○ 정부출연금(A-B) : 471억원 - 총지출(A) : 676억원, 자체수입(B) : 205억원
'15	388	○ 정부출연금(A-B) : 388억원 - 총지출(A) : 681억원, 자체수입(B) : 293억원
'16	349	○ 정부출연금(A-B) : 349억원 - 총지출(A) : 681억원, 자체수입(B) : 332억원
'17	325	○ 정부출연금(A-B) : 325억원 - 총지출(A) : 646억원, 자체수입(B) : 321억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에의 출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항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범위등) ②항

○ 추진경위

- '79.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포
- '80. 7 에너지관리공단설립(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 '81~ 정부예산지원(일반회계)
- '9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
- '03. 2 (부설)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 '05. 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 11 CDM운영기구(OE) 지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에너지관리공단지원	139	164	192	328	4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업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39 (139)	- (-)	- (-)	139 (139)	139 (139)	- (-)	- (-)
'11년	164 (164)	- (-)	- (-)	164 (164)	164 (164)	- (-)	- (-)
'12년	192 (192)	- (-)	- (-)	192 (192)	192 (19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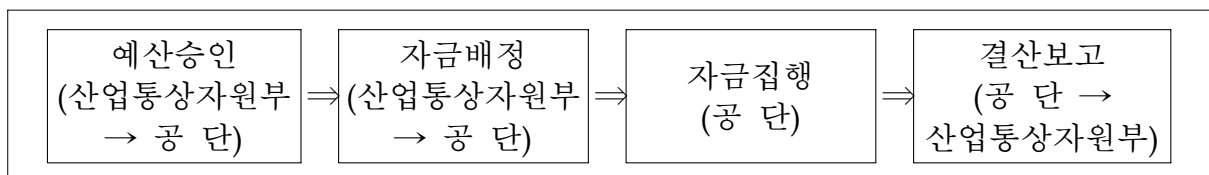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 '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성에너지센터(ECCJ) : 일본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술지도, 에너지절약설비 조사 및 보급, 교육·홍보·출판 및 정보제공 등 (23부 8지부(소), 122명)
- 환경·에너지관리공사 (ADEME) : 프랑스
 -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신기술 시범도입 및 보급,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교육·홍보·출판 및 정보제공 등 (12부 26지부, 850명)
- 에너지기술지원단 (FES) : 영국
 -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청정석탄 연구개발 등 (300명)
- 에너지환경공사 (NOVEM) : 네덜란드
 - 산업, 건물, 수송분야의 에너지절약 기술지도, 신에너지 개발·보급, 지역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 (3개본부 15개실, 1,250명)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계속)

< 에 특 회 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29,785	332,500	250,000	△82,500	△24.8

* 사업코드 : 21 - 24 - 5 - 110 - 115 - 5100 - 5141 - 302

* 담 당 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김정기, 044-203-536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0년~계속
총사업비	계속 사업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대기업인 경우 제외)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사업시행주체	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도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투자 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투자 지원

○ 기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투자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ESCO 투자사업 : 115,000백만원
 -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약 935백만원 × 122건)
- 목표관리제 사업 : 25,000백만원
 -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약 1,827백만원 × 13건)
- 산업체 등 절약시설 : 110,000백만원
 - 기타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약 197백만원 × 558건)

□ 지원 필요성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시급한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자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열위에 있고,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여력이 취약하여 지원책 필요
-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속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 ESCO투자사업	210,000	120,000	115,000	△ 5,000	△ 4.2
▪ 목표관리제 사업	169,785	80,000	25,000	△ 55,000	△ 68.8
▪ 절약시설 설치	150,000	132,500	110,000	△ 22,500	△ 17.0
☐ 비목(합계)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529,785	332,500	250,000	△ 82,500	△ 24.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금 지속 지원
- 정책융자 예산 축소에 따른 자금 수요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차보전 융자금제도*를 통하여 대응

* 이차보전 융자제도 : 대출재원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이자율의 일정부분을 정부예산으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5,297	
'13	3,325	○ESCO사업 : 1,367 ○목표관리제 : 298 ○기타 절약시설 : 1,308
'14	2,500	○ESCO사업 : 1,150 ○목표관리제 : 250 ○기타 절약시설 : 1,100
'15	2,354	○ESCO사업 : 1,083 ○목표관리제 : 235 ○기타 절약시설 : 1,036
'16	1,699	○ESCO사업 : 781 ○목표관리제 : 170 ○기타 절약시설 : 748
'17	1,495	○ESCO사업 : 688 ○목표관리제 : 150 ○기타 절약시설 : 65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 2차 Oil Shock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79.12)하고, 동법에 따라 '80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2008.8.15.)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2008.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5,118	6,018	5,298	3,325	2,500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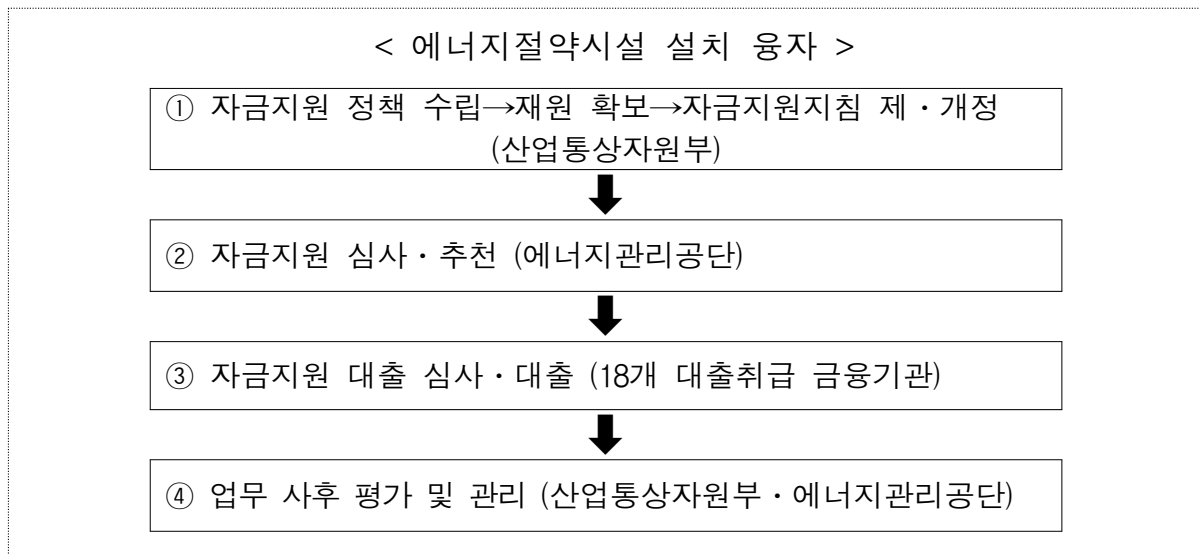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개선책을 마련할 것 ('09결산 지경위 · 예결위 시정요구, '12년 심층평가)
- (조치결과) '13년부터 대기업은 정책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에너지 이용형 설비,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하여 설치보조금, 시설투자비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실시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